발 간 등 록 번 호
32-9741568-001970-01

연 구 보 고 서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사 법 정 책 연 구 원
연구총서 2026-0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Written Criminal Judgments

연구책임자: 정 우 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백 수 빈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2014. 1. 1.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25년도에 선정된 연구과제 중 하나인『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구원의 내부 검토 및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이고 충실한 자문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가 국민을 위한 사법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용 목차

국문 요약 ····· xi

Abstract ····· x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Ⅰ. 연구의 범위 ····· 5

Ⅱ. 연구의 방법 ····· 5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 ····· 7

제1절 서설 ····· 9

제2절 외국과의 비교 ····· 10

Ⅰ.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형사사법 법치주의 지수 [Rule of Law Index (Criminal Justice)] ····· 10

Ⅱ. 주요 국가의 법관 및 사건 관련 통계 비교 ····· 11

1. 독일, 프랑스, 일본 ····· 11

2. 영국 ····· 12

3. 미국 ····· 13

Ⅲ. 법관들 대상 형사재판 관련 설문조사 결과 ····· 16

1. 개요 ····· 16

2.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 17

3. 설문조사 결과의 정리 ····· 22

제3절 시사점 ····· 23

제3장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25

제1절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변화과정 ····· 27

Ⅰ. 형사소송법 등의 판결 이유 기재방식 ····· 27

1. 재판의 이유 명시 ····· 28
2. 유죄판결의 이유 ····· 29
3.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 ····· 33
4.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판결의 이유 ····· 34
Ⅱ. 형사판결서 기재방식의 변화과정 ····· 35
1.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 형사판결서의 모습 ····· 35
2. 제1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 ····· 39
Ⅲ.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71
1. 유죄판결서 ····· 71
2. 무죄판결서 ····· 85
3.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 ····· 87
4.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 88
제2절 형사판결서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 92
Ⅰ. 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의 정리 ····· 92
1. 작성형식의 변화 ····· 92
2. 작성내용의 변화 ····· 92
Ⅱ.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 94
1. 개요 ····· 94
2.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 94
3. 설문결과의 검토 ····· 107
Ⅲ. 우리의 형사판결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 108
1. 작성형식 적정화와 내용적 적정화의 구별 ····· 108
2. 내용적 적정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 ····· 109
3. 판결서의 장문화와 상소율과의 관계 ····· 109
4. 현행 적정화 예규의 평가와 한계 ····· 110
5. 복잡사건에서의 판결서 장문화와 개별 기준 설정의 한계 ····· 111
6.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 112

제4장 외국의 형사판결서 ····· 113

제1절 미국의 형사판결서 ····· 115
Ⅰ. 연구의 대상 ····· 115
Ⅱ.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구조 ····· 115
1. 범죄의 분류에 따른 연방지방법원 내 담당 사건의 구분 ····· 115
2. 배심재판(Jury Trial) 및 비배심재판(Bench Trial) ····· 117

Ⅲ.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판결서 등 작성방식 ····· 118
1. 연방지방법원 형사판결서의 기본적인 작성방식 ····· 118
2. 실제 형사판결서 등의 검토 ····· 124
Ⅳ. 검토 및 시사점 ····· 143
제2절 영국의 형사판결서 ····· 145
Ⅰ. 연구의 대상 ····· 145
Ⅱ. 영국의 하급심 형사재판 구조 ····· 145
1.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 ····· 145
2. 치안법원의 관할 사건 ····· 145
3. 형사법원의 관할 사건 ····· 146
4. 유죄인정과 형량고지(Sentence indication) ····· 147
Ⅲ. 영국의 형사판결 ····· 148
1. 치안법원의 판결 ····· 148
2. 형사법원의 판결(제1심 판결) ····· 153
Ⅳ. 시사점 ····· 157
제3절 독일의 형사판결서 ····· 158
Ⅰ. 독일의 형사재판 제도 개관 ····· 158
1. 독일의 제1심 형사법원 구성 ····· 158
2. 독일의 형사재판 절차의 제도적 특징 ····· 159
Ⅱ. 독일의 특수한 형사절차 ····· 163
1. 형벌명령(Strafbefehl) ····· 163
2. 단축판결(Abgekürztes Urteil) ····· 166
3. 검토 ····· 172
Ⅲ. 독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72
1. 유죄판결의 이유 ····· 172
2. 무죄 판결의 이유 ····· 181
Ⅳ. 시사점 ····· 183
제4절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 184
Ⅰ. 프랑스의 형사재판제도 개관 ····· 184
1. 범죄의 종류에 따른 관할 법원 및 재판 절차의 개관 ····· 184
2. 프랑스 형사절차의 제도적 특징 ····· 187
Ⅱ.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89
1. 중죄법원 ····· 189
2. 경죄법원 ····· 195
3. 경찰법원 ····· 197

Ⅲ. 시사점 ····· 197
제5절 일본의 형사판결서 ····· 199
Ⅰ. 일본의 형사판결서의 개관 ····· 199
Ⅱ. 일본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 199
1. 관련 법령 ····· 199
2. 일본 형사판결서 구성 ····· 200
3. 일본 형사판결서의 기재사항 ····· 200
4. 이유 기재의 순서 ····· 201
5. 구체적인 판결례 ····· 202
Ⅲ. 형사판결서 간이화 제도 ····· 207
1. 인용의 활용 ····· 207
2. 조서판결 ····· 207
Ⅳ. 시사점 ····· 210
제6절 종합적 검토 ····· 211

제5장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안 ····· 213

제1절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성 ····· 215
Ⅰ. 개선방안 논의의 전제 :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 215
1. 과거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및 개선방향 ····· 215
2.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 215
Ⅱ. 기재 내용에 관한 개선 방안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 216
1. 기재 내용 증가의 주된 원인 ····· 216
2. 개선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 217
Ⅲ. 개선의 방향성 ····· 218
1.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 ····· 218
2. 개선의 방향성 ····· 218
제2절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의 보충 제도의 제안 ····· 220
Ⅰ. 제도의 개관 ····· 220
Ⅱ. 제도 도입의 착안점 ····· 220
Ⅲ. 독일의 단축판결과 차이를 둔 이유 ····· 221
Ⅳ.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22
Ⅴ. 설문결과 및 분석 ····· 223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23
2. 분석 ····· 234

Ⅵ. 도입제안 제도의 주요내용 ····· 235
1. 판결서에 의한 판결선고 ····· 235
2. 상소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 236
3. 작성기간의 제한 ····· 239
4. 위임에 의한 적용 제외 사유 ····· 241
5. 공판조서의 활용 ····· 242
6. 판결 이유 작성 과정에서 국어자문 등의 활용 ····· 242
Ⅶ.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 243
1. 형사소송법의 개정 ····· 243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244
3. 예시 ····· 245
Ⅷ.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 246
1. 상소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저하 및
이유 확인을 위한 항소 증가 우려 ····· 246
2. 이유의 추후 보완에 따른 선고 시점에서 판결 완성도 저하 우려 ····· 246
3. 사후작성 이유는 결론의 정당화를 위한 자의적 · 형식적 기재가 될 우려 246
4. 판결 이유의 보충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또는 재판 지연 우려 ····· 247
제3절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의 제안 ····· 248
Ⅰ. 제도의 개관 ····· 248
Ⅱ. 제도 도입의 착안점 및 일본의 조서판결과의 차이점 ····· 248
Ⅲ. 제도 도입의 필요성 ····· 249
Ⅳ. 설문결과 및 분석 ····· 251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51
2. 분석 ····· 259
Ⅴ. 제도의 주요내용 ····· 260
1. 제도 적용의 전제 – 제1심 간이공판절차 결정 사건 ····· 260
2.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조서판결의 작성 ····· 260
3. 판결서 작성 시기 및 상소의 제기에 따른 판결서의 작성 ····· 261
4. 조서판결에 기재할 사항 ····· 261
5. 적용 제외 사유의 위임 ····· 262
Ⅵ.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 264
1. 형사소송법의 개정 ····· 264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 266
3. 조서판결의 예시 ····· 267
Ⅶ.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 269

1. 자백사건에서는 이미 간이한 판결서를 쓰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 269
2. 조서 형식 판결에 대한 거부감에 관한 우려 ····· 269
3. 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이 배제됨에 따른 우려 ····· 270
4.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약화에 따른 우려 ····· 270
제4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 기재의 특례에 관한 제안 ····· 272
Ⅰ. 제도 개선의 개관 ····· 272
Ⅱ. 개선의 필요성 ····· 272
Ⅲ. 설문결과 및 분석 ····· 273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 273
2. 분석 ····· 279
Ⅳ. 주요 내용 ····· 280
1. 적용범위 ····· 280
2. 배심원 평결의 인용 ····· 280
Ⅴ. 개정안의 제안 ····· 281
1. 개정 형식 ····· 281
2. 대법원규칙의 개정방안 ····· 281
3. 적정화 예규의 개정방안 ····· 281
4. 예시 ····· 282
Ⅵ. 예상되는 우려와 그에 대한 보완책 ····· 282
1.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실상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 ····· 282
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종국적 판단 주체는 법원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 283
3.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설득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283
Ⅶ. 보론 –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및 질문지의 활용 필요성 ····· 283
1.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 평결의 특성 ····· 283
2.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필요성 ····· 284
3. 배심원의 판단 근거 확인을 위한 의견확인 또는 질문지 도입 ····· 284
제5절 형사판결서 작성형식의 개선 등 ····· 286
Ⅰ. 작성형식 개선의 필요성 ····· 286
Ⅱ.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의 개선 ····· 287
1. 개선방안의 개관 ····· 287
2. 예규 개정안 ····· 288
3. 예시 ····· 288

Ⅲ. 법령의 적용 기재 방식의 개선 ····· 289
1. 개선 방안의 개관 ····· 289
2. 예규 개정안 ····· 290
3. 예시 ····· 290
Ⅳ. 양형이유 기재 방식의 개선 ····· 291
1. 개선방안의 개관 ····· 291
2. 도입의 필요성 ····· 291
3. 예규 개정안 ····· 293
4. 양형이유 기재방식 ····· 294

제6장 결론 ····· 299

참고문헌 ····· 304

[별지] ····· 311

[별지 1] 제1심 형사공판사건 연도별 상소율 비교표(1970-2024) ····· 311
[별지 2] 판결서 적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 315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 법관 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 ····· 12
[표 2] 독일 형사사건 상소율(2024) ····· 168
[표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율(2020년 이후) ····· 222
[표 4] 간이공판절차 관련 통계 ····· 250

국문 요약

형사판결서는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고, 상소심으로 하여금 원심의 판결을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사법자원은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속한 재판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자원은 형사판결서 작성 외에 형사재판 전반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형사판결서 적정화는 판결의 정당화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이유를 확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 제정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가 시행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그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판결서 적정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비교하면서 형사판결서 적정화 논의의 지속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지표상 형사사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과도한 법관 1인당 사건부담 등이 존재한다. 즉, 현재의 효율성은 충분한 사법자원 확보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 법관 개인의 무거운 업무부담 등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법관 설문결과에 의하더라도, 형사재판 및 형사판결서 작성에 관한 법관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할 때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사법역량 및 효율성이 저하되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사법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첫째로 우리나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하여 탐구하였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무렵부터 약 50년 동안 유죄판결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결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1991년, 1998년, 2014년 제정된 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대법원 예규도 형사판결서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작성의 편리 및 가독성의 향상을 꾀하면서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장황함을 지양하는 방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법령의 적용을

나열식으로 정리하고, 증거의 요지를 보다 간명한 형식으로 기재하는 등 작성형식의 적정화는 실무에 상당 부분 정착하였다. 그러나 형사판결서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예규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분량이 증가해 갔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판단,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 설시, 양형 이유의 별도 기재가 일반화되면서 형사판결서는 과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당사자 설득의 필요성, 상급심에 대한 대비, 재판의 충실성 확보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로는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의 적용 현황을 통하여 현재의 적정화 방안의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적정화 예규는 유죄판결서에서 증거의 증명력이나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원칙적으로 간략화 하거나 생략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이하게'라는 이념하에, 판결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법관은 실제 사건에서 여전히 증거의 증명력이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폭넓게 기재하고 있었고, 변호사들 역시 예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상세한 이유 설시를 필요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예규가 존재하더라도, 이유 설시를 줄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비난이나, 상소심의 부정적 인식 등에 관한 우려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현행 적정화 논의는 판결서를 짧게 쓰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은 여전히 개별법관이 부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을 개별법관의 작성기술 개선이 아니라 사법자원 배분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모든 사건에 동일한 수준의 상세한 이유 설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툼이 존재하거나 상소를 통하여 후속 심리가 예정된 사건에 한하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다툼이 없거나 상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형식과 절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각국의 형사판결서 관련 작성방식 및 제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구체적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건의 성격, 절차의 유형, 당사자의 신청이나 상소 여부 등에 따라 판결 이유의 기재 수준을 달리하거나, 일정한 경우 판결서 작성 자체를 간소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는 형사판결서의 적정화가 재판의 충실성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사건에

보다 충실한 판단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드러낸다.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의 방향은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전제에서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방안은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이다. 이는 제1심 선고 시점에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형사판결서를 작성 · 선고하고,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일정한 기간 내에 판결 이유를 보충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그 취지는 상소심 심리가 실제로 예정된 사건에 보다 충실한 이유설시를 하도록 하여,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장문의 판결서를 미리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둘째는 공판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자백사건 가운데 상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 별도의 판결서 작성 자체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복잡하고 분쟁성이 높은 사건에 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셋째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유 기재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결론이 일치하는 사건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거의 증명력과 당사자 주장을 반복하여 상세히 적시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판결이유를 보다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교적 즉시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작성형식상의 개선도 제안한다. 증거의 요지는 전자기록 및 증거목록 체계와 연계하여 목록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은 관련 법조와 적용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형이유의 경우에는 권고형량 범위의 계산과정을 반복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재판부가 실제로 고려한 주요 양형 인자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판결서의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핵심은 어떠한 방법으로 간이하게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형사판결서의 장문화는 개별법관의 선택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설득, 상소심의 통제, 사회적 요구가 중첩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그 해결 역시 개별법관의 선택이나 권고적 예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건의 성격과 절차의 유형에 따라 판결서 작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통하여 판결의 설득력

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법관의 시간과 역량을 보다 본질적인 심리와 판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충실하고 신속한 형사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형사판결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형사판결서 간이화, 형사판결서 적정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신속한 재판,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 판결 이유 보충, 조서판결, 국민참여재판, 형사전자소송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Written Criminal Judgments

Jung, Wooyong
Research Fellow / Judge

A criminal judgment must justify the court's conclusion and provide a basis for meaningful appellate review. At the same time, judicial resources are inherently limited, and in light of the demand for speedy trials, such resources must be allocated rationally across criminal adjudication as a whole, not solely to the drafting of criminal judgments. Efforts to rationalize criminal judgment writing must therefore secure a sufficient level of reasoning to support the judgment, while also enabling the reasonable allocation of limited judicial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now that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2014 Directive on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 Writing came into effe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ts operational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to undertake a full review of the need for, and future direction of,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s.

Accordingly, Chapter 2 first compares the current state of criminal adjudication in Korea and in foreign jurisdictions, and examines why continued discussion of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s remains necessary. According to global comparative indicators, Korea performs very well in terms of the timeliness and efficiency of criminal trials. Behind this, however, lies an excessive caseload per judge. In other words, the current level of efficiency is achieved less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judicial resources than through the heavy workload borne by individual judges. Survey results also indicate that judges face a substantial burden in criminal trials and in drafting criminal judgments. In light of this, rather than remaining complacent with a system that appears relatively effi-

cient,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measures for the proper and efficient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before judicial capacity and efficiency decline and the public's right to a speedy trial is impaired.

Chapter 3 first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riminal judgment-writing methods in Korea. From around the tim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enacted in 1954 and for approximately the next fifty years, judgments of conviction were drafted relatively concisely, focusing on the matters required by law. The Supreme Court directives concerning judgment writing, issued in 1991, 1998, and 2014, likewise maintained a direction aimed, in formal terms, at improving ease of drafting and readability, while, in substantive terms, avoiding unnecessary prolixity. As a result, formal rationalization became firmly established in practice, for example by organiz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list form and recording the summary of evidence in a more simplified format. However, the substantive length of criminal judgments gradually increased. In particular, detailed rulings on the arguments of defendants and defense counsel, specific discussion of the credibility of evidence, and the routine inclusion of separate sentencing reasons made criminal judgments overall much longer than in the past. This change appears to have resulted from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need to persuade the parties in line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trial-centered principle, preparation for review by higher courts, and efforts to ensure the thoroughness of adjudication.

Second, Chapter 3 reviews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current rationalization measures by examining how the Directive on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 Writing has been applied in practice. Under the ideal of "persuasion in court, concise judgments," the Directive sought to reduce the burden of drafting judgments by providing that, in judgments of conviction, discussion of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or of the parties' factual assertions should in principle be brief or omitted, and that reasons should focus on the core issu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however, a substantial number of judges still set out broad discussions of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and of the parties' assertions in actual cases, while lawyers likewise tended to hold negative views of the Directive and to

regard detailed reasoning as a necessary element of a judgment. This shows that, even where the Directive exists, concerns remain strong about criticism from the parties or negative perceptions in appellate review when the statement of reasons is reduced. Put differently, although the current rationalization discourse points toward shorter judgments, the responsibility and risk associated with doing so still remain with individual judges. In response to this problem, the study approaches the future direction of rationalizing criminal judgments not as a matter of improving the drafting techniques of individual judges, but as one of redesigning the structure of judicial resource allocation. That is, rather than requiring the same level of detailed reasoning in every case, courts should devote more extensive reasoning only in cases involving actual disputes or likely appellate review, while simplified forms and procedures should be permitted in cases where no dispute exists or the likelihood of appeal is low.

Chapter 4 identifies, through a comparative-law review, the judgment-writing methods and related institutions in criminal cases across various countries. Although the specific systems differ,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all, in common, vary the level of reasoning stated in judgment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the nature of the case, the type of procedure, a party's request, or whether an appeal has been filed, or provide mechanisms for simplifying the preparation of judgments themselv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demonstrates that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s does not necessarily mean a weakening of the thoroughness of adjudication; rather, it i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ncentrating fuller deliberation and reasoning where they are actually needed.

Chapter 5 proposes specific reforms. These proposals proceed on the premise that reform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a rational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through structural improvement. First among the principal reforms advanced by this study is a system for supplementing the reasons for judgment upon the filing of an appeal. Under this proposal, at the time of pronouncement in the first instance, the court would prepare and pronounce a criminal judgment centered on the matters required by law, and only where a lawful ap-

peal is filed would it supplement the reasons for judgment within a prescribed period. The purpose is to allow fuller reasoning in cases that are actually destined for appellate review, while reducing the burden of having to prepare lengthy judgments in advance in every case. Second is a system under which the trial record may substitute for the written judgment.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proposed only for confession cases referred to summary trial proceedings and only where no appeal is filed. By dispensing with a separate written judgment in cases where there is no real dispute, this system would allow judicial capacity to be concentrated on complex and contentious cases. Third is a proposal to recognize a special rule on the statement of reasons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cases where the jury's verdict and the court's conclusion coincide, the relative need to restate in detail, at the same level as in ordinary cases, the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and the parties' arguments is lower. Accordingly, the reasons for judgment should be capable of being presented more concisely on the basis of the jury's verdict.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drafting format that could be reflected in practice relatively promptly. It suggests that the summary of evidence should be recorded in closer linkage with the electronic records and evidence-list system, following more closely the order of the evidence list, and that the section on the application of law should be organized around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case. As for sentencing reasons, rather than repeatedly describing the calculation process for the recommended sentencing range,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method centered on the principal sentencing factors actually considered by the court. These improvements can ease the burden of drafting without impairing the substance of the judgment, while enhancing its readability and communicative force.

The core of the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s, this study argue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question of how to write more simply, but as a question of how judicial resources should be allocated among different kinds of cases. The increasing length of criminal judgments is not a phenomenon produced solely by the choices of individual judges; rather, it is the result of overlapping pressures arising from the need to persuade the par-

ties, appellate control, and broader social demands. Accordingly, the solution cannot be adequately achieved through the choices of individual judges or merely recommendatory directives alone. What is required instead are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vary the density and scope of judgment writing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and the type of procedure. The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orough and speedy criminal adjudication by enabling judges to concentrate their time and capacity on the more essential tasks of hearing and decision-making, without undermining the legitimacy or persuasive force of judgments.

Keywords: criminal judgment, Improving Written Criminal Judgments, simplification of criminal judgments, rationalization of criminal judgments, efficient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speedy trial, changes in the method of drafting criminal judgments, supplementation of reasons for judgment, record-based judgm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 electronic criminal litigation

제1장

서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형사판결서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재판의 결론인 판결을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문서이다. 형사재판을 통하여 도출되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어떠한 근거로 정당화되는 것인지 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어떠한 이유로 배척 또는 제한되는지는 기본적으로 형사판결서를 통하여 표현된다.

형사재판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그 특성상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공공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당사자 및 범죄의 피해자에게 큰 관심사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관심도 매우 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형사판결서는 형사재판의 결론인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면서, 형사판결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판결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당사자 및 피해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비교적 소수의 법관이 대량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는 형사판결서의 작성에 지나친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지연을 초래하여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판결서는 판결서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는 선에서 법령에 기초하여 판결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 재판의 결론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형사판결서도 공판중심주의에 걸맞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생생하게 현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우리 법원은 형사판결서 적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및 연구를 해왔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연구를

종합하여 2014. 7. 4.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위 예규가 제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예규 등에 따른 기존의 적정화 방안 등이 공판중심주의를 뒷받침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재판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적정화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우리 재판 실무에 충분히 수용되었는지, 수용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의 적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법 환경 및 실무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 형사판결서의 모습 및 기존 적정화 방안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형사판결서와 관련한 제도 등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우리 사법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판결서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적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로 가장 기초적인 연구 대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판결서를 적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판결서의 가장 주요한 부분인 판결 이유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여 판결서와 관련한 전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제1심 형사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그 대상으로 한다. 형사 항소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기재되고 있어, 판결 이유 등의 전반적인 작성방식을 새로이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제1심 형사판결서의 적정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죄의 형사판결서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무죄의 형사판결서는 유죄의 형사판결서와 비교할 때 그 작성방식이 법령 등에 의하여 정형화되지 않고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 등이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의 방법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검토하여,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검토하고, 그 작성방식의 변화과정을 살펴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각종 외국의 제도 및 판결서 작성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외국의 형사판결서와 관련한 제도 또는 작성방식 중 우리나라 형사판결서 적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법관 및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와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수용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후 앞선 각종 연구에 따라 밝혀진 시사점 및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여 형사판결서 적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서설

형사판결서 적정화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에 앞서, 그 필요성과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사판결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정화할 것인가는 현재 형사재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별 법관에게 어느 정도의 사건 부담이 부과되고 있는지,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형사판결서 적정화는 형사판결서만을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운영 현황을 파악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의 형사재판이 어떠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지를 조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국가마다 법원조직, 사건 분류 방식, 재판의 구조, 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규모와 역할 등이 다르므로, 수치적 비교만으로 이를 명확히 조망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법관의 업무 부담 수준을 주요 국가들과 대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의 형사재판 관련 현황을 개관하고, 우리의 형사재판 및 형사판결서에 대한 법관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고 비교 · 분석을 하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적정화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외국과의 비교

I.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의 형사사법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Criminal Justice)]

세계 각국의 사법부는 각각 다양한 사법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나, 형사사법 분야만을 특정하여 각종 통계를 전 세계적으로 비교 · 분석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국의 사법부의 법원조직 등이 서로 다르므로, 수치적 대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적시성이나 효율성의 차이 등을 적절히 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국내 언론 기사나 연구자료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1]는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2]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사법절차를 평가 · 분석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평가의 대분류 중에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부문이 있고, 그 하위 지표로 형사재판 시스템의 적시성 및 효율성(Criminal adjudication system is timely and effective)이 포함되어 있는 바, 아래의 자료는 이 부분에 관한 2025년 대한민국의 순위를 나타낸 자료이다.[3]

---

1) World Justice Project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개가 있다. “World Justice Project®(WJP)는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을 창출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자극하는 독립적인 다학제(multidisciplinary) 조직입니다. 효과적인 법치주의는 부패를 줄이고,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며, 크고 작은 불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정의, 기회,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를 위한 토대이며, 발전, 책임 있는 정부, 그리고 기본권 존중의 근간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법치주의는 법률가와 법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 권리, 정의, 그리고 거버넌스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사람이 법치주의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WJP는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2006년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대표적인 주도로 William H. Neukom이 설립하고 21명의 다른 전략적 파트너의 초기 지원을 받아 World Justice Project는 2009년 독립적인 501(c)(3) 비영리 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워싱턴 DC, 싱가포르,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https://worldjusticeproject.org/about-us (2026. 5. 20. 확인).

2) 세계 정의 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자체에 관한 연구는 “김대홍,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설문문항의 분석, 법학논총 제4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2020)”을 참조.

3) 형사 사법 부분은 그 외에 형사 수사 시스템의 효율성, 교정 시스템의 범죄 행위 감소에 대한 효과성, 형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형사 사법 시스템의 부패로부터의 자유, 형사 사법 시스템의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자유,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권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기준 형사사법 부문 전체 순위는 15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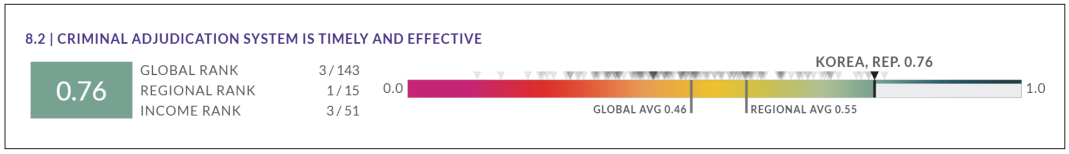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경우 2025년 기준 평가에 의할 때, 형사재판 시스템의 적시성 및 효율성 부문은 전 세계 143개국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형사재판의 적시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순위에 있다[4](2021년 5위, 2022년 7위, 2023년 4위, 2024년 2위).

한편, 이번 연구에서 비교 대상이 될 주요 국가들의 형사재판 시스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순위는 2025년 기준 독일 5위, 영국 8위, 일본 17위, 미국 22위, 프랑스 26위이다.[5]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 수와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비교 대상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법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제 지표상 형사재판의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형사재판이 높은 수준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 주요 국가의 법관 및 사건 관련 통계 비교

1. 독일, 프랑스, 일본

법원행정처는 2021. 9. 23.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량을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법관 업무량과 비교한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다.[6] 이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민사 · 형사 본안 사건 수는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인 독일, 프랑스, 일본과 비교할 때 약 2배에서 5배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비추어

4) https://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factors/2025/Korea%2C%20Rep./Criminal%20Justice (2026. 5. 20. 확인).
5) 해당 지표에서 2025년 기준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국가는 핀란드이다.
6)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A%F1%B1%B3&searchOption=&seqnum=2073&gubun=6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2026. 5. 20. 확인).

볼 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관으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법의 적시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법관 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

국가	인구 (2019)	1인당 GDP($) (2019)	법관 인원 (2019)	민사·형사 본안 접수(2019)	
				전체	법관 1명당
독일	83,132,800	46,445.20	23,835	2,136,254	89.63
프랑스	67,059,890	40,493.90	7,427	1,459,538	196.52
일본	126,264,930	40,246.90	3,881	589,106	151.79
우리나라	51,709,100	31,846.20	2,966(현원)	1,376,438	464.07

2. 영국

앞서 본 통계에는 이 연구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 중 영국[7] 및 미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우선 영국의 현황을 확인한다.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24년 중기 기준 인구는 61,806,682명이고,[8] 형사절차에 회부된 피고인 수(Defendants proceeded against)는 2024년 기준 1,329,311명[9] 정도이다. 2024. 4. 1. 기준 법원 판사(Court Judge)는 3,667명, 심판소 판사(Tribunal Judge)[10]는 1,631명, 심판소의 비법률가 구성원(non-legal members of

7) 영국은 우리나라에서 통상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바,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국들 중 일부는 사법 체계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영국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연합왕국의 구성국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England and Wales)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8)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populationestimatesforenglandandwales/mid2024 (영국 통계청 잉글랜드 웨일즈 인구 통계자료. 2026. 5. 20. 확인).

9) https://data.justice.gov.uk/cjs-statistics/cjs-entrants (영국 법무부 잉글랜드와 웨일즈 통계자료, 2026. 5. 20. 확인).

10) Tribunal은 영국의 노동, 이민, 조세 등 특정 분야에서 주로 행정 관련 재판을 하는 조직으로, 심판소는 전통적인 법원(Court) 소속이 아니었고, 조직적으로도 구별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심판소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다만, 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 2007(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에 따라 심판소 판사(Tribunal Judge)도 사법부(Judiciary)에 소속되었고, 전통적인 판사에 준하는 신분적 보장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들은 전통적인 법원의 판사는 아니더라도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재판기관의 판사

tribunals)은 3,115명이 있다.[11] 다만, 영국의 법원 및 심판소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정규의 직업 법관(salaried judge)은 약 2,000명 정도로 보이고,[12] 그 외의 판사는 주로 비상근 판사(fee-paid judge)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영국에는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4,576명의 치안판사(Magistrates)[13]가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경우 정규의 직업 법관 수 자체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비상근 판사 및 치안판사들이 사건처리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정규의 직업 법관의 숫자만으로 영국 내에서 법관의 사건 부담 정도를 곧바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실제로 약 95%의 형사사건은 주로 선발된 일반 시민이 주를 이루는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을 통해 처리된다고 한다[14]).

3. 미국[15]

미국은 연방국가로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사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연방법원 중 제1심법원인 연방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연방지방법원에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연방 판사(Article III Judge) 673명,

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11)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diversity-of-the-judiciary-2024-statistics/diversity-of-the-judiciary-legal-professions-new-appointments-and-current-post-holders-2024-statistics (영국 정부 통계, 2026. 5. 20. 확인).

12) https://www.ucl.ac.uk/news/2025/feb/judicial-system-facing-looming-crisis-recruiting-and-retaining-judges [University College London News(2025. 2. 28. 자 기사), 2026. 5. 20. 확인], 그 외에 영국 고위공무원 보수 검토 기구에서 2021. 3.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 법관을 1,928명으로 산정한 자료가 있다(Review Body on Senior Salaries, Forty-Fourth Annual Report on Senior Salaries 2022, 128면,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d6ca248fa8f50bfff50f34/SSRB_44th_AR2022_accessible.pdf, 2026. 5. 20. 확인).

13) 영국의 치안판사는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고, 각종 재판의 진행 등은 법원의 법률 조언자(Court Legal Advisor)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인원은 앞의 영국 정부 통계 참조.

14)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magistrates-courts/magistrates-court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의 치안판사 법원 안내, 2026. 5. 20. 확인). 다만 치안판사 법원에도 지역판사(District Judge)라는 명칭의 직업법관이 일부 배치되어, 중요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는 130명 정도로 비교적 소수로 보인다. 지역판사의 규모는 https://www.judiciary.uk/about-the-judiciary/who-are-the-judiciary/list-of-members-of-the-judiciary/dj-mags-ct-list/ 참조(영국 사법부 홈페이지 사법부 구성원 명단, 2026. 5. 20. 확인).

15)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한 연방법관(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판사라는 취지에서 통상 Article III Judge라고 칭한다)의 정원은 870명 정도(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포함)이나, 미국은 연방 또는 주별로 다양한 형태의 법원 및 각종 재판기관이 혼재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5년까지 연방법원의 세부 법관 정원은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2025-01/allauth.pdf 참조(미국 연방법원 홈페이지의 연방법관 정원 변화 자료, 2026. 5. 20. 확인).

상근 연방 부판사(Magistrate Judge[16])) 563명[17] 등이 근무하고 있는바, 미국의 인구 규모(342,278,051명)[18]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연방 판사의 수는 적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국가로 대부분의 사건은 주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다.[19] 또한, 미국의 연방지방법원 연방 판사는 1인당 3명가량의 로클럭(Law Clerk)을 두어 각종 서면 작성 작업 등을 보조하게 할 수 있고, 연방 부판사의 경우에도 1인당 2명가량의 로클럭을 두어서 서면작업 등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20] 아래에 제시된 도표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관련 통계자료로,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대다수의 형사사건이 유죄인정(Plea of Guilty)이나 그 밖의 절차로 종결되고 형사사건이 정식 심리(Trial)를 통하여 판결에 이르는 비율은 매우 낮다.[21]

상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무겁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연방지방법원 연방 판사의 경우 2024. 9. 30.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처리한 형사사건(피고인 단위)은 74,684건이지만 정식 심리를 통하여 유 · 무죄의 판결에 이른 경우가 유죄판결의 경우 1,503건[= 배심재판(Jury Trial) 1,332건 + 비배심재판(Bench Trial)[22] 171건], 무죄판결의 경우 220건[= 배심재판 159건 + 비배심재판 61건]에 불과하여 피고인 기준 전체 사건의 약 2.3%만이 정식 심리를 통한 판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연방 판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부판사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낮다. 같은 기간 12개월 동안 처리된 형사사건(피고인 단위)은 42,116

16) 통상 치안판사 또는 부판사로 번역되고 있으나, 영국의 전문법관이 아닌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치안판사(Magistrates)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연방 부판사로 표현하도록 한다.

17) 그 외에 25명의 시간제 연방 부판사, 2명의 법원서기를 겸하는 연방 부판사, 86명의 은퇴 연방 부판사가 업무를 하고 있다. https://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4/federal-bench-annual-report-2024 (연방법원 홈페이지 2024년 연례보고서, 2026. 5. 20. 확인).

18) https://www.census.gov/popclock (2026. 1. 1. 기준 미국 인구조사 홈페이지 자료, 2026. 5. 20. 확인).

19) 전체 사건 중 주법원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98% 정도로 보인다. https://www.ncsctableauserver.org/t/Research/views/FederalvsStateCaseloads/Dashboard1_1?%3Aembed=y&%3AisGuestRedirectFromVizportal=y [미국 주법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분석 자료, 2026. 5. 20. 확인].

20) https://www.flmd.uscourts.gov/staff-attorneys-and-law-clerks (미국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변호사 스태프와 로클럭 안내, 2026. 5. 20. 확인). https://www.fjc.gov/sites/default/files/2016/Who%20Works%20in%20a%20U.S.%20Court.pdf[미국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의 연방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자료, 2026. 5. 20. 확인].

21) 다만, 미국의 연방 판사와 연방 부판사는 형사사건 외에 다른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담당하므로,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업무 부담을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22) Bench Trial은 판사석을 의미하는 Bench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Trial)을 의미하는바, 통상 판사 재판, 비배심재판 등으로 번역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비배심재판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건이지만 유죄판결의 경우 219건(= A급 경죄 배심재판 17건 + A급 경죄 비배심재판 4건 + 경미 범죄[23] 재판 198건), 무죄판결의 경우 101건(= A급 경죄 비배심재판 7건 + A급 경죄 배심재판 2건 + 경미 범죄 재판 92건)에 불과하여 전체 형사사건의 0.76%만이 정식 심리를 통한 판결에 이르고 있다.[24][25]

[연방지방법원 연방 판사의 형사사건 처리결과]

Table D-7.
U.S. District Courts–Criminal Defendants Disposed of, by Type of Disposition and District,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September 30, 2024

Circuit and District	Total Defendants	Not Convicted				Convicted and Sentenced			
				Acquitted by				Convicted by	
		Total	Dismissed	Bench Trial	Jury Trial	Total	Plea of Guilty	Bench Trial	Jury Trial
Total	74,684	5,279	5,059	61	159	69,405	67,902	171	1,332

[연방지방법원 연방 부판사의 A급 경죄사건 처리결과]

Table M-1A.
U.S. District Courts—Class A Misdemeanor Defendants Disposed of by U.S. Magistrate Judges, by Type of Disposition,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September 30, 2024

Circuit and District	Total	Not Convicted			Convicted		
		Dismissed Without Trial	After Bench Trial	After Jury Trial	Guilty Plea	After Bench Trial	After Jury Trial
Total	3,069	1,301	7	2	1,738	17	4

23) 경미 범죄(Petty Offense)는 배심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배심재판(Bench Trial)에 해당한다.

24) 결국 미국 전역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정식 공판(Trial)을 통하여 유·무죄가 결정되는 형사사건은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을 모두 합쳐도 1년 동안 피고인 기준 2,000건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아래 통계들은 https://www.uscourts.gov/statistics-reports/caseload-statistics-data-tables 참조(미국 연방법원 통계 홈페이지, 2026. 5. 20. 확인).

25)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정식공판에 이르기 전에 사건이 기각(Dismissed)되는 비율도 적지 아니하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기소가 판사에 의해 바로 기각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고, 특히 A급 경죄 및 경미 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취하를 전제로 하는 유죄 협상을 하기도 하므로 실질적으로 검사의 기소가 판사에 의해 직접 기각되는 비율은 낮을 것이다. Prosecutorial Performance Indicators, Reject or Dismiss? A Prosecutor's Dilemma (2022), 4면에는 판사가 사건을 기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 기각 결정은 증거 문제, 피해자 또는 증인의 협조 문제, 유죄 협상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https://prosecutorialperformanceindicators.org/wp-content/uploads/2022/07/PPI-Reject-Dismiss-Final.pdf 2026. 5. 20. 확인).

[연방지방법원 연방 부판사의 경미 범죄 사건 처리 결과]

Table M-2A.
U.S. District Courts—Petty Offense Defendants Disposed of by U.S. Magistrate Judges, by Disposition, During the 12-Month Period Ending September 30, 2024

Circuit and District	Total	Not Convicted			Convicted		
		Total	Dismissed Without Trial	After Trial	Total	Guilty Plea	After Trial
Total	39,047	16,991	16,899	92	22,056	21,858	198

III. 법관들 대상 형사재판 관련 설문조사 결과[26)]

1. 개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의 수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의 적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제 비교지표상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효율성의 이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형사재판이나 형사판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나 부담을 가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및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형사판결서 작성의 주체인 법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강도와 판결서 작성에 대한 인식 및 어려움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속 가능한 형사재판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6) 이 연구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설문조사의 대상, 조사기간, 배포방식, 응답 수나 그 밖에 본문에 기재하지 아니한 설문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2]에 수록하였다.

2.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가. 형사재판부 업무를 다른 사무분담과 비교할 때 업무량 및 업무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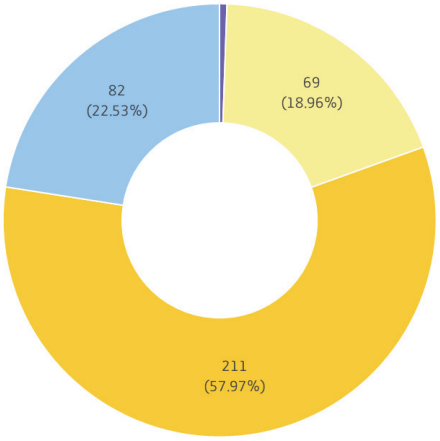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작다	0 (0.00%)
② 작다	2 (0.55%)
③ 보통이다	69 (18.96%)
④ 많다	211 (57.97%)
⑤ 매우 많다	82 (22.53%)
NA[27]	0

이 문항은 법관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느끼는 업무량 및 부담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80.5%에 해당하는 비율의 법관들이 형사재판부의 업무량 및 업무의 부담감이 다른 사무분담과 비교할 때 많다고 평가하였다.

그중 매우 많다고 지적한 사례도 22.53%에 달하였다. 그에 반하여 작다고 평가한 법관은 전체 인원 중 0.55%에 불과하였고, 매우 작다고 응답한 법관은 전혀 없었다.

이는 형사재판이 법관들 사이에서 법원의 여러 재판업무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라는 인식이 널리 존재함을 보여준다.

27) 당해 선택지에 대하여 별도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하 같다.

나. 형사재판부 업무 중 '형사판결서 작성'이 차지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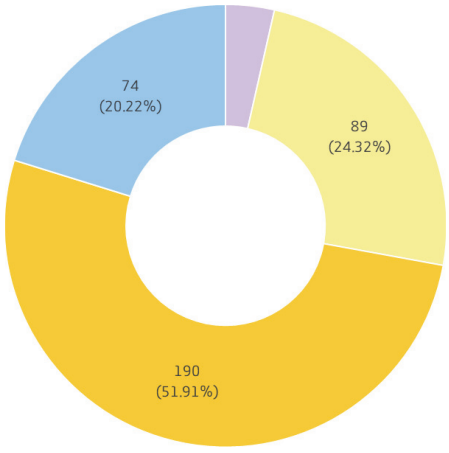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작다	0 (0.00%)
② 작다	13 (3.55%)
③ 보통이다	89 (24.32%)
④ 많다	190 (51.91%)
⑤ 매우 많다	74 (20.22%)
NA	0

형사재판에 있어, 형사판결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문이다. 많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합계가 70% 이상이고,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2%에 달한다. 그에 반하여 작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에 불과하고, 매우 작다고 응답한 법관은 전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관들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판결서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한 정도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귀하는 현재 재판 실무상 작성되는 형사판결서의 기재 길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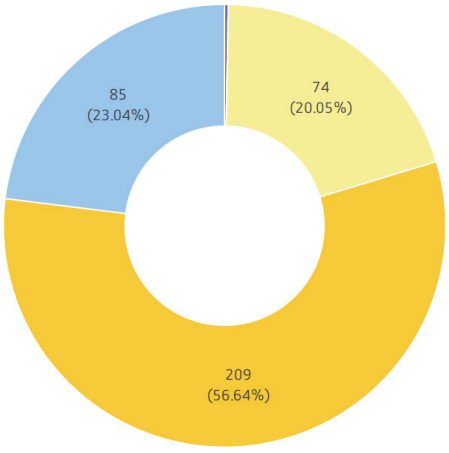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짧다	1 (0.27%)
② 짧다	0 (0.00%)
③ 보통이다	74 (20.05%)
④ 길다	209 (56.64%)
⑤ 매우 길다	85 (23.04%)
NA	1

형사재판에 있어, 실무상 작성되는 형사판결서의 기재 길이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문이다. 길거나 매우 길다고 응답한 합계가 79%이고, 짧다는 취지로 응답한 사례는 매우 짧다 1건(0.27%)에 불과하다.

이는 법관들이 현재 재판 실무상 작성되는 형사판결서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귀하는 형사판결서의 길이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선택)[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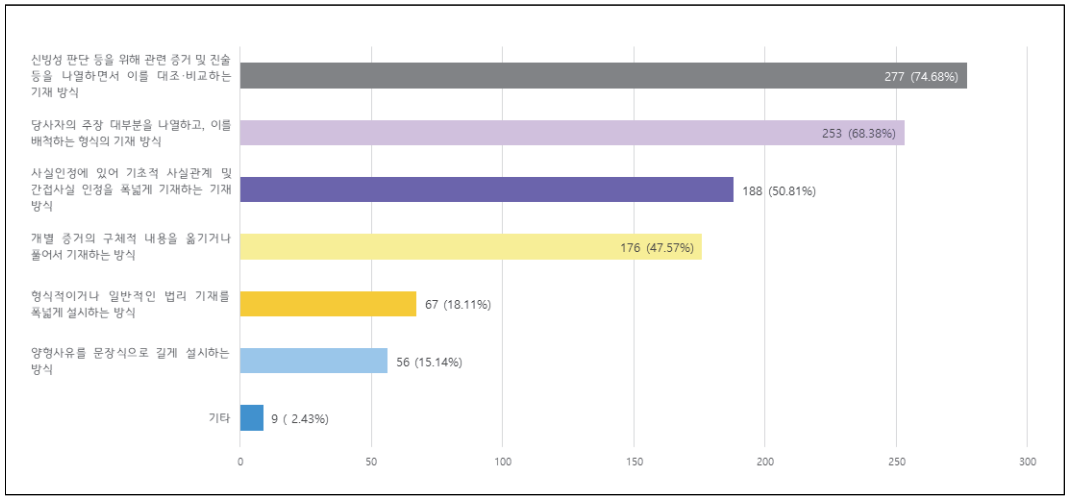

구분[29]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당사자의 주장 대부분을 나열하고, 이를 배척하는 형식의 기재 방식	253	68.38
개별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옮기거나 풀어서 기재하는 방식	176	47.57
신빙성 판단 등을 위해 관련 증거 및 진술 등을 나열하면서 이를 대조·비교하는 기재 방식	277	74.68
사실인정에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 및 간접사실인정을 폭넓게 기재하는 기재 방식	188	50.81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법리 기재를 폭넓게 설시하는 방식	67	18.11
양형사유를 문장식으로 길게 설시하는 방식	56	15.14
기타	9	2.43

28) 무응답은 1명이다.
29) 위 그래프는 다수 선택지 순서로 배열하였고, 이 부분 표는 설문지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이하 같다.

○ 기타 의견[30)]

- 재판장의 취향과 상급심의 눈치를 보며 불필요하게 길게 작성한다.
- 당사자의 모든 주장(중요성 불문)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상소의 여지를 주거나 상소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요인들이 다 현실에서 주된 원인인데,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바는 아니다. 형사 법관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게 된 것이 큰 이유이다.
- 방대한 주장 및 증거 제출에 대한 판단을 하다 보면 길어지는 것 같다.
- 방대한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모든 증거에 관한 증거능력을 망라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 기소 자체를 공소장에 장황하게 전제사실을 아주 길게 한다. 이에 대한 사실부터 다투다 보니, 민사처럼 사실관계 인정도 많이 하게 되고, 증거들의 신빙성 판단도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 가능한 예규에 기초하여 작성하지만, 그래도 피고인들, 변호인들, 피해자들, 피해액, 중요도와 다툼의 정도 등 사건의 양적, 질적 규모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 실무상 작성되는 부분 중 길이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다. 연구자가 제안한 여러 선택지 중 복수로 선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데, 복수응답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선택지는 신빙성 판단 등을 위해 관련 증거 및 진술을 나열하면서 이를 대조 · 비교하는 방식(74.68%)이다. 그 외에는 당사자의 주장 대부분을 나열하고, 이를 배척하는 형식의 기재 방식(68.38%), 사실인정에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 및 간접사실인정을 폭넓게 기재하는 기재 방식(50.81%), 개별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옮기거나 풀어서 기재하는 방식(47.57%) 순이었다. 일반적인 법리나 양형 사유에 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관들은 신빙성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증거 및 진술들을 나열하면서, 대조 및 분석하는 방식이나, 당사자의 주장 대부분을 열거하여 판단하는 실무상의 기재방식이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기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기재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결서에 옮기거나, 기초 사실 및 간접사실에

30) 각종 설문에서 제시된 기타 의견은 본문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않은 기재, 설문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기재, 다른 기타 의견과 중복된 기재, 비문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또는 수정하였다. 이하 다른 설문의 경우에도 같다.

대하여 폭넓게 기재하거나 판단하는 기재방식에 대하여도 형사판결서의 분량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소지가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일반적인 법리의 기재나, 양형 이유의 문장식 기재는 복수응답 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그 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인 법리 등은 분량을 떠나서 그 기재에 관한 부담감이 크지 않고, 양형 이유의 기재 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기재 수준이 불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설문조사 결과의 정리

법관들은 법원의 다른 사무분담과 비교할 때, 형사재판 업무의 부담이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형사판결서 작성은 형사재판부의 업무 부담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실무상 작성되는 판결서의 길이 자체도 길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실무상 작성되는 판결서에 불필요하거나 과잉 기재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관들은 다른 사무분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담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불필요하거나 과잉 기재되는 부분이 포함된 장문의 판결서 작성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문의 판결서 작성이라는 실무적 관행이 형사재판부의 부담이나 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개별 법관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이거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절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현재 사건처리의 적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제 비교지표상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판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인적 · 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인적 · 물적 자원의 확충이란 그 자체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법관의 선발 및 양성, 법정과 건물 등 물적 시설 확충과 같은 다양한 고려 요소가 필요하므로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공판 심리 중 증인신문 외의 심리는 대부분 짧게 운영되고, 많은 사건에 있어 법정에서의 각종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공방이나 서증 증거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31]을 고려할 때, 형사 공판심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현재보다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즉, 공판심리 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재판의 신속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공판심리 시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32]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을 높이면서, 공판심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다소 길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형사판결서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통하여, 현재 법원의 형사재판 업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사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유럽의 주요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을 비교하면 독일의 사건 대비 법관의 수가 많고, 형사판결서도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에 비교할 때 길고

31)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 94면.
32)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 9면.

복잡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제4장에서 별도로 살필 예정이나, 법관의 수가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 중 비교적 적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서가 상대적으로 간결한 형태로 작성되나,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분량이나 기재 사항, 기재되는 내용 등이 프랑스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각국 법관 규모는 법관 업무 중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판결서의 분량, 복잡성, 작성방식 등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외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수의 법관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의 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사판결서의 작성 분량이나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재판 구조 등이 사건처리의 효율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3)]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제 비교지표상 매우 우수한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설문결과와 같은 형사재판부 법관들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형사재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위험성이 있고, 상소율의 증가,[34)] 사건의 복잡화, 변호사 수의 급증, 법관의 고령화, 법조일원화의 도입 등의 각종 재판지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35)] 기존의 사건처리 능률을 더는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으로 작용할 염려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서 본 여러 위험에 의하여 사법역량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사법자원의 적정하고도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

33) 제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전체적으로 매우 간결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법관의 수에 부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34)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상소율은 합의사건 또는 단독사건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35) 위 요인들이 재판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38면-50면, 특히, 법조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48면-50면 참조.

제3장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변화과정

우리나라는 광복 후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형사소송법을 제정(이를 이하 '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하였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기재 방식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형사판결서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뚜렷한 변화가 없는 가운데,[36] 재판 실무상 다양한 작성방식들이 시도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어져 왔다.

형사판결서의 적정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아래에서 법관들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판결의 이유를 작성하였고, 판결 이유의 작성방식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판결 이유 기재 방식과 우리나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I. 형사소송법 등의 판결 이유 기재방식

[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36) 아래에서 소개하는 형사판결서의 이유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9조와 제323조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재판의 이유 명시

형사소송법 제38조는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제39조[37]에서 형사소송에 있어 재판의 이유 기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다. 즉,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그 예외로 규정하였다.

재판의 이유 기재 정도에 관하여는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하므로, 결국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 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38]

대법원은 판결이 아닌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37) 동일한 법률이 하나의 항목에서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재의 편의상 법률명을 기재하지 않고 조, 항만 기재하도록 한다. 이하 같다.

38)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고,[39]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40] 구속기간갱신결정[41]에도 같은 취지에서 그 이유를 간단히 밝히면 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의 대상인 판결이란 형사재판의 종국적인 결론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성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른 재판의 경우보다 그 이유의 기재가 충실할 것이 요구되고, 실체 판결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한편,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무죄판결의 경우 이유기재 정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42]

한편, 형사재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경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유죄판결의 이유

가. 개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죄판결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그 판결 이유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법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죄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담보하고 재판의 근거를 밝힘으로써 재판을 받는 자를 납득시키고, 나아가 소송관계자에게 상소 등의 불복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소심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43]

39) 대법원 1986. 9. 29. 자 86모34 결정.
40) 대법원 1996. 11. 14. 자 96모94 결정.
41) 대법원 1987. 2. 3. 자 86모57 결정.
4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43) 주석 형사소송법(II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714면(송민경).

나. 범죄될 사실

범죄될 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44] 이에 따라, 범죄될 사실에는 각 관계 법조에서 규정하는 특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목적범에서의 목적, 결과범에서의 결과 및 행위의 기수, 미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고의와 과실, 공모관계 등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도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한다.[45]

한편,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형의 가중 및 감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전과에 관한 사실 등은 범죄될 사실 자체는 아니나 실무상 범죄될 사실과 함께 기재되고 있다.

다.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3조 제1항은 형사판결서의 판결 이유에 증거재판주의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에 관하여 기재를 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를 명시함에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46]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47]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

---

4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4181 판결.
45)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26면.
4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4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이러한 기재 방식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서 간이화 사례집(1998)을 통해 판결서 간이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된 사례 외에도 해당 기재 방식을 사용하였던 사례가 다수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그러한 실무는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도 잘못이라 할 수 없다.[48] 또한, 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에서 거시하면 충분하고, 직접 · 간접으로 심증형성에 도움이 된 모든 증거를 거시할 필요는 없다. 제323조 제1항이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49]

한편, 실무상 범죄될 사실 외에 범죄될 사실과 함께 기재된 사실에 관한 인정 근거도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면서 함께 기재하고 있다.

라.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이란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체형벌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행위가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어떤 법령에 따라 처벌되는가를 명백히 나타내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발현이다.[50] 또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발현인 동시에 주문에 선고되는 형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 감면 등을 거쳐 처단형으로 형성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51] 따라서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52]

한편, 법령의 적용 단계에서는 주형 외에 부수처분 · 부가형의 법령상 근거도 나타내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하여 기재되는 것으로 제323조에 의한 것은 아니나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란에서 함께 기재하고 있다.[53]

마.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4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49)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47면.
50) 주석 형사소송법(III)(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725면(송민경).
51)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77면.
52)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도1477 전원합의체 판결.
53)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77면.

하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하는 것이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게 되고,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유죄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의 각 해당 부분에서 적절히 기재하게 되기 때문이다.[54] 다만, 이는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필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 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55]

한편, 유죄판결에 있어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법령에서 그 기재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기재가 없더라도 판결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에 따라 그에 반하는 주장이 배척된 취지가 드러나므로 앞서 본 법정 기재 사항 외에 주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심리 경과에 따라 특정한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56]

바.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재가 법률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상,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57]

한편, 2007. 1. 26. 법률 제8270호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었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 양형위원회에 의하여 현재까지 여러 유형의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 또는 변경되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 존중되어야 하나, 구체적 사건마다의 다양하고 특수한 사정을 모두 포섭하거나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형까지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58]

다만,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54)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229면.
55) 같은 책, 228면.
56) 피고인이 부재증명을 내세워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재증명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립될 뿐 아니라 공소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에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부재증명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109 판결.
57)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5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제81조의7 제2항). 이 경우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59]

한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양형의 이유를 기재할 것이 요구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그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양형을 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3.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

가. 개관

유죄 이외의 판결로는 무죄판결(형사소송법 제325조), 면소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각 호), 관할위반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19조)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본 형사소송법 제323조와 같이 명시될 이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하여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무죄판결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23조 제2항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법령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벌조항이 헌법 기타 상위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등을 말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를 뜻한다.[60]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란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와의

5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60)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240면.

관계상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 때를 의미한다.

무죄판결의 이유를 기재하는 때에는 실무상 무죄판결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무죄가 되는지를 기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와 후단에 의한 무죄는 구분되므로,[61] 공소사실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62]

다. 면소, 공소기각 및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

면소, 공소기각 및 관할위반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판결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후, 어떠한 사유로 각 근거 조문에 해당하는지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판결의 이유

국민참여재판도 국민참여재판법 제4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재판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1항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심원의 의견 기재 자체는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제49조 제2항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서에는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배심원의 평결을 판결서에 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는 평의에 관여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알게 될 뿐이므로, 그와 같은 평결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판결서에는 평결결과만을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양형에

6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42 판결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제325조 후단에 근거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자판을 하였다.
6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6341 판결.

관한 토의에는 판사도 참여하게 되므로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판결서에 개별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63]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판결서에는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이 특정한 평결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 판결서를 통하여 배심원의 평결 이유를 반박하는 형식을 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64]

II. 형사판결서 기재방식의 변화과정

1.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65] 형사판결서의 모습

아래의 형사판결은 대구고등법원이 1956. 5. 25. 선고[66]한 판결로,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 형사판결의 형태를 볼 수 있다.

---

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원행정처(2007), 95면.

64) 앞의 책, 95면-96면.

65)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 적용되었고, 해방 후 우리나라에도 일정 기간 의용되었던 일본제국의 구 형사소송법[대정(大正)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유죄판결의 이유와 관련하여 '유죄의 언도를 함에는 범죄가 되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법령의 적용을 제시해야 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사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사유가 되는 사실상의 주장이 있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무렵 조선에서의 형사판결서를 보면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시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는 형식의 판결서를 볼 수 있다(다만, 조선형사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제강점기 무렵 조선에서는 단독사건 등에서 증거에 관한 기재 전체가 생략되기도 하였고, 아래 전시형사특별법의 영향으로 보이나, 증거관계가 간이하게 기재된 사례들도 보인다).
우리의 제정 형사소송법은 일본제국의 구 형사소송법 중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부분을 '증거의 요지'로 변경하여 증거에 관한 사항을 일본제국의 구 형사소송법보다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일본제국의 구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한편, 일본제국의 경우 각종 전쟁을 거치면서 제정된 전시형사특별법에 따라 증거의 표목을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등 간이한 형태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고, 전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이유의 설명'을 '증거의 표목'으로 변경하는 등 증거에 관한 설시를 간이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제국의 구 형사소송법 원문은 https://dl.ndl.go.jp/pid/2955042/1/1 (일본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2026. 3. 3. 확인).
일본제국의 전시형사특별법 원문은 https://dl.ndl.go.jp/pid/2961038/1/2 (일본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2026. 3. 3. 확인).
일제강점기 무렵의 제1심 형사판결서(일본어 원문)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웹사이트[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2026. 3. 3. 확인)]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다.

66) 당시에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하는 단기(檀紀)를 사용하였다.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 형사판결][67]

대구고등법원 4289. 5. 25. 선고 4288형공837의2, 4289형공2 판결 중 관련 부분

주문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한다.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단기 4281년 10월경 육군 제2사단 제5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동 4284년 7월 15일 명예제대되어 가사에 종사하다가 동 4286년 10월 초순경 부산시 창선동 소재 ○○○상사에 취직근무타가 동 4287년 8월경 그를 사직한 자로서 그간 단기 4286년 4월경 당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만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형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 동 4287년 12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고 복역중 동 4288년 2월 7일 고혈압 및 협심증으로 인하여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출옥한 자인바, 단기 4286년 12월 16일 경상남도에서 자동차 보통운전면허를 받았던바, 동 4288년 9월 24일 오후 7시 35분경 부산시 남천동 (번지 생략)공소외 1 소유 자가용 집차에 공소외 2 외 1명을 승차시켜 동시 우동 소재 동래경찰서 수영비행장출장소 전로상에서부터 해운대를 향하여 시속 약 40리 속도로 운전하여 동일 오후 7시 40분경에 해운대로부터 약 2천상거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동 (명칭 생략)보육원 원장 공소외 3의 차남 공소외 4(당시 11세)와 동 원아 공소외 5(당시 16세)외 2명등이 수차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 이러한 경우에는 속도를 느리거나 또는 급정차 할 수 있도록 사고의 미연방지에 세심한 주의로써 만전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우연히 계속 운전함으로써 우 수차 좌측 중앙부에 충돌하여 우 공소외 4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하여 즉사케 하고 동시에 우 공소외 5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인한 치료에 약 2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중 사인 및 상해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외의 사실은,

1. 당공정에서의 상피고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공소외 2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부분

67) 이하에서 소개하는 국내 판례는 원칙적으로 참조한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원문 데이터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하되, 명백한 오기 또는 편집상의 오류나 비실명화 관련 부분만 일부 수정한다.

1.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부분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조응하는 기재내용
1. 부산지방검찰청 서기관 공소외 12 작성의 전과조서의 기재내용
1. 압수한 수차 차량 1개(증 제1호), 동 차체 1개(증 제2호), 동 차인수 2개(증 제3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인의 점은 의사 공소외 13 작성의 사체검안서중 판시 공소외 4의 사인에 조응하는 기재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판시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적십자병원 등록과장 A. 맘 그린 작성의 입원진단서중 판시 공소외 5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조응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으로 판시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는 각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이는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거하여 공소외 4에 대한 중과실로 인한 치사죄의 형에 의하여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 것인즉 이와 취지를 같이 한 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를 기각하고,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우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여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라는 점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인이 우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4의 사체를 방치하였음은 본건 기록상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바, 사체유기죄가 됨에는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하는 바 피고인은 전시 공소외 4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몰랐고 또 동 사체를 현재의 장소로부터 이전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는 사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여 죄가 아니됨으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차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控訴)[68]에 따른 판결이기는 하나 제정 형사소송법 제364

68) 현재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항소에 대응하는 단어로, 항소와 유사한 의미이다.

조 제1항은 '전2조[69]의 경우 외에는 공소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70]과 달리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소(控訴)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하였다.[71]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임에도 그 이유는 제1심 형사판결서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 판결은 유죄와 무죄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유죄 판결에 관한 이유는 별도로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기재가 되어 있다.

증거의 요지 부분은 그 증명의 대상인 판시 사실[72]을 사인(死因)의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그 외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관계의 기재는 증거의 표제와 존재 형식을 기재하면서 그것이 판시 사실에 부합한다는 개괄적인 기재만을 하였다. 앞서 구분한 사인 부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면서 관련 증거를 따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다.[73] 다만, 구체적으로 기재된 해당 증거에 의하여 어떻게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는 범죄사실이 어떠한 형벌 법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기재한 후 선고형 및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74]을 정할 때까지, 적용될 법령과 그에 따른 적용 결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적용 순서에 따라 기재하면서 적용할 법령에 따라 정해진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에 기재할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고 있으나, 양형의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해당 사건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그 전제되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사체의 방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체

69) 공소(控訴)기각 결정(현행 형사소송법의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이다.
70) 현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1) 항소심이 항소이유를 토대로 심리하는 형태는 1961. 9. 1. 법률 제705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확립되었다.
72) 판결에 표시된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서에서는 실무상 범죄사실을 인용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73) 한편, 그 기재 순서는 인증, 서증, 증거물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고, 서증의 경우 법원이 작성한 서증을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증보다 앞서 기재하고 있다.
74) 현행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형에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그 기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결구금일수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유기죄 구성요건의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 제1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

가.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형사판결서의 모습

(1) 형사합의 판결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형사판결 중 형사합의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과 유사하게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작성하고, 법령의 적용 부분을 문장으로 작성하면서 포섭하는 형태로 판결을 작성하였다.

아래 판결은 그 내용이나 항소심 심리 경과에 비추어[75]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 및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은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증거의 요지에서는 각 증거들을 기재하면서, 그것이 판시 사실에 부합한다거나, 일부 부합한다고 개괄적으로 증거와 범죄사실과의 관계를 기재하고,[76] 증거의 표제 및 존재 형식을 기재하면서, 전과 및 상습성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도 문장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에서 범죄사실이 어떠한 형사 실체법에 해당하는지 기재한 후, 형을 선택하고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지를 기재한 후, 그 범위에서 선고형까지 도출하고 있다. 한편, 양형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7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73. 4. 19. 선고 72노1695 판결)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76) 이러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는지 여부는 증거의 요지에 있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관련 내용의 존부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이는 중요한 증거로 실무상 거의 빠짐없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또는 공판조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가 없거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형사합의 사건의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 11. 28. 선고 72고합88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부분 생략〉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중 전과 및 상습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 동 ○○○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고, 판시 전과는 피고인의 자백 및 내무부 치안국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지문조회통보서 기재에 의하여 상습의 점은 피고인의 범죄를 반복 누행한 사적 및 전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가,나,항 기재의 각 공갈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형법제350조 1항에, 다항기재 재물손괴의 점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1항. 형법제366조 에 각 해당하므로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제38조 1항 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가항기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형사단독 판결의 경우

그 무렵 형사단독 판결들 중에는 형사합의 판결들과 유사한 작성방식으로 기재된 사례가 보인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의 적용 부분을 문장으로 기재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시작으로 적용될 법령을 순차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 이유 및 적용 결과 등의 기재를 대부분 생략하는 판결들도 다수 보이는바, 형사단독 판결에서는 전통적인 문장식 기재 방법과 비교할 때,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는 실무가 널리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을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기재한 형사단독 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12. 28. 선고 83고단6498, 84고단563, 84고단6161 판결 중 해당 부분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제107조, 제8조(징역형선택) 형법제231조, 제329조, 변호사법제78조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선택),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7조, 변호사법제82조

[복수의 피고인이 복수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법령을 피고인별로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기재한 형사단독 판결]

춘천지방법원 1977. 4. 6. 선고 76고단646, 76고단914(병합) 판결 중 해당 부분

【적용법조】
(1)(2) 각, 형법제123조(징역6월 및 자격정지1년), 형법제30조, 제59조(각 장기간 모범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초범, 범행의 동기참작, 개전의정 현저).
(3) 형법제227조, 제229조, 제129조 제1항(징역형선택).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57조. 제62조(초범, 개전의정 현저). 제134조.
(4) 변호사법제54조. 형법제57조. 제62조(초범, 개전의정 현저). 변호사법 제56조.
(5) 변호사법제54조. 형법제133조 제1항(징역형선택).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62조(범행의동기 참작, 개전의정 현저. 피해회복). 변호사법제56조.

(3) 개별적 검토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장

유죄판결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장인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 및 심신미약 등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77]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이나 항목을 두어 이를 배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신상실 또는 미약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항목을 두어 배척하는 판단을 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 7. 13. 선고 82고합454, 82감고106 판결 중 해당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뜻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때의 언행으로 미루어 볼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항목을 두어 배척하는 판단을 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 7. 20. 선고 81고합481 판결 중 해당 부분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등 구타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번 떠민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역지하도내에서 잠자리를 찾던중 자리관계로 피해자 ○○○와 시비가 벌어지던중 이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것으로 이러한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7) 다만,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더 이상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 주장이 아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도2607 판결 등 참조).

(나) 소송조건 등에 관련한 주장

공소기각 사유인 친고죄에서 고소의 존부 등에 관한 주장이나 면소사유인 공소시효 완성 등에 관한 주장과 같이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그 주장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두어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보인다.

[공소기각 사유인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판결 중 해당 부분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친고죄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1과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공소외 5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월이 경과하여 고소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 5 작성의 각 고소장(수사기록 3정, 80정), 울산시 여천동장 작성의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7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83. 7. 30.이며 피해자 공소외 1의 부인 법정대리인 공소외 5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날은 1983. 7. 23.이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같은 해 8.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고소권이 상실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5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5. 31. 선고 76고합1117 판결 중 해당 부분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첫째 판시제1의(1)의(가)내지(사)사실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제9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적법한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인 ○○○는 동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벌금을 납부한바 있음으로 위 판시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할 것이며, 둘째 판시제1의(4)의(가) 제1의(5)의(가), 기재 판시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면소의 판결을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인 ○○○의 위 통고처분의 이행을 과연 유효하다고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략) 결국 유효한 통고처분 및 동 통고의 이행을 전제로한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내지 면소판결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공소시효완성에 따라 면소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중략)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 밖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관련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을 제외한 당사자의 사실상, 법률상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 판단을 별도로 판결서에 기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의 적용을 문장식으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판단을 포함하여 기재한 사례,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거나, 일부 부합한다는 취지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무적으로는 그 주장에 대하여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정의 기재 사항인 법령의 적용 및 증거의 요지의 기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판결서를 작성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항을 두어 상세한 판단을 기재한 소수의 사례도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을 문장식으로 기재하면서 법률상 판단을 기재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1984. 2. 7. 선고 83고합929, 1127, 1201 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피고인 1의 판시 제2, 판시 제6의 소위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소위는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 제5의 소위는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에, 피고인 3의 판시 제3의 소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피고인 4의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나 피고인 2의 판시 각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에 관하여 동 피고인에게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으로서 업무상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동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고, (이하 생략)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6. 12. 선고 68고합7344 판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

【증거의 요지】

위 판시 사실은

1. 제2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증언사실 시인 부분 및 농지소표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 및 경작자별 일람표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및 농림부에 15년간 근무하였으며 농지관계에 대한 국가 소송 수행자로서 10년간 근무하였으며 농지관계에 대한 국가 소송 수행자로서 10년간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부분[78]

1. 2차 공판조서중 증인 ○○○의 본건 군용지가 분배 안된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농지소표의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 및 영등포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국유농지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3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증인 신문조서에는 본건은 잘 모른다라는 증언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

4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위 국유농지조사 보고서를 보고서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정도라는 취지의 진술 및 증인신문조서의 기록정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제5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허위공술임을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각 기재 부분

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서기관 ○○○ 작성의 각 등기부등본및 법원서기 ○○○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심문조서 등본2통의 각 기재내용

1. 압수된 농지소표 2권(증제1호) 상환대장 4권(증제2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별도로 피고인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1988. 3. 30. 선고 87고단194 판결 중 해당 부분

(피고인 ○○○의 변소에 대한 판단)

동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있어 그 주된 근거로서 1985.1.10.자의 400만원짜리 영수증(수사기록 108장)이 ○○○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간동면에 대한 총 공사금32,573,000원중 당초 화천군에서 방천리에 대해 배정된 공사금 4,937,000원을 공제한 27,636,000원중 금27,543,000원(=84.12.12.의 10,000,000원 + 84.12.24.의 3,053,000원 + 84.12.27.의 7,200,000원 + 84.12.29.의 2,290,000원 + 85.12.6.의 5,000,000원)이 지급된 것이니 위 금5,000,000원은 동 피고인이 당연히 받을 돈이어서 동 피고인이 ○○○을 공갈해서 받아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동 피고인의 주장처럼 ○○○의 요청에 따라 금1천만원짜리 영수증(동 104장)과 위 400만원짜리 영수증이 동시에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그 자질, 필체, 도장의 인영, ○○○의 증언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① 동피고인과 같은 사업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말만 듣고 백지2장에 아무런 표시없이 인장을 날인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심히 어긋나고, 특히 ○○○도 아닌 동 피고인 스스로 제의하여 혹시 망가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한 장 더 찍어 주었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동 112장 중단) (이하 생략)

(라) 양형의 이유

사건의 종류나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다수의 판결서에서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이 중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령의 적용 내의 형의 선택란에서 무거운 형을 선택한 이유로서 양형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들이 일부 보인다. 비교적 소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별도로 항을 두어 설시한 사례도 있다.

78) 중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례 데이터베이스의 원문을 기재한다.

한편, 작량감경[79]을 하거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참작한 정상을 해당 항목에서 간략히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을 선택한 이유 등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6. 20. 선고 84고합34 판결(법령의 적용 중 해당 부분)

피고인 ○○○의 판시 각 잠입, 탈출 및 간첩의 점에 관한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소정형 중 사형을 각 선택하고 같은 피고인의 판시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노의 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 처단할 것이므로 (중략)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고 (이하 생략)

[강도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면서도 형을 선택한 이유 등을 설시하지 않고, 다만, 작량감경 대상인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별도로 기재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 6. 22. 선고 90고합78 판결(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판시 강도살인죄에 관하여는 위 소정형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사형을, 피고인 ○○○, ○○○, ○○○, ○○○, ○○○에 대하여는 각 무기징역형을,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중 피고인 ○○○, ○○○, ○○○, ○○○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은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판시 강도살인죄는 제외), 피고인 ○○○, ○○○, ○○○, ○○○, ○○○, ○○○외의 각 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하고 각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 ○○○은 판시 강도살인죄의 범행에 가담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를 사형에, 피고인 ○○○, ○○○, ○○○을 각 무기징역에, 피

79) 현행 형법 제53조는 같은 취지의 '정상참작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고인 ○○○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각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45일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강도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 중 형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형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1989. 6. 29. 선고 89고합88 판결(법령의 적용 중 해당 부분)

피고인 ○○○의 판시 소위중 강도살인의 점은 형법 제338조, 제30조에, 상습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에, 상습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 2항에, 각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제 30조에, 각 감금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은 특수절도죄외 특수강도의 범죄전력이 2회나 있고 이사건 범행도 누범기간중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나이 15세경부터 위특수강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들도 먼저 강도와 승용차절도를 3회나 범한 후 강도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또 다시 절도, 강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도상해죄등을 범하였으며, 이사건 범행들의 수단, 방법, 범행후 정황, 동기도 먼저 이사건 범행중 강도살인죄에 대하여서 보면 피해자 가슴을 칼로 찌른 다음 전화줄을 절단하여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를 묶고 수건으로 그 입을 막은 다음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강취하는등 그 수단, 방법, 범행후 정황이 인간성 상실의 극치의 정도에 이르고 그 밖의 강도상해죄나 강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수단방법도 피해자들을 칼이나 도끼나 쇠파이프등으로 찌르고 때리는등 잔인하기 이를대 없고 이사건 범행들에 이른 동기도 단순히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정의 여지도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결과는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귀중한 한 주부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외에 피고인이 휘두른 도끼나 쇠파이프등에 많은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한편 이사건 범행들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어떤 정신적 위로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의 일반인을 보호하려는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만 개선불가능한 피고인 자신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예방적 견지에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판시 각 죄의 소정형중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는 사형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 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을 사형에 처한다.

[살인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면서 양형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형을 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0. 5. 11. 선고 89고합334, 89고합311(병합), 90고합5(병합), 90고합6(병합), 90고합8(병합), 90고합25(병합), 90고합47(병합), 90고합50(병합), 90고합51(병합), 90고합55(병합), 90고합74(병합) 판결 중 해당 부분

2. 양형조건

피고인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림, 같은 ○○○, 같은 ○○○등은 대부분 폭력전과 내지 전력이 있는 자들로서, 사람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으면서 손도끼, 생선회칼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울산시내에서 사람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대로상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공격하여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커다란 불안감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 같은 ○○○는 위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전의 모의 과정과 범행시 및 도피과정등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은 자신이 소지한 흉기를 스스로 준비하고 또한 위 범행당시 피해자 3명을 모두 공격하였고, 피고인 ○○○은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위 살인당시의 범행이외에 또다른 범행이 2회나 있으므로 위 살인범행에 단순가담한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며, 피고인 ○○○은 폭력전과가 여러차례 있는데다가 판시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바와같이 폭력집단의 행동대장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기록전체에 비추어 볼때 울산시내의 폭력배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 ○○○는 판시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 범행이 비교적 가볍게 보이기는 하나 그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피고인들을 지칭하는 울산시내의 폭력배들인 이른바 목공파에서 가장 선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며, 피고인 ○○○, 같은 ○○○, 같은 ○○○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숙을 하지 아니하고 구치감내에서 다른 피의자를 폭행함으로써 구치감내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는 바, 이상의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앞서 든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처단형등
이상의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 같은 ○○○를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을 징역15년에, 피고인 ○○○, 같은 ○○○, 같은 ○○○, 같은 ○○○, 같은 ○○○를 각 징역 10년에, 피고인 ○○○를 징역 7년에, 피고인 ○○○, 같은 ○○○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 같은 ○○○, 같은 ○○○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2년에, 피고인 ○○○를 징역1년6월에, 피고인 ○○○, 같은 ○○○ 같은 ○○○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이하 생략)

(마) 무죄판결의 이유

무죄판결의 이유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실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상의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전부 나열하면서 각각의 증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증명력이 부족한지 설명하는 등으로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형태로 판결이 작성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증거분리제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검사가 공소제기 무렵 수사기록 전체를 일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증거분리제출제도가 시행된 후인 현재의 실무에 의할 경우, 증거 채택 과정에서 이미 배척되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서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기재되었다.

[관련 증거를 전부 나열한 후 각각의 증거 모두를 개별적으로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무죄 판결 이유의 기재 사례]

마산지방법원 1986. 11. 13. 선고 86고합184 판결의 해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생략)
2.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이 법정에 제출된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수사기록 제31면)에 대한 각 진술조서 나.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략)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라.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마. 증인 공소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시체해부소견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부검조서,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소외 10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작성의 감정서, 공소외 12 작성의 질의사항 회보(수사기록 제160면 및 제225면) 바. 압수물인 증 제1호 내지 증 제12호 사.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13, 공소외 15, 공소외 1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작성의 각 확인서,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경장 공소외 23 작성의 수사보고서, 감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소외 10과 공소외 24, 공소외 25 작성의 감정서(수사기록 제211면), 같은 연구소 감정의 공소외 26 작성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서(수사기록 제213면), 같은 연구소 공소외 10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작성의 감정서(수사기록 제224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수사기록 제31면)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해자와 공소외 1 사이에 불륜의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문제로 다투던중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듯하나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나. 사법경찰리 및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와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와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동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외침소리를 듣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가 누워 신음하고 있어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하며, (이하 생략)

[무죄판결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배척 취지를 판결서에 기재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1987. 8. 18. 선고 87고단383 판결 중 해당 부분

우선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이하 생략)

(4) 1990년대 초반까지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의 제1심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유죄판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기재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주류적인 기재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거관계, 법령 및 양형과 관련하여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부분의 관련성 있는 부분에 녹여내는 형식으로 판결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무적 경향은 유죄의 형사판결서에 명시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의 요구사항과 형식에 가급적 부합하는 취지로 판결서를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그 기재사항이 법정되지 아니한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나열하면서 증거들을 배척하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이 유죄판결서에 명시할 사항을 법으로 정해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재판의 근거를 뚜렷하게 밝히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판결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로도 활용되었다 볼 수 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형사판결서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건에 집중하도록 하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중심으로 판결서의 완결성을 추구함으로써 과도한 정보의 나열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서를 정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압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소수의 법관으로 대량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적 경향은 당시 형사공판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80] 우리의 형사사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할 것이다.

---

80) 1985년 사법연감 359면에 기재된 80년대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1980년 0.52%, 1981년 0.57%, 1982년 0.56%, 1983년 0.55%, 1984년 0.53%로,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25년 사법연감 887면에 기재된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2024년 기준 무죄율인 3.1%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1991년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의 시행

(1) 개요

1990. 9. 17. 법관 세미나에서 토의된 사항들이 대법원 예규의 형태로 정리되면서, 1991. 2. 7. 대법원 재판예규 제316호로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이 제정되었다(아래에서는 이를 '1991년 예규'라 한다).[81] 1991년 예규는 민사 판결서 및 형사 판결서 모두에 관하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판결서 작성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예규 내에서 구체적인 작성의 예시를 포함하였다.

(2) 1991년 예규 중 형사판결서 관련 내용

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의 목적과 방향

가. 판결서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나. 판결서에는 형식적 기재, 중복기재, 무익한 기재 등을 생략하여 그 기재에 들던 시간과 노력을 변론의 충실과 심리의 촉진에 경주한다.

3.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가. 증거의 거시

(1)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증인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를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동일인에 대한 동일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가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인에 대한 조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증명력이 제일 높은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피고인이 자백한 때의 보강증거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법령의 적용

81) 이재홍,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결서 작성방식과 그 개선과정", 법조 통권 492호(1997), 168면.

법령의 적용은 적용법조를 나열식으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용순서와 적용이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68조, 제40조(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2호, 제41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8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 운전의 죄와 주취운전의 죄,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한함)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5.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초범, 피해변상, 범행경미, 개전의 정)

다.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무죄판결의 이유설시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때에는 배척한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배척하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는 그 배척이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예시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예시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이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홍갑동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홍을동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 사건의 쟁점인 경우나 양형이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이유를 판결서상의 적절한 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3) 1991년 예규 시행 무렵의 형사판결서 변화

(가) 증거의 요지

1991년 예규는 증거의 요지 기재방식과 관련하여, 중복증거의 서술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확실한 보강증거 하나만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존의 판결서 기재방식은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서와 같은 취지의 증인 법정 증언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가 함께 증거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1년 예규 제정 후 수용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이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조서나 증인의 진술조서 등을 판결서에 원용하지 않는 사례가 1991년 예규 제정 무렵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는 특히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조서를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는 실무가 전반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핵심적인 증거 1개만을 보강증거로 기재하는 원칙은 실무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종래의 자백 사건에서도 범죄와 관련성 있는 증거를 대부분 나열하는 실무의 태도가 핵심적인 보강증거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실무로 변화한 측면은 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한 형사단독 사건에서 증거의 요지를 1개의 핵심 보강증거만을 기재하는 등으로 간이하게 기재한 사례]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8. 선고 92고단2770 판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 작성의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나) 법령의 적용

1991년 예규가 시행될 무렵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법령의 적용 기재방식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합의부에서는 법령의 적용을 문장식으로 길게 기재하는 경우가 다수의 실무였으나, 위 예규 시행 무렵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에 있어 예규가 규정한 나열식 기재방식은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단독 재판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목 없이 법령을 순차적으로 단순히 나열한 기재방식도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1991년 예규 시행 무렵부터는 예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여 법령을 나열하는 방식의 형사판결서가 작성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1년 예규가 규정한 나열식 기재방식으로의 변화는 재판부 전반에 있어 받아들여지게 되어 현재에는 확고한 법령의 적용 기재방식이 되었다.

[합의부에서 법령의 적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2. 11. 선고 92고합305 판결 중 법령의 적용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피고인들의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 ○○○의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같은 ○○○의 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의 흉기휴대 상해죄와 살인죄, 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 같은 ○○○의 흉기휴대 상해죄와 상해치사죄, 형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 같은 ○○○에 대하여 피해자 ○○○와 합의하였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다) 무죄판결의 이유

1991년 예규에는 무죄판결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례까지 예규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1년 예규에서 정한 기재방식은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합의부 판결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과 같이 개별 증거의 내용을 밝히면서 증거의 증명력 등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기재방식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전까지의 주류적인 실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의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1991년 예규는 1990년대부터 유죄판결에 있어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기재 하거나,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실무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실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와 별개로 여전히 다수의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실무와 같이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양형의 이유도 대부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1998년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의 시행

(1) 개요

1998. 8. 20. 대법원은 재판예규로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을 제정하였다(이하 '1998년 예규'라 한다). 이는 1991년 예규와 마찬가지로 민사판결서와 형사판결서 모두에 걸쳐 적용된 예규로, 판결서를 간이하게 작성함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심리의 충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기존의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판결서의 간이화라는 방향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보이고, 참고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꾀하였다.

(2) 1998년 예규 중 형사판결서 관련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권장사항은 판결서를 간이하게 작성함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심리의 충실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일반사항)

① 판결서는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형식적 기재 · 중복기재 · 무익한 기재등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② 판결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상급심에서 인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번호와 제목을 적절히 붙여 작성한다.

③ 숫자는 아랍어 숫자로 쓰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혼용할 수 있다.

④ ㎞ · ㎡ · ㎏ · % 등의 단위는 부호 그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어 표기할 수 있다.

제3장 형사 판결서

제17조 (증거의 거시)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인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는 거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가 2개 이상 있고 그 내용과 취지가 같거나 비슷할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인에 대한 조서의 내용이 같거나 비슷할 때에는 그 중 증명력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피고인이 자백한 때의 보강증거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만을 거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이 사건의 쟁점인 경우 또는 양형 이유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를 판결 이유의 적절한 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제19조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은 관계조문을 적용순서에 따라 나열식으로 기재하되 적용이유와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무죄판결)

무죄판결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는, 탄핵증거 · 반증 · 경험칙 등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이에 비추어 배척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배척하는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시할 수 있다.

(3) 형사판결서 관련 예규의 주요 변경 사항

기본적인 골자는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에 기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변화가 있었다.

(가)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열식 기재를 권장하면서 적용이유와 결과를 간략히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형사 단독사건에 있어 적용이유와 결과의 기재를 생략하는 실무가 활용되고 있었는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독사건에서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무죄판결의 이유

1991년 예규에서는 구체적인 작성 예시까지 예규에 규정하면서, 새로운 무죄판결의 작성방식을 제시하였으나, 1991년 예규 제정 이후에도 그 예시와 같은 수준으로 간이화된 무죄판결 작성방식은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예규는 1991년 예규와 규정 형식을 달리하여, 무죄판결의 경우 배척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배척하는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시할 수 있게 하여, 원칙-예외 형식으로 무죄판결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유 기재의 정도를 달리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1991년 예규와 달리 예규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예규의 규범력을 높이고, 장기 실형이 예상되지 않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유 기재를 간이화하려

는 취지로 보인다.

(다) 증거의 요지,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991년 예규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4) 1998년 예규 시행 무렵의 형사판결서 변화

(가) 법령의 적용

나열식 법령의 적용 기재방식 도입 이전부터 단독사건을 중심으로 적용 이유와 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기재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는데, 1998년 예규의 시행으로 그러한 실무상 기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실무상 기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적용 순서를 고려하여 제목을 달아 적용 법령만을 기재하고, 적용이유와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 기재방식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죄명이 있는 사건에서 적용이유와 결과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 사례][8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8. 4. 선고 98고단5903, 99고단16(병합), 99고단17(병합), 99고단1928(병합), 99고단2604(병합) 판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의 판시 제1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 ○○○)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피고인 ○○○, ○○○)

형법 62조 제1항 6. 몰수(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7. 추징(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무죄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간이한 기재방식을 규정한 1991년 예규와 달리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별하여 이유 기재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여전히 무죄의 이유를 간이화하고자 하는 해당 예규는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특히 주요 증거 배척의 이유를 전면적으로 생략하거나, 간이화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규에서 규정한 장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재판부에서는 무죄판결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판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양형의 이유 및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998년 예규가 시행될 무렵에도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의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는 실무는 드물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부터 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실무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말부터는 그러한 기재방식이 주류적으로 활용되었다.

라. 2014년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의 제정

(1) 개요

2014년 대법원은 재판예규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이하 '적

82) 현재의 실무와 달리 형의 선택 부분도 기재를 생략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문과 대조하면 판결서에서 어떠한 형을 선택하였는지 분명한 경우에 형의 선택에 관한 기재도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형사판결서에서 형의 선택 부분 기재를 누락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089 판결), 형의 선택과 관련한 기재를 전면적으로 생략하는 방식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화 예규'라 한다)를 제정하였다.

적정화 예규는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확산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판단을 하는 실무가 형사재판부 전반에 자리 잡고, 양형기준의 시행에 따라 양형의 이유 기재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방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생겨날 무렵,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예규의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제1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다른 예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3조 (일반사항)

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은 판결서가 아닌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한다.

② 판결서는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제2장 유죄의 판결

제4조 (범죄사실)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시)

범 죄 사 실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제5조 (증거의 요지)

① 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증명력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증거의 요지와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표목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예시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모발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통보(증인 갑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모발 채취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

(예시2) 신빙성에 대한 판단(특별히 기재가 필요한 경우) - 증거의 표목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갑의 법정진술(범행시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예시3) 신빙성에 대한 판단(특별히 기재가 필요한 경우) - 증거의 요지 하단에 주장 및 판단을 간략히 부기하는 방법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 염OO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캡쳐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김OO, 염OO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제6조 (법령의 적용)

① 법령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령의 적용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② 법령의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적용법조 옆에 판단을 부기하거나, 법령의 적용 하단 부분에 판단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을 기재하

지 아니한다.

(예시1)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며 폭처법 적용의 배제를 주장한 경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자동차와 충돌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

(예시2) 피고인이 몰수의 대상 여부를 다툰 경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판시 컴퓨터 본체 1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뿐 아니라 북한 노동신문의 문건 등을 갑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제7조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형사소송법 제323조 각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판단이 필요한 쟁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목을 붙여 그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거나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을 전부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의 결과는 분명하게 기재하되, 판단의 이유는 주된 근거를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한다.
3. 판단을 기재하면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의 이유 및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한다.
4.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다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양형의 이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제3장 무죄의 판결

제9조 (무죄의 이유)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그 표목과 취지를 소개한 후 그 배척에 필요한 반대증거나 정황의 주된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② 부수적인 유죄 증거의 배척이유, 당사자의 진술의 변동과정,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한다.

(3) 예규 제정 무렵의 상황

200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사법부 내에서 주된 논의 대상이 되었다.[83] 그 무렵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84]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85]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던 형사재판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형사소송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부터 형사판결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형사합의 재판부를 중심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양형이유도 별도의 항목을 두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실무례가 형성되어 갔고, 적정화 예규가 제정될 무렵에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포함한 다수의 재판부에 그와 같은 실무 관행이 퍼

83)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235& (법원행정처의 2003. 3.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에 관한 보도자료, 2026. 4. 7. 확인).

84)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요구되었다.

85)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등이 제정되었다.

지게 되었다. 또한, 이와 맞물려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실무례도 함께 형성되어 갔고,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양형기준의 시행(2009. 7. 1.)으로 양형 이유 기재 사항에 양형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과 종래의 문장식 양형 이유가 병기되면서 양형의 이유 관련 기재도 더욱 늘어갔다.

한편, 무죄판결의 경우, 1991년 예규부터 여러 간이화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종래와 같이 공소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들을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실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고, 형사판결서의 분량 자체도 기존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1991년 예규 및 1998년 예규는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를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실무가 주류적인 때 제정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단순한 기재 근거만을 두었을 뿐이어서, 앞서 본 변화하는 실무와 관련해서는 작성방식에 관한 예규가 없었다. 또한, 그 무렵 각종 간결한 기재방식에 관한 사례집 등이 몇 차례 발간되었으나,[86] 실무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에 관한 기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정화 예규가 제정되었다.

(4) 적정화 예규의 주요 규정 사항

(가) 범죄사실 기재방식 관련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를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기재방식 관련

종래의 실무는 증거의 표제, 증거의 존재 형식(진술, 진술기재, 기재, 영상 등),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에 들어맞는, ~에 부합하는 진술)를 모두 기재하였으나, 적정화 예규 제정 무렵에는 형사단독 재판부를 중심으로 증거의 표제만을 기재하는 실무가 활용되고 있었다. 적정화 예규에서는 증거의 요지 기재방식에 관하여, 예시를 통하

86) 법원행정처, 무죄판결 간이화 사례집(2007); 법원도서관, 간결한 판결 사례집 -형사- (2010) 등이 있다.

여 증거의 표제와 존재 형식만을 기재하고, 일부만 부합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일부'라는 기재를 덧붙이는 방식을 예시로 제시하는 등으로 간이화된 기재방식을 제시하였다.

(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방식 관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의 제목 아래에서는 일괄하여 이를 기재하던 실무와 관련하여, 증거관계 및 법령의 적용과 관련한 쟁점은 주된 쟁점에 관하여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해당 부분에서 간결하게 이를 배척하는 작성방식을 규정하였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평가 및 사실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주된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경우 판단의 방식을 기재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라) 양형의 이유 기재방식 관련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벗어나거나, 공동피고인들 간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를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양형의 이유를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하였다.

(마) 무죄의 이유 관련

무죄의 이유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증거에 대해서 그 배척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그 밖의 증거들 및 무죄판결에 있어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당사자 진술의 변동과정 및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탄핵증거의 채택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공동피고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사례의 경우 증거능력 판단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였다.

(5) 적정화 예규의 제정에 따른 실무상 변화

(가) 범죄사실

적정화 예규가 제정될 무렵에도 법원에서 형사판결서 등을 생성하는데 이용하였

던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을 통해 형사판결서를 생성할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범죄사실로 옮겨져 판결서가 생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적정화 예규에서 규정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별지로 활용하는 범죄사실의 기재방식은 실무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다만, 종래에는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에 의해 범죄사실로 입력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으나, 검사가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나 그 밖에 전과 및 정상에 관한 사실 등을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수정 ·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수정 ·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사례가 단독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는바, 이는 불필요한 서면 작업을 줄이기 위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별지의 형식으로 그대로 인용하려는 적정화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무로 보인다.

(나) 증거의 요지

적정화 예규 제정 이전에도 증거의 표제만을 기재하는 실무는 단독재판부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판결서를 생성할 때 사용되던 판결문 작성시스템의 생성 양식도 증거목록의 증거의 표제만을 기재하는 실무에 따른 기재방식으로 생성됨에 따라, 현재에는 그와 같은 실무가 합의부를 포함한 다수의 재판부 실무로 자리 잡았다.

(다) 양형의 이유

적정화 예규 제정 이전부터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의 이유 기재를 돕기 위하여 개발된 양형기준시스템의 기본형 기재방식[87]을 토대로 한 권고형량 관련 기재 방식에, 선고형을 기재하면서 문장식으로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식이 양형의 이유 기재에 있어서 주류적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단독재판부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시스템의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채 양형의 이유를 문장식 또는 개조식으로 기재하는 실무례도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

(라)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정화 예규가 증명력이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재하지

87)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이 장의 III. 1. 나.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않고, 기재를 하는 경우에도 주된 쟁점의 경우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의 각 해당란의 하단에 간략하게 이유를 기재하는 기재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쟁점이 크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증거의 요지 또는 법령의 적용 하단에 기재하는 실무는 단독재판부를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 다만, 실제 받아들여진 태양은 여러 형태로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하단에 관련된 쟁점을 기재하는 방식만을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재 내용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한 기재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래의 실무와 같이 주장 및 판단 구조를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부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별도의 항목을 통하여, 주장 및 여러 사정들을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판단하는 형태의 실무가 여전히 다수의 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정화 예규에 따른 방향성에 따라, 특히 수사단계별로 변화하는 당사자 진술의 변동과정 등을 판결서에 전부 설시하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거나, 배척하는 형태의 기재방식 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 적정화 예규 제정 후 형사판결서 작성면수의 확대 경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화 예규는 형사판결서를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간명하게 작성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적정화 예규의 도입 후에도 형사판결서 작성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래와 같이 판결서의 분량이 1,000면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많은 복잡사건들도 발생하였다.

(1) 판결서 면수의 증가

형사 제1심 합의부에서 작성한 평균 판결서 면수는 2016년 9.8면에서, 2021년에는 11.2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형사 제1심 단독(고정 사건 제외)에서 작성한 평균 판결서 면수는 2016년 4.6면에서 2021년 4.8면으로, 형사 제1심단독(고정 사건)에서 작성한 평균 판결서 면수는 3.1면에서 3.5면으로 각각 증가하였다.[88]

88) 탁상진,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33면.

(2) 복잡한 형사사건의 판결서 면수

아래 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한 증인이 다수인, 일부 복잡사건의 제1심 형사판결서 면수에 관한 자료이다.[89] 전체적으로 본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면을 넘어서고 있고, 2847면에 이르는 사건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번	제1심 대표사건번호	사건 내용	전체 증인	판결문 면수 (본문 기준)
1	2016고합527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42명	203면
2	2016고합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등 사건	31명	113면
3	2017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사건	230명	556면
4	2018고합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사건	26명	407면
5	2019고합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	173명	2847면
6	2019고합9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75명	531면
7	2020고합2	뇌물수수등 사건	54명	367면
8	2020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19명	228면
9	2020고합7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위반등 사건	95명	1461면
10	2021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사건	87명	147면
11	2021고합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사건	60명	159면
12	2021고합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등 사건	71명	720면

89) 윤동현,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6), 8면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원 자료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III.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1. 유죄판결서[90]

가. 유죄판결서의 체계

유죄판결은 재판의 결론인 주문과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른 기재사항인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 및 양형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양형의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유죄판결서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제 : 법원
형식적 기재사항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표시, 검사, 변호인, 선고일
주문 – 형: 주형, 부가형, 부수처분 – 형 면제 / 선고유예
이유 1. 범죄사실 2. 증거의 요지 3. 법령의 적용 4.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양형의 이유
법관 서명 날인

나. 유죄판결서 작성방식

(1) 범죄사실

현재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장 파일 자체를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그대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판사무시스템에서 판결서를 생성하는 경우,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이 유죄판결서의 범죄사실란에 그대로 옮겨지는

90) 이 부분은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34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것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사판결서의 범죄사실에는 기재하지 않으나, 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관행적으로 기재하던 각종 전과 관계나 정상에 관한 사실 등을 수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그대로 기재하는 실무례도 일부 보이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에 기소된 후 이송된 사건 등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사건이 있으나, 주류적인 실무는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별지 등으로 붙여 인용하기보다는 범죄사실란에 이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전자소송에 따른 전자사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이 문서작성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판결서의 범죄사실란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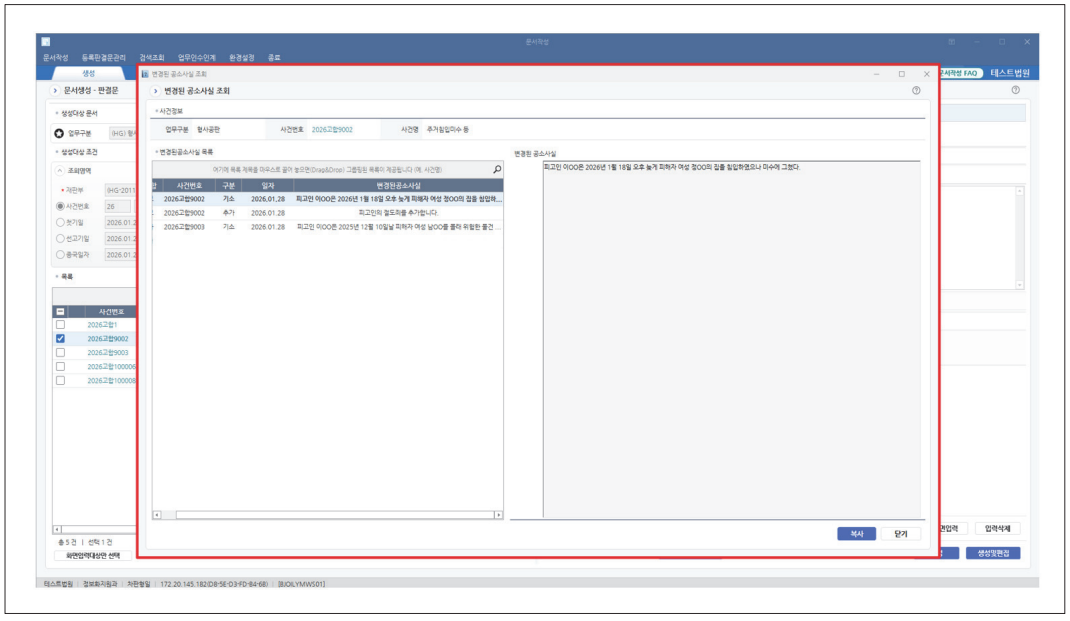

91) 형사전자소송심의관실 제공자료, 예시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화면에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2) 증거의 요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양식을 활용하되, 그 순서는 기본적으로 인증, 서증, 증거물인 서면, 증거물의 순서로 하고, 조서의 경우에는 검찰 증거를 경찰 증거보다 앞서 제시하고, 같은 종류의 증거는 묶어서 기재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면서, 어떠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지를 기재하고, 증거의 성질에 따라 '진술기재', '기재', '영상' 등으로 설시를 달리하는 실무례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판결서 작성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양식에 따라 전과 관계와 상습성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합하는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증거의 기재도 증거의 명칭만을 기재하는 것이 주류적인 실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공소장에 의해 여러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도 증거기록이 하나로 편철된 경우에는 증거의 요지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하나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도 증거기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기록의 범죄별로 나누어 증거의 요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기소된 수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통상 병합된 사건번호별로 증거의 요지를 작성하고 있다.

[적정화된 작성방식에 따른 기재 방식][92]

① 기본형

「1. ……

1. ……」

② 전과 등이 있는 경우

「1. ……

1. ……

1. 판시 전과: ……」

③ 범죄사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1. ……

1. ……

1. ……」

또는

「[판시 제1항][93]
1. ……
1. ……
[판시 제2항]
1. ……
1. ……」
④ 범죄사실이 여러 개이고 전과 등이 있는 경우
「1. ……
1. ……
1. 판시 전과: ……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산도 전혀 없어 향후 치료를 계속 받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⑤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2024고합○○]
1. ……
1. ……
[2024고합△△]
1. ……
1. ……
[판시 전과]
1. ……
1. …… 」
⑥ 피고인이 극력 다투어 증거의 가치판단을 설명하는 경우
「1. ……
1.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92)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54면.

[적정화된 작성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된 당좌수표 1장(증 제2호)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한편, 증거의 요지와 관련해서도,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전자사건에 관하여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다. 전자사건의 경우 중요증거 및 증거의 요지에 포함될 증거를 체크식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증거는 전자기록 뷰어의 증거목록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결서를 생성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증거의 요지 양식 하단에 사건번호별로 증거목록의 순서에 따라 증거명칭이 자동으로 삽입되고 있다. 아래는 그 예시이다.[94]

93) [판시 제1 사실] 또는 [판시 제1의 점]이라고 쓸 수 있다.
94) 형사전자소송심의관실 제공자료를 가공하였다.

[전자기록 뷰어에서 체크한 증거의 요지 및 중요증거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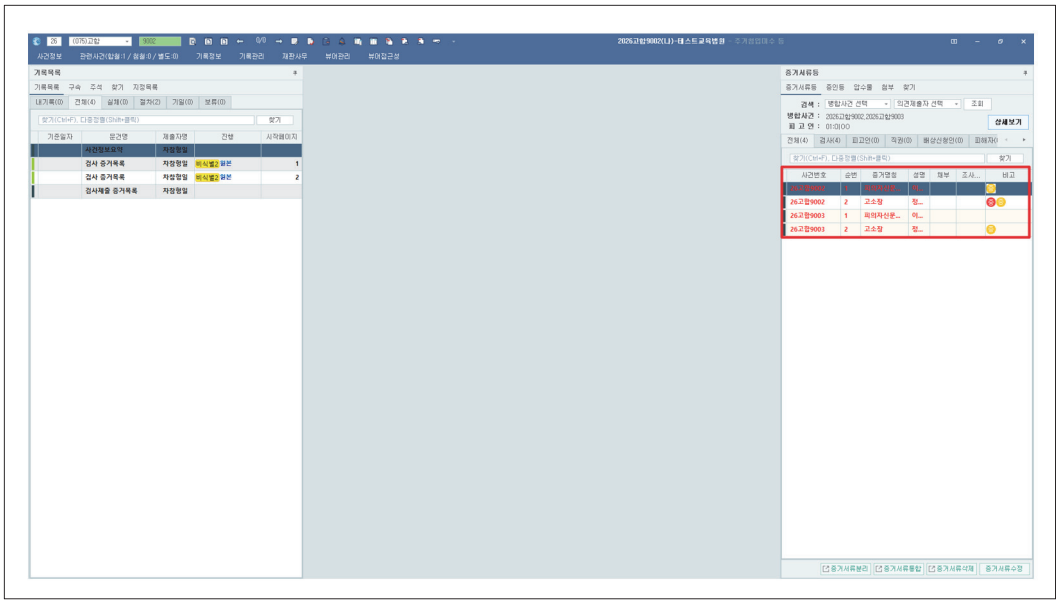

[증거목록을 확인하면서 증거의 요지로 할 증거나 중요증거를 체크식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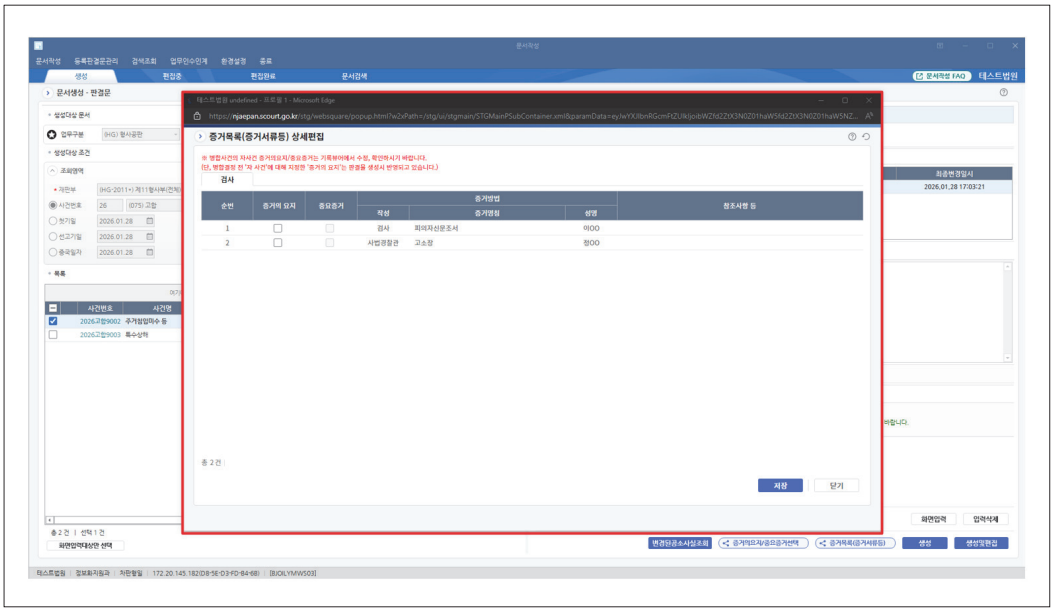

[증거의 요지가 판결서 생성에 반영된 모습]
(기존의 증거의 요지 양식 하단에 증거서류등의 순서에 따라 증거명칭이 자동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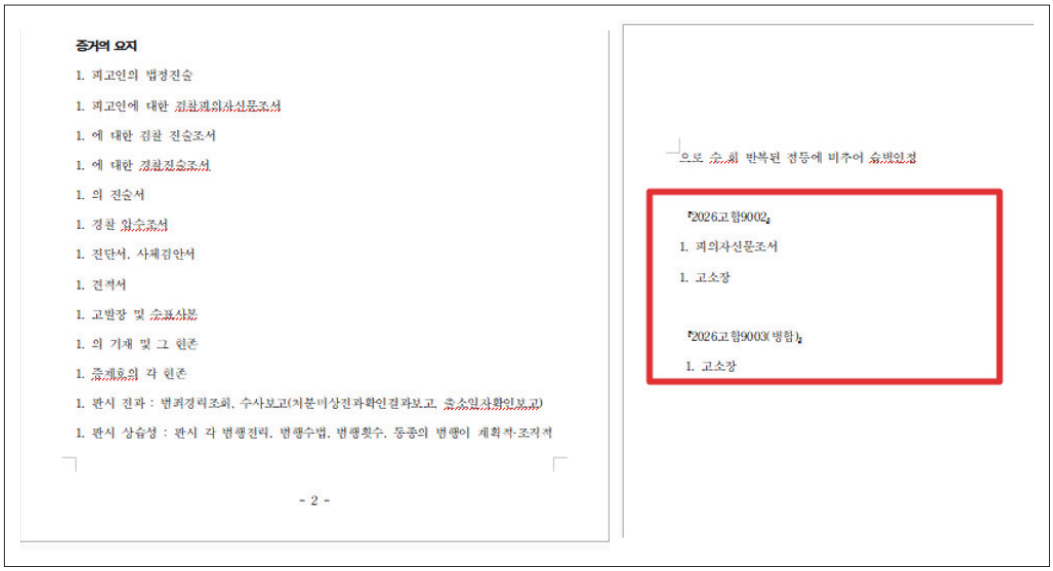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소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원존
1. 증거호의 각 원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초소일사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 2 -

으로 소 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6고합9002』

1.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26고합9003(병합)』

1. 고소장

(3) 법령의 적용[95]

앞서 본 1991년 예규 시행 이후 문장식이 아닌 나열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다. 한편, 형사단독 재판부에서는 해당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거나, 별도로 기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유와 결과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이고, 형사합의 재판부의 경우 주류적인 실무는 적용이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아래는 적용이유와 결과를 기재하는 경우와 생략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예시를 기재하였다.

[적용이유와 결과를 기재하는 사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95)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사법연수원(2024), 174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사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는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주장이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기재한다.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로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필요적 가중, 감면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적 감면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유를 주장할 경우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5)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통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2000년 이전까지의 실무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이 있어도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설시함에 따라 이를 배척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실무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다만 적정화 예규의 시행 후 단독재판부에서는 적정화 예규의 취지에 따라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해당 부분에서 간단하게 필요한 판단을 서술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실무가 어느 정도 확산되었으나, 다수의 형사합의부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항목으로 이 부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6)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무상 양형기준의 적용과 별도로 문장 형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과 판결서 자체에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양형기준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시스템 이용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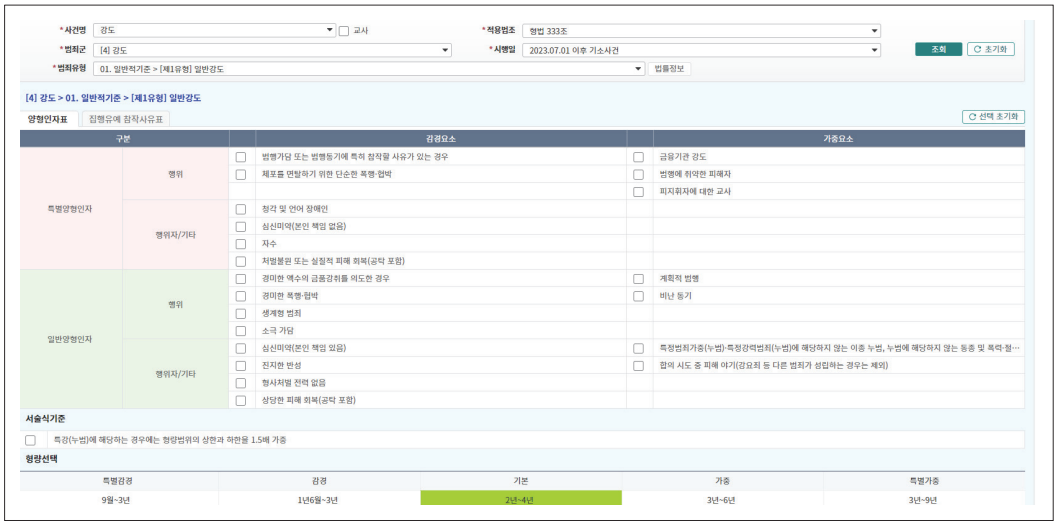

양형기준시스템은 생성양식으로 '기본형'과 '상세형'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형'은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입력한 양형인자 중 특별양형인자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양형의 이유 부분을 생성하는 것이고, '상세형'은 특별양형인자 외 일반양형인자 등 권고형의 범위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양형인자까지 포함하여 생성이 되고 있다. 아래에는 피고인에게 강간, 강도, 사기범죄의 경합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양형기준시스템에 임의로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를 넣어 기본형 및 상세형 양형이유를 생성한 예시이다.

[기본형 예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세형 예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경미한 폭행·협박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는데 직접 요구되지 않는 일반양형인자는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형기준시스템은 위와 같이 일반양형인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 기본형과 이를 기재하는 상세형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특별양형인자를 토대로 한 기본형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생성되는 양식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되고, 일반양형인자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선고형의 결정 하단에서 문장식 또는 개조식으로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양형기준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기는 하나, 단독재판부의 경우 양형기준시스템의 이용에 불편함을 가지거나, 실무상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은 참고만을 하고, 별도로 개조식이나 문장식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7) 재판사무시스템의 생성 양식 활용

형사판결서는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사무시스템은 형사판결서를 생성할 경우 기본적인 양식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재판사무시스템의 판결서 생성 양식]

범죄사실

– 전산에 입력된 공소장의 공소사실 부분이 자동으로 이 부분에 기재됨

– 사건번호가 기재된 상태에서 생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조, 제 조

양형의 이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은 전산에 입력된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입력된다.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표제만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법령의 적용은 나열식으로 적용이유 및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생성되고 있다.

법관에 따라서는 따로 판결서 양식 등을 준비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무상 재판사무시스템의 판결서 생성 양식은 형사판결서 작성의 기초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8) 목차의 작성

복잡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판결서가 100페이지를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재판부의 경우에는 면수가 많은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목차를 첨부하여 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2. 무죄판결서

가. 무죄판결서의 체계[96)]

무죄판결서는 재판의 결론인 주문과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의 이유를 명

96)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47-48면을 참고하였다.

시하여야 한다. 무죄 판결의 이유를 기재함에는 공소사실 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무죄 재판의 대상을 특정한 후, 무죄 판결을 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무죄판결서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제: 법원
형식적 기재사항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표시, 검사, 변호인, 선고일
주문 : 피고인은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 점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법관 서명 날인

나. 작성방식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히고, 법률적 이유 또는 사실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1) 공소사실

통상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범죄사실란에 생성이 되므로 자동 생성된 공소사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피고인의 주장

무죄 판단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장의 요지와 판단이 중복되므로 그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안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 같이 이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구성요건해당성이 흠결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해당 법조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시한다.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취지만을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97]

3.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

가.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의 체계[98]

표제 : 법원
형식적 기재사항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표시, 검사, 변호인, 선고일
주문 – 면소 : 피고인은 면소 – 공소기각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갑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관할위반 :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은 관할위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 판단
법관 서명 날인

나. 작성방식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판결서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또는 그 요지를 기재한 후, 그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와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래와

97) 이 연구는 제1심 유죄판결서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므로, 무죄판결의 세부 기재방식은 생략한다.
98)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47면을 주로 참고하였다.

같이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조식으로 기재하는 실무례가 있다.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4.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판결서의 기재 사항

제4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배심원의 참여 취지 기재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1항 전문은 판결서에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판결서에는 배심원 참여 취지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배심원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면서, 이를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갈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배심원의 의견 기재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1항 후문은 판결서에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상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상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의 판결서에는 예외 없이 배심원의 평결이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한편, 그 기재방식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양형에 관한 의견은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나누어 기재하는 사례와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

이유를 별도의 항목을 두고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판결서에 기재할 수 있는 배심원의 의견이, 국민참여재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무죄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으로 한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바, 제12조 제1항이 배심원이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의견 제시의 범위가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유·무죄 여부 및 양형 외에도 쟁점과 관련한 배심원의 의견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판결서에도 기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별도로 배심원의 의견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심신상실과 같은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와 공소사실 불인정에 따른 무죄는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배심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99] 그 외에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판결 중에는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쟁점에 관하여 배심원의 의견을 확인하여 이를 판결서에 기재한 사례도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을 별도의 항목에서 기재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의견을 따로 확인하여 판결서에 기재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2고합9 판결 중 해당 부분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

 심신미약 인정 : 7명

 심신미약 불인정 : 2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장기 5년 : 2명

99) 일반평결을 원칙으로 하는 배심원 제도하의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정신이상의 항변에 따라 무죄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특별평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징역 장기 3년 : 5명
징역 장기 2년 6월 : 1명
징역 장기 2년 : 1명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부분에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을 기재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고합88 판결 중 해당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생략)

2.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이하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생략)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생략)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2명

○ 징역 3년: 4명

○ 징역 4년: 1명

[무죄판결에 있어 배심원에게 구체적인 무죄평결의 이유를 확인하여 기재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16. 12. 26. 선고 2016고합96 판결

배심원의 평결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3명

○ 무죄 : 배심원 4명

2. 무죄 평결의 이유

○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 : 2명

○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 2명

라.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이유 기재

국민참여재판법 제49조 제2항은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한 이상 배심원들의 평결에 이른 개별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평결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이유 기재는 배심원이 평결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기재하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고,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더 높은 설득력이 필요하므로 판결서에 기재할 이유 기재의 정도가 강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형사판결서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I. 판결서 작성방식의 변화과정의 정리

1. 작성형식의 변화

1980년대까지 형사 제1심 유죄판결에서는 형사합의 재판부의 경우 법령의 적용에 있어 문장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고, 형사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단순히 적용법령을 나열하는 형태의 기재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1년 예규가 제정되면서 법령의 적용에 관한 기재방식의 실무가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 재판부의 경우에는 문장식에서 예규가 제안한 나열식으로 단기간에 변화되는 움직임이 보였고, 형사단독 재판부와 같은 경우에도 종래의 단순 나열식에서 예규가 제안한 목차를 중심으로 한 나열식 기재방식이 자리 잡았다.

증거의 요지 기재와 관련해서도 적정화 예규 시행 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와 증거의 존재 형식을 생략하고 증거의 표제를 중심으로 하여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는 작성방식이 자리 잡았다.

또한, 양형 이유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다양한 작성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양형기준 시스템의 양식이 제안되고, 양형기준 시스템의 기능 및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작성방식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작성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작성방식보다 편리한 작성형식은 법관들의 판결서 작성 과정에 충분히 흡수된 측면이 있다.

2. 작성내용의 변화

가.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상세화

2000년대 초반까지의 형사 제1심 유죄판결의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이 주류적인 실무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범죄사실의 부인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실무였고, 기재가 필요한 쟁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 기재 과정에서 간

결하게 기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형사합의부 판결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200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그러한 작성방식이 형사재판부들의 주류적인 실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실무가 정착된 후, 기존에 굳어진 작성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적정화 예규가 제정되었고, 적정화 예규에 따른 기재방식이 형사단독 재판부를 중심으로는 일부 자리 잡은 측면이 있으나, 다수의 실무는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이유 기재의 확대 경향

1990년대 이전에는 사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양형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양형의 이유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기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실무가 널리 확산되었고, 양형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는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설시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 후 적정화 예규에 따라 양형이유의 기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양형이유를 작성하는 실무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다. 무죄판결 이유의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판결 이유가 길고 장황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무죄판결 이유 기재의 적정화는 1991년 예규가 제정될 무렵부터 추진되었고, 그 후 1998년 예규, 적정화 예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하나, 핵심적인 증거를 간결하게 배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 방식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재판실무에서는 여전히 길고, 자세한 이유 기재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II.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1. 개요

앞서 살펴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변천사와 현행 작성 실무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실제 재판에서 판결서 작성을 담당할 법관들이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화 예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는 판결서 작성의 직접적 주체인 법관 및 주된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인식을 기초로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및 분석

적정화 예규와 관련한 설문은 판결서의 작성자임을 전제로 한 설문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에 대한 설문을 함께 진행하였다. 주로 수요자의 관점에서의 설문으로 상급심 법관 경험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가. 귀하는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2014. 7. 4. 제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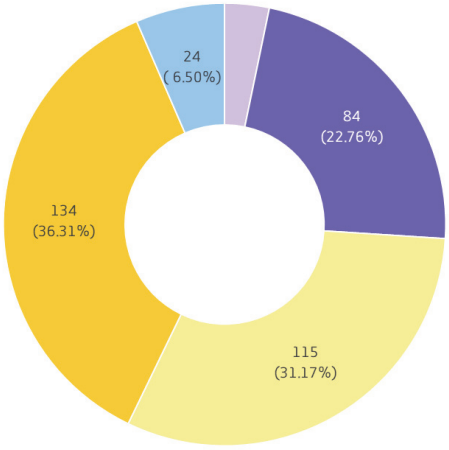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12 (3.25%)
② 대체로 알고 있다	84 (22.76%)
③ 일부만 알고 있다	115 (31.17%)
④ 잘 모른다	134 (36.31%)
⑤ 전혀 모른다	24 (6.50%)
NA[100]	1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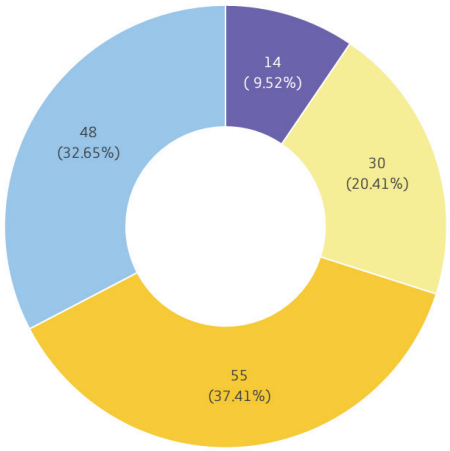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0 (0.00%)
② 대체로 알고 있다	14 (9.52%)
③ 일부만 알고 있다	30 (20.41%)
④ 잘 모른다	55 (37.41%)
⑤ 전혀 모른다	48 (32.65%)

이 문항은 앞서 설명한 적정화 예규에 대한 법관 및 변호사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아래에서 보이는 적정화 예규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 정도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적정화 예규는 판결서의 작성방식을 규정한 예규로 법원 내에서는 예규와 관련한 작성례 등이 여러 책자 및 사법연수원의 연수자료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다. 그러나 적정화 예규가 판결서 작성과 직접 연관된 재판예규임에도 응답한 법관 중 약 42%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해당 예규를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체로 알고 있는 경우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예규의 인식이나 이해의 정도가 26% 정도에 불과하여 적정화 예규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인식이 더욱 부족하여 70% 정도의 응답자들이 해당 예규를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체로 알고 있는 변호사 응답자 비율은 9.52%,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입장에서 적정화 예규에 따라 작성되는 간결한 판결서가 별다른 근거를 가지지 않은 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작성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도의 존재 등에 대한 인식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

100) 법관의 경우에는 법원 설문 시스템상 모든 설문에 대하여 응답 여부가 응답자의 자율로 되어있으므로, 미응답이 발생할 수 있어 NA가 나올 수 있으나, 아래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이용한 설문 시스템상 미응답을 할 수 없고, 앞선 설문에서의 특정 응답을 전제로 한 문항의 경우에는, 해당 응답을 한 사람만 그 응답을 할 수 있다.

나. (아래 ⓐ 관련) 귀하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다툼 및 소송관계인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기재하고 있는가요?

예규 중 유죄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등

ⓐ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다툼 및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단 생략

ⓑ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증거의 요지' 또는 '법령의 적용'의 해당란에 기재 가능

■ 사실상 주장 중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대한 기재 방법

ⓒ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 제목을 사용하여 해당 쟁점에 관하여만 판단(그 밖의 주장 및 추론의 모든 단계에 대한 판단의 기재는 생략)

ⓓ 판단 결과는 분명하게, 이유는 주된 근거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

ⓔ 증거 내용의 구체적 적시, 증거 취사선택 이유, 심증형성 과정의 설명은 생략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기재 내용과 단순히 반대되는 주장은 판단 생략

설문 중 적정화 예규를 전제로 한 설문은 앞서 본 인식에 관한 설문을 제외하고는 위 주요 내용을 전제로 두고 실시된 설문이다. 설문 중 직접적인 기재 방식과 관련한 문항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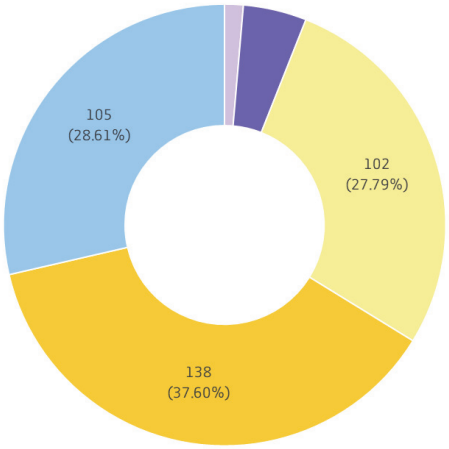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	5 (1.36%)
② 매우 드물게 기재한다	17 (4.63%)
③ 일부 사건에서 기재한다	102 (27.79%)
④ 많은 사건에서 기재한다	138 (37.60%)
⑤ 거의 모든 사건에서 기재한다	105 (28.61%)
NA	3

이 문항은 앞서 설명한 적정화 예규 중 생략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 및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실제 법관들의 작성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예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이를 기재하는 법관이 28.6%에 달하고, 많은 사건에서 그 판단을 기재하는 법관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66.21%로 과반수에 해당하고, 일부 사건에서 기재하는 법관들을 합치면 약 94% 정도의 비율로 그 기재를 하고 있다. 예규의 원칙을 적극 고려하여 매우 드물게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법관은 5.99% 정도로 매우 소수로 보인다.

이는 예규가 제정되었음에도 재판 실무상 예규의 기재사항이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고, 그 규범력도 약화된 측면이 있음을 드러낸다.

다. (위 ⓑ 관련) 귀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의 해당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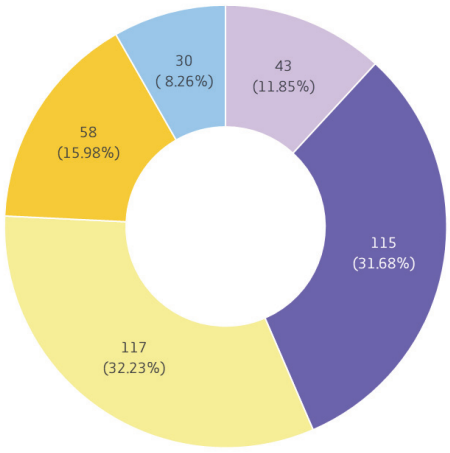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43 (11.85%)
②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115 (31.68%)
③ 일부 사건에서 사용한다	117 (32.23%)
④ 많은 사건에서 사용한다	58 (15.98%)
⑤ 거의 모든 사건에서 사용한다	30 (8.26%)
NA	7

이 문항은 적정화 예규 중 작성에 관한 형식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본 부분과는 비율은 달리하나, 약 43%에 달하는 법관들이 적정화 예규에서 제안한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에 있어 해당란에 기재하는 기재형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약 24% 정도의 법관들은 거의 모든 사건 또는 많은 사건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건에서 사용하는 법관들의 비율까지 고려하면 과반수의 법관들이 예규의 기재 방식을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내용적 측면의 예규 규정보다는 전반적으로 예규의 규정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위 ⓒ ⓓ ⓔ ⓕ 관련) 귀하는 '사실상 주장 중 예외적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대한 기재방법'을 형사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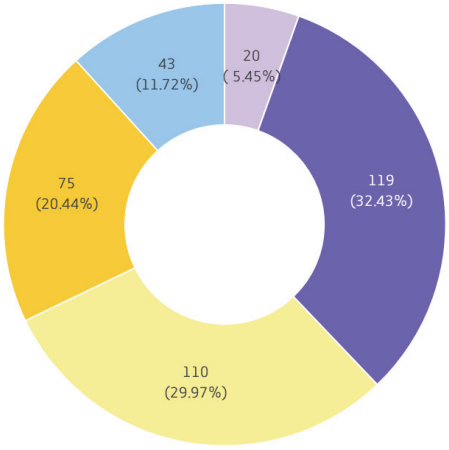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20 (5.45%)
②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119 (32.43%)
③ 일부 사건에서 고려한다	110 (29.97%)
④ 많은 사건에서 고려한다	75 (20.44%)
⑤ 거의 모든 사건에서 고려한다	43 (11.72%)
NA	3

이 문항은 적정화 예규 중 작성에 관한 주된 쟁점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거의 고려하지 않는 비중이 37% 정도로 높으나, 거의 모든 사건 또는 많은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는 비율도 32%에 달하여 비교적 높다. 일부 사건에서 고려하는 비율도 고려하면 과반수의 법관들이 어느 정도는 기재 내용에 있어 적정화 예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설문은 ⓒ ⓓ ⓔ ⓕ의 기재 방식을 모두 모아 질문하였으므로 그 한계는 있으나, 여러 쟁점에 대하여 생략 없이 판단을 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기재 방법에서 그 내용을 간결화하는 기재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예규의 기재방식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 선택)[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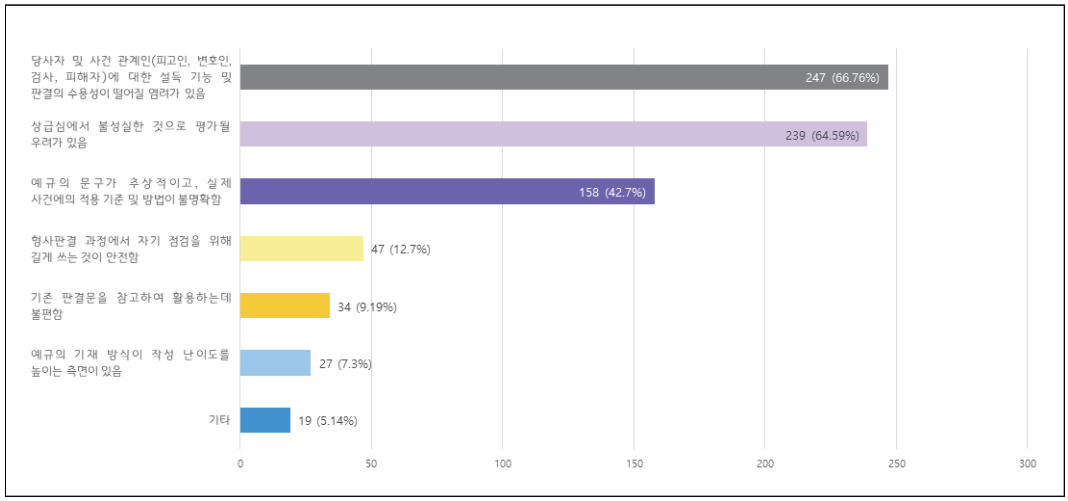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상급심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음	239	64.59
형사판결 과정에서 자기 점검을 위해 길게 쓰는 것이 안전함	47	12.70
예규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실제 사건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함	158	42.70
예규의 기재 방식이 작성 난이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음	27	7.30
기존 판결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는데 불편함	34	9.19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해자)에 대한 설득 기능 및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음	247	66.76
기타	19	5.14

○ 기타 의견

- 재판장(합의부장)의 성향이다.
- 예규가 구속력이 없다.

101) 미응답은 5명이다.

- 배석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장에게 제출하는 초안이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어 최대한 판결 본문에 이유를 자세히, 구조를 갖추어 적는다.
- 검사 항소가 많은 편이라 항소심 업무부담이 클 것을 염려하여 되도록 판결 이유를 기재한다.
- 항소심에서 바라보는 1심 형사재판 간담회를 하면, 간결하게 쓴 판결을 칭찬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재판장의 작성요령을 고려해야 한다.
- 상급심에서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인다(특히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 재판장이 예규의 기재방식에 익숙하지 아니하다.
- 예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 애초에 예규가 원칙적인 판결서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 현재 형사판결서 작성 관행상 간략히 쓰는 데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 예규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익숙하지 아니하다.
- 다수의 재판장들이 상급심 눈치를 본다고 예규를 고려하지 않았다.
-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을 해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예규 내용이 적정한지 의문이 있다.
- 예규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 설문은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예규의 기재방식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설문으로, 복수 선택을 허용하였다. 법관들에게 가장 높게 선택된 부분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기능 및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전체 응답자의 66.76%가 이를 선택하였다. 두 번째로는 상급심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평가될 우려로 64.59%로 앞서 선택한 비율과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응답이 선택되었다. 세 번째로는 예규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으로 전체의 42.7%가 이를 선택하였으나, 나머지 선택지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음에도 선택 비율이 낮았다. 한편, 기타 의견은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재판장이 적정화 예규를 적용한 판결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상급심의 평가를 강조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는 법관들이 적정화 예규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기능 저하 및 상급심의 불성실하다는 평가에 대한 우려에 있다는 측면을 드러

낸다. 또한, 예규의 적용방식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적지 아니한바, 적정화 예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기재례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바. (이 부분부터는 변호사, 법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법관의 경우 최근 5년 내에 상급심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만 답변)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한 방식을 적극 활용한 형사판결서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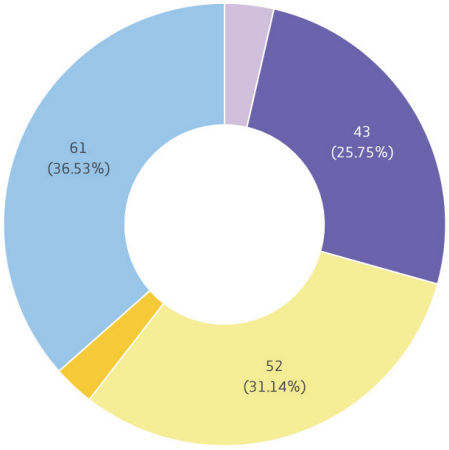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부정적이다	6 (3.59%)
② 부정적이다	43 (25.75%)
③ 긍정적이다	52 (31.14%)
④ 매우 긍정적이다	5 (2.99%)
⑤ 의견 없음	61 (36.53%)
NA[102]	203

102) 이 설문은 법관의 경우 상급심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법원 설문 양식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응답 여부를 시스템으로 강제할 수 없고, 미응답자를 별도로 집계한다. 변호사 관련 응답은 사용한 설문 시스템의 차이(네이버 폼)로 인하여 미응답을 할 경우 다음 설문으로 넘어갈 수 없어, 미응답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도 같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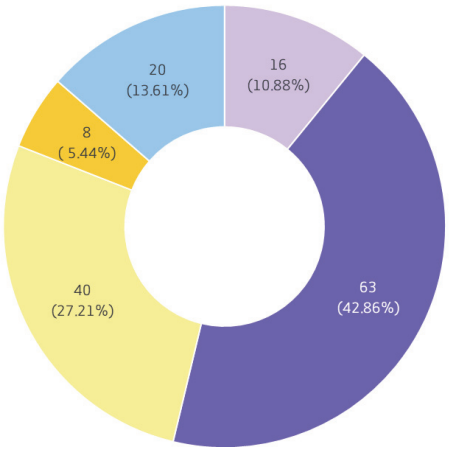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매우 부정적이다	16 (10.88%)
② 부정적이다	63 (42.86%)
③ 긍정적이다	40 (27.21%)
④ 매우 긍정적이다	8 (5.44%)
⑤ 의견 없음	20 (13.61%)

이 부분부터의 설문은 제1심 형사판결서와 관련한 가장 주된 독자에 해당하는 상급심 법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상급심 법관의 경우에는 가급적 최근에 받은 적정화 예규를 활용한 판결에 대한 인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5년 내에 상급심을 경험한 법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5년 내에 상급심을 경험한 법관 그룹에서는 29.34%가 이를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34.13%는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를 고려하면, 상급심을 경험한 법관 그룹에서는 적정화 예규를 적극 활용한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특기할 점은 의견 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인 36.53%에 달하는바, 이러한 의견은 상급심의 입장에서 하급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부정적 의견이 매우 우세하였다. 적정화 예규를 적극 활용한 판결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비율이 과반인 53.74%에 달하였다. 다만, 긍정적이거나 매우 긍정적인 의견 비율도 32.65%에 달하여 그 비율이 적지 아니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핵심적이거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판결서에 대한 인식도 전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사. (긍정적으로 본 경우에 답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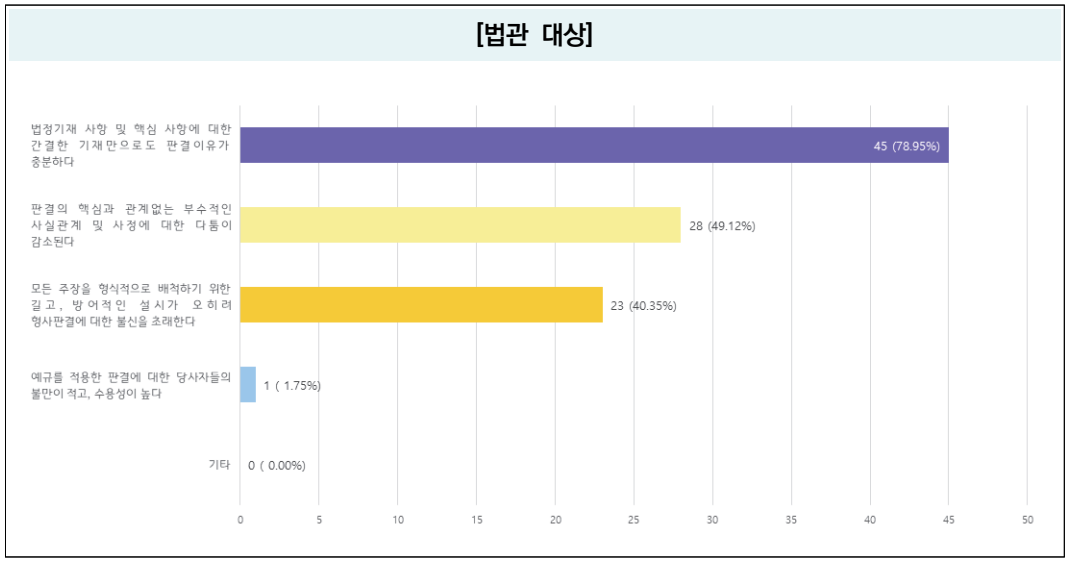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정기재 사항 및 핵심 사항에 대한 간결한 기재만으로도 판결이유가 충분하다	45	78.95
판결의 핵심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대한 다툼이 감소된다	28	49.12
모든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길고, 방어적인 설시가 오히려 형사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23	40.35
예규를 적용한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적고, 수용성이 높다	1	1.75
기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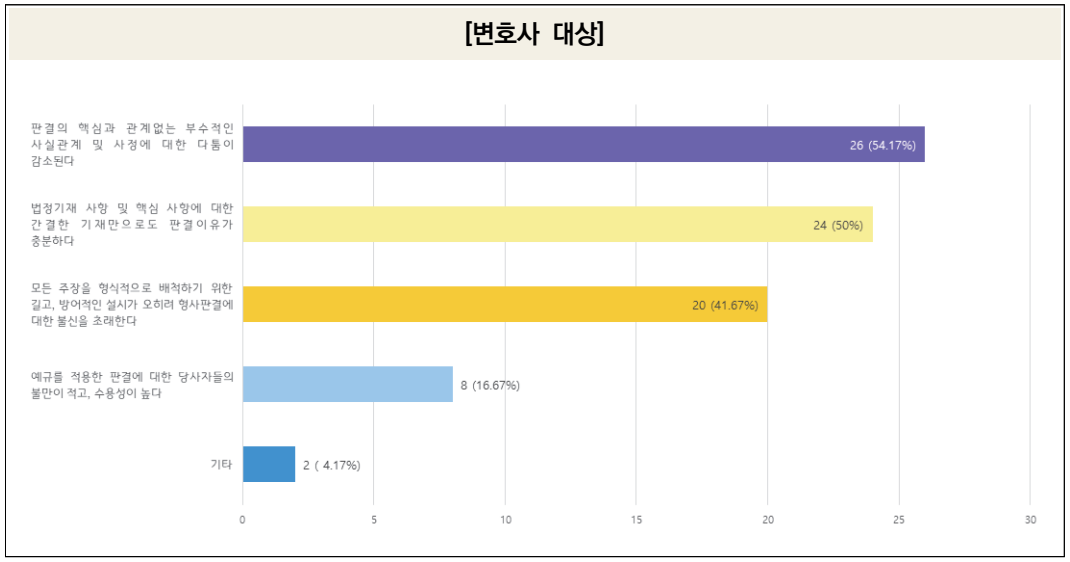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정기재 사항 및 핵심 사항에 대한 간결한 기재만으로도 판결 이유가 충분하다	24	50.00
판결의 핵심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대한 다툼이 감소된다	26	54.17
예규를 적용한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적고, 수용성이 높다	8	16.67
모든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길고, 방어적인 설시가 오히려 형사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20	41.67
기타	2	4.17

○ 기타 의견 ——— **[변호사]**

- 판사들의 업무량 고려시 자백사건까지 판결서를 엄격히 쓰게하는 경우 무죄 다툼사건에 소홀해진다.
- 법관의 판결문 작성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적정화 예규를 적용한 판결을 긍정적으로 본 상급심 경험 법관의 경우에는 78.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법정기재사항 및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간결한 기재만으

로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에 반하여, 변호사의 경우에는 판결의 핵심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대한 다툼이 없어지는 부분을 54.17%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모든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판결서 기재 방식이 오히려 분쟁의 확대나 판결의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응답으로 특기할 만하다.

아. (부정적으로 본 경우에 답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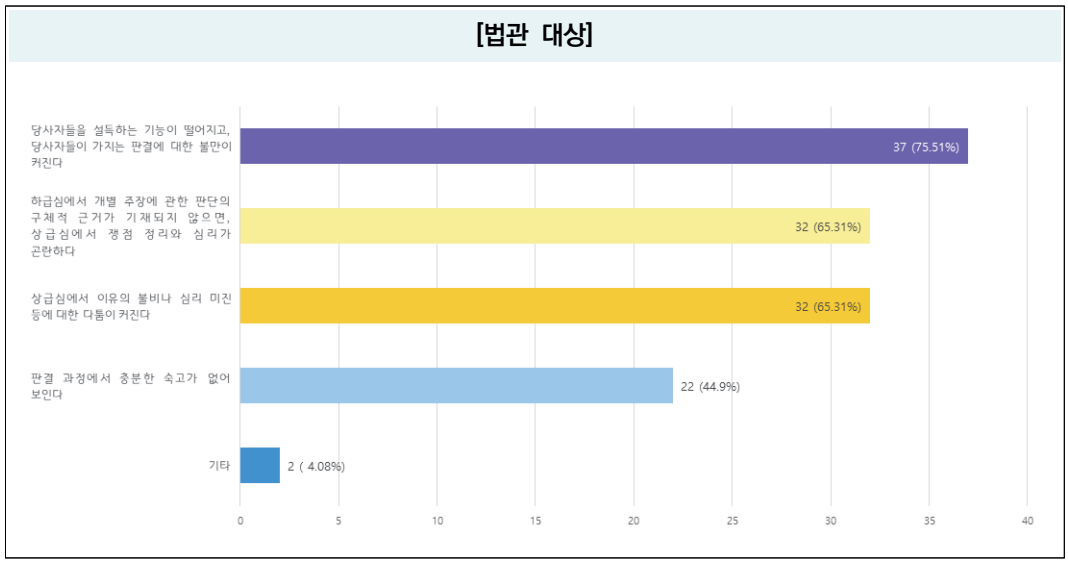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상급심에서 이유의 불비나 심리 미진 등에 대한 다툼이 커진다	32	65.31
하급심에서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쟁점 정리와 심리가 곤란하다	32	65.31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당사자들이 가지는 판결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37	75.51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없어 보인다	22	44.90
기타	2	4.08

○ 기타 의견 [법관]

- 판단을 안 쓴 판결문은 자기 점검이 되지 않아 결론이 틀리는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이다.
- 친절한 법원을 내세우면서, 친절하지 않은 판결을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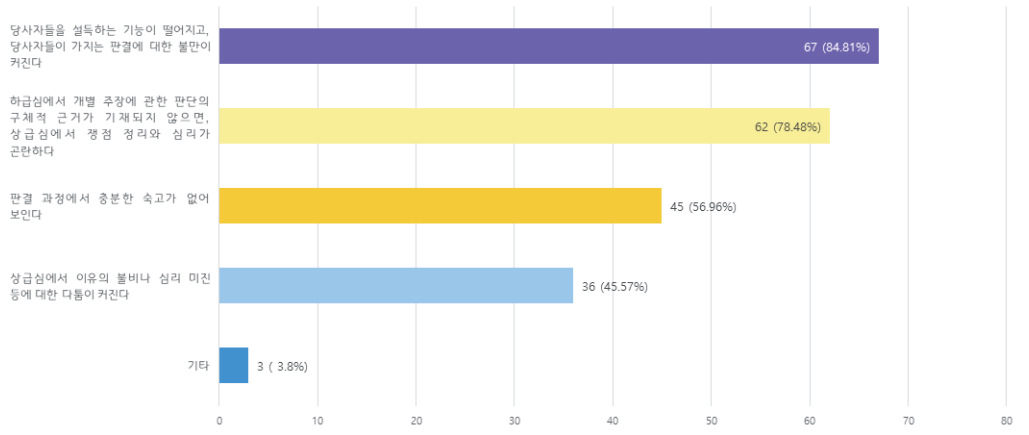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상급심에서 이유의 불비나 심리 미진 등에 대한 다툼이 커진다	36	45.57
하급심에서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쟁점 정리와 심리가 곤란하다	62	78.48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당사자들이 가지는 판결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67	84.81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없어 보인다	45	56.96
기타	3	3.80

○ 기타 의견 [변호사]

- 지금도 기록을 보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일 지경인 재판부가 많은데, 명분까지 주는 것이다.
-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배치되는 합리적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등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없다.
-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식의 판결서 작성이 용이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중 상위를 차지한 가장 주된 이유는 상급심 법관과 변호사 모두 동일하게 당사자를 설득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당사자들이 판결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이 커진다는 부분이었다.

그 외에 특기할 사항으로는 상급심 법관 그룹에서 상급심에서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에 대한 다툼이 커지는 것을 변호사 그룹에 비해 더욱 우려한다는 것이다.

3. 설문결과의 검토

적정화 예규에 관한 설문결과 변호사들은 물론 법관들도 적정화 예규의 존재 및 내용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과 관련한 기초적인 예규임에도 법관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 및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적정화 예규를 이용하지 않은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적정화 예규가 기본적으로 법관들의 재판을 위한 예규이기는 하나, 독자이자 수요자인 변호사들조차 예규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관들의 적정화 예규에 근거한 작성방식은 '뚜렷한 근거 없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작성된 부실한 판결서'라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과 관련하여 적정화 예규의 존재에 관한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규의 법관들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장 및 증명력의 평가와 관련한 내용적 생략에 관한 부분의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재형식의 변화, 기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부적인 작성방식의 순으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규의 기재방식을 법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른 선택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두 가지 항목인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수용성 저하 우려'와 '상급심에서 불성실한 판결로 평가받을 우려'가 핵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송관계인과 상급심에 대한 부담이 핵심 사항 중심의 간결한 판결서 작성에 있어 법관들에게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정화 예규를 사용한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최근 상급심을 경험한 법관 중 직접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비율은 29% 정도이다. 그러나 적정화 예규라는 근거가 존재함에도 해당 예규를 기초로 한 판결서에 대한 상급심의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이상, 법관들이 적정화 예규에 기초하여 판결을 함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들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적정화 예규에 따른 판결서를 긍정적으로 본 상급심 경험 법관들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적정화 예규에 따른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한 판결서만으로도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부수적 쟁점 등에 대한 분쟁의 확대 감소 등을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적정화 예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길고 상세한 판결이 판결의 핵심과 먼 부수적인 쟁점으로의 분쟁 확대 등을 야기하는 등으로 판결의 수용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적정화 예규에 따른 판결서를 부정적으로 본 상급심 경험 법관들과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역시 당사자의 설득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법정 변론보다 형사판결서가 당사자 설득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II. 우리의 형사판결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 작성형식 적정화와 내용적 적정화의 구별

우리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는 작성형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예규 등의 변화에 의한 적정화 방향에 맞추어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형식의 개선이란 판결 이유의 실질적인 내용을 축소하거나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그 형식만을 적정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작성형식의 개선안은 가독성을 높이면서, 작성 과정에서 소모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 재판부 또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할 유인이 있고, 나아가 재판사무시스템 등에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법관들에게 쉽게 흡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유 · 무죄 판단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증의 정도, 증거에 대한 평가의 범위, 생략할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 즉 이유 설시의 범위 및 밀도와 관련한 내용적 적정화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1991년 예규에 따른

무죄판결서의 기재방식부터 적정화 예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성방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작성형식의 적정화 방안에 비교할 때 실무상 안정적으로 그 기재방식이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정화 예규의 취지 및 방향성과 달리 형사판결서는 지속적으로 장문화 · 복잡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는 약 3,000면에 달하는 판결서가 등장하는 등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내용적 적정화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

이러한 차이는 작성형식의 적정화와 작성 내용의 적정화가 법관에게 요구하는 부담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작성형식의 적정화는 대체로 판결의 충실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주로 가독성의 향상이나 작성 효율의 제고라는 편익을 제공한다. 반면 내용적 적정화, 특히 논증이나 증거 평가의 축약 또는 생략은 곧바로 판결 이유의 충실성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설시할 것인지는 재판의 정당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법관들은 형사재판부의 업무가 다른 사무분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고, 형사판결서 작성에 대한 부담 역시 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실무상 작성되는 형사판결서가 길다는 문제의식 역시 적지 아니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적정화 예규라는 명시된 기준까지 존재함에도 실무가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적정화 예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이해의 미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실제 적정화 예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법관들은 적정화 예규에 기초한 간결한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상급심 법관으로부터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다거나,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한 불복이나 공격을 받을 위험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아래에서는 형사판결서를 보다 길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3. 판결서의 장문화와 상소율과의 관계

물론 현재의 판결서 작성 실무가 당사자들의 판결에 대한 승복을 돕고 상소율을

낮추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사법시스템 전체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의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적정화 예규 등에 따른 기존의 적정화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별지 1]의 형사 제1심 공판사건에 관한 상소율 통계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초중반 무렵부터 형사판결서에 구체적 이유가 기재되는 등으로 형사판결서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형사 제1심 공판사건 상소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103]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변화를 보이고, 형사판결서가 길어지는 현상이 고착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상소율은 오히려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위와 같은 통계만으로 형사판결서 분량의 증가와 상소율의 상승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소율 증가의 원인에는 사건 구성의 변화, 변호활동의 활성화, 권리의식의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소율이 증가한 원인이 오롯이 판결서 작성 분량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길어진 형사판결서가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승복을 가져오는 등으로 적어도 상소율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또한 앞서 본 설문조사에서 적정화 예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변호사 집단이 그 주된 이유로 “판결의 핵심과 무관한 부수적 사실관계 및 사정에 대한 다툼이 감소한다”는 점을 든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판결서의 분량 증가나 상세한 기재가 당사자의 승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수적인 분쟁의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범죄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양한 부수적 사정에 관한 상세한 기재는 판결 결론의 타당성과 별개로 새로운 분쟁의 대상을 형성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다툼이 확대될수록 항소의 동기 역시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판결서가 분쟁을 종결하기보다, 다툼의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 현행 적정화 예규의 평가와 한계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기재 방식은 유죄의 형사판결서에 기재할 필수적 요건에 집중함으

103) [별지 1]과 같이 유죄 형사판결서의 양적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인 1990년대 평균 상소율은 합의사건 49.77%, 단독사건 27.23%이고, 그 후 상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상소율은 합의사건 65.92%, 단독사건 43.44%이다.

로써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방식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방식이 부수적 사정에 대한 기재를 최소화함으로써 다툼의 범위를 본질적인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한정시킨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적정화 예규도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전통적인 판결서와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주류적 실무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방향이 일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실제 이를 채택하는 개별 법관이 감수할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적정화 예규에 따라 간결한 판결서를 작성하려는 법관은 설문에서 본 변호사들의 의견과 같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상소 제기 이후 상급심에서도 이유불비 등을 이유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상급심 법관들 사이에서도 적정화 예규를 적용한 간결한 판결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게 존재하므로 이러한 우려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관의 입장에서는 판결서를 길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처럼 적정화 예규의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단순히 예규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판결서 작성 이후의 평가 등에 대한 고려도 있다.

5. 복잡사건에서의 판결서 장문화와 개별 기준 설정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이 다수인 복잡사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형사판결서의 장문화 문제는 특히 기록과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의 구조, 공범관계, 자금흐름, 증거의 연결, 개별 피고인별 책임 범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실무상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쟁점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압축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복잡사건일수록 판결 이유를 더욱 길고 세밀하게 기재하려는 동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잡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서는 수백 면에서 수천 면에 이르러 별도로 목차 등을 제시할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바 그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복잡사건은 사실관계, 쟁점의 구조, 증거관계,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의 필

요성 등이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그 편차도 크므로,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적정화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작성방식을 예규 등의 형태로 정형화할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재판부의 탄력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적정화 예규가 쉽게 정착하지 못한 이유를 고려할 때, 그러한 기준을 개별 법관들이 쉽게 수용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난해한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체적인 재판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6. 제도적 접근의 필요성

결국 현재의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는 관행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형사판결서를 둘러싼 다양한 부담 및 평가 구조 속에서 형성된 개별 법관들의 합리적 대응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설령 그 결과 형사판결서의 작성이 개별 법관에게 상당한 작성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무는 개별 법관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내용의 적정화, 특히 기재의 생략이나 축약을 중심으로 한 적정화 방안은 예규 등을 통하여 개별 재판부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법관들의 수용성을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적정화를 하는 것이 판결서 작성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줄 수 있는 부담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판결서 적정화 논의는 이를 전적으로 개별 법관의 선택이라는 문제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세한 이유 설시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사건을 제도적으로 선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작성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선별은 개별 재판부가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과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판결서의 적정화를 개별 법관 선택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운영 방식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4장

외국의 형사판결서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미국의 형사판결서

I. 연구의 대상

미국은 연방국가로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제3조(Article III)에 근거한 연방법원(United States Court)과 각 주별로 설치된 주법원(State Court)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방 및 주별로 구체적인 형사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 중 제1심 법원인 미국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의 사건처리 절차 및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구조

1. 범죄의 분류에 따른 연방지방법원 내 담당 사건의 구분

가. 범죄의 분류

미국의 범죄 분류는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범죄와 형사절차(United States Code, Title 18—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3559(a)에 규정되어 있다.[104]

해당 규정에는 구금형(Imprisonment)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A급부터 E급까지의 중죄(Felony), A급부터 C급까지의 경죄(Misdemeanor), 위경죄(Infraction)로 나누어져 있다.

문제되는 부분을 살피면, 구금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의 상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하고, 1년 이하, 6개월 초과의 경우는 A급 경죄, 6개월 이하, 30일 초과의 경우는 B급 경죄, 30일 이하, 5일 초과의 경우는, C급 경죄, 5일 이하 또는 구금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위경죄가 된다.

104) 이하에서는 미국의 연방법전 법률 기재방식에 따라 18 U.S.C. § 3559(a)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나. 연방 판사와 연방 부판사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에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연방 판사(District Judge)와 연방 부판사(Magistrate Judge)가 있다. 연방 판사는 미국 연방 헌법 제3조(Article III)에 근거하여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종신으로[105]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 부판사는 미국 의회가 제정한 28 U.S.C. § 631에 근거하여 각 연방지방법원의 연방 판사들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제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다. 담당 사건의 구분

연방 부판사는 경미 범죄[Petty Offenses, B급, C급 경죄(Class B, C Misdemeanors)와 위경죄(Infraction)를 포함한 개념이다(18 U.S.C. § 19)]를 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연방 부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동의한 A급 경죄(Class A Misdemeanors)의 경우에도 연방 부판사가 담당한다[18 U.S.C. § 3401(a)-(b), 28 U.S.C. § 636(a)(4)-(5)].

연방 판사는 원칙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의 모든 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주로 연방 부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 중죄 사건과 피고인이 연방 부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A급 경죄 사건을 담당한다.

라. 연방 부판사의 판결에 대한 불복 등

(1) 피고인은 연방 부판사의 형사 제1심 유죄 판결(Conviction)에 대해서 관할 연방지방법원의 연방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18 U.S.C. § 3402). 유죄 판결에 따른 형량(Sentence)에 관하여는 피고인 외에 정부[106]도 연방 판사에게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18 U.S.C. § 3742(a)-(b), (h)].

(2) 다만, 미국 수정 헌법 제5조(Fifth Amendment)에 기초한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107]에 따라, 정부는 연방 판사의 무죄 판결뿐 아니라 연방 부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108] 정부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저촉

105) 미국 헌법에는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라고 표현되어 있다.
106) 법률에는 'United States' 또는 'The Government'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를 이하에서는 문맥에 따라 '정부' 또는 '미국 정부'라고 표시하도록 한다. 정부(Government)는 미국 연방형사소송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미국(United States)를 의미한다. 다만, 실제 소송 수행은 연방 검사가 담당하므로, 기능적으로는 검사측에 해당한다.
107) 미국 헌법에는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c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18 U.S.C. § 3731 등[109]).

(3)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므로, 연방 판사가 직접 한 형사 제1심 판결 또는 연방 부판사의 형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따라 연방 판사가 한 판결 모두를 관할한다(28 U.S.C. § 1291).

2. 배심재판(Jury Trial) 및 비배심재판(Bench Trial)

가. 피고인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미국 수정 헌법 제6조(The Sixth Amendment)는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공정한 배심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형사 소추된 피고인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경미 범죄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110] 법정형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범죄는 중대 범죄(Serious offense)에 해당하므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았다.[111]

나. 유죄인정과 유죄협상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정한 경우 피고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고,[112]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11[113]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Guilty Plea)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정식의 공판(Trial)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곧바로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 측은 유죄 인정의 답변에 앞서 연방 형사소송규칙 11(c) 등의 절차에 따라, 검사 측과 형량 등에 관한 유죄협상(Plea Agreement)을 할 수 있다.

---

108) 배심재판 및 비배심재판 모두에 대하여 그러하다.

109) 해당 조항은 연방 판사의 판결 등에 관한 정부의 불복에 관한 규정이고, 연방 부판사의 판결 등에 관한 정부의 불복에 관한 규정은 여러 규정으로 산재되어 있다.

110) Duncan v. Louisiana, 391 U.S. 145 (1968).

111) Baldwin v. New York, 399 U.S. 66 (1970).

112) 포기 가능 여부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는 Patton v. United States, 281 U.S. 276 (1930)이, 배심재판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는 Singer v. United States, 380 U.S. 24 (1965), 배심재판을 포기하고 유죄인정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는 Boykin v. Alabama, 395 U.S. 238 (1969)이 있다.

113) Rule 11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형사소송규칙을 인용 시 Fed. R. Crim. P. 11(b)(1)과 같이 표시하는 바, 아래에서 개별적인 각 조항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다. 배심재판을 받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형이 6개월을 초과하는 A급 경죄나 중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배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 비배심재판을 받는 경우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식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경미 범죄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연방 부판사에 의해 비배심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방 형사소송규칙 23(a)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A급 경죄나 그 이상의 중범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서면으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정부가 동의하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는 해당 재판은 비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

III.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1심 형사판결서 등 작성방식

1. 연방지방법원 형사판결서의 기본적인 작성방식

가. 연방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형사판결서의 기재사항

연방 형사소송규칙

규칙(Rule) 32. 형량선고(Sentencing)와 판결(Judgment)

(k) 판결

(1)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the judgment of conviction)에서 법원은 답변(the plea), 배심원 평결(the jury verdict) 또는 법원의 판단(court's findings), (유죄 여부에 대한) 판결(the adjudication) 및 형량선고(the sentence)를 명시해야 한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found not guilty)을 받았거나 절차에서 해방될 자격(entitled to be discharged)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렇게 명령해야 한다(The court must so order). 판사는 판결서에 서명(sign)해야 하고 서기는 판결서를 입력해야 한다.

연방 형사소송규칙 32(k)(1)은 위와 같이 판결서의 법정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제1심 유죄판결서에는 피고인의 답변(Plea), 배심원의 평결(Jury verdict) 또는 법원의 판단(Court's findings), (유죄 여부에 대한) 판결(Adjudication), 형량선고(Sentence), 판사의 서명(Sign)이 있어야 한다. 무죄 판단(Found not guilty)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The court must so order). 따라서 형사판결서에는 연방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위와 같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 연방지방법원의 구체적인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1) 형사판결서의 작성

연방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는 원칙적으로 형사판결서(Judgment in a Criminal Case)라는 제목의 일정한 정형화된 양식[114]에 따라 만들어진 서류에 체크를 하고 필요한 공란을 채우는 형태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그 양식에 따라 공소사실[115](Count)별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여부, 각 공소사실의 유죄 또는 무죄 여부,[116] 미국 정부의 신청에 의해 기각되는 개별 공소사실, 형벌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형태로 유죄판결서를 작성하고,[117] 이러한 형사판결서 기재 양식은 배심재판과 비배심재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즉, 형사판결서에는 앞서 본 연방 형사소송규칙 32(k)(1)에서 규정한 사항과 형벌 등과 그 집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뿐이고, 위와 같은 사항 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 등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

(2) 양형이유서의 작성

연방지방법원은 형량선고(Sentencing)를 할 경우 공개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18 U.S.C. § 3553(c)].

---

114) 이러한 판결서 양식은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의 승인을 얻어 배포된다.
115) 영미법의 Count는 우리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념 중 가장 가까운 개념인 공소사실로 번역하도록 한다.
116) 전부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AO 245A라는 별도 양식이 사용되고 있다.
117) https://www.uscourts.gov/forms-rules/forms/criminal-forms 참조. 위 웹페이지에는 피고인이나 사건의 특성, 판결의 내용에 따라 AO 245B부터 AO 245E까지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2026. 4. 20. 확인).

미국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에 의해 정해진 미국 연방 양형기준(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은 A급 경죄 이상의 죄에 적용된다.[118] 그리고 각 연방지방법원의 법원장(Chief Judge)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양형위원회가 승인하고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형량, 선고된 범죄, 피고인의 연령, 인종, 성별, 그리고 양형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면보고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서면보고서에는 미국 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가 발행하고, 미국 양형위원회가 승인한 양식에 따른 서면 양형이유서(Written Statement of Reasons)가 포함되어야 한다[28 U.S.C. § 994(w)].

이에 따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중죄 및 A급 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할 경우 정형화된 체크리스트 형식을 중심으로 한 양형이유서 양식에 따른 양형이유서(Statement of Reasons)를 판결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함께 작성하고 있다.[119]

양형이유서 양식은 양형 기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양형 이유에 관한 기재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 무죄판결서의 작성

일부 유죄,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앞서 본 형사판결서양식을 활용하나,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서(Judgment of Acquittal)라는 제목의 양식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형적인 문구가 기재된 형태로 형사판결서가 작성된다.[120]

> The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IT IS ORDERED that the Defendant is acquitted, discharged, and any bond exonerated.
> (번역)
> 피고인에게 죄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을 무죄로 하고,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며, 모든 보석조건을 해제하도록 명령합니다.

118) https://www.ussc.gov/guidelines/2025-guidelines-manual 중 §1B1.9. Class B or C Misdemeanors and Infractions 참조(미국 연방양형위원회, 양형 가이드라인 매뉴얼, 2026. 4. 20. 확인).

119) 양형이유서 양식에는 '모든 중죄 및 A급 경죄의 경우 양형이유서 양식의 I, II, III, IV, V, VII 항목들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한다(Sections I, II, III, IV, V, and VII of the Statement of Reasons form must be completed in all felony and Class A misdemeanor cases)'라고 기재 되어 있다(필수 기재사항에서 빠진 항목 VI는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이다).

120) 무죄판결서는 AO 245A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양식 자체는 AO 245B 등 다른 형사판결 양식과 달리 연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4) 판결 이유의 작성

연방 형사소송규칙

규칙(Rule) 23. 배심원(Jury) 또는 비배심원(Nonjury) 재판(Trial)

(c) 비배심원 재판

배심원 없이 재판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find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을 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 전(before the finding of guilty or not guilty)에 요청하는(requests) 경우,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in open court) 또는 서면에 의한 결정 또는 의견으로(in a written decision or opinion)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고지(state its specific findings of fact)하여야 한다.

배심재판의 경우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을 한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유죄 여부에 관하여 평결(Verdict)을 할 뿐이고, 그 평결에 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일반 평결의 원칙). 다만, 평결 중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평결(Special Verdict)[121]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특별평결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배심원이 평결의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122]

이러한 배심원 재판에서는 배심원에 의해 유죄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판사는 앞서 본 양형에 관한 설명 외에 별도로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연방 형사소송규칙 23(c)는 비배심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및 무죄의 판단(find the defendant guilty or not guilty)을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요청을 하는 경우, 판결서와 별도로 법원이 구체적 사실 판단(specific findings of fact)에 관하여 공개 법정에서 진술(state in open court)을 하거나, 서면으로 결정 또는 의견을 제시(state in a written decision or opinion)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123] 이러한 사실 판단은 피고인이 유죄

121) 특별평결은 단순 유죄 여부에 관한 평결을 넘어서, 배심원이 특정 판단의 근거를 선택하는 형태로 제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8 U.S.C. § 4242(b)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오직 정신이상을 이유로 한 무죄' 여부(not guilty only by reason of insanity)에 관한 평결이다.

122) 미국의 경우 형사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평결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김종구,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2025), 17면.

123) 다만,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상 검사의 상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실무상 이러한 구체적 사실인정의 중요성은 유죄판결에서 더 크다.

판결을 받게 되고 항소를 하는 경우에 주된 유용성이 있다고 한다.[124]

이는 앞서 작성하는 판결서와 별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판사는 공개법정에서 그 사실판단의 이유를 구술로 설명하거나, 별도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서면은 의견서(Opinion 또는 Memorandum Opinion)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Finding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이라는 제목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으나,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실인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증거를 설시하면서 사실 인정을 하고, 법적 결론 부분에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입증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며, 사실관계를 해당 법률조항에 포섭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만,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실 주장 등에 대한 논쟁을 자세하게 기재하기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결론을 위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요소를 기술한 후 이를 적용하는 형태로 기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배심원 지시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규칙(Rule) 30. 배심원 지시(Jury Instructions)

(a) 일반 원칙. 당사자는 법원이 그 요청서에 명시된 법률에 대해 배심원에게 지시를 주도록(instruct the jury)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 또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한 그보다 이른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청을 할 때, 요청한 당사자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 요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변론을 종결(closing arguments)하기 전에 요청된 지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의도인지(how it intends to rule)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c) 지시를 내리는 시간. 법원은 변론이 완료되기 전이나 후에 또는 두 시점 모두 배심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d) 지시에 대한 이의. 지시의 특정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청받은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배심원이 평의(deliberate)를 위해 퇴장하기 전에 구체적인

124) 2 Charles Alan Wright et al.,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Criminal § 374 (4th ed.) (Thomson Reuters Westlaw에서 열람).

이의 내용과 이의 제기의 근거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배심원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요청 시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주어져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규칙 52(b)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에서의 검토(Review)에서 배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유죄 또는 무죄가 가려지므로 형사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구체적인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심재판에서 판사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배심원은 사실에 관한 결정만을 한다.[125]

그 대신 판사는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지시를 통하여 사안에 적용될 각종 증거에 관한 법칙이나 법리를 확정하고, 이를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판사는 당사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적인 법률문제에 관해 배심원에게 지시를 내릴 의무가 있다.[126] 이러한 배심원 지시에는 배심원이 평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기준이 담겨야 하므로 배심원 지시는 상세하게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배심원 지시에는 판결을 위한 각종 법리와 사실인정과 관련한 증거 법칙 등이 망라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개별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심원 지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방항소법원 별로 매우 상세한 배심원 지시 양식(Pattern Jury Instructions)을 마련해 두고 있다.[127] 여기에서는 다수의 연방 범죄를 망라하고 있고, 연방대법원 판례 및 항소법원 판례 등에 따른 해당 법령의 해석이 되어 있고 범죄별로 필요한 특별평결(Special Verdict) 양식 등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평결을 하면서 법률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판사가 배심원 지시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Fact-finding), 확인된 사실에 배심원 지시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유죄평결을 한 것이 된다. 즉, 배심원 지시를 확인하는

125)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HANDBOOK FOR TRIAL JURORS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Rev. 8/12), 1면.

126) 2A Charles Alan Wright et al.,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Criminal § 485 (4th ed.) (Thomson Reuters Westlaw에서 열람).

127) 미국의 경우 항소법원 별로 선례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연방대법원 판결 외에 주로 당해 항소법원의 선례를 지시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방항소법원의 경우에는 배심원 지시 양식을 외부에 공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11 연방 항소법원의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11.uscourts.gov/pattern-jury-instructions (2026. 3. 3. 확인).

것만으로도, 해당 재판에서 어떠한 입증 원칙 등이 사용되었고, 어떠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배심원이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형사공판 과정에서는 배심원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 측(검사)과 피고인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배심원 지시 초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배심원 지시 사항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배심원 지시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채택하지만, 배심원 지시 채택을 위한 공방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고 그 채택 여부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자체가 배심원 지시에 담기게 되어, 배심원 지시의 적정성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형사판결서 등의 검토

가. 무죄를 다투는 배심재판의 경우

(1) United States v. BANKMAN-FRIED(유죄 사건)

(가) 형사판결서

우선 배심재판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이루어진 실제 유죄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아래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형사판결서는 2024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주요사건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경영자인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에 대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형사판결서이다[United States v. BANKMAN-FRIED, 1:22-cr-00673, (S.D.N.Y.)].[128)]

판결서에 의하면 샘 뱅크먼프리드는 전기통신이용 사기(Wire Fraud) 등 7개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고, 루이스 A. 카플란(Lewis A. Kaplan) 연방 판사는 2024. 3. 28. 피고인 샘 뱅크먼프리드에게 구금형 300개월(25년), 부과금(Assessment) 700달러, 추징금(Forfeit) 11,020,000,000달러를 선고하였다.[129)]

128)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631291/united-states-v-bankman-fried/?page=3 중 424번 (2026. 5. 20. 확인). 한편, 양형이유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개되지 아니하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가 법정에서 구술로 설명한 양형이유는 위 웹페이지의 426번에 있는 선고기일 녹취록(Transcript)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추징금이 10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판결이나 실제 피고인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해당 판결서에는 AO 245B 양식에 따라 매우 간결하게 재판의 결론과 앞서 본 판결서에 필요한 법정기재사항 및 형 집행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미국 형사판결서 중 유죄의 판단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기재된 1면 및 2면을 먼저 살펴본다.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1 (form modified within District on Sept. 30, 201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v.
Samuel Bankman-Fried

JUDGMENT IN A CRIMINAL CASE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USM Number: 37244-510

Marc L. Mukasey, Esq.
Defendant's Attorney

THE DEFENDANT:

☐ pleaded guilty to count(s)

☐ pleaded nolo contendere to count(s) which was accepted by the court.

☑ was found guilty on count(s) (S6)1 through (S6)7 after a plea of not guilty.

The defendant is adjudicated guilty of these offenses:

Title & Section	Nature of Offense	Offense Ended	Count
18 USC §§ 1343 and 2	Wire Fraud	11/30/2022	(S6) 1 & 3
18 U.S.C. § 1349	Wire Fraud Conspiracy	11/30/2024	(S6) 2 & 4
18 U.S.C. § 371	Securities Fraud Conspiracy	11/30/2024	(S6) 5

The defendant is sentenced as provided in pages 2 through 7 of this judgment. The sentence is imposed pursuant to the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 The defendant has been found not guilty on count(s)

☑ Count(s) All Open ☐ is ☑ are dismissed on the motion of the United States.

It is ordered that the defendant must notify the United States attorney for this district within 30 days of any change of name, residence, or mailing address until all fines, restitution, costs, and special assessments imposed by this judgment are fully paid. If ordered to pay restitution, the defendant must notify the court and United States attorney of material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3/28/2024
Date of Imposition of Judgment

Signature of Judge

Hon. Lewis A. Kaplan, U.S.D.J.
Name and Title of Judge

3/29/24
Date

129) 세부 진행 경과와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대부분의 문서도 위 웹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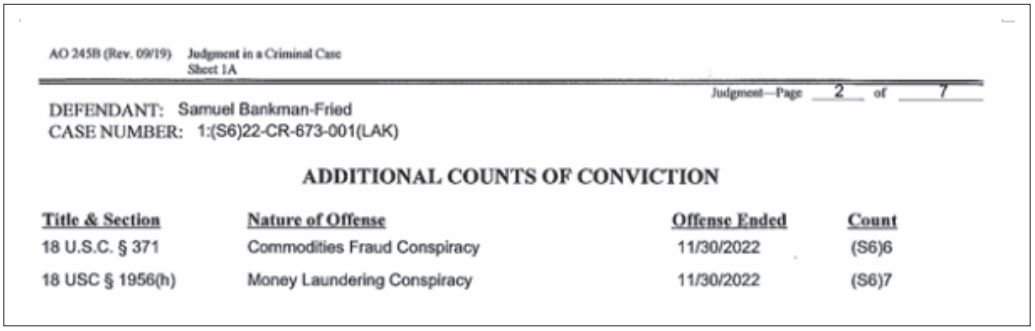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1A

Judgment—Page 2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ADDITIONAL COUNTS OF CONVICTION

Title & Section	Nature of Offense	Offense Ended	Count
18 U.S.C. § 371	Commodities Fraud Conspiracy	11/30/2022	(S6)6
18 USC § 1956(h)	Money Laundering Conspiracy	11/30/2022	(S6)7

형사판결서의 1면에는 주로 유 · 무죄의 판결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상단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대리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 따른 3가지 항목이 체크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유죄인정 답변을 한 공소사실[pleaded guilty to count(s)], 법원이 승인한 불항쟁 답변[130]을 한 공소사실[pleaded nolo contendere to count(s)], 피고인이 유죄가 아니라고 답변한 후(after a plea of not guilty),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was found guilty on count(s)]이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우측에 공소사실 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양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S6(1)부터 S6(7)까지의 공소사실(Count)이 피고인이 유죄가 아니라 답변한 후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이라는 취지로 체크가 되어 있다.

그 하단에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되었다는 기재(The defendant is adjudicated guilty of these offenses)가 있고, 아래에 각 해당 범죄 즉,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범죄와 관련한 적용법조(Title & Section), 죄명(Nature of Offense), 범행종료일(Offense Ended), 공소사실 번호(Count)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는 5개의 죄명으로 구성된, S6(1)[131]부터 S6(7)까지 7개의 공소사실이나, 이 페이지에는 3개의 주요 죄명[S6(1), (3)은 Wire Fraud(전기통신 사기), S6(2), (4)는 Wire Fraud Conspiracy(전기통신 사기 공모), S6(5)는 Securities Fraud Conspiracy(증권 사기 공모)]으로 구성된 S6(1)부터 S6(5)까지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

130) 이는 유죄를 직접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유죄인정의 답변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식의 공판절차 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131) 형사판결서에 기재된 S6이란 6차 대체기소장(Superseding Indictment)을 의미하고, S6(1)은 그중 첫번째 공소사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고, 나머지 죄명에 따른 범죄[S6(6)은 Commodities Fraud Conspiracy(상품 사기 공모), S6(7)은 Money Laundering Conspiracy(돈세탁 공모)]는 판결서 2면에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체크란이 있는데[The defendant has been found not guilty on count(s)], 이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이 없기에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신청에 의해 기각되는 공소사실을 체크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나머지 공소사실[Count(s) All Open]은 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리고 판결서 제1면 하단 부분에는 판결 선고일, 판사의 서명, 판사의 이름과 직책,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미국 형사판결서의 3페이지부터 7페이지(마지막 페이지)이다.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Criminal Case
Sheet 2 — Imprisonment

Judgment — Page 3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IMPRISONMENT

The defendant is hereby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to be imprisoned for a total term of:

The terms on each of counts (S6)1, (S6)2 and (S6)7 shall be served concurrently with each other. The term on each of counts (S6)3 and (S6)4 shall be served concurrently with each other. The first 180 months of the terms on each of counts (S6)3 and (S6)4 shall be served concurrently with the terms on Counts (S6)1, (S6)2 and (S6)7 and the balance of 60 months on the terms on each of counts (S6)3 and (S6)4 shall be served consecutively to the terms on counts (S6)1, (S6)2 and (S6)7. IT IS FURTHER ADJUDGED that he be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or a term of imprisonment of 60 months on each of counts (S6)5 and (S6)6. The terms counts (S6)5 and (S6)6 shall be served concurrently with each other, consecutively to those on Counts (S6)1, (S6)2 and (S6)7, and consecutively with the 60 month portions of the terms on Counts (S6)3 and (S6)4 that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o the terms on counts (S6)1, (S6)2 and (S6)7. The foregoing results in an aggregate term of imprisonment of 300 months. You thereafter shall serve a term of 3 years on supervised release, and you shall pay the mandatory special assessment of $700.

✓ The Court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the Bureau of Prisons:

The Court strongly recommends to the BOP that it consider a Management Variable at initial designation to designate defendant to a medium security facility or any lower security institution the BOP considers appropriate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defendant has no criminal history, and the Court has no reason to believe that defendant has any history of violence or that he would initiate any act of violence against another prisoner or any BOP staff. He therefore does not require the close confinement of a maximum facility institution that in part is designed to present such acts. Second, defendant's notoriety, his association with vast wealth regardless of his present and actual financial resources, and his autism and social awkwardness are likely to make him more than usually vulnerable to misconduct by other inmates in the environment of a maximum security facility.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designated facility be as close to the San Francisco - Bay Area as possible to facilitate family visitation

✓ The defendant is remanded to the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arshal.

RETURN

I have executed this judgment as follows:

Defendant delivered on _____ to _____

at _____, with a certified copy of this judgment.

_____
UNITED STATES MARSHAL

By _____
DEPUTY UNITED STATES MARSHAL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3 — Supervised Release

Judgment—Page 4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SUPERVISED RELEASE

Upon release from imprisonment, you will be on supervised release for a term of:

3 years of supervised release on each of Counts (S6) 1 through 7, the terms to run concurrently, subject to the mandatory, the standard and the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You must participate in an outpatient mental health treatment program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Probation Office. You must continue to take any prescribed medications unless otherwise instructed by the health care provider.

You must contribute to the cost of services rendered based on your ability to pay and the availability of third-party payments. The Court authorizes the release of available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evaluations and reports, including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 to the health care provider.

You must provide the probation officer with access to any requested financial information.

You must not incur new credit charges or open additional lines of credit without the approval of the probation officer unless you are in compliance with the installment payment schedule.

It is recommended that you be supervised by the district of residence.

MANDATORY CONDITIONS

1. You must not commit another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2. You must not unlawfully possess a controlled substance.
3. You must refrain from any unlawful use of a controlled substance. You must submit to one drug test within 15 days of release from imprisonment and at least two periodic drug tests thereafter, as determined by the court.
   - ☑ The above drug testing condition is suspended, based on the court's determination that you pose a low risk of future substance abuse. *(check if applicable)*
4. ☐ You must make restitution in accordance with 18 U.S.C. §§ 3663 and 3663A or any other statute authorizing a sentence of restitution. *(check if applicable)*
5. ☑ You must cooperate in the collection of DNA as directed by the probation officer. *(check if applicable)*
6. ☐ You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34 U.S.C. § 20901, *et seq.*) as directed by the probation officer, the Bureau of Prisons, or any state sex offender registration agency in the location where you reside, work, are a student, or were convicted of a qualifying offense. *(check if applicable)*
7. ☐ You must participate in an approved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check if applicable)*

You must comply with the standard conditions that have been adopted by this court as well as with any other conditions on the attached page.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3A — Supervised Release

Judgment—Page 5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STANDARD CONDITIONS OF SUPERVISION

As part of your supervised release, you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standard conditions of supervision. These conditions are imposed because they establish the basic expectations for your behavior while on supervision and identify the minimum tools needed by probation officers to keep informed, report to the court about, and bring about improvements in your conduct and condition.

1.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 in the federal judicial district where you are authorized to reside within 72 hours of your release from imprison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instructs you to report to a different probation office or within a different time frame.
2. After initially reporting to the probation office, you will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court or the probation officer about how and when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r, and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r as instructed.
3. You must not knowingly leave the federal judicial district where you are authorized to reside without first getting permission from the court or the probation officer.
4. You must answer truthfully the questions asked by your probation officer.
5. You must live at a place approved by the probation officer. If you plan to change where you live or anything about your living arrangements (such as the people you live with),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before the change. If notifying the probation officer in advance is not possible due to unanticipated circumstanc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of becoming aware of a change or expected change.
6. You must allow the probation officer to visit you at any time at your home or elsewhere, and you must permit the probation officer to take any items prohibited by the conditions of your supervision that he or she observes in plain view.
7. You must work full time (at least 30 hours per week) at a lawful type of employ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excuses you from doing so. If you do not have full-time employment you must try to find full-time employ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excuses you from doing so. If you plan to change where you work or anything about your work (such as your position or your job responsibiliti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before the change. If notifying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in advance is not possible due to unanticipated circumstanc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of becoming aware of a change or expected change.
8. You must not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someone you know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If you know someone has been convicted of a felony, you must not knowingly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that person without first getting the permis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9. If you are arrested or question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10. You must not own, possess, or have access to a firearm, ammunition, destructive device, or dangerous weapon (i.e., anything that was designed, or was modifi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causing bodily injury or death to another person such as nunchakus or tasers).
11. You must not act or make any agreement with a law enforcement agency to act as a confidential human source or informant without first getting the permission of the court.
12. You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probation officer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supervision.

U.S. Probation Office Use Only

A U.S. probation officer has instructed me on the conditions specified by the court and has provided me with a written copy of this judgment containing these conditions.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se conditions, see *Overview of Probation and Supervised Release Conditions*, available at: www.uscourts.gov.

Defendant's Signature _____ Date _____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5 — Criminal Monetary Penalties

Judgment — Page 6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CRIMINAL MONETARY PENALTIES

The defendant must pay the total criminal monetary penalties under the schedule of payments on Sheet 6.

	Assessment	Restitution	Fine	AVAA Assessment*	JVTA Assessment**
TOTALS	$ 700.00	$	$	$	$

☑ The Court declines to order restitu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ase and the number of victims. It instead grants the government's motion to authorize the United States to compensate victims with finally forfeited assets through a remission process, as restitution would be impractical in this case.

☐ The defendant must make restitution (including community restitution) to the following payees in the amount listed below.

If the defendant makes a partial payment, each payee shall receive an approximately proportioned payment, unless specified otherwise in the priority order or percentage payment column below. However, pursuant to 18 U.S.C. § 3664(i), all nonfederal victims must be paid before the United States is paid.

Name of Payee	Total Loss***	Restitution Ordered	Priority or Percentage

TOTALS	$ 0.00	$ 0.00

☐ Restitution amount ordered pursuant to plea agreement $ _____

☐ The defendant must pay interest on restitution and a fine of more than $2,500, unless the restitution or fine is paid in full before the fifteenth day after the date of the judgment, pursuant to 18 U.S.C. § 3612(f). All of the payment options on Sheet 6 may be subject to penalties for delinquency and default, pursuant to 18 U.S.C. § 3612(g).

☐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defendan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ay interest and it is ordered that:

☐ the interest requirement is waived for the ☐ fine ☐ restitution.

☐ the interest requirement for the ☐ fine ☐ restitution is modified as follows:

* Amy, Vicky, and Andy Child Pornography Victim Assistance Act of 2018, Pub. L. No. 115-299.
** Justi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Act of 2015, Pub. L. No. 114-22.
*** Findings for the total amount of losses are required under Chapters 109A, 110, 110A, and 113A of Title 18 for offenses committed on or after September 13, 1994, but before April 23, 1996.

AO 245B (Rev. 09/19) Judgment in a Criminal Case
Sheet 6 — Schedule of Payments

Judgment — Page 7 of 7

DEFENDANT: Samuel Bankman-Fried
CASE NUMBER: 1:(S6)22-CR-673-001(LAK)

SCHEDULE OF PAYMENTS

Having assessed the defendant's ability to pay, payment of the total criminal monetary penalties is due as follows:

A ☑ Lump sum payment of $ 700.00 due immediately, balance due

☐ not later than _____, or
☐ in accordance with ☐ C, ☐ D, ☐ E, or ☐ F below; or

B ☐ Payment to begin immediately (may be combined with ☐ C, ☐ D, or ☐ F below); or

C ☐ Payment in equal _____ *(e.g., weekly, monthly, quarterly)* installments of $ _____ over a period of _____ *(e.g., months or years)*, to commence _____ *(e.g., 30 or 60 days)* after the date of this judgment; or

D ☐ Payment in equal _____ *(e.g., weekly, monthly, quarterly)* installments of $ _____ over a period of _____ *(e.g., months or years)*, to commence _____ *(e.g., 30 or 60 days)* after release from imprisonment to a term of supervision; or

E ☐ Payment during the term of supervised release will commence within _____ *(e.g., 30 or 60 days)* after release from imprisonment. The court will set the payment plan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defendant's ability to pay at that time; or

F ☐ Special instruc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criminal monetary penalties:

Unless the court has expressly ordered otherwise, if this judgment imposes imprisonment, payment of criminal monetary penalties is due during the period of imprisonment. All criminal monetary penalties, except those payments made through 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Inmate Financial Responsibility Program, are made to the clerk of the court.

The defendant shall receive credit for all payments previously made toward any criminal monetary penalties imposed.

☐ Joint and Several

Case Number Defendant and Co-Defendant Names *(including defendant number)*	Total Amount	Joint and Several Amount	Corresponding Payee, if appropriate

☐ The defendant shall pay the cost of prosecution.

☐ The defendant shall pay the following court cost(s):

☑ The defendant shall forfeit the defendant's interest in the following property to the United States:
$11,020,000,000, including the specific property identified in the Preliminary Order of Forfeiture.

Payments shall be applied in the following order: (1) assessment, (2) restitution principal, (3) restitution interest, (4) AVAA assessment, (5) fine principal, (6) fine interest, (7) community restitution, (8) JVTA assessment, (9) penalties, and (10) costs, including cost of prosecution and court costs.

3면 이하에서는 형량선고(Sentencing)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3면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금형(Imprisonment)에 관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각 죄명별로 형량을 산정하면서 구금형의 합계를 300개월(25년)로 산정하였고, 3년간의 감독석방(Supervised Release[132]) 및 700달러의 특별 부과금[133]을 부과하였다. 4면 및 5면에서는 감독석방에 관한 사항 및 그와 관련한 각종 준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6페이지부터는 형사 금전 제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과금, 벌금, 배상금, 추징금 등이 나열되어 있으며, 앞에서 본 700달러의 부과금 관련 사항 및 추징금 11,020,000,000달러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배심원 지시 및 평결 관련

위에서 본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건은 배심재판으로 이루어졌다. 정식 공판(Trial)에 앞서 정부와 피고인 측은 배심원 지시에 관하여 수차례 공방을 지속하였다.[134] 그 후 배심원 평의에 앞서 판사는 상세하게 배심원에게 지시 및 설명을 하였고,[135] 배심원들은 이러한 판사의 지시 및 설명에 따라 평의한 후 만장일치로 7개의 공소사실(Count) 모두에 대해서 유죄로 평결을 하였다.

배심재판 녹취록을 살펴보면, 연방 판사는 배심원에게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에 대한 일반적 법리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 중 어떠한 종류의 증거를 고려하거나 집중을 하여야 하는지,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은 배심원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등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변호사 등이 법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배심원에 대한 변론 등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배심원 지시에 의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의 해석론 및 증

132) 이는 집행유예를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과 달리 형기종료 후 집행된다(18 U.S.C. § 3583 참조).
133) 미국의 경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벌과 별개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이 별도로 부과된다(18 U.S.C. § 3013 참조). 중죄(Felony)를 저지른 경우에는 죄당 100달러가 부과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7개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700달러가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134) 구체적인 공방 등은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631291/united-states-v-bankman-fried 참조 (2026. 4. 20. 확인).
135) 해당사건의 배심재판 녹취록 중 배심원 지시 관련 녹취록은 아래 링크 참조(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nysd.590940/gov.uscourts.nysd.590940.384.0.pdf) (2026. 4. 20. 확인). 해당 녹취록의 27면부터 120면까지 녹취록 분량만 100면에 가까운 분량으로, 연방 판사가 매우 상세하게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내용 및 구성요건, 관련되는 법리 및 판례, 입증 요소, 구체적 판단 방법 및 배심원이 판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등을 배심원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 평가의 법률적 기준 등은 기록에 상세하게 남게 되므로 이러한 배심원 지시만으로 배심원의 몫인 최종적인 증거평가 및 그에 따른 사실인정 부분을 제외한 증거평가의 법칙 및 방법, 주의사항,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및 해석과 그 적용 방법을 당사자나 상급심이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United States v. SUSSMANN(무죄 사건)

여기에서는 배심재판에 의하여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주요사건의 실제 무죄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하고자 하는 형사판결서는 제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존 더럼(John Durham) 특별검사 팀의 기소에 의해 진행된 배심재판에 따라 2022. 5. 31.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허위 제보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클 서스만(Michael Sussmann) 변호사에 대한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형사판결서이다[United States v. SUSSMANN, 1:21-cr-00582, (D.D.C.)].[136]

배심원단은 평의를 마친 후, 법원에 아래와 같이 평결서(Verdict Form)를 제출하였고, 크리스토퍼 R. 쿠퍼(Christopher R. Cooper) 연방 판사는 무죄평결(Not Guilty)을 배심원단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평결을 서기에게 등록하게 지시한 후, 피고인 마이클 서스만에게 모든 공판 전 조건을 해제한다고 고지하고 재판 절차를 마쳤다.

136) 판결서 및 각종 기록은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0390583/united-states-v-sussmann 참조 (2026. 3. 3.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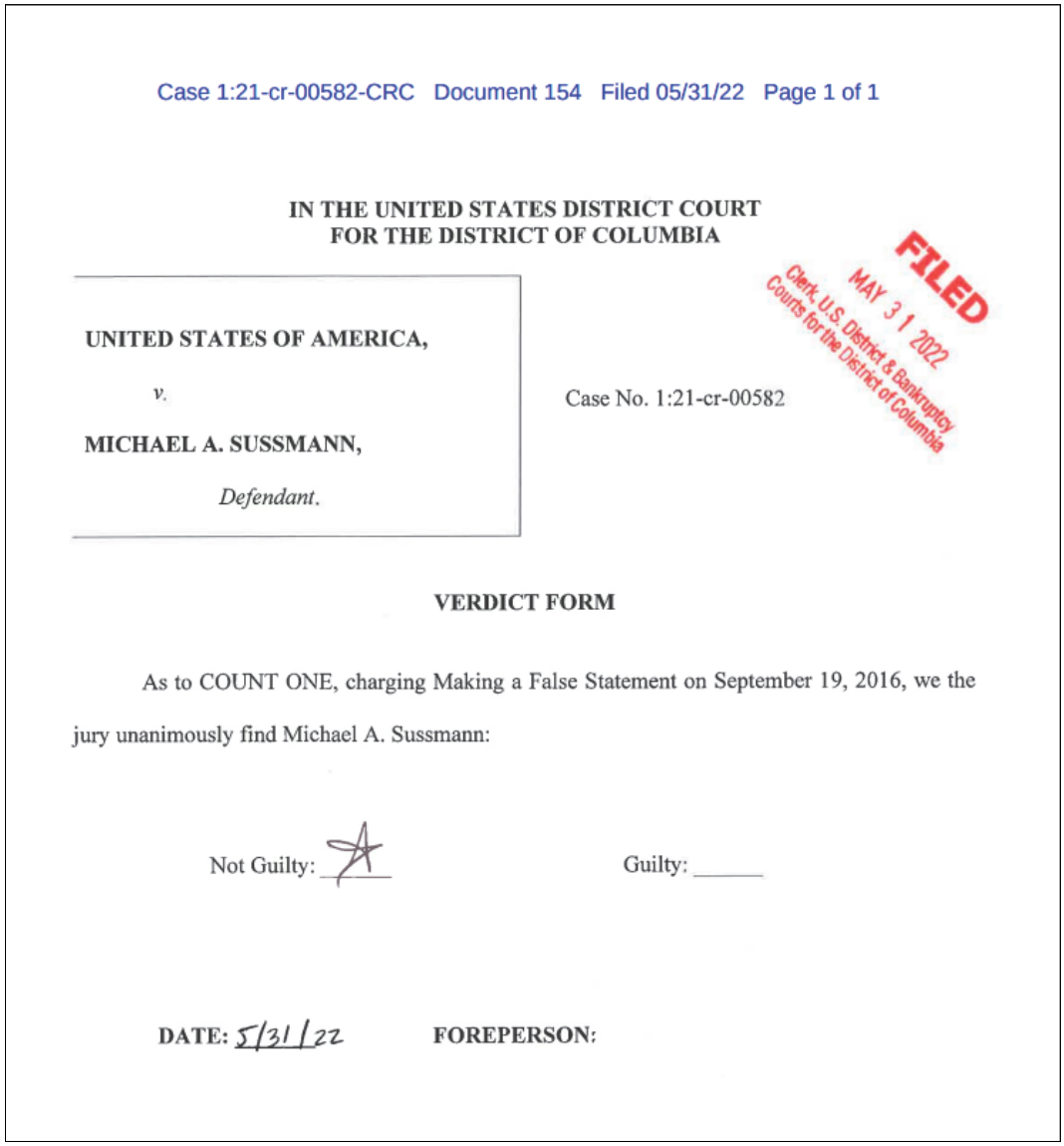

Case 1:21-cr-00582-CRC Document 154 Filed 05/31/22 Page 1 of 1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FILED
MAY 31 2022
Clerk, U.S. District & Bankruptcy
Court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HAEL A. SUSSMANN,

Defendant.

Case No. 1:21-cr-00582

VERDICT FORM

As to COUNT ONE, charging Making a False Statement on September 19, 2016, we the jury unanimously find Michael A. Sussmann:

Not Guilty: ☆ Guilty: _____

DATE: 5/31/22 FOREPERSON:

이에 따라 연방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이고, 절차에서 해방되고, 보석 조건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AO 245A 양식에 따른 무죄판결서를 작성하였다. 배심원 재판에 대한 판단이므로 무죄판결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정형적인 문구 외에 별다른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무죄 이유 등의 고지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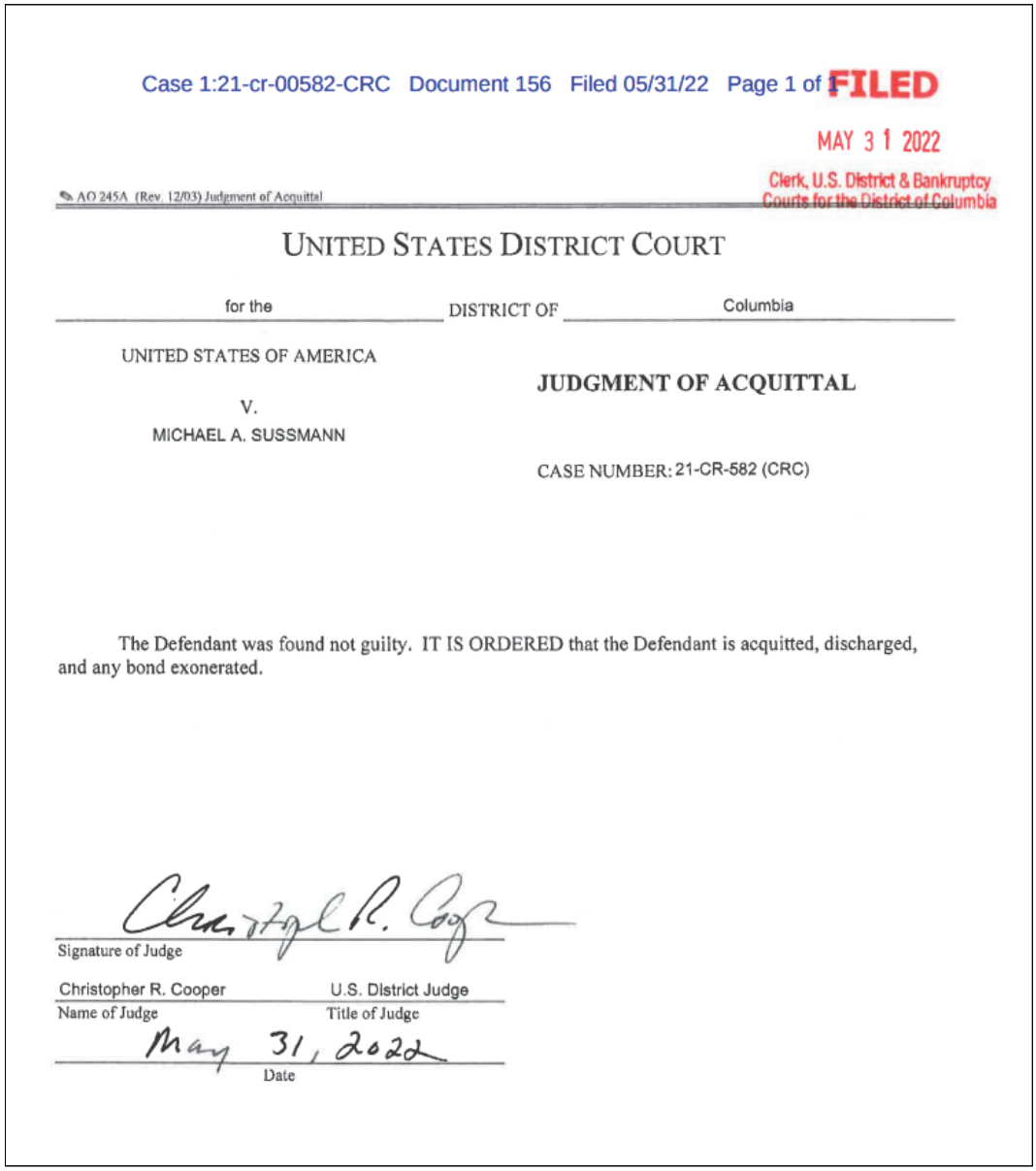

Case 1:21-cr-00582-CRC Document 156 Filed 05/31/22 Page 1 of 1

FILED

MAY 31 2022

Clerk, U.S. District & Bankruptcy Court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AO 245A (Rev. 12/03) Judgment of Acquittal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UNITED STATES OF AMERICA

V.

MICHAEL A. SUSSMANN

JUDGMENT OF ACQUITTAL

CASE NUMBER: 21-CR-582 (CRC)

The Defendant was found not guilty. IT IS ORDERED that the Defendant is acquitted, discharged, and any bond exonerated.

Signature of Judge

Christopher R. Cooper — U.S. District Judge

Name of Judge — Title of Judge

May 31, 2022

Date

나. 무죄를 다투는 비배심재판의 경우

(1) 비배심재판의 경우 형사판결서의 작성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재판과 다르지 않게 동일한 양식을 이용하여 형사판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다만,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연방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유 · 무죄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법적 결론에 관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비배심재판의 경우 작성되는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 United States v. ALLEN(구두에 의한 판결)

사실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구두 진술내용을 속기록(Transcript)으로 남기거나, 구두로 진술한 사항에 관한 대본(Script)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로 미국의 주요 사건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의회 진입 사건 중 하나인 United States v. ALLEN, 1:23-cr-00261, (D.D.C.) 사건을 살펴본다. 해당 사건의 경우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연방 판사 어밋 P. 메흐타(Amit P. Mehta)에 의하여 비배심재판(Bench Trial)으로 진행되었는데 8개의 공소사실(Count)로 기소되었고, 그중 7개의 공소사실(Count 1, 3, 4, 5, 6, 7, 8)이 유죄로 인정되고, 1개의 공소사실(Count 2)이 유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구금형 24개월이 선고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낭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평결 대본(Verdict Script)을 기록에 포함하였다.[137]

대본을 살펴보면, 배경(Background)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Finding of Fact 부분은 우선 사전적 인정(Preliminary findings)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무렵의 상황이나 전제가 되는 일종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우선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피고인이 당시 행하였던 전반적인 행위를 시간적 순서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 후 아래에서는 공소사실별로 법적인 판단을 기재하고 있는데, 기소된 혐의가 무엇이고,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하는 구성요건 요소(Element)가 무엇인지 기술한 후, 증거와 앞서

137) 판결서 및 각종 기록 등은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664302/united-states-v-allen/ 참조, 해당 스크립트는 낭독용으로 만들어진 형식이기는 하나 분량이 약 10페이지에 달한다.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58253/gov.uscourts.dcd.258253.52.0.pdf 참조 (2026. 4. 15. 확인).

인정한 사실관계 및 추가로 설시하는 사실 등을 전제로 이를 인정하는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다. 아래는 공소사실별로 법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중 공소사실 1(Count 1)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하는 부분이다.

공소사실 1 : 시민 소요 중 법집행관 방해(Obstructing Officers During a Civil Disorder)

공소장의 공소사실 1은 18 U.S.C. § 231(a)(3)를 위반하여 시민 소요 중 경찰관들을 방해한 혐의로 Mr. Allen을 기소한다.

이 범죄들에 대하여 피고인(Defendant)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하여, 나는 정부가 다음의 구성요건(Element) 각각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 증명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첫째, 피고인은 법 집행관들을 방해하거나(obstructing), 지연시키거나(impeding), 간섭할(interfering) 의도된 목적(intended purpose)을 가지고 고의로(knowingly)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했다.

둘째, 피고인의 실제 행위 또는 행위 시도 당시, 법 집행관들은 시민 소요가 발생하거나 그 도중(incident to and during a civil disorder) 그들의 공식적인 직무의 적법한 수행에 종사하고 있었다.

셋째, 그 시민 소요는 상거래(commerce)나 상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물품이나 상품의 이동, 또는 연방의 보호를 받는(federally protected function) 어떠한 기능의 수행이나 실행을 어떤 방식이나 정도로든 방해했거나, 지연시켰거나, 악영향을 미쳤다.

양 당사자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구내의 USCP(미국 국회의사당 경찰) 및 MPD(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이 18 U.S.C. § 1114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그들의 공식적인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 따라서 두 번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구성요건 3: 증거는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시민 소요가 있었으며, 그것이 상거래(Safeway[138])와 연방의 보호를 받는 기능들[국회의사당 경찰 및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 구성요건 1: 그는 법 집행관들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간섭할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했다.

○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구내에서 열성적인 참여자였음 : 그는 LWT(하부 서쪽 테라스)[139]의 발판(scaffolding)으로 돌진했고, 발판 아래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제거하는 것을 도왔으며, 경찰관들과 시위대 사이에 싸움이 발발했을 때 앞으로 돌진했고, 금속 울타리의 한 부

분을 군중의 뒤쪽으로 가져갔다.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 그는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간섭할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 행위들을 저질렀음 :

- 발판 아래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제거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 자전거 거치대가 경찰 통제선을 구획하고 군중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 LWT에서의 난투극에 참여했음 - 경찰이 군중 통제에 관여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는 그 난투극 현장에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그가 자신의 깃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공소사실의 목적상 그가 깃대를 강제력을 가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그가 15초 동안 깃대를 가지고 난투극에 가담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간섭하는 것이다.
- 그런 다음 그는 울타리의 한 부분을 군중 속 뒤로 가져갔다. 이것은 피고인이 군중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두 번째 장벽이다. 울타리를 제거한 것은 군중이 마침내 LWT 위로 그리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전진했을 때 군중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 금속 장대를 던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3과 관련하여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1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특정한 개별 주장을 두고 이를 배척하는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Element)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근거에 대한 판단을 중점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간략하게 해당 부분에서 배척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140]

(3) United States v. YODER(서면)

서면에 의해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이 작성된 사례로 미국 의회 난입과 관련한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District of Columbia District Court)의 로이스 C. 램버스(Royce C. Lamberth) 연방 판사의 심리에 의해 비배심재판으로 진행된 United States v. YODER, 1:21-cr-00505, (D.D.C.)[141] 사건을 본다.

---

138)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의 이름으로, 구성요건의 상거래에 영향이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설시되었다.
139)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장소이다.
140) '이 공소사실의 목적상 그가 깃대를 강제력을 가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개별적인 주장 등을 세부적으로 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1) 각종 재판 기록은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0109434/united-states-v-yoder를 참조

해당 사건은 4개의 공소사실(Count)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동시집행(All terms to run concurrently)[142]을 전제로, 1, 2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금형 12개월, 3, 4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금형 6개월이 선고된 사건이다.

해당 기록을 보면,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 양측에 일정한 제출 기간을 정하여, 최종적으로 연방 판사가 작성할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판단에 관한 제안서(Proposed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방 판사는 이를 토대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3. 3. 20. 공판기일(Trial)의 진행을 마친 후, 2023. 3. 29. 양측에 2023. 4. 25.까지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143] 그 후 제안서 제출 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정부 측에서는 2023. 5. 1. 피고인 측에서는 2023. 5. 22.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였다.[144] 아래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판단 제안서의 사실인정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로 피고인의 주장과 정부의 주장을 대조하여 기재한 부분이다.

> 정부안: 오후 2시경까지 군중 중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뚫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 GX[145] 303A; Tr[146]. at 57-59 (Captain Ortega 증언). USCP 경찰관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군중은 건물 외벽 바로 앞까지 전진하였다. GX 303A; Tr. at 65-66 (Captain Ortega 증언). 그 군중은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 머무를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 설령 입장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중 구성원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USCP 경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보안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검색 및/또는 무기검사를 받았어야 했다. Tr. at 81-83 (Captain Ortega 증언); Tr. at 276 (Lieutenant Kelly 증언).

하였다. (2026. 4. 15. 확인).

142) 미국의 경우에는 범죄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집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있는 국내 자료로는 이기리, 미국에서 징역 600년형은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가, 사법논집 제72집, 2021, 447면 이하 참조.

143)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34142/gov.uscourts.dcd.234142.55.0_1.pdf (2026. 4. 15. 확인).

144) 정부 측 제안서는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34142/gov.uscourts.dcd.234142.60.0.pdf 참조 (2026. 4. 15. 확인).
피고인 측 제안서는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34142/gov.uscourts.dcd.234142.63.0.pdf 참조 (2026. 4. 15. 확인).

145) Government Exhibit(정부 증거)의 약자이다.

146) Transcript(녹취록)의 약자로, 공판 녹취록을 의미한다.

피고인안: 결국 군중 중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강제로 뚫고 그 안쪽으로 들어갔다. GX 303A; Tr. at 57-59 (Captain Ortega 증언). USCP 경찰관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군중은 건물 외벽 바로 앞까지 전진하였다. GX 303A; Tr. at 65-66 (Captain Ortega 증언). 만약 의사당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면, 군중 구성원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USCP 경찰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보안 담당자가 요구하는 보안검색 및/또는 무기검사를 받았어야 했다. Tr. at 81-83 (Captain Ortega 증언); Tr. at 276 (Lieutenant Kelly 증언).

이와 같이 제안서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서는 그 주체를 법원으로 하여,[147] 연방 판사가 작성할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문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특히 사실인정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되는 증거가 어느 증거인지 당사자 별 증거번호 및 공판 녹취록의 면수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양측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증거를 인용하면서 판단을 하는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8] 이에 따라 판단을 하는 연방 판사의 입장에서도 양측에 의해 구체적으로 대립되는 사실관계가 어느 부분이고,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각자의 주장이 이루어지는지 곧바로 알 수 있다.

연방 판사는 위와 같이 양 당사자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한 후, 2023. 5. 26.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문서를 완성하고 서명하였다.[149] 연방 판사가 작성한 문서는 대체로 제안서의 표현 등을 기초로 하되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작성한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판단 서면 중 법적 판단 부분 중 일부이다.

공소사실 1은 Yoder가 18 U.S.C. § 1752(a)(1)을 위반하여 제한된 건물 또는 부지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 잔류하였다고 기소한다. 이 범죄의 유죄 인정을 위해서,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1) 피고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제한된 건물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 머물렀고, (2) 그 행위를 고의로(knowingly) 하였다는 판단을 하여야 한다. United States v. Rivera,

147) 이에 따라, 제안서의 법적 판단 부분은 주어를 법원으로 하여 작성된다.
148) 정부가 제출한 제안서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다.
149)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34142/gov.uscourts.dcd.234142.65.0_1.pdf (2026. 4. 15. 확인).

607 F. Supp. 3d 1, 7 (D.D.C. 2022) (Kollar-Kotelly,J.).

(중략)

법원은 먼저, 정부가 2021. 1. 6. Yoder가 제한구역, 미국 의사당 건물 및 그 부지에 출입하고 머물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였다고 보았다. Inspector Hawa의 증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과 그의 가족은 비밀경호국(USSS) 보호 대상자로서 실제로 2021. 1. 6. 의사당을 방문하였다. Hawa와 Ortega의 증언은, 이 방문에 대비하여 USSS와 USCP가 대중에게 폐쇄된 제한구역을 의사당 부지 전체에 설정하였고, 그 경계는 자전거 거치대, 스노 펜스, 폐쇄 표지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측 비계 입구를 포함하여 그 내부에는 추가 장벽도 설치되어 있었다. 의사당 건물 자체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일반에 폐쇄되어 있었다. Purcell의 증언과 Yoder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Yoder는 그날 오후 제한구역으로 들어갔고, CCTV 등에 의하면 오후 3시 14분 의사당 건물 자체로 들어가 약 20분 가까이 머물렀다. (GX 104-106, 304, 305; Tr. at 15, 18-20, 44, 48-54, 123-25, 140-41, 176, 344-45, 353).

(중략)

반면, 경찰이 자신을 막지 않았고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당에 들어가도 된다고 믿었다는 Yoder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는 자신이 경찰이 압도당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폭력을 보지도 못했다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후추 스프레이 또는 최루가스 냄새를 맡았고 가족들로부터 현장의 혼란을 전해 들었다는 자신의 다른 진술과 모순된다. 더 나아가 법원은, Yoder가 "펜스가 굴복했다(Pence folded)"는 말을 듣고 그에 반응하여 의사당으로 향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보호 대상자인 펜스 부통령이 의사당에 와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Yoder이 적법한 권한 없이 제한된 건물에 출입하거나 그 안에 잔류하였고, 이를 고의로(knowingly) 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 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Tr. at 188-89, 308, 343, 365).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작성된 서면의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의 문서는 사실인정 과정에서 문제되는 개개의 사실마다 증거를 개별적으로 기재하면서 법적인 논증에 이르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 등은 핵심적인 증거를 위주로 필요한 경우 판단 부분에서 간결하게 배척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인다.[150]

150)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제안서에서는 여러 사정을 들어 '정부의 증거는 Yoder가 적법한 권한 없이 제한된 건물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 머물렀다는 점은 증명하였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정부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Ⅳ. 검토 및 시사점

미국 연방지방법원 제1심 형사판결의 특징적인 부분은 재판의 결론을 나타내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형사판결서와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 자체는 재판의 결론 및 구체적인 형량 등 법정기재사항과 판결 집행에 필요한 내용만이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그 외에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 중 A급 경죄 이상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된 양식에 따른 별도의 양형이유서(Statement of Reasons)가 작성된다.

또한, 사실인정 및 법적판단 부분도 판결서와 분리되어 있다. 배심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작성되지 않으나 그 대신 배심재판의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의 공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배심원 지시를 통하여 배심원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적용할 법리, 적용되는 증거 법칙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 방법 등이 특정된다.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인정 및 판단을 판결서와 별도로 구술 설명을 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체크리스트 형식의 형사판결서는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와 그 기능과 구성 등을 달리하고 있어 그 작성방식을 우리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개선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판결의 결론과 이유를 분리하여 그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를 작성한다는 점이나, 비배심재판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은 당사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점은 우리의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인정 등에 관한 설명의 구체적인 방식은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정리하여 그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형식이 아닌 입증되어야 할 구성요건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성요건 요소의 충족에 대한 판단을 기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판단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작성할 문서와 같

못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 1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법원이 작성한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 판단 서면에서는 피고인이 내세운 여러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개별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이 아닌, 핵심적 반대 증거인 피고인 Yoder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형식으로 간결하게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도 피고인 측이 제안서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을 개별적으로 배척하는 기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은 형식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으로 이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폭넓은 조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구체적 판단 과정에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상호 대립되는 사실 주장을 상호 대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면서,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는 특히 기록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연방판사가 당사자들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증거관계를 세밀하게 판단하여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이유 등을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대신 법률적 판단을 상세하게 정리한 배심원 지시를 하는 실무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판결서를 적정화하는 전제로서 검토하여 볼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제2절 영국의 형사판결서

I. 연구의 대상

영국은 연합왕국(United Kingdom)으로 그 구성국 중 잉글랜드 및 웨일즈(England and Wales)의 사법체계와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사법체계에 차이가 있는바, 이 글에서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및 판결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영국의 하급심 형사재판 구조

1.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151]

영국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제1심 법원은 치안법원과 형사법원이 있다. 치안법원에서는 대부분 직업법관이 아닌 지원에 따라 선발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3명의 치안판사(Magistrates)가 법률 조언자(Legal Adviser)의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152] 그 외에 치안법원에는 직업법관인 지역판사(District Judge)가 있고, 지역판사는 단독으로 재판을 한다.[153]

2. 치안법원의 관할 사건

약식 범죄(Summary offences, 교통범죄, 경미한 폭행 등)는 치안법원이 전적으로

151) 아래 설명 부분은 영국 사법부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였다.
치안법원은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magistrates-courts
형사법원은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crown-court 참조 (2026. 4. 15. 확인).

152) 3명 이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153) 지역판사는 직업법관으로 일반적으로 치안법원 사건 중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링크의 영국 법무부 형사법원 통계가이드 5면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604488a91a320001182b11b/A_Guide_to_Criminal_Court_Statistics.pdf (2026. 4. 15. 확인).

담당하고, 양방 기소 가능 범죄(Either-way offences, 절도, 장물 등)는 치안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고, 형사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다.[154] 정식 기소 대상 범죄(Indictable-only offences, 살인, 강간, 강도 등)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재판한다.[155]

영국에서 형사사건은 우선적으로 치안법원에 접수된다. 그 후 치안법원은 접수된 사건 중 정식 기소 대상 범죄사건과 양방 기소 가능 범죄사건 중 치안법원이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또는 양방 기소 가능 범죄사건 중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법원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것을 선택한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한다.[156]

한편, 치안법원은 1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157] 다만, 복수의 양방 기소 가능 범죄에 대해서는 12개월까지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고,[158] 일정한 경우 1개의 양방 기소 가능 범죄를 심리하는 경우에도 12개월까지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159] 이에 따라, 치안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앞서 본 형량을 초과하는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160]

3. 형사법원의 관할 사건

형사법원은 제1심으로 치안법원에서 이송된 양방 기소 가능 범죄 및 정식 기소 대상 범죄를 관할한다. 또한, 형사법원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법원 판사 1인의 주재하에서 배심원 재판을 한다.[161]

또한 형사법원은 치안법원 판결의 항소심으로 재판을 한다.[162] 이 경우 형사법원의 판사 1인과 2명 이상 4명 이하의 치안판사가 재판부를 이루어 판단한다.[163]

---

154)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
155)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6.
156)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6, s.18-20.
157)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31.
158)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133.
159) 법원이 2022. 5. 2. 이후에 저지른 단일 양방 기소 가능 범죄를 다루는 경우로, 2023. 3. 30.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거나, 2024. 11. 18. 이후에 저질러진 단일 양방 기소 가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치안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2개월이라고 한다. Judicial College, Adult Court Bench Book April 2025 (2025), 9면 및 Sentencing Act 2020 s.224 참조.
160)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19, s.21.
161) 다만, Criminal Justice Act 2003 s.44에 의하면, 배심원 매수, 협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62)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108 다만, 일정한 법률문제에 대한 치안법원 판결의 항소심은 고등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이다.

4. 유죄인정과 형량고지(Sentence indication)

영국의 경우 피고인이 다투지 않고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하는 경우 치안법원, 형사법원 모두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유죄의 인정을 함에 있어, 미국과 같은 정도로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구체적인 형량을 전제로 한 유죄협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164] 다만, 조기 유죄인정에 따른 양형상 이익이 양형기준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165] 피고인이 법원에 유죄인정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선고할 최대 형량(형사법원) 또는 구금형 가능성(치안법원)을 고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후, 피고인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죄의 답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6] 이와 같이 영국은 피고인에게 유죄답변에 앞서 유죄답변을 하는 경우의 양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피고인이 유죄인정을 할 유인도 제공하고 있다.

---

163) Senior Courts Act 1981, s.74.

164) 영국의 유죄협상은 일부 중대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Plea Discussion이 활용된다. https://www.gov.uk/guidance/plea-discussions-in-cases-of-serious-or-complex-fraud--8 (영국 법무부 홈페이지,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의 형량 협상' 2026. 4. 20. 확인). 또한, 기소할 죄를 줄이거나, 덜 중대한 범죄로 기소하는 등에 관한 협상도 있다. https://www.gov.uk/guidance/the-acceptance-of-pleas-and-the-prosecutors-role-in-the-sentencing-exercise (영국 법무부 홈페이지 '유죄 인정의 승인과 양형에 있어 검사의 역할').

165) 초기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량의 1/3을 감경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https://sentencingcouncil.org.uk/guidelines/reduction-in-sentence-for-a-guilty-plea-first-hearing-on-or-after-1-june-2017 (2026. 4. 15. 확인).

166) 치안법원 재판의 경우는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20에 근거를 두고 있고, 구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고지할 것을 구할 수 있다. 형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2025 Part 3 Rule 3. 31. 및 판례(R v Goodyear [2005] EWCA Crim 888)에 근거를 두고, 유죄인정시 받을 최대 형량을 고지해줄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고지에는 구속력이 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형량고지 신청에 대하여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 영국의 형사판결

1. 치안법원의 판결

가. 판결 이유를 제시할 의무

형사소송규칙 2025(The Criminal Procedure Rules 2025)

Part 24 치안법원에서의 재판 및 선고(TRIAL AND SENTENCE IN A MAGISTRATES' COURT)

24. 3.

(5) 만약 법원이

(a)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Convicts)하거나

(b) 그 대신 치료감호 명령(Hospital order)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설명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6) 만약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Acquits)하는 경우,

(a)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고,

(b) 다음 행위를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i) 행동 명령(behaviour order)[167] 또는

(ii) 소송비용 명령(costs order)

영국의 형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치안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그 결정을 설명하여야 하고,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치안판사는 지원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168] 치안판사 등을 위하여 사법 대학(Judicial College)[169]에서 만든 성인 법정 재판부 책(Adult Court Bench Book)[170] 등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재판

167) 무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각종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활용되는 명령이다.

168) 구체적인 선발 절차 및 과정은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3/02/Lord-Chancellors-Directions-to-Advisory-Committees-Part-3-The-selection-process-for-magistrates.pdf 참조 (2026. 4. 15. 확인).

169) 영국의 사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170)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5/ACBB-April-2025.pdf Adult Court Bench Book 2025년 4월판 (2026. 4. 15. 확인).

요령을 기술하고 있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선고 고지할 사항의 경우에는 고지문 생성기(Pronouncement builder)[171]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요령으로 각종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조언자(Legal adviser)가 참여하여 치안판사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특히, 판결의 이유는 치안판사가 법률 조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172]

다만, 영국의 형사 제1심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정의 판결서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법원은 구술로 판결을 선고하고,[173] 그 구술로 한 판결을 법원의 직원이 기록한다.[174] 한편, 치안법원의 경우에는 형사법원과 달리 재판에 대한 별도의 녹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175] 법정에서 고지된 판결의 이유 등은 법정에 있는 법률 조언자가 이를 메모하거나, 치안판사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것으로 보인다.[176] 그리고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177] 고등법원에 제출할 사건 설명서(State a case)를 작성하는 데 해당 자료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178] 그와 같이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 사건 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판결 이유 등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171) 고지문 생성기는 웹사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하다. https://sentencingcouncil.org.uk/pronouncement-builder 참조 (2026. 4. 15. 확인).

172) Adult Court Bench Book에서도 유 · 무죄의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당신의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라. 법률 조언자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Give reason for your decision. The legal adviser can assist you with preparation of reasons.)라고 설명하고 있다. Judicial College, Adult Court Bench Book April 2025 (2025), 88면.

173) 이에 따라 판결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구술한 판결의 대본이나 속기록 등 구술로 한 판결의 내용을 기록한 서면이라 할 것이다.

174) 형사소송규칙 2025 Part 5는 법원 직원이 기록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판결의 이유까지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175) 영국 정부의 재판 녹취록 신청 안내 사이트에서도 형사법원의 공판기일은 항상 녹음되지만, 치안법원의 공판기일은 녹음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Hearings at magistrates' courts are never recorded.) https://www.gov.uk/apply-transcript-court-tribunal-hearing 참조 (2026. 4. 15. 확인).

176) Judicial College, Adult Court Bench Book April 2025 (2025), 88면에서는 치안판사들에게 유 · 무죄 판단 기록을 법률 조언자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7) 고등법원에는 법률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심은 형사법원(Crown Court)이고, 형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심리가 이루어지기에 치안법원에서 사건 설명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다.

178) 형사소송규칙 2025 - Part 35 (2)에는 "A justices' legal adviser must assist the court by completing the case stated."라고 규정하고 있어, Case stated의 작성에 법률 조언자가 조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법원은 사건 전체를 재심리(Re-hearing)하므로 사건 설명서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 판결 사례

(1) 치안판사의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치안법원의 판결은 구술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녹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직업법관이 아닌 치안판사로 구성된 치안법원에서 구술로 행하는 구술 판결선고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 자료를 찾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본 판결은 영국 고등법원에서 행해진 JS (A Child) v DPP [2017] EWHC 1162 (Admin) 사건에 관한 판결로, 치안법원 측에서 법정에서 진술한 판결의 이유 등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해당 고등법원 판결은 치안판사들의 판결 과정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입증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취지(피고인이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서 치안법원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하였고, 해당 판결 중에는 동시 노트에 기재된 법정 발언이나 사건 설명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인용되어 있다.

해당 사건에 관한 판결서에서 드러난 동시 노트(Contemporaneous note)[179]에 관한 설시 내용과 사건 설명서 기재 내용과 정도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치안판사들은 법정에서는 비교적 짧고 간결하게 이유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상소가 제기되면서 사건 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판결 이유 등이 법률 조언자의 도움 등을 통해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England and Wales High Court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Js (A Child) v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2017] EWHC 1162 (Admin) (18 May 2017)[180]

[사건 설명서(Case stated)의 관련 부분 인용 부분]

사건 설명서에는 인정 진술 및 위 문서들을 인용 및 첨부하였고,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증거가 모두 합의되었으므로, 증언을 위해 출석한 증인은 없었다.

검찰 측 증거 제시가 끝나자, 피고인[181]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182]

우리는 1981년 R v Galbraith 사건 판례 기준의 두 번째 요건을 참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이 제시한 무단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미약하여 법원이 피고인을

179) 당시 치안법원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동시에 작성된 메모로 보인다.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인정 진술에 포함된 증거가 답변해야 할 사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지시를 받은 배심원이라면 피고인을 유죄로 평결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답변해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피고인은 정오쯤 컨트리 파크(Country park) 입구에서 모페드[183]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모페드는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냥 만져보고 싶어서 앞부분을 만졌다. 그는 사우스워크(Southwark)에 가본 적이 없었고 블룸 그로브(Bloom Grove)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반대 심문에서 그는 왜 첫번째 진술서에 모페드를 만졌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두 번째 진술서에 포함되었다. 그는 모든 방치된 차량을 만지는 것은 아니고, 그의 의도는 모페드를 훔치거나 시동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모페드는 방치된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2016. 6. 21. 블룸 그로브 SE27 지역[184]에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모페드 전선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요구되는 입증 책임과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우리의 의견은 검찰이 가능한 사건(Viable case)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증언을 청취한 결과, 모페드를 무단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피고인이 모페드를 무단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동시 노트(Contemporaneous note)의 기재 인용 부분]

우리는 이 사안을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가능한 사건(Viable case)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피고인의 증언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는 모페드를 무단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유죄라고 확신한다.

---

180) https://www.bailii.org/ew/cases/EWHC/Admin/2017/1162.html (2025. 3. 3. 확인).

181) 이 사건은 항소 사건으로 피고인은 'The Appellant'라고 표현되어 있고, 검찰은 'The Respondent'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검찰로 번역한다.

182) 이는 영국 형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라는 신청으로, 검찰이 제시한

(2) 지역판사(District Judge)의 판결

다만, 치안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직업 법관인 지역판사가 판결을 하는 주요 사건[185]의 판결 이유는 상세하게 설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안법원 사건으로 판결내용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건을 예시로 본다.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의 지역판사(District Judge) 존 맥가바(John McGarva)는 2025. 6. 2. REX V HAMIT COSKUN 사건에서 구술로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186]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세속화에서 벗어나는 튀르키예에 대한 항의를 하는 중 튀르키예 영사관 근처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고 이슬람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종교적 적대 동기에 의한 무질서 행위(가중처벌)에 대하여 기소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종교적 적대 동기를 제외한 무질서 행위에 대한 기소를 한 사례이다]으로, 공개된 문서는 양형 이유를 포함(including sentence remarks)하고 있다. 주된 구조는 기소된 사실을 설명하고 법령의 내용 및 증명되어야 할 구성요건 요소의 설명, 소송 중 변호인 측이 한 각종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 구성요건과 관련한 사실인정 및 증거관계와 증명 여부, 피고인의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권리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있고, 총 13면에 걸쳐 그 판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소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부분을 보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밝히면서 그 입증 여부를 상세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양형기준을 세부적으로 밝히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히고 있다.[187]

증거가 없거나, 명백히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인이 답변할 필요도 없이 정식의 재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이다.

183)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장치는 Moped(모페드)라는 모터와 페달이 달린 원동기장치로, 모터로 움직이다가 필요한 경우 페달을 밟아 움직일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가 bike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도 모두 모페드로 번역한다.

184) 모페드가 발견된 장소로 보인다.

185) 지역판사는 치안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고 한다. 지역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배당 기준 등은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11/Criminal-Practice-Directions-2023-as-amended-Nov-2025.pdf 47면-49면 참조[영국 사법부 형사실무지침 2023(2025년 11월 증보), 2026. 4. 20. 확인].

186) 해당 판결(양형 이유 포함)의 내용은 JUDGMENT[including sentence remarks] 참조.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6/Rex-v-Hamit-Coskun.pdf (2026. 4. 20. 확인).

187) 한편, 위 사건은 항소가 제기된 후 형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에 관한 고등법원에 대한 검찰 항소

2. 형사법원의 판결(제1심 판결)

가. 배심재판에 따른 특징

형사법원의 경우 유죄의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188] 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를 뿐 판결 과정에서 따로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의 이유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설시하지는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상세한 배심원 지시 및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과 같이 항소법원별로 상세한 배심원 지시 양식 등이 갖추어져 있지는 아니하고, 별도로 배심원 지시 관련 서면을 배포하지 않고 구술로 배심원 지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에서의 배심원 지시의 방식은 영국의 앞서 본 사법대학(Judicial College)에서 발행한 형사법원 개요서(Crown Court Compendium)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189]

영국의 배심재판에서도 판사가 법적인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배심원 지시를 내리는 점은 미국과 같다. 다만, 미국의 경우 증거평가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나 증거 자체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배심원 설명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영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판사가 직접 증거를 요약하여 배심원들에게 이를 설명(Summarise the evidence)하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190] 아래는 형사법원 개요서에서 제시된 고의적 상해와 불법 상해(wounding with intent and unlawful wounding) 관련 배심원 지시 양식인데,[191] 증거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양식 내에

[Appeal by case stated(법률적 문제에 대한 항소)]가 있었으나, 무죄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DPP v Coskun [2026] EWHC 427 (Admin)].

188) 영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형사법원의 배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툴 경우, 배심재판을 포기하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 배심재판 대상 범죄에 대한 비배심재판은 Criminal Justice Act 2003 s.44에 따른 배심원 매수(Jury tampering)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189) 배심재판과 관련한 Part I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2/06/Crown-Court-Compendium-Part-I-July-2024-April-2025-update.pdf
양형선고와 관련한 Part II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2/06/Crown-Court-Compendium-Part-II-Sentencing-July-2024-April-2025-update.pdf (2026. 4. 20. 확인).

190) 다만, 판사는 증거를 요약하지만, 배심원에게 모든 증거를 상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은 판사가 증거 요약에서 언급한 증거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판사가 언급하지 않은 증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며, 판사는 증거의 중요성은 오로지 배심원만이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시를 한다. Judicial College, Crown Court Compendium Part I July 2024 April 2025 update (2025), 4-1.

191) Crown Court Compendium Part I July 2024 April 2025 update (2025), 9-6.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해당 부분에서 판사가 관련 증거의 증거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시: 고의적 상해 및 불법 상해(wounding with intent and unlawful wounding)

공소사실(Count) 1[섹션(Section) 18]과 관련하여 D[192]의 방어 주장(Defence)은 그가 W[193]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신체적 상해는 정말로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D의 방어 주장은 또한 D가 사건 발생 전 2시간 정도 동안 약 10파인트의 독한 라거를 마셔서 D가 너무 취했기 때문에 D가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의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취해서 어떤 특정한 의도를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도 여전히 의도를 형성할 수 있고, 만일 그러한 의도를 형성하였다면,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의도를 형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어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D가 W에게 정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의도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거나, 그렇게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공소사실 1에 관하여 D에 대한 무죄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대안적으로 공소사실 2(섹션 20)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D가 술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정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공소사실 1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공소사실 2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평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D가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D가 정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 증거를 요약하십시오.]

공소사실 2를 고려해야 한다면 D가 마신 술의 양은 관련이 없습니다. 공소사실 2의 쟁점은 여러분이 D가 "악의적으로(maliciously)" 행동했다고 확신하는지 여부입니다. "악의적으로"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D가 (a) W에게 경미하더라도 어떠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b) D가 W에게 경미하더라도 어떠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적용하려면, 여러분은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i) D의 행위가 악의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

또는

(ii) D가 행동할 당시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거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술

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중 하나가 입증되었다고 확신하면 공소사실 2에 대한 평결은 유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될 것입니다.

나. 양형이유의 설시

양형법 2020(Sentencing Act 2020)

두 번째 그룹 항목들(SECOND GROUP OF PARTS) 일반적으로 양형법원에 적용되는 규정

PART 3 절차

제5장(CHAPTER 5) 설명 또는 이유제시 의무

형을 정한 이유를 밝히고, 형의 효과를 설명할 의무

(1) 범죄자(Offender)[194]에게 형을 선고하는 법원은 (2) 및 (3)항의 의무를 진다.

(2)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일상적인 언어(ordinary language)로 개괄적으로(general terms) 법원이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3) 법원은 범죄자에게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

(a) 형의 효과,

(b) 범죄자가 준수해야 하는 형의 일부를 구성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c) 형의 일부를 구성하는 명령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d) 형이 벌금으로 구성되거나 벌금을 포함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중략)

양형 기준들(Sentencing guidelines)

(6) 법원은 범죄자의 사건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식별해야 하고,

(a) 법원이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한 기준을 따를 의무).

(b) 법원이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정의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92) Defendant(피고인)의 약자이다.
193) 전체적인 문맥상 피해자인 Witness(증인)의 약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배심원 설명 과정에서는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Victim(피해자)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4) 영국의 경우 형의 선고는 유죄인정 절차가 끝난 후 진행되므로, 형의 선고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를 피고인(Defendant)으로 표시하지 않고, 범죄자(Offender)로 표시한다.

배심재판의 경우에도 판사가 담당하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 일반적인 언어 및 용어로 법원의 양형 결정 이유 및 형에 따른 효과를 명시하여야 한다(Duty to give reasons for and to explain effect of sentence). 아래의 판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형종 및 형량을 고지하는 외에 형이 가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영국의 실무로 보여진다.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실제 판결 사례

영국 형사법원에서는 양형 이유를 법정에서 구술로 설시하고 그 발언이 기재된 선고 발언(Sentencing remarks)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형사법원의 양형 이유 설명은 유죄로 인정된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양형과 관련된 여러 양형인자들의 존부와 양형기준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으로 길고 자세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195]

실제 사례로 제마 미첼(Jemma Mitchell) 피고인의 살인 사건 양형이유를 살펴본다.[196] 해당 사건은 제마 미첼이 금전적 동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시신의 머리를 절단해 수트 케이스에 넣어서 은폐하려 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2022. 10. 28. 영국 중앙 형사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197]

판사는 범행 경위 및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설명하고, 법정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형에 필요한 여러 사실관계를 설명한 다음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의 존재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최소 34년을 복역하는 것을 전제로 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범죄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보고, 계획적인 범죄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195)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7/Sentencing-Remarks-R-v-Graham-and-Carruthers-Final.pdf(해당 판결은 사실(Fact) 및 범행(Offences)이라는 항목에서 범행 경위 및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설명하고, 각종 양형인자 및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의 인정에 관한 사항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그 분량이 13면에 달한다) 등을 참고하였다. (2026. 4. 20. 확인).

196)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2/10/R-v-Mitchell-sentencing-remarks-281022.pdf (2026. 4. 20. 확인).

197) 해당 사건은 양형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사건이기도 하다. https://www.crimeandinvestigation.co.uk/articles/televised-sentencing-uk (2026. 4. 20. 확인).

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에 끔찍한 행위를 한 것을 가중사유로 보았다.

Ⅳ. 시사점

영국 법원의 형사 제1심판결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판결 내용도 구술하기 위해 준비한 대본 등을 선고 발언 등의 문서로 만들거나, 녹취서 등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따로 서면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영국은 배심원제 국가로 형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건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배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배심원 지시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와 증거의 요약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 이유에 관한 설명 외에 별도로 유죄 또는 무죄판결의 이유를 고지하지는 않는다.

한편, 영국 내 대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치안법원의 경우 일부 직업 법관인 지역판사에 의한 주요 판결 등은 상당한 정도의 이유가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나, 선발된 일반 시민으로 이루어진 치안판사에 의한 판결 이유 설명은 구술로 간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상소가 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건 설명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가 서면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국의 구술 중심 판결 문화와 치안법원 판결의 경우 구술로 간결하게 그 이유를 고지한 후 고등법원에의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 등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는 실무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판결서 적정화 방안으로 구술에 의한 선고 후, 구체적인 판결서는 상소제기 등 그 작성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독일의 형사판결서

I. 독일의 형사재판 제도 개관

1. 독일의 제1심 형사법원 구성

가. 구법원(Amtsgericht)

독일의 구법원은 원칙적으로 예상 형량 4년 이하[198]의 자유형 범죄를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Gerichtsverfassungsgesetz(이하 '독일 법원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199]]. 구법원 내부에서 단독판사(Strafrichter)는 예상 형량이 자유형 2년 이하인 사건, 사인소추(Privatklage) 대상 사건[200]을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 제25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판사 1명,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참심재판부(Schöffengerichte)에서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 제28, 29조).

나. 지방법원(Landgericht)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예상 형량이 자유형 4년을 초과하는 사건 등과 구법원 판결의 항소(Berufung) 사건을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 제74조). 지방법원의 형사 제1심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참심재판부에서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 제76조).

다.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201]

고등법원은 주로 구법원이 제1심인 상고(Revision) 사건 및 일부 지방법원 제1심

198) 법정형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예상 형량을 기준으로 관할 등을 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도 공판개시 전후에 이를 고려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제200, 207, 209, 225, 270조 참조.

199) 독일의 법령 기재방식에 따른다. 이하 같다.

200) 독일의 경우 무단침입죄, 모욕죄, 신체상해죄 등 일부 사인소추 대상 사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인 소추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제374조 참조.

201) 이는 Ober(상급 또는 고등), Landes(지방 또는 주), Gericht(법원)이 합성된 단어로 고등지방법원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원 중 유사한 등급의 법원으로 번역상 주로 활용되는 고등법원으로 번역하도록 한다.

사건의 상고 사건[202]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국가안보, 국제범죄 등 일부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형사재판부가 이를 제1심으로 관할한다(독일 법원기본법 제120조). 고등법원의 형사재판부는 3명에서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직업법관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독일 법원기본법 제122조).

2. 독일의 형사재판 절차의 제도적 특징

가. 판결선고 기간의 제한

독일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 이하 '독일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68조 제3항은 판결은 심리가 끝날 때 선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주 내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심리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집중의 원칙(Konzentrationsgrundsatz)에 기초한 것으로 이러한 판결선고 기간(Urteilsverkündungsfrist)의 제한을 위반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파기의 대상이 된다(BGH Urteil v. 30.05.2007 – 2 StR 22/07 등).[203]

나. 판결서의 사후작성

독일은 위와 같이 판결선고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판결선고 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04]

독일에서 판결은 법정에서 구술로 주문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는 낭독하거나 핵심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지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그리고 구체적 이유를 포함한 형사판결서는 판결선고 후 사후에 작성할 수 있다. 형사판결서는 선고 후 5주 이내[205]에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

202) 독일은 연방국가로 주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오로지 주법의 위반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상고심을 관할한다.

20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결선고 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법정되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3항), 14일 이내에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연구 과정에서 검토한 국가 중 독일과 같이 판결선고 기간 등을 법정하고, 기간도과 시 재심리에 들어가야 하고, 기한을 도과했음에도 재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경우 이를 원칙적 파기사유로 보는 국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04) 참고로 독일의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제310조 제2항은 이와 반대로 즉일 선고 외에는 완성된 판결에 의한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5) 이와 같이 판결서의 사후작성 기간으로 적지 않은 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법률 개정안(독일 형사소

간은 공판기일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 공판기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공판기일 구간마다 추가로 2주씩 연장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한편, 이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형사판결서 사후작성 기간을 정해두는 대신, 작성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판결의 파기 사유로 하고 있다.[206]

다. 판결서의 사후작성과 상소기간 및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독일의 경우 항소기간 또는 상고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선고 후 1주일로 되어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 독일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207] 결국 앞서 본 사후작성 기간(5주 이상)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작성되는 세부적인 판결의 이유는 상소기간 도과 후에서야 확인할 수 있게 된다.[208] 이에 비추어 볼 때, 독일에서 형사판결서는 항소 또는 상고심의 심리 기초를 세우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고(실무상 아래의 단축판결 등 간이한 형식의 서면 판결서조차 상소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상소 포기가 있은 후에 작성된다), 우리가 형사판결서의 기능으로 알고 있는 당사자의 불복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후퇴되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독일의 경우 항소이유는 항소기간이 만료한 후 1주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 중에 판결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 후 1주일 내에 제출하면 될 뿐 아니라(독일 형사소송법 제317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항소가 기각되는 등의 불이익은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9]은 상고기간이 만료한 후 별도의 연장 사유가 없는 경우[210] 1

송법 제275조) 초안 입법 자료(1973년경 자료로 당시 행해지던 법원 사무부서의 문서화 작업 등에 대한 설명도 있다)에는 이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 이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만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법원 사무부서에서 최종본을 작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재판부가 여러 명의 직업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심판사의 초안을 다른 판사들이 검토·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새로운 평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불복제기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그 고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많은 사건에서 그 후에야 개정 제267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판결 이유를 단축하여 작성(아래에서 설명하는 단축판결 참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https://dserver.bundestag.de/btd/07/005/0700551.pdf 84면-85면 (2026. 5. 20. 확인).

206) BGH 4 StR 30/20 – Beschluss vom 12. März 2020.

207) 다만, 피고인 불출석 판결 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특별한 서면 대리권이 증명된 변호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한 때 등의 예외가 있다) 판결서가 송달된 후에야 상소기간이 진행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2항, 독일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 이를 간과하고 아래에서 설명한 단축판결을 작성한 경우에는 판결의 파기사유가 된다. BGH 5 StR 482/04 – Beschluss vom 10. November 2004 (LG Berlin).

208) 아래에서 설명한 단축판결 제도와 결합하여, 독일의 실무는 상소기간의 도과를 기다린 후에 서면판결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독일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1항), 그 경우 상고기간 만료 시점에 판결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그 제출기간이 기산된다. 이와 같이 상소여부는 사실상 서면 판결서가 완성되기 전에 결정을 하여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소이유는 서면 판결서가 완성되어, 판결서의 송달이 완료된 후에 작성하면 되므로, 상소심의 심리 기초를 세우는 기능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구두로 선고한 내용과 서면 판결서와의 관계

한편, 독일의 경우 제도적으로 판결선고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형사판결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구두로 선고한 내용과 판결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독일의 연방일반법원은 판결선고 시 낭독한 주문과 판결서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판결선고 시 낭독한 주문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211] 판결선고 시 구두로 고지된 판결 이유와 작성된 서면 판결서의 판결 이유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서면 내용만이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212]

마. 유죄선언의 주문 기재와 제한 항소

우리나라의 경우 주문에는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법률효과인 형벌을 기재하나,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문에 해당하는 법률효과의 선언 외에 유죄의 선언을 별도로 하고, 죄수 관계도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하게 되어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0조). 즉, 형사판결서의 주문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죄명과 죄수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

209)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상고가 부적법하게(unzulässig) 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210) 판결서가 사건기록에 편입되는 기간이 매우 장기화된 경우(21주 및 35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판기일이 많아 5주의 사후 판결서 작성기간이 수십 주에 달할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기간이 21주가 된 경우 1개월, 35주가 된 경우 다시 1개월이 연장된다. 이 경우 판결서가 사건기록에 편철된 시점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기간이 기산된다.

211) BGH 2 StR 48/20 – Beschluss vom 11. November 2020 (LG Darmstadt). 이에 따라, 연방일반법원은 판결선고가 종료된 뒤 판결주문을 정정하는 것은 명백한 기재 또는 선고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212) 연방일반법원은 판결서 이유의 서면 내용과 구두로 선고된 판결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상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상고심 법원에서는 오직 서면 판결 이유만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판결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BGH 3 StR 445/95 – Urteil vom 14. Februar 1996 (LG Duisburg)].

로 정한 후, 법률효과로서 형벌을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문 자체에서 각 공소사실별 유·무죄 및 죄수 등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되므로 그 정보량이 적지 않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이유로서 유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다툼 여부를 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경우 상소를 판결 중 특정한 불복 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318조). 다만, 이렇게 피고인이 제한 항소를 하는 경우라도 항소를 제기한 이상 항소의 미제기를 전제로 하는 단축판결을 작성할 수는 없다.

바. 형사절차상 협상(Verständigung) 제도 존재

독일의 경우에는 법원의 주도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할 수 있다. 독일의 협상은 법원이 주체로 이루어지고, 법원은 형벌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할 수 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법원의 제안에 동의했을 경우에 협상이 성립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57c조). 협상이 있는 경우 상소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독일 형사소송법 제302조), 협상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상소 기회는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판결 이유에 협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을 뿐, 형사판결서 작성을 간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나,[213] 협상을 통해 자백이 이루어지는 경우 심리절차도 비교적 간결하게 진행될 것이고, 예상되는 형이 선고될 것이므로, 상소율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단축판결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협상에 따라 상소율이 낮아지면 판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부담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213) 협상에 따라 유죄판결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BGH 2 StR 383/11 – Beschluss vom 22. September 2011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인 사안이라도 증거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한바 있다(위 판결에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진실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면서, 피고인이 법원이 약속한 상한을 넘지 않는 형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오로지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를 완전히 검토하여 형성한 심증에 기초한 사실관계만이 유죄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II. 독일의 특수한 형사절차

1. 형벌명령(Strafbefehl)[214]

가. 개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약식명령 제도와 유사한 형벌명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형벌명령은 경죄(Vergehen, 법정형 중 자유형의 최저형이 1년 미만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215]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서면 심사한 후에 발령하는 것이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7조). 형벌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그 서면에는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는 공소사실, 적용된 법률 규정, 증거, 선고되는 법적효과가 기재되면 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9조). 독일의 경우 형벌명령으로 상당수의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6]

나. 우리나라의 약식명령과 차이점

형벌의 범위로 벌금형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약식명령과 달리, 벌금형 외에 자유형에 해당하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217] 형벌명령을 할 수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

형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약식명령과 달리 검사의 신청에 구속된다. 판사는 검사가 신청한 형벌명령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지만,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검사가 신청한 벌금 액수 등 형벌의 종류 및 내용대로 형벌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 이에 따라 형벌명령에 대하여는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만

214) 우리나라의 약식명령과 일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어 약식명령 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으나, 약식명령과 성질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단어 그대로 형벌명령으로 번역한다.

215)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제12조에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216) 2024년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 보고서(검찰청)에는 검찰의 전체 공판청구(Anklage insgesamt) 건수를 341,573건으로, 전체 형벌명령 신청 건수(Antrag auf Erlass eines Strafbefehls)를 523,789건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전체 공판청구 건수보다 형벌명령 신청사건이 다수이다.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Publikationen/Downloads-Gerichte/statistischer-bericht-staatsanwaltschaften-2100260247005.xlsx?__blob=publicationFile&v=3 24211-08 부분 통계 참조(2026. 4. 20. 확인).

217) 다만,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형벌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 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4항). 다만, 일수 벌금[218]에 있어서 1일수당 금액 부분에 한정하여 이의를 할 경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의 동의가 있으면 본안 심리 없이 법원은 이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독일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

다. 실제 사례

아래에는 독일의 카셀(Kassel) 구법원에서 있었던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에 관한 형벌명령으로, 검찰의 요청에 따라 25일 벌금으로 1일당 15유로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219] 인적사항, 범죄 일시 · 장소 및 범죄 행위[단일 행위로 타인을 모욕(durch dieselbe Handlung andere Menschen beleidigt zu haben)], 범죄사실과 적용법조(Vergehen, strafbar nach), 증거(Beweismittel), 형벌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순서로 기재가 되어있다. 형벌명령의 경우 실무상 검사가 작성한 형벌명령 양식의 서류에 판사가 서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218) 독일의 경우에는 벌금형(Geldstrafe)은 전체일수 및 1일수당 금액(최대 30,000유로)으로 구성되고, 1일수의 금액은 행위자의 개인적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순소득이 기준이 된다. 독일 형법 제40조 참조.

219) https://anwaltskanzlei-adam.de/wp-content/uploads/2020/11/2011-04-13-Strafverfahren-Strafbefehl-Amtsgericht-KS.pdf (2026. 4. 20. 확인). 아래 형벌명령에 별지 형식으로 붙어있는 구제수단 안내는 제외하였다.



Amtsgericht Kassel
Frankfurter Straße 9
34117 Kassel

Telefon: 0561 / 912 - 0
Telefax: 0561 / 912 - 2030

Kassel, den 13.04.11

Aktenzeichen: 9622 Js 11344/11 -282 Cs

Herrn
[redacted]
[redacted] Kassel

Geburtsdatum und -ort: 21.05.1986 in [redacted]

Strafbefehl

Die Staatsanwaltschaft Kassel klagt Sie an,

am 03.12.2010
in den Gemarkungen Wabern und Treysa

durch dieselbe Handlung

andere Menschen beleidigt zu haben.

Anlässlich einer Personenkontrolle im Regionalexpress, Zug-Nr. 4111, auf der Bahnstrecke von Kassel nach Frankfurt/Main, wurden Sie von den beiden Bundespolizeibeamten POM [redacted] und PHM [redacted] aufgefordert, sich durch Vorzeigen von Personalpapieren auszuweisen. Dabei beleidigten Sie die beiden Bundespolizeibeamten während der Zugfahrt zwischen den Haltestellen Wabern und Treysa mit den Worten "Ihr könnt mich mal", "Ihr seid wie früher die SS" und "Das sind SS-Methoden". Diese Äußerungen, durch die Sie die beiden Beamten in ihrer Ehre herabsetzen wollten, wurden von einer Vielzahl von Zugreisenden wahrgenommen.

Vergehen, strafbar nach

§§ 185, 194, 52 des Strafgesetzbuches

Strafantrag wurde form- und fristgerecht gestel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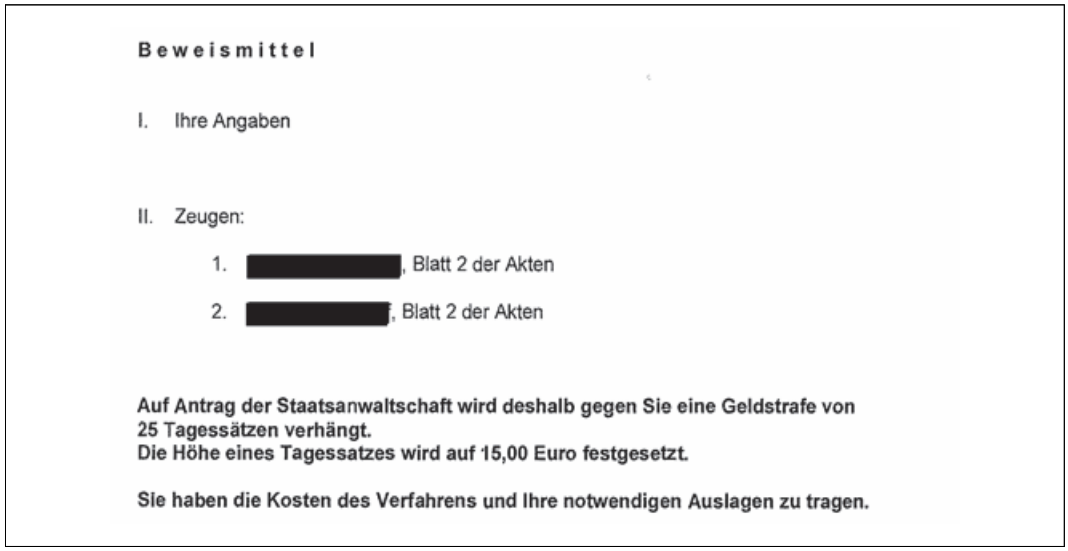

Beweismittel

I. Ihre Angaben

II. Zeugen:

1. [redacted], Blatt 2 der Akten
2. [redacted], Blatt 2 der Akten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wird deshalb gegen Sie eine Geldstrafe von 25 Tagessätzen verhängt.
Die Höhe eines Tagessatzes wird auf 15,00 Euro festgesetzt.

Sie haben die Kosten des Verfahrens und Ihre notwendigen Auslagen zu tragen.

2. 단축판결(Abgekürztes Urteil)

가. 개요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판결 이유(Urteilsgründe)

제4항 상소(Rechtsmittel)[220]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의 법률상 표지(gesetzliche Merkmale der Straftat)[221]가 인정되는 증명된 사실들과 적용된 형벌법규가 기재되어야 한다; 단, 벌금형만을 선고하거나 또는 벌금형 외에 운전금지나 운전면허의 박탈 그리고 그와 함께 운전면허증의 몰수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 또는 형벌 유보부 경고의 경우에는, 공판에 회부된 공소요지(Anklagesatz), 제418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공소장 또는 형벌명령 그리고 형벌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항 제5문은 준용된다. 판결 이유의 그 밖의 내용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상소 제기 기한의 도과에 대하여 원상회복(Wiedereinsetzung)이 허용되는 경우,[222] 판결 이유는 제275조 제1항 제2문에서 규정된 기한[223] 내에 보충될 수 있다.

제5항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유죄로 입증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증명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상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에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혐의로 제기된 범죄가 사실상의 이유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만 기재하면 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선고를 위하여 형사판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의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판결 이유는 낭독하거나 핵심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또한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아래에서 살펴볼 예정이나 매우 길고 복잡하게 작성되는데, 상소가 없을 경우에는 단축판결이라는 형식으로 매우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상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판결서를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4항 및 제5항).

220) 이는 법적인 불복수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문맥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상소'로 번역한다.
221) 구성요건적 요소를 의미한다.
222) 상소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23) 앞서 본 서면판결서 작성기간(5주 등)에 관한 조문이다.

나. 단축판결의 작성 요건 및 시기

유죄 및 무죄판결 모두 상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모든 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상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단축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고,[22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면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간인 판결 선고 시점부터 5주(변론 기간에 따라 연장)의 기간은 단축판결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다. 제도의 도입의 취지와 이용 정도

독일의 통계자료 중 전체 형사 제1심판결 중 단축판결의 이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제도의 설계상으로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단축판결을 이용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나, 실무적으로는 업무 경감을 위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단축판결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통계는 아니나 독일의 문헌 중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해당 문헌에서 분석한 판결서 중 63%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단축판결 관련 법률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문헌도 있다.[225]

한편, 위와 같이 단축판결이 활용되는 독일의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한 상소율은 아래와 같다. 단순한 상소율의 수치적 비교만으로 상소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판결선고 시점에 서면판결서가 제공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한 단축판결이 작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소율은 [별지1]의 우리나라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율보다 낮은 편으로 보인다.[226]

---

224)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회복되는 경우 등[독일 연방일반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BGH 3 StR 450/23 – Beschluss vom 15. Mai 2024 (LG Mainz) 등]에는 추후에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25) Andrea Kemper, 『Die Unterbringung in der Entziehungsanstalt zwischen Fehleinweisung und Fehlkonstruktion』, Univ. Bremen, Diss., 2009, 159면. https://d-nb.info/1000797767/34 (2026. 4. 20. 확인).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분석한 판결 중 63%를 제외한 나머지 판결에 관하여, 법원이 단축판결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나머지 판결 모두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하였는바(즉, 나머지 판결 중 상소가 제기된 판결은 애초부터 단축판결의 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이용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단축판결이 아닌 판결은 주로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연구에서 단축판결의 대상인 항소제기가 없는 제1심 형사판결에 있어 단축판결의 이용 정도는 63%보다 현저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26)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Publikationen/Downloads-Gerichte/statistischer-bericht-strafgerichte-2100230247005.html 해당 통계의 24221-05, 24211-15, 24211-28 부분 참조(독일 연방통계청 형사법원 통계 보고서, 2026. 4. 20. 확인).

[표 2] 독일 형사사건 상소율(2024)

제1심법원	형사판결 (Urteil)	상소된 판결 (Angefochtene Urteile)	상소율[227]
구법원	209,976건	37,813건	약 18.0%
지방법원	9,903건	4,735건	약 47.8%
고등법원	44건	21건	약 47.7%

라. 독일 외 유럽 국가들의 유사 제도

독일 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유럽 국가들은 상소제기나 판결 이유 신청 등을 전제로 판결 이유를 일부 또는 전부 생략하거나 판결 이유를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즉, 독일과 같이 서면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하거나, 간이한 형태의 판결서를 작성한 후 별도의 신청이나 상소가 있는 경우에만 상세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유럽 내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서 작성방식이 아니다.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Strafprozeßordnung)[228]

제270조

제1항 모든 판결은 선고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중략)

제4항 절차참여자들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를 위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이 선고되었거나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예방조치 또는 활동금지(형법 제220b조)가 명하여진 경우가 아닌 한, 판결은 단축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단축판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에 기재된 사항, 다만 판결 이유는 제외한다.[229]
2. 유죄판결의 경우, 법원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의 압축적 기재(Gedrangte Darstellung)와, 양형 및 필요한 경우 일수 벌금액(Tagessatz)의 산정(형법 제19조 제2항)에 결정적인 사정들의 핵심어(Schlagworten) 방식[230] 기재

227) 원 통계자료에는 상소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연구자가 판결건수와 상소된 판결건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3. 무죄판결의 경우, 그에 결정적인 이유의 압축적 기재

폴란드 형사소송법(Kodeks postępowania karnego)[231]

제422조(판결 이유서 작성 및 송달 신청)

제1항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의 실권기간(Termin zawity) 내에, 당사자, 심문기일(Posiedzenie)[232]에서 선고된 절차의 조건부 종결 판결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판결 이유(Uzasadnienie)의 서면 작성 및 송달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판결 이유서 작성이 당사자 및 피해자의 이유서 송달 신청 제출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a항 제91a조에 규정된 의무 주체(podmiot zobowiązany)도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b항 검사, 변호인 또는 변호사(adwokat)나 법률고문(radca prawny)인 대리인, 또는 폴란드 공화국 총괄 송무기관(Prokuratoria Generalna Rzeczypospolitej Polskiej)은, 제1항의 신청을 정보포털(portal informacyjny)에 그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후략)

제423조 (판결 이유서 작성 기한 및 범위)

제1항 판결 이유서는 이유서 작성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직권으로 이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이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원장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a항 기소검사가 피고인에게 기소한 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 혹은 단지 형벌 및 행위의 기타 법적 결과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또는 피고인 중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 이유서 작성 신청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신청이 관련된 그 판결의 부분으로만 판결 이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이유서가 첨부된 판결서는 제422조에 근거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 송달한다. 제100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8) https://www.jusline.at/gesetz/stpo/paragraf/270 (2026. 4. 20. 확인).
229) 제2항에 기재된 사항 중 판결 이유 부분 외의 사항은 주문(결론)과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0) 키워드(Keyword)를 토대로 하는 기재 방식이다.
231)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19970890555/U/D19970555Lj.pdf (2026. 4. 20. 확인).
232) Posiedzenie는 정식의 공판기일이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로 우리의 법령상 이에 가까운 형태의 기일인 심문기일로 번역한다.

스위스 형사소송법(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233]

제82조 이유제시의무(Begründungspflicht)의 제한

제1항 제1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판결 이유의 서면 작성을 생략한다(verzichtet).

a. 판결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고; 또한

b. 2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형법 제64조에 따른 보안감호(Verwahrung), 형법 제59조에 따른 치료처분을 선고하지 않거나, 동시에 취소되어야 할 조건부 제재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자유박탈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제2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후에 이유가 기재된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a. 당사자가 판결 주문(Dispositiv)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는 경우

b. 당사자가 상소(Rechtsmittel)를 제기하는 경우

제3항 사인소추인(Privatklagerschaft)만이 이유가 기재된 판결서를 청구하거나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사인소추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범죄 행위 및 그 민사상 청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 이유를 기재한다.

네덜란드 형사소송법(Wetboek van Strafvordering)[234]

제365a조 (단축 판결 및 판결 보충기한)

제1항 통상의 상소(gewoon rechtsmiddel)가 제기되지 않는 한, 단축된 판결(verkort vonnis)을 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제2항 통상의 상소가 제기된 단축된 판결은 제359조 제3항에 규정된 증거방법(bewijsmiddelen)으로 보충되어야 하며, 제359조 제3항 제2문이 적용되는 범위[235] 내에서는 증거방법의 열거(opgave van bewijsmiddelen)로 보충된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상소가 제기되었거나 제410a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항 보충은 상소가 제기된 후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심리된 사실과 관련하여 미결구금(voorlopige hechtenis)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된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33)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0/267/de (2026. 4. 20. 확인).

234) https://www.inview.nl/openCitation/id1b8ab48d9273cea5dc12887f423269a4/wetboek-van-strafvordering-artikel-365a?ctx=ea12f41c3b09dbc0e3ab12dbfe7817e4&undefined (2026. 4. 15. 확인).

235)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자백한 경우를 말한다.

마. 구체적 적용 사례

유죄 판결의 경우 범죄의 법률상 표지가 드러나는 사실과 적용되는 형법을 표시하면 된다. 아래는 유죄 단축판결의 경우의 이유 작성례이다.[236]

[통상의 단축판결]
피고인은 2018. 2. 1. ...에 있는 ...식당에서 ...소유의 100유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그 돈을 사용하였다. 독일 형법 제242조. 자유형 4월.

벌금에 대한 판결 등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소장, 형벌명령, 형벌명령 신청서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237]

[벌금에 대한 단축판결]
피고인은 2018. 8. 1.자 약식명령에 기재된 행위에 대한 죄책을 진다.
증명된 사실 및 적용되는 형벌조문은 2018. 1. 14.자 법원의 조서에 기재된 구두로 제기된 공소와 같다. 이를 인용한다.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기소된 범죄가 사실 또는 법률상 이유로 입증되지 않았는지 여부만 명시하면 된다. 아래는 아헨 구법원(Amtsgericht Aachen)에서 2018. 6. 6. 있었던 무죄의 단축판결의 이유 부분으로 이유 중 기소된 범죄가 무엇인지는 형벌명령을 인용하고, 구체적인 무죄이유는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유가 사실상의 이유라는 취지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다.[238]

[무죄에 대한 단축판결]
이유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5항에 따라 단축됨)
혐의는 …… 형벌명령에서 도출된다. …… 행위에 관하여는 절차가 분리되었다.[239]

---

236)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6면.
237) 위의 책.
238) https://www.rechtsanwalt-bex.de/uploads/uploads/Freispruch-K%C3%B6rperverletzung-2018.pdf (2026. 4. 20. 확인).
239) 이 부분은 무죄로 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워진 범죄행위를 사실적 이유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64조, 제467조로부터 도출된다.

3. 검토

독일은 법관의 숫자가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주요 국가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사법자원이 매우 풍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독일의 경우 일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가능하여, 우리의 약식명령보다 적용의 범위가 넓은 형벌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 형사판결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 판결서를 매우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단축판결 제도를 두고 있는바, 사법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III. 독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1. 유죄판결의 이유

가. 이유의 기재사항 및 구성

(1)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규정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판결 이유(Urteilsgründe)

제1항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 이유는 범죄의 법률상 표지(gesetzliche Merkmale der Straftat)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명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증명이 다른 사실들로부터 추론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들도 기재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록에 있는 시각 자료(Abbildungen)들을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공판에서 형벌법규가 특별히 정한 사정들로서, 가벌성을 배제하거나, 감경하거나 또는 가중하는 사정들이 주장되었다면, 판결 이유는 이러한 사정들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제3항 또한 형사판결의 이유에서는 적용된 형법규정을 적시하여야 하고, 형의 양정을 결정한 사정을 밝혀야 한다. 형법에 감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경한 형의 규정이 적용된 경우 판결 이유는 이들 사정을 받아들인 이유 또는 심리 중에 제기된 신청을 거절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는 형법 제47조에 따라 자유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또 판결 이유에는 형법상 일반적으로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하며, 이들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2문을 준용한다. 더 나아가 판결 이유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또는 심리 중에 제기된 신청에 반하여 이를 유예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는 형의 선고유예나 형의 면제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판결이 합의(제257c조)를 전제로 한 경우에도 판결 이유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6항 판결 이유에는 또한 보안처분을 명한 이유, 유보조건부 보호감호를 선고한 이유 또는 심리 중의 신청에 반하여 이를 명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 범죄행위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취소 또는 형법 제69a조 제1항 제3문의 정지를 고려하였음에도 이를 명하지 않은 경우 판결 이유에 당해 처분을 명하지 않은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의 이유로 설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독일은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법령 자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실무상으로도 비교대상 주요 국가 중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2) 독일 형사판결서의 이유구성 체계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유가 기재된다.[240]

Ⅰ. 피고인의 신상(persönliche Verhältnisse)에 관한 인정사실
Ⅱ.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사실(Sachverhaltsschilderung)
Ⅲ. 증거판단(Beweiswürdigung)
Ⅳ. 법적판단
Ⅴ. 양형의 이유
Ⅵ. 소송비용 등에 관한 설시

240) 정승연, 법조 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23면.

아래에서는 뉘른베르크-퓌르트 지방법원(LG Nürnberg-Fürth)에서 2021. 1. 12. 선고한 사건인 LG Nürnberg-Fürth, Urteil v. 12. 01. 2021 – 16 KLs 875 Js 10476/19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241] 해당 사건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절도 4건(각 손괴죄 상상적 경합, 1건은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242]), 주거침입절도미수죄(각 손괴죄와 상상적 경합) 2건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자유형 4년 등이 선고된 사안이다.

나.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인정사실

A. 인적 사항

I. 이력(Werdegang)

피고인은 ...[243]년 ...에서 태어났다. 그는... 국적이고, 3살 연하인 여동생과 10살 연하의 남동생과 함께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중략) 독일 입국 전 피고인의 어머니는 유방암에 걸렸고, 피고인의 아버지는...의 경제위기로 실직하였다. 경제위기로 피고인 자신도 실직하였다. 어머니의 암 치료비는 알바니아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후략)

II. 범죄 기록

피고인은 독일에서 범죄 기록이 없다.

프랑스 범죄기록에는 총 3건의 기재가 있다. 프랑스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는 이 절차의 대상이 된 행위 이후에 행한 것이다. (후략)

III. 구금 사항

피고인은 2020. 10. 23. 프랑스에서 독일 연방경찰로 이송되었다. 2019. 10. 15. 뉘른베르크 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2020. 10. 23.부터 공판기일까지 중단 없이 구금되어 있었고, 2020. 11. 17.부터 뉘른베르크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3항은 형사판결의 이유에서 형의 양정을 결정한 사정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양형에 있어 필요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개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양형 이유의 기재가 임의적일 뿐 아니라, 양형이유를 기

241)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1-N-39382?hl=true (2026. 4. 20. 확인).

242) 이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 인정 부분은 상고심인 BGH 6 StR 194/21, 2021.07.13에서 제외를 하였으나, 이는 판결서 작성방식을 연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논의를 설시하지는 않는다.

243) 이와 같이 처리된 부분은 원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삭제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재하면서도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인자만을 간략히 서술하거나, 범행 경위 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인자만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개인적 성장 과정 및 경력, 가족관계, 관련된 범죄기록, 구금과 관련한 자료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실관계들을 모두 사실인정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아래의 증거평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 기재된 양형사유들도 증거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사실

유죄판결에는 증명되었다고 인정되고 범죄의 징표가 드러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범행의 이전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경과, 피해자에게 미친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책임능력 등을 기재한다. 법원은 공판정에서 소송자료를 검토하여 증명된 사실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사실을 근거로 확신을 형성한 후 이를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사실을 기반으로 관찰자의 시각에서 역사적 경과로 기술한다. 유죄선언의 근거사실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그 자체로 완결되고 분명하며 모순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법률효과선언의 근거사실에 있어서는 범죄행위의 불법내용 및 책임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인정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가 된다.[244]

아래에서는 위에서 본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소개한다. 우선 다른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과 공모관계를 서술한 다음, 범죄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한 구성요건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가 보험 등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그 경위(유리창 손괴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되었다는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주거침입 절도로 인하여 잠금장치를 구입해서 비용이 들었고, 수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저녁에 셔터를 내린다는 등의 내용) 등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양형사유로 볼만한 사정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

244)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각국의 하급심 판결서 :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0면.

I. 피해자 ...

2015. 6. 2. 23:00경부터 2015. 6. 3. 05:40경 사이에 피고인과 …는 … 및 …의 주택으로 갔다.

사전에 공동으로 형성한 범행결의에 따라, 그들은 의식적이고 의욕적으로 협력하여 단독주택에 침입하였다. 그들은 가져온 8mm 굵기의 드릴을 사용하여 손잡이 아래쪽의 지하실 창문을 뚫고, 그 결과 생긴 구멍으로 와이어를 통과시켜 안쪽 레버를 열었다. 그들은 법적 근거 없이 자신들이 보유하기 위해, 단독주택에서 299.00유로 상당의 Samsung S5 휴대전화와 780.00유로의 현금을 훔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절취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부지를 떠났다.

피고인 및 별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245]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한 바와 같이... 유리창에 185.28유로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보험으로 보상되었다.

범행 중 피해자들은 앞서 언급한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행 후 수면 장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안전에 관한 심리적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범행 후 집에 경보장치와 잠금 기능이 있는 셔터를 설치하고 창문에 잠글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했다. 피해자들은 침입방지 조치에 총 400.00유로를 지출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수면장애를 겪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의 안전에 관한 심리적 안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일 저녁 모든 셔터를 내리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 증거판단

법원이 어떻게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과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지를 기재한다. 간접사실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순히 조사된 증거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이 심증의 형성에 이르게 된 근거와 과정을 서술한다.[246]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 부분이 매우 길고 상세한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검토한 사건은 자백사건임에도 자백의 신빙성이나 관련 증거

245) 다른 공범으로 보인다.

246)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각국의 하급심 판결서 :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2면.

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증거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 증인진술을 방대하게 재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는 개별 증거에 대하여 요구되는 평가, 상호 비교, 비중 부여를 대체할 수 없다.[247] 즉, 사실심 법원은 자신의 증거평가에 관한 고려를 서면 판결 이유에 논리적으로 완결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여, 그 증거판단이 상고심 법원의 실체법적 심사에 열려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248]

이에 따라, 자세하면서도, 단순히 증거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증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독일 판결서의 증거 평가 부분은 대부분 길고 상세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에서 본 판결의 증거판단 부분 중 일부로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한 자백 사건이지만(다만, 일부 범행에 대한 중지미수 주장 포함),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249] 이는 특히 자백사건인 경우에는 자백 여부와 보강 증거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우리의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와의 차이라고 할 것이다.

I. 인적 사항에 관한 인정

피고인의 이력에 관한 인정은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근거한다. 재판부는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후략)

II.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B. VI에 따른 범죄를 자발적으로 저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중략)

피고인의 자백은 B. VI. 사건에 관한 범죄의 자발적 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찰 담당자 …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확인되고, 보충된다.

그는 수사의 경과를 설명하고 범행수법을 확인하였다. (후략)

247) BGH 2 StR 367/19 – Beschluss vom 13. Mai 2020 (LG Gera).
248) BGH 2 StR 322/15 – Beschluss vom 29. Dezember 2015 (LG Aachen).
249) 또한, 생략한 부분에는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의 신빙성 평가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증거평가 부분은 매우 길고 상세하게 작성되고 있고, 그 결과 경우에 따라 판결서의 분량이 지나치게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작성된 판결서 중 매우 길고 복잡한 판결서로 알려진 네오나치 단체인 국가사회주의 지하조직(NSU)의 테러행위와 관련한 뮌헨 고등법원의 판결서[250]에 대해서, 상고심인 연방일반법원은 상고심 판결[251]에서 해당 고등법원의 증거평가방식에 관하여 '재판부가 선택한 증거평가의 서술 방식, 즉 각 개별 사실인정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서로 누적되어 있는 확신 형성 과정을 단계적으로 전달하고, 동일한 설명을 각 범죄마다 반복하는 방식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고 가독성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으로 방대한 판결이유를 초래한다.'라고 설시한 적도 있다.[252]

마. 법적 판단

법적판단 부분에서는 인정된 사실관계가 적용되는 모든 법조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결 작성방식(Urteilsstil)에 따라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이유를 설시한다. 법조문은 형벌 구성요건, 가담형태, 경합관계의 순서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등 형법학의 검토순서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해당 법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범죄사실에 관한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므로 간단한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문을 지적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법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세한 포섭과정에 관한 설시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요건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다.[253]

아래에 인용한 해당 판결의 법적 판단 부분 중 일부에 관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계되는 법령을 우리나라의 판결서와 같이 나열하는 형태로 간결하게 기재하기보다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법적인 포섭을 하는 기재를 하고 있다.

---

250) OLG München, Urteil vom 11. 07. 2018 – 6 St 3/12, 3,000면 이상이고, 2018. 7. 11. 구두 판결이 선고된 후, 최종적으로 판결서는 2020. 4. 21. 완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었다.
251) BGH 3 StR 441/20 – Beschluss vom 12. August 2021.
252) 다만, 그것이 판결이 파기될 사유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253)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각국의 하급심 판결서 :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2면.

피고인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4건의 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고, 이는 각각 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그중 1건은 절도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이고, 2건의 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는데, 이는 각각 재물손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적용 법령명 부분 중략)

피고인과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은 독일형법 제25조 제2항의 의미로 공동으로 행위하였다. 공동 범행계획에 기초하여 ...의 행위도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관하여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성공에 필요한 이해관계와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와 피고인 사이에는,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 범행 동기를 제공하고 범행장소를 고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범행장소에 이동했다는 점에서 상하관계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와 마찬가지로 범행성공에 높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필요한 행위지배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는 함께 각 범행장소로 갔고, 범행을 공동으로 분업하여 실행하였다.

(이하 생략)

바. 양형의 이유[254]

(1) 형 범위(Strafrahmen)의 확정

양형의 법적용 과정을 설시함으로써 형의 양정에 결정적인 사정을 기재하는데, 우선 형의 범위를 확정한다.

(2) 형의 범위 변경

형의 범위를 정한 후 형의 범위 변경을 검토한다. 독일 형법 제49조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법정형이 낮아지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법정형이 높아지는 경우, 일반적인 예가 없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높아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4) 이 부분은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3면-475면.

(3) 개별형의 결정 등

형의 범위를 결정한 후 개별형을 결정한다. 개별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6개월 이하의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이유, 벌금형의 일금을 결정하는 이유, 실체적 경합범에서 전체형 산정 또는 사후적 전체형의 산정, 집행유예, 무기자유형에 있어서 책임이 특히 중한지, 개선 · 보안처분, 운전금지, 추징, 몰수 등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다.

(4) 실제 사례의 검토

위에서 본 주거침입절도 사건의 경우에도 복잡하거나,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절도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자백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여부, 피해자들이 사죄를 받아들였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 등 앞서 인정된 여러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정황 등을 양형과정에서 상세하게 기재하면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범죄별 형을 우선 정한 다음, 실체적 경합의 경우 개별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전체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아래의 경우 전체 양형이유 중 일부분으로 자백 및 사과, 범행 동기에 관한 내용이다.[255]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했고, 그 자백이 재판부의 판단으로는 죄책의 인정과 후회에 근거한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절차를 상당히 단순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직접 사과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피해자들은 각각, 피해자 ...를 제외하고, 그 사과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알바니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충당하려는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
> (이하 생략)

255) 그 밖에 아래에 표시되지 않은 범행의 경위, '보다 경미한 경우(minder schwerer Falle)'에 해당하는지, 임의적 감경(미수범 관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기재하였다.

2. 무죄 판결의 이유[256)]

가. 이유의 내용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것인지(nicht überführt) 또는 증명된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인지(nicht strafbar erachtet)를 분명히 하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독일 형사소송법 제267조 제5항 제1문).

나. 사실상의 이유(tatsächlichen Gründe)에 의한 무죄

법원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이다. 우선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다음, 유죄선언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사실이 어떠한 이유에서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밝힌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장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증거판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으로서 확인된 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법률상의 이유(rechtlichen Gründe)에 의한 무죄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요소가 흠결되거나 피고인에게 면책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증명된 사실을 처벌할 수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 증명된 행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의 이유와 같이 자세하게 사실을 설시하거나 증거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라. 무죄 판단의 범위

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점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무죄 판결에서는 모든 법적 관점에서 무죄임을 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모든 관점에서 검토를 하지는 않고,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관

256) 이 부분은 독일 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각국의 하급심 판결서 :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477면.

계에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다른 형벌규정이 적용됨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독일 형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법률적 관점의 변경을 지적하거나 검찰이 공판에서 예비적으로나마 다른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에 관한 이유를 설시한다.

마. 실제 판결 사례 검토

아래에는 독일의 아헨 구법원에서 있었던 무죄판결 이유의 일부이다.[257] 피고인은 가짜 루이비통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이베이[258]를 통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그러한 거래를 하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아래와 같이 법원은 각종 증거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2021. 7. 7. 실시된 수색조치에 근거한 수사관들의 조사결과에도 부합한다. 수색 메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확인 중 침실 서랍장 안의 서랍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Michael Kors와 Louis Vuitton 브랜드의 여러 물품이 있었다. 그 물품들은 전부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었다. 피고인의 eBay 계정도 확인되었다. 그곳에는 GUESS 브랜드의 목걸이 하나만 판매중이었고, 인증서가 포함된 물품도 서랍에 있었다.
>
>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계좌요약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았다. 범행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연방중앙등록부 발췌본[259]에도 어떠한 등록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 단순한 정황 요인임을 오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 및 구매자들의 서면 진술에 비추어, 공소장의 의미 내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징후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정황과 제3자가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eBay 계정을 조작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므로,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은 가능하지 않다.

257) https://www.rechtsanwalt-bex.de/uploads/Freispruch-strafbare-Kennzeichverletzung-2022.pdf (2026. 4. 20. 확인).
258) 전자상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이다.
259) 전과 등의 등록사항이 기재된다.

Ⅳ. 시사점

독일의 형사판결서는 그 체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보다 길고 자세하게 작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길고, 자세한 판결은 비교대상인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많은 법관의 수 등이 뒷받침한다고 할 것인바, 우리의 형사재판 현실에서는 독일의 작성방식 등을 참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독일은 우리와 비교할 때 사법자원이 풍부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다. 형벌명령은 우리의 약식명령과 비교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판결서 간이화와 관련하여 상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간이하게 판결을 작성하게 하는 단축판결 제도를 두고 있다. 앞서 검토한 단축판결과 유사하게 상소나 별도의 신청을 전제로 판결서의 이유 작성을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하는 제도는 유럽 내에서 많은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다툼이 종료되어 상세한 판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제도는 일응의 합리성이 있고,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한 판결서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독일의 제도는 구두 선고 후 사후에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판결서에 의한 판결선고를 전제로 하는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다소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은 주문에서 유죄판결에 관하여 그 법률효과인 형을 고지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우리와 달리 주문에서 유죄의 선언을 하면서 유죄가 인정된 죄 및 죄수까지 특정됨에 따라 주문만으로도 불복결정을 위한 상당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절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I. 프랑스의 형사재판제도 개관

1. 범죄의 종류에 따른 관할 법원 및 재판 절차의 개관

가. 범죄의 종류

프랑스 형법(Code pénal) 제111-1조는 범죄를 그 법정형에 따라 중죄(crime), 경죄(délit), 위경죄(contravention)로 분류한다. 이는 각 범죄유형별 형벌 외에 형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의 구분과도 연결된다.

중죄에 대한 형벌은 프랑스 형법 제1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을 무기의 중죄 구금형(중죄 구금형은 프랑스법상 중죄에 대한 자유형인 'ré-clusion criminelle'과 'détention criminelle'을 포괄하여 번역한 것이다), 최대 30년의 중죄 구금형, 최대 20년의 중죄 구금형, 최대 15년의 중죄 구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죄에 해당하려면 중죄 유기 구금형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260]

경죄에 대한 형벌은 프랑스 형법 제131-3조부터 제131-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대 10년의 경죄 구금형(emprisonnement)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프랑스의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 제381조는 경죄법원이 경죄를 관할함을 규정하면서, 법률이 경죄 구금형 또는 3,750유로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경죄로 보고 있다.

위경죄에 대한 형벌은 프랑스 형법 제131-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위경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60)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 중 가장 낮은 법정형의 기간이 15년으로 미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죄가 되고자 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중죄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형의 기간은 15년, 20년, 30년, 무기로 정해져 있다.

나. 중죄법원(Cour d'assises)[261]

(1) 개요

중죄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형사법원의 관할을 규정한 제380-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죄로 기소된 자를 제1심 및 항소심으로 재판할 권리가 있는 법원이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31조). 본래 중죄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죄법원의 관할이었으나, 중죄법원의 재판지연 문제 등을 고려하여[262]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형사법원에서 중죄 중 일부를 관할하도록 형사법원을 구성하는 법률이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그 관할범위가 축소되었다.

중죄법원의 제1심은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3인의 직업법관과 6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의 판단을 함에는 7표 이상이 필요하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59조), 형을 정할 때는 과반수로 정하나,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263] 7표 이상이 필요하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2조).[264]

(2) 중죄법원의 제1심 재판절차[265]

변론 종결 후 재판장은 법관과 배심원이 답하여야 할 질문들을 낭독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48조).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유 · 무죄 여부, 각 공소사실에 관한 확인(피고인의 동일성, 범죄 일시와 장소, 피해자의 동일성, 범죄의 구성요소 등), 형의 가중 또는 감면 요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49조).

법관과 배심원들은 퇴정 후 합의실에서 각 질문에 관하여 비밀투표를 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투표결과 채택된 결정은 질문지(feuille des questions)에 기재되고 재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 1인이 서명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4조). 투표 후 법관과 배심원은 법정으로 돌아와 투표 결과에 따른 판결을 선고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즉, 중죄법원의 제1심 절차에서는 통상 변론종결 후 같은 절차 내에서 합의와 선고가 이루어진다.

---

261) 아래에서는 프랑스의 법원 중 소년중죄법원 및 특별중죄법원 등 특수한 법원이 아닌 일반 중죄법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여 설명한다.
262) 박우경,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125면.
263) 다만, 최고형이 종신형인 경우 종신형에 필요한 표가 없으면 30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64) 이에 따라, 직업법관 전원이 유죄의 판단을 하더라도, 배심원의 과반수(6명 중 4명)가 유죄의 판단을 하여야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265)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36면.

다. 형사법원(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1) 개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80-16조는 법적인 재범 상태가 아닌[266] 15년 또는 20년 중죄 구금형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기소된 성인을 형사법원에서 제1심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80-21조에 의하여,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중죄법원의 항소심에서 담당한다.

형사법원의 재판부는 재판장 1명, 배석판사 4명으로 구성되고, 배심원을 두지 않는다.

(2) 형사법원의 재판절차

배심원 관련 조항의 제외 등의 예외[267]를 제외하고는 중죄법원의 규정을 준용하여 절차가 진행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80-19조).[268] 이에 따라 아래에서 살펴볼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5조의1에 따라 중죄법원이 작성하는 판결의 이유서(feuille de motivation)도 작성한다.

라.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269]

(1) 개요

경죄법원은 3명의 직업법관(1인의 재판장과 2인의 배석판사)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구금(emprisonnement)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8-1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1인의 재판장만으로 구성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2) 경죄법원의 재판절차

경죄법원은 배심원의 참여가 없으므로 판결은 변론종결일 또는 그 이후에 선고기

266) 프랑스어로 'lorsqu'il n'est pas commis en état de récidive légale'라고 표현되어 있다.
267) 유죄의 판단 등도 중죄법원과 달리 단순 과반수에 의한다.
268) 즉, 형사법원의 절차는 중죄법원의 절차와 별개의 절차가 아닌 중죄법원의 절차를 전제로 제1심에서만 배심제와 관련한 요소를 배제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항소심도 중죄법원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269)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37면.

일을 지정하여 선고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62조). 한편, 경죄법원의 사건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95조의 요건을 갖춘 일정한 경우에 한해 검사에 의해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약식절차의 경우 법정에서의 심리 없이 벌금 또는 무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재판을 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95-1조).

마. 경찰법원(Tribunal de police)[270]

경찰법원은 1인의 단독판사로 구성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23조). 경찰법원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모두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형 750유로 초과 1,500유로 이하의 위경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는 약식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24조).

2. 프랑스 형사절차의 제도적 특징

가. 공소(Action publique)와 사소(Action civile)

공소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법관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개시되나,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도 공소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조). 사소는 범죄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공소와 함께 형사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소에 관해서는 배심원이 관여하지 않고 직업법관이 판단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71조).

나. 사전 유죄인정 출석 제도(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95-7조에 따라, 일정 범위의 경죄 등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하여 제안한 형량을 피고인이 받아들이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70) 같은 책.

다. 공익을 위한 사법적 합의 제도(Convention judiciaire d'intérêt public)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뇌물, 횡령, 탈세, 자금세탁 등 특정 경제 ·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법인에게 공소제기에 갈음하여 대신 '사법 공익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최근 3개 회계년도의 3년 평균 연 매출액의 30% 한도 내에서 산정된 공익 벌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대표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은 여전히 유지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이 검사의 제안에 동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협약의 승인을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합의의 적법성과 벌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승인 명령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기업이 철회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이 무효가 되어 검사는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기소 대체조치 제도(Des alternatives aux poursuites)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검사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범죄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키거나, 가해자의 교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에게 일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 이행을 전제로 기소여부를 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조건부 기소유예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그 요건과 조치의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형사합의처분 제도(Composition pénale)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공소제기 전 검사가 일정 범위의 경죄 등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에게 합의벌금 납부, 피해회복, 교육 · 치료 등 일정한 제재적 조치를 제안하고,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는 등[271]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이행이 완료되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272]

---

271) 법정형이나 그 조치 내용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72) 이는 앞서 본 기소 대체조치와 달리, Casier judiciaire : bulletins n°1(사법 기록부 : 제1호 기록표)에 등재된다고 한다.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14710 (2026. 4. 20.

II. 프랑스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1. 중죄법원[273]

가. 판결서의 기재[274][275]

2009. 4. 29. 선고
판결
- Olivier MEPA
구금 8년, 사회보호처분 5년,
부가형 2년
FIJAIS[276] 등록

CRETEIL에 있는 VAL DE MARNE 중죄법원은 제1심에서 2009. 4. 29.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

소추결정 및 CRETEIL에 있는 VAL DE MARNE 중죄법원으로의 이송을 명한 2007. 11. 12. 자 결정에 따라 :

– Olivier MEPA
생 삐에르에서 1979. 6. 29. 출생
Félix와 Marie-Elise RASTOCLE의 자녀
국적 : 프랑스
직업 : 경비원
거주지 : 비트리 쉬르 센느, 슈아지가 101번지
변호인 : 끄레떼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SCIARAFFA

확인).

273) 아래에서는 중죄법원(Cour d'assises)의 판결서에 관하여만 기재한다.

274) 원 판결은 프랑스사법제도연구반, 프랑스의 판결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9), 법원행정처(2011), 529면–531면, 번역문은 프랑스사법제도연구반, 프랑스의 하급심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528면–534면 및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40면–143면 참조.

275) 그 밖에 중죄법원의 실제 형사판결서는 박우경,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244면–284면.

276) Fichier judiciaire automatise des auteurs d'infractions sexuelles ou violentes(성범죄 또는 폭력범죄의 범죄행위자 파일).

2008. 4. 4. 지역교도소에 구금됨

소추결정명령이 2008. 12. 16. 피고인에게 송달됨에 따라 ;

피고인에게 이번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과 증인 및 감정인의 목록을 통보하는 2009. 3. 24.자 영장에 따라 ;

서기가 피고인에게 이번 재판의 배심원 목록 구성의 수정을 알린 2009. 4. 28. 오전 9시 20분에 작성된 통지 조서에 따라 ;

2009. 4. 28. 09:45 첫 번째 심리가 열린 것이 적혀 있는 조서에 따라 ;

비공개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후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40조부터 제267조, 제296조 및 제303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중죄법원,

사소 당사자 '아동과 나눔' 협회의 변호인 : 변호사 ALLAIN-THONNIER.

사소 당사자 Nathalie WIART의 변호인 : 변호사 PELLETIER

사소 당사자 미성년자 Mégane BELI의 특별 재산관리인 Joël MARION의 변호인 : 변호사 KIRFEL

프랑스 형법의 적용을 청구하는 공판검사 JOSSE,

피고인 Olivier MEPA의 변호인 SCIARAFFA 씨와 최종진술을 한 피고인 본인;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55조부터 제3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의 적용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평의한 후 ;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

법원과 배심원의 선고에 따라 ;

적어도 8표의 다수 찬성으로 결과가 도출된 것을 고려하여 ;

– Olivier MEPA는 다음에 대하여 유죄 :

– VITRY SUR SEINE (94)에서 2005. 1. 1.부터 2008. 3. 30. 사이에 폭력, 강제, 위협 또는 기습에 의해 Mégane BELI에게 성적 삽입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Mégane BELI는 15세 미만이었고, 피고인은 그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의 동거남으로서 그녀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 ;

법원과 배심원단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위 사실은 프랑스 형법 제222-22조, 제222-23조, 제222-24조, 제222-29조, 제222-30조, 제222-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죄 및 경죄를 구성한다 ;

전술한 규정들, 프랑스 형법 제132-18조, 제132-24조, 제222-45조, 제222-47조, 제222-48조, 제222-48-1조, 제131-36-1조부터 제131-36-8조까지,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706-53-1조, 제706-53-5조, 제706-53-6조에 따라 ;

재판장에 의해 낭독된 전술한 규정들을 적용하여 ;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형을 선고한다 :

– Olivier MEPA

구금 8년

같은 과반수로 명한다.

– 프랑스 형법 제132-44조에 규정된 의무가 부가된 5년간의 사회보호처분 및 사소당사자에게 배상할 의무

프랑스 형법 제131-36-4조에 규정된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Olivier MEPA에게 부과될 구금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형의 선고 후에 Olivier MEPA에게 프랑스 형법 제131-36-1조, 제131-36-8조에 규정된 경고를 알려주었다 ;

이 판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375유로의 고정절차비용이 적용됨을 결정한다 ;

Olivier MEPA를 국가 자동 성범죄 또는 폭력범죄의 범죄행위자 사법파일에 등록함을 확인한다 ;

공화국 검사에 의하여 이 판결이 집행될 것을 명한다 ;

이 판결은 2009. 4. 29. CRETEIL 중죄법원의 공개 법정에서 CRETEIL 지방법원 소속 검사 Magali JOSSE가 참석한 가운데 선고되었고, 좌정한 재판부는 파리 항소법원 판사로서 중죄법원장인 Olivier LEURENT, 배석판사로서 IVRY SUR SEINE 지방법원의 부법원장 Anne LATAILLADE 및 CRETEIL 지방법원 판사 Sabrina ABBASSI-BARTEAU, 9명의 배심원들,[277] 서기 Josiane CASSOTTI이다.

그리고 이 판결서에는 재판장 LEURENT과 서기 CASSOTTI가 서명하였다.

위 판결서는 아래에서 본 이유서 작성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중죄법원의 판결서이다. 우선 프랑스 형사판결서의 특징으로, 판결서의 전반부에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고 있다.[278]

277) 이 판결 당시에는 제1심 중죄법원에 배심원을 9명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78) 절차 부분에 관한 초안은 실무상 서기가 작성한다고 한다.

판결서에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 및 합의에 참여한 법관들의 성명, 검사의 출석, 적용된 법령의 내용, 선고일자, 주문 등이 기재된다. 한편, 법관과 배심원의 질문을 긍정하는 투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찬반의 수를 밝히지 않고, 법정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재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0조).[279] 한편, 구체적인 증거관계나 증거평가 등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관과 배심원의 합의 이유는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배석판사가 작성하고, 아래에서 본 '이유서'(feuille de motivation)라는 판결서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배심원이 관여하는 중죄법원의 재판[280]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심재판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피고인이 왜 유죄로 인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보장이 없는 경우를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본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Taxquet v. Belgium 판결[281] 후에 아래에서 보는 이유서를 따로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282]

그리고 중죄법원의 판결서 작성 주체는 서기(Le greffier)로 명시되어 있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76조), 재판장과 서기가 판결서에 서명을 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77조).[283]

나. 이유서(Feuille de motivation)

(1) 작성 과정

법관과 배심원의 평결 및 형 선택의 이유는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배석판

279) 이를 위반하여, 구체적인 표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24 mai 2023, 22-84.601.
280) 이는 법관과 배심원이 하나의 재판부를 이루므로 참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81) ECtHR [GC], Taxquet v. Belgium, no. 926/05, 16 November 2010, 해당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홍진영,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8권 제1호(2021), 422면-429면 참조.
282) 유럽인권법원은 위 판결 후, 이유서 작성을 요구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프랑스 중죄법원의 판결에 관하여도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다. ECtHR, Agnelet v. France, no. 61198/08, 10 January 2013.
283) 배석판사는 서명하지 아니한다.

사가 작성하고 '이유서'라는 명칭의 별도 문서로 판결서가 아닌 질문지(feuille des questions)에 첨부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5-1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 후 합의와 판결선고가 이어지므로 보통 이때 이유서도 작성되나, 피고인의 수 또는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이유서를 즉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284] 이유서도 질문지와 함께 재판장과 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 1인이 서명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5-1조,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4조).

(2) 기재 내용[285]

법원과 배심원이 수행한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유죄 요소뿐만 아니라 양형 선택에 대한 주요 요소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의무적 가중처벌, 몰수 처분, 범죄의 목적, 보호관찰의 특별의무에 대한 이유 기재는 필수적이지 않다.

Charente 중죄법원	이유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65-1조

이유:

중죄법원은 심리에서 논의되었고 법원과 배심원단의 합의 중에 드러난 주요 기소요소를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근거하여, 아래에 표시된 범죄, 경범죄 및 관련 위경죄에 대한 Bernard BOUMEDINE의 유죄를 질문에 대한 투표 전에 확신하였다 :

– 2009년 11월 23일부터 24일 사이의 밤에 EGLISOTTES ET CHALAURES(Gironde)에서 배우자 Valérie Pinaud에 대하여, 또 Eve DEYCARD에 대하여 저지른 강간 범죄

Bernard BOUMEDINE은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을 EGLISOTTES ETCHALAURES(Gironde)에 위치한 그의 집에서 Valérie Pinaud와 Eve DEYCARD와 함께

284) 다만, 이유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3일 이내에 작성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건에서 프랑스 파기원은 작성일 미기재가 파기원에 상고를 제기할 권리 행사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판결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바, 이유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18 novembre 2020, 19-87.637.

285)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38면-139면 참조. 이유서 원문은 https://www.danielpicotin-avocat.com/categories/affaire-boumedine-12055/articles/feuille-de-motivation-du-proces-boumedine-71.htm 참조 (2026. 4. 20. 확인).

보내면서 밤까지 “쓰리썸”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그와 그의 아내 사이뿐만 아니라 두 여자 사이에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그는 그날 밤 Eve DEYCARD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데, 그녀는 그가 협박하에 구강 성교와 질 삽입을 했고 이는 그녀 앞에서 그가 Valérie PINAUD와 했던 행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Eve DEYCARD가 기술한 성관계의 존재는 전문 심리학자 앞에서 한 Bernard BOUMEDINE 그 자신의 진술 및 같은 장면을 이야기한 Valérie PINAUD의 진술에서 나온다. Valérie는 다른 여자와 관계를 시작한 남편에게 그의 파트너는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가 질내삽입을 멈췄다고 덧붙였다.

Valérie PINAUD는 Bernard BOUMEDINE이 Eve DEYCARD가 있는 자리에서, 또한 내밀한 그들의 침실에서 새벽 3시까지 자신에게 저지른 유사성행위를 비난했다. Valérie PINAUD와 Bernard BOUMEDINE 사이의 성관계의 존재는 그(Bernard BOUMEDINE)도 부인하지 않고, 감정인 CHEYROUX 박사가 수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러한 성관계에 대한 Valérie PINAUD와 Eve DEYCARD의 동의에 관하여, 그들은 각각 Bernard BOUMEDINE이 그들에게 가한 심리적 영향 때문에 협박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Eve DEYCARD는 또한 Valérie PINAUD의 조언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놔두기 전에 자신이 울었던 것과 명시적으로 거절을 표현했던 것을 언급했다.

Bernard BOUMEDINE이 부인한 심리적 영향은 Eve DEYCARD의 자녀와 직장 동료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된다. 그들은 2007년 여름부터, 특히 2009년 9월 중순부터 그녀와 남편의 삶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목격했는데, 2009년 9월 중순은 그들이 EGLISOTTES ETCHALAURES(Gironde)로 이사한 날짜이다. 부부는 습관적이고 과도하게 알코올을 소비하게 되었으며,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사”를 만났다고 믿으며 가족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Valérie PINAUD의 성격은 Eve DEYCARD와 같이 기저에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서, 그녀는 이상적인 동반자를 찾고 있었고 Bernard BOUMEDINE이라는 인물과 만난것을 “천사”를 만났다고 믿었다 ; 그는 Valérie PINAUD가 마약 중독자이자 가끔 매춘을 하던 과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녀를 평가절하하고 자신의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종종 그녀를 비난하였고, 또한 가정폭력 속에서 그녀를 복종시키기 위해 2007. 10. 그들의 결혼 이후로 그녀가 정서적, 직업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2. 경죄법원

가. 판결서의 작성형식 등

모든 경죄법원의 판결은 이유와 주문을 포함하여야 하나(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낭독은 주문에 한정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4항).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면제하는데, 이 경우 사소(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된 민사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68조). 무죄 판결의 경우, 사소 당사자가 스스로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소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동일한 판결로 판결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72조).[286]

판결서는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판결에 있어 원본선고의 원칙은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그 대신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한 판결 원본(Minute)이 3일 내에 법원 서기과(Greffe)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86조).[287][288]

나. 구체적인 작성 형식[289]

표제(l'en-tête) 또는 서문(le chapeau)
– 제목, 선고법원, 사건번호, 선고날짜, 판결번호
– 죄명(nature des infractions)
– 기소 형태

286)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43면.

287) 다만, 판결 원본 제출기간 도과가 항소기간이나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기원은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du 14 novembre 1996, 96-80.700에서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판결서 작성, 서명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은 진행되고, 판결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판결의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88) 구체적인 통계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상 업무부담 등으로 해당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법무부의 사법감찰원에서 2022년 작성한 보고서의 47면에는 위 기한이 전적으로 이론적인 기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한 법원의 경우 2021년 12월 말 기준 2021년에 선고된 5,942건의 판결 중 40%에 가까운 2,191건의 판결서가 작성대기 중이라고 지적하였다.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2025-12/rapport_execution_peines_enfermement_ferme.pdf (실형 구금형의 집행 최종 보고서, 2026. 4. 20. 확인).

289)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43면-144면.

– 피고인(personne poursuivie) 및 사소당사자(partie civile)의 표시
공판절차(procédure d'audience) – 재판장의 공판 진행, 사소당사자의 참여, 검사의 논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이유(motif) – 공소에 대하여(sur l'action publique) – 사소에 대하여(sur l'action civile)
주문(le dispositif) – 공소에 대하여: 범죄사실, 형, 적용법조 기재 – 사소에 대하여: 추후 심리할 경우 차회 기일 지정
재판부 표시 – 법관, 검사, 서기의 성명
서명(재판장 및 서기)

다. 이유의 기재방식[290]

경죄법원의 모든 판결에는 주문과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고(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 경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을 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95-2조 제2항). 다만 경죄에 대해서는 의무적 처벌, 범죄 목적물의 몰수 처분, 보호관찰의 특별의무에 대한 이유 기재가 필수적이지 않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85-1조).

유죄 판단 근거, 양형 이유뿐만 아니라 구속피고인의 구금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까지 간략히 기재한다. 다만 실무상 관련 증거를 모두 적시하지는 않고, 아래 기재례와 같이 간략하게 쓴다.

공소에 대하여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Imed BEN AMOR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과 특히 기존 범죄전력에서 기인하는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된 형으로 구금형을 선고하고, 수반되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290) 같은 책, 144면-145면.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는 집행유예를 부가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의 즉시 집행을 위해서 Imed BEN AMOR에 대한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

다만 중요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이유가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1]

3. 경찰법원[292]

경찰법원의 위경죄 사건은 약식절차가 널리 활용되는바, 약식명령에는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 거주지, 죄명, 범행 장소와 일시, 적용법조, 유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수와 구속기간을 기재한다(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26조 제1항). 경죄사건과 달리 위경죄사건의 약식명령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나(프랑스 형사소송법 제526조 제2항), 약식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로 진행할 경우 경죄법원과 같이 이유를 기재한다.

III. 시사점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인접국가인 독일과 비교할 때, 간결하고 짧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개괄적으로 설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참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죄법원의 형사판결서는 직업법관 및 배심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질문에 대한 평결 내용을 기재하는 것 외에 실질적 이유나 증거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한 형태로 판결서가 작성되었다.

다만, 최근 중죄법원에서 운영되는 참심제와 관련한 재판의 지연 등의 문제로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형사법원을 설치하는 등 참심제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는 경향도

291) 전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등을 피고인으로 한 경죄법원 사건의 판결 이유 https://www.simonnetavocat.fr/wp-content/uploads/2025/09/Jugement-Nicolas-Sarkozy.pdf 프랑스 야당 대표였던 마린 르펜 등을 피고인으로 한 경죄법원 사건의 판결 이유 https://www.simonnetavocat.fr/jugement-marine-le-pen-en-entier-pdf-affaire-des-assistant-parlementaires 등의 경우에는 판결서의 분량이 수백 장에 이른다. (2026. 4. 20. 확인).

292)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45면.

보인다. 또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각종 합의제도 등을 통하여 다툼이 적은 사건처리의 신속을 도모하는 측면도 보인다.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따라 평결에 이르게 된 쟁점이나 사항에 대하여 배심원에게 질문지를 작성하여 답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서면으로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유 기재의 충실화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질문지와 이유서를 통하여 평결의 핵심 근거를 배심원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는 방식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배심원의 판단을 판결서에 담는 방식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제도로 보인다.

제5절 일본의 형사판결서[293]

I. 일본의 형사판결서의 개관

일본 형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형사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에 의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에 재판서가 존재할 것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다.[294]

II. 일본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1. 관련 법령

일본 형사소송법

제44조

①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 또는 명령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만, 제4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3조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제3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그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회부하는 경우도 같다.

293)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하급심 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774면-850면 및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60면-171면을 주로 참조하였다.

294) 일본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이에 반하여 판결의 선고는 판결서 원본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판결원본에 의한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35조

① 유죄의 선고를 함에는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표목 및 법령의 적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주장된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2조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에 의하여 이를 고지한다.

2. 일본 형사판결서 구성[295]

일본 형사판결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와 표제
피고인의 표시 이름, 생년월일, 본적, 주거, 직업
전문(前文) 사건명, 검사 성명
주문 유죄 / 무죄 / 면소 / 공소기각
이유
판결서 작성연월일, 법원 및 재판부, 법관 서명날인

3. 일본 형사판결서의 기재사항[296]

가. 필수적 기재사항

유죄 판결에는 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표목 및 법령의 적용을 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 감

295)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60면.
296) 같은 책, 161면.

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이 주장된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그 외의 기재사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사실인정의 보충설명'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는 이유(즉, 위법성 · 책임조각사유) 또는 형의 가중 ·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주장(일본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 · 법률상의 주장이나 양형의 이유를 밝힐지 여부, 그 기재 정도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이유 기재의 순서[297]

① 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18조).

② 증거의 표목: 각 범죄사실마다 구별해서 기재한다. 다만 공통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것을 기재하고 이어서 범죄사실별로 구별해서 기재한다. 피고인이 복수이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한다.

③ 사실인정의 보충설명(補足說明): 간접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이나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판단이나 심증형성 과정 등을 설명한다.

④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누범가중이나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기재한다.

⑤ 법령의 적용: 종전에는 문장식으로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열식도 많이 이용된다.

⑥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⑦ 양형의 이유

297) 같은 책, 161면-162면,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판결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 (9), 법원행정처(2011), 617면-618면.

5. 구체적인 판결례

가. 사실인정의 보충 설명 유형[298]

삿포로지방재판소 판결, 레이와 원년(2019년) 11. 29. 레이와 원년(わ)[299]519호[30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미결구류일수 중 80일을 그 형에 산입한다.

삿포로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인 식칼 1개(令和 元年 領 第669号 符号1-1)를 몰수한다.

이유

[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옛 애인인 A(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B가 남녀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자, 배신당한 세 사람의 관계를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B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24. 오후 10시경, 삿포로시 a구 b조 c정목 d번 e호 C서쪽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당시 50세)에 대한 살의를 가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날길이 약 17cm, 札幌地方検察庁 令和 元年 領 第669号 符号1-1)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부자창(左前胸部刺創) 및 외상성 좌혈 기흉(外傷性左血気胸) 등의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쳐, 살해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사실인정의 보충 설명]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신고한 후에 구급차를 요청한 행위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진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한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려고 약 5.7km 떨어진 파출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뒤 파출소에 비치된 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1시간 반 동안, 호흡이 약해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구조는 하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자신도 죽는 장소를 찾고자 왼쪽 가슴 깊숙이 칼이 꽂힌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던 것이며, 다만 피해

298)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하급심 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 (2021), 783면-786면.

자가 '미안해.'라고 말하자, 이에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마음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은 더욱 커졌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목숨을 건진 데는 다른 요소가 작용된 측면도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떨어진 파출소로 가 구급차를 요청한 정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진지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하여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벌조 형법 203조, 199조

형종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43조 본문, 68조 3호

미결구류일수의 산입 형법 21조

몰수 형법 19조 1항 2호, 2항 본문(판시 칼은 살인미수용으로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에게 속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의 불부담 형사소송법 181조 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와 헤어졌지만 미련이 있었던 가운데, 같은 해 6. 20. 밤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오랜 친구가 남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은 뒤 피해자와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친한 친구에게 자책감을 안겨주려는 생각은 짧은 생각(短絡的)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번에 즉사시키고자, 눈을 감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강하게 찔렀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은 매우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왼쪽 가슴에 칼이 꽂힌 피해자를 장시간 끌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고통과 공포를 계속 안겨주었던바, 이는 매우 잔혹한 것이다. 운 좋게 피해자가 살아났지만 중상을 입었던바, 현재도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심이 여전하다.

이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남녀 관계를 동기로서 칼을 사용해 피해자 1명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의 양형 경향도 근거로 해 검토한다.

우선 피고인은 짧은 생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고, 실제로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이르렀으며, 범행 후 사정도 나쁘므로,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행위의 무게나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경위에 피고인을 동정할 수 있는 점이 있어, 검찰관이 구형하는 징역 7년이라는 것은 너무 무겁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려고 범죄를 신고하고 구급차를 요청한 것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피해자의 목숨을 건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약 27년간 성실하게 미장공으로서 일해 온 점, 자수가 성립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형을 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형 징역 7년, 칼 한 자루 몰수)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형[301]

히로시마지방재판소 판결 레이와 원년(2019년) 5. 22. 헤이세이 30년(わ)353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결구류일수 중 220일을 그 형에 산입한다.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A 외 8명이 주거에 사용하고, 당시 실제로 동일인 외 1명이 있는 히로시마현(이하 생략) B(철근콘크리트 기와집 2층 건물, 바닥면적 합계 337.18㎡)를 방화하고자, 2018. 1. 16. 0시경, 위 B·(생략)호실의 피고인 방에서 라이터로 티슈에 점화해 그 불을 주위의 쓰레기봉투, 골판지 등에 옮아 붙게 하였고, 그 불이 바닥면 등에 옮겨 붙어서 위 B의 일부인 위 방을 전소시켰다(바닥면적 합계 약 24.08㎡).

[증거의 표목]

증거말미 괄호 내의 갑 및 숫자는 증거 등 관계 카드 갑(청구자 등 검찰관) 기재의 증거번

299) 지방재판소 공판청구 형사사건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300) 이 판결서에는 증거의 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일본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판결에는 증거의 표목을 삭제한 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생략된 것이다.

301)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하급심 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786면-789면.

호를 나타낸다.

• 피고인의 공판진술

• 통합수사보고서(갑 30, 31, 35)

[법령의 적용]

벌조 형법 108조

형종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66조, 71조, 68조 3호

미결구류일수의 산입 형법 21조

형의 집행유예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불부담 형소법 181조 1항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의 영향으로 심신모약(心神耗弱)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관은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끼친 영향 정도가 현저하지 않아 심신모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증상 등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C의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한 상태에 있어 그로 인한 자살충동(希死念慮)과 심리적 시야협착(視野狭窄)이 범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극(스트레스)으로 인한 불안과 공격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충동을 곧바로 충족시키려 한다는 피고인의 원래 인격적 경향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

3. C의사는, 우울증에 따른 자살충동이나 심리적 시야협착이 강해진 사람은 활동성이 저하되어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응답,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 또는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음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의심해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돌연 친가의 무덤이 있는 히로시마현(이하 생략)으로 도보로 향하려 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급대원 등으로부터 성명이나 직업, 방화 상황, 복부 상처의 원인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었고, 법정에서도 방화에 이르는 경위나 상황에 관하여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자신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그 후 오른쪽 손목도 그으며, 방에 있던 티슈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점을 알게 하지만, 이후 불이 자신의 머리에 붙으면서, 공포심에 의해 밖으로 도망쳤는바(피고인은, 그때에는 죽고 싶다는 마음은 없고, 살고 싶다는 기분이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관련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이들 사정은 C의사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일련의 자살을 기도하는 행동을 했는데 피고인에게는 앞서 3.에서 본 범행 직전의 사정 외에 2017. 1.에는 초등학생 때 헤어진 모친을 갑자기 만나겠다고 생각하여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일을 쉬고 시청을 방문했던 점, 같은 해 12.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회식에 참석했을 때는 사소한 일로 담당 선생님과 다투었던 점 등 충동성이 높은 사정이 여럿 나타났다. 이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인격적 경향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C의사의 설명에 불합리한 점은 없다.

5. 정신과 의사인 C의사가 그 지식에 기초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끈 감정 결과는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우울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정도는 현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통상 취침하고 있는 심야에 행해진 것으로, 다른 거주자가 화재를 깨닫지 못하고 뒤늦게 도망칠 가능성이 있었다. 화재의 영향이 피고인에게만 미친 것은, 소방서에 대한 통보가 우연히 조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범행 양태는 다른 주민의 생명 및 신체 등을 해칠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거주자나 아파트 소유자에게 끼친 영향이나 재산적 손해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수리비는 보험에 의해 지불되어 재산적 손해는 대체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우울증의 영향도 있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을 강하게 비난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현장인 아파트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피고인을 관대히 용서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동종 사안의 양형 경향을 토대로 검토하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 복귀를 해 나가겠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될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검찰관 구형 징역 5년, 변호인 양형 의견 집행유예 포함 판결)

III. 형사판결서 간이화 제도

1. 인용의 활용

가. 관련 법규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18조(판결서에의 인용)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판결서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소인(訴因)변경 등 청구서면에 기재된 사실을 인용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18조의2(판결서에의 인용)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간이공판절차 또는 즉결재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한 사건의 판결서에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의 표목을 특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나. 내용

일본의 형사소송규칙은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 판결서에 공소장의 기재를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간이공판절차 또는 즉결재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거의 표목 자체를 인용할 수도 있다.[302)]

2. 조서판결

일본 형사소송규칙 제219조(조서판결)
①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에서는,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판결주문, 죄가 될 사실의 요지, 적용한 벌조(罰條)를 판결의 선고를 한 공판기일의 조서의 말미에 기재하게 하여 이를 판결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단, 판결 선고일부터 14일 이내이고 판결확정 전에 판결서 등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기재에 관하여는, 판결을 한 재판관이 재판소서기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4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5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303)]

302) 이에 관하여,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47年 (わ) 2336号 判決에서는 '0000년 00월 00일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회 공판조서에 인용된 검찰관 청구 증거목록 기재 각 증거'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하였다.

가. 개요

재판을 한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서는 재판관이 작성한다. 그 예외로서 상소 제기 및 판결서 등본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서기관에게 판결서에 갈음하여 공판조서 말미에 주문,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한 벌조를 기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304]이고 판결 확정 전에 판결서 등본의 청구가 있는 때와 상소가 있는 때에는 조서판결을 할 수 없다.[305]

유죄 판결을 조서판결로 할 경우 실무상 양형 이유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306] 조서판결은 유죄판결뿐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사실에 대신하여 공소사실을, 벌조에 대신하여 적용법조를 기재해도 무관하다.[307]

조서판결이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일본의 사법통계가 이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구루메대학(久留米大学) 오쿠보 사토시 교수가 2000년경 작성한 구형 · 양형과 당사자 무기 대등의 이념이라는 논문에는 저자가 읽은 지방재판소와 간이재판소 판결의 약 30% 정도가 조서판결 방식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일본 내에서 조서판결이 어느 정도는 활용된다고 보인다.[308]

나. 작성 방법[309]

판결을 한 법관이 법원서기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 조서판결과 다르다.[310]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할 수도 있다(일본 형사소송규칙 제60조의2

303) 이는 공판조서 및 재판서에 서명 등을 할 수 없을 때에 대서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304) 일본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과 같다.
305)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60면.
306) https://wellness-keijibengo.com/keijisaiban-flow/kisogo-flow/choushohanketsu 일본의 변호사 楠 洋一郎의 법률 사무소인 웰니스 법률사무소 웹사이트로 법원이 조서판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자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하는 케이스와 같이 피고인이 항소할 가능성이 낮은 때라고 하면서, 조서판결의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가 서기나 재판관에게 양형의 이유를 써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대응한다고 하면서, 자백 사건은 피고인이 양형의 이유를 신경 쓰게 되므로, 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 서기나 재판관에게 양형의 이유를 써주면 조서판결도 괜찮다고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실무를 설명하고 있다.
307)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판결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 (9), 법원행정처(2011), 644면-645면.
308) 오쿠보 사토시(大久保哲), "求刑 · 量刑と当事者の武器対等の理念", 2000, 12면. https://kurume.repo.nii.ac.jp/record/797/files/hogaku38_1-21.pdf
309)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69면.

제1항 본문). 조서판결은 본래의 판결서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서에서 인용할 수 있는 사실은 조서판결에도 인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요지를 기재할 때에는 공소장의 인용이 가능하다.

판결을 선고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말미에 주문 등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서두에 '조서판결'이라고 기재하기도 한다.

판결을 선고한 공판기일의 절차 부분을 기재한 조서와 조서판결을 나눠서 편철하는 경우에는, 절차 부분을 기재한 조서 말미에 법원 서기관이 '조서판결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여 서명날인(또는 기명날인)하고, 조서판결에는 판결선고연월일과 사건번호, 피고인의 표시를 기재한다.

다. 구체적인 작성례[311]

2○○○년 제○호

조 서 판 결

선고일 2○○○년 ○월 ○일
재판소 ○○지방재판소
재 판 장 재 판 관 A
재 판 관 B
재 판 관 C
검 찰 관 ○○
죄 명 ○○
피 고 인
본 적 ○○
주 거 ○○
직 업 ○○
성 명 ○○
연 령 ○○

310) 일본 민사소송법의 조서판결은 조서 작성자인 법원서기관이 기명날인한다.

311) 서현웅,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121면. 한편,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169면에는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 상해치사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바[도쿄지방법원 평성19년(わ) 제1568호], 징역 5년에 해당하는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조서판결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판 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일을 형에 산입한다.
죄가 되는 사실의 요지
　　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하므로, 이것을 인용한다.

적용한 벌조
　　1. 형법 ○ 조
　　2. . . .
2○○○년 ○월 12일
　　○○지방재판소
　　재판소서기관　D　㊞
　　재판장재판관　A　㊞
　　재　판　관　B　㊞
　　재　판　관　C　㊞

Ⅳ. 시사점

일본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작성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판결서 작성방식을 유지하면서, 조서판결과 같이 상소 등 불복이나 그 밖의 신청이 없는 경우 판결서 작성을 크게 간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불복이 없는 사건 등에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는바, 상소기간 도과 시 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고 조서로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등은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제6절 종합적 검토

이 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형사재판 구조와 판결서 작성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살펴본 외국의 구체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 그 자체는 그 나라의 전통, 재판 문화의 차이, 배심제 또는 참심제의 존재, 상소 구조, 가용할 수 있는 사법자원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형사판결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의 개별국가에 관한 부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일부 시사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제도적 관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의 제도는 큰 범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소송 당사자들의 합의를 판결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유죄협상 제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죄협상이 매우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연방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사건조차 대부분 정식의 공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 인정에 의해 종결된다.[312)313)]

두 번째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불복' 여부를 판결서 작성과정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가 판결 이유를 신청하지 않거나, 상소 제기가 없어 당사자의 불복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복잡한 판결서 작성을 간이화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제도적 또는 실무상 상소율이 낮고, 판결서의 기재가 복잡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서가 매우 길고 복잡하게 작성되는 독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법관이 소수임에도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312) 제2장 제2절 II. 3. 미국 부분을 참조. 해당 통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대상인 연방법원의 연방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정식 공판(Trial)을 거쳐(배심 또는 비배심재판을 모두 포함한다) 유·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 수는 1년 기준으로 1,723건이고, 유죄인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은 67,902건으로 정식 공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유죄인정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 수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 국가들도 합의에 기초한 유죄 인정과 관련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313) 다만,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를 판결 등에 반영하는 유죄협상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검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논의로 여러 논쟁 사항이 있고 판결서 작성의 적정화와도 일부 거리가 있는 주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는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국제 지표에 의할 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는 것은 개별 사건에 충분한 사법자원이 투입되지 않거나, 그 구성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형사재판부가 다른 사무분담보다 부담감 및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법관들의 인식도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사법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판결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즉결심판 및 약식명령 제도를 제외하고는 사물관할만 일부 달리할 뿐 사실상 거의 모든 형사사건이 유사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판결서의 간이화 제도가 없어, 결국 형사사법의 효율적 운용은 개별 법관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개별 법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여러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해석 · 운영하면서, 현재의 효율성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사법자원 자체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과 법조일원화의 도입[314]에 따른 법관 인적 구성의 변화, 법관의 고령화,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양하는 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형사재판에 관한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큰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비교법적인 사항을 통한 보완책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314)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46면-50면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신속한 재판의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다.

제5장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제안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제1절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방향성

I. 개선방안 논의의 전제 :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1. 과거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중 유죄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은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정 후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 즉,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만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안 중 유죄판결에 관한 개선안은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로 작성형식의 개선을 통하여 작성의 편리 및 가독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러한 시도들은 재판부에 대부분 수용되어 왔다. 다만, 형사판결서의 내용을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자는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 방안은 주로 무죄판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형사판결서의 양적 증가 현상의 고착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무렵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형사재판이 수사기록의 확인에서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와 당사자들의 공방으로 이동하는 등으로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속에서 유죄의 형사판결서에 대하여 법정기재사항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무죄 판단에 준하는 정도로 상세하게 판단을 하는 실무가 점차 확대되어 갔다.

그 결과 전체 형사판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무죄판결을 넘어, 형사판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상세한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형사판결서의 분량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형사판결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도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부의 형사판결서 작성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

데, 대법원은 2014년경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면서, 유죄의 형사판결서 전반에 걸쳐 늘어나고 있는 각종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기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적정화 예규의 제정 및 예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새로 쓰는 형사판결서 등의 여러 참고 서적의 발간과 관련 법관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소송관계인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재방식과 관련한 개선안은 일부 단독사건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고, 특히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부에서는 개선 방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형사판결서는 그 무렵부터 양적으로 증가된 상태가 고착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II. 기재 내용에 관한 개선 방안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1. 기재 내용 증가의 주된 원인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 · 방어 활동에 의해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오랜 기간 공소 제기 후 검사 측의 수사기록 전체가 일괄적으로 법원에 제출되고, 조서가 광범위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등으로 형사재판은 공판정에서 당사자의 공격 · 방어 활동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2000년대 무렵부터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동하고, 당사자의 공판정에서의 공격 · 방어 활동과 증인신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유죄판결에 있어서도 무죄판결에 준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상세하게 판단하는 실무가 확산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실무가 널리 확산된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의 중심이 수사기록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별 재판부에서 심리의 중심이 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인다.

2. 개선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원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경 도입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는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전통적인 판결과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주류적 실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장황함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형사판결서 작성에 있어서 가독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더욱 충실화하여 '설득은 법정에서, 판결은 간이하게'라는 방향을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의 충실화를 통하여 공판과정에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은 공판정에서의 공방 과정에서 핵심적 쟁점이 뚜렷하게 정리되고, 부수적인 사항들은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 및 구술변론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변론을 통해 증거관계의 평가 등도 뚜렷해진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짧고 간결하게 판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판단을 치밀하게 압축하는 고난도 작업인바, 법관의 입장에서 이를 그르친다면 자칫 이유가 불충분하다거나,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염려도 있으므로, 고난도의 작업에 해당하는 짧고 간결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형사판결서를 길게 작성할 유인이 적지 않다.

앞서 제3장에서 본 적정화 예규의 기재방식이 잘 사용되지 않는 주된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 법관들은 당사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설득기능이 떨어질 우려와 상급심에서 불성실하게 평가될 우려를 핵심 이유로 들고 있는바 결국 당사자 및 상급심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보이는 작성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형사판결서 분량의 양적 확대는 법령, 제도 변화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315] 재판 실무에서 당사자들의 개별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 법관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 공판정에서의 심리 과정에서 핵심적 쟁점의 압축 및 증거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316] 당사자 주장

315) 2000년대 중후반부의 형사판결서들을 보면 유죄의 형사판결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배척하는 판결서와 전통적인 법정기재사항만이 기재된 판결서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어느 것이나 적법한 판결서로 인정받았으나, 점차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기재를 한 형사판결서의 비율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16) 현재의 실무는 이를 위한 서증조사가 형식적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 1면.

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판결서 기재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간이화하는 취지의 개선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판부가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된 동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실무상 개별 법관들의 공감을 널리 얻어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III. 개선의 방향성

1. 기존 방법론의 한계점

형사판결서 작성에 관한 현재의 실무는 뚜렷한 제도적 근거 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50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형사판결서 작성의 전통 아래에서, 대법원 예규 등도 일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형사판결서를 추구하고 있었음에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내용적 간이화를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성이 있으나, 그 현실적 수용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핵심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간이한 판단을 한다는 방법론은 이미 현행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및 이에 기초한 법관 연수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제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판결서 적정화 논의는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더 간이하게 쓰는 방법론'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법정기재사항만을 기재한 형사판결서도 적법한 형사판결서'라는 전통적인 전제에서, 형사판결서가 길고 복잡해지는 현실을 비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식하고, 적정화 방안을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짧게 쓰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권장 ·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수렴하는 것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도외시하고, 형사재판부가 형사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형사판결의 여러 수요자들로부터 받는 부담과 비판들을 오롯이 개별 재판부가 감당하고 해결하여야 할 몫으로 남기는 것이 된다.

2. 개선의 방향성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의 핵심은 이미 여러 방안을 통하여 오랜 기간 논의 · 제시

되어 온 '형사판결서를 내용적으로 간이하게 작성하는 방법론'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상세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현실을 제도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되, 그와 같은 상세한 이유 설시가 요구되지 않는 사건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판결이유의 설시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판결서 작성의 분량을 줄이거나 표현을 간략화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사법자원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세한 판단과 충실한 이유 설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건에 법관의 시간과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한 제도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이유 설시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에 따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사법자원 투입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정작 복잡한 사실인정과 구체적인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에 투입되어야 할 사법역량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형사판결서 적정화 논의는 '어떻게 더 간단히 쓸 것인가'라는 작성기법의 문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어느 범위까지 상세한 이유 설시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판결의 설명 책임을 일방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불복가능성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유 설시를 재구성하여 사법역량을 보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판결서 작성과 관련하여, 작성형식 등에 관한 부분의 개선은 수용성이 높을 뿐 아니라, 쉽게 작성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작성형식을 중심으로 작성의 편리를 추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정착되고, 고도화되는 현시점에서 수요자 친화적인 작성형식을 개발하여 형사판결서 중 본질적이지 않거나 형식적인 부분을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현재의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작성의 편리를 도모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형사판결서 적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제2절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의 보충 제도의 제안

I. 제도의 개관

이 연구를 통하여 우선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상소 제기에 따라 판결의 이유를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하 '판결 이유 보충 제도'라 한다)이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구성하였다. 이는 제1심법원이 형사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적법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적법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별도의 서면으로 판결의 이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법관들이 당사자의 불복 및 상소심의 심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재사항 이상의 상세한 이유를 기재한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판결 이유를 판결선고 후에 보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판결서를 작성할 유인을 부여하면서, 당사자의 불복에 따라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판결서 작성 부담에 따른 판결선고의 지연을 완화하고, 상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당사자가 불복한 사건에 재판부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II. 제도 도입의 착안점

형사판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주요 원인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넘어서 사실상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실무의 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지 않은 비율로 상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의 선고 시점에 판결서를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42조), 제1심법원으로서는 선고 시점에 당사자의 불복에 따른 상소 제기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될 사건에까지 동등한 수준으로 판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절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앞서 제4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던 독일의 단축판결 제도를 비롯한 미국 또는 유럽의 국가들에서 관찰된 신청이나 불복 여부에 따라 판결 이유의 기재 정도를 달리하는 제도에서 착안점을 얻었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풍부한 사법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불복이 없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대폭 간소화된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이 지속되는 사건에 사법역량이 집중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법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사법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가 필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독일 외의 여러 국가들도 상소의 제기나 별도의 신청을 전제로 상세한 판결서를 작성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판결 선고 시에 판결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불복 여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자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고려하에서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III. 독일의 단축판결과 차이를 둔 이유

독일의 단축판결은 구술로 판결을 선고한 후, 서면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소기간의 도과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폭 간이화된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등 판결 이유 보충 제도와 차이가 있다.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의 착안점이 된 독일 제도와 달리 이를 구성한 이유는 서면으로 판결서를 완성한 후 판결을 선고하는 우리의 실무와 독일의 제도가 궤를 달리하여

선고 후 작성을 전제로 하는 독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와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는 주문에서 유 · 무죄의 선언을 하는 등 법률효과인 형벌을 중심으로 주문을 구성하는 우리와 주문 자체만으로 주어지는 정보량도 크게 다르다. 또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서의 본질적 부분인 범죄사실,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능이 몰각될 염려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판결서 작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소제기에 따라 재판부에 법정기재사항 외의 부분을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였다.

Ⅳ. 제도 도입의 필요성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의 도입이 갖는 주된 기능은 형사판결서를 적게 쓰는 차원을 넘어, 판결 이유 작성에 들어가는 사법자원의 배분 방식을 불복 여부에 따라 재설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합의 및 단독 사건의 경우 상소율이 높기는 하지만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상소율을 고려할 때 절반 정도의 사건은 상소가 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별지 1]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판결서가 주류적이던 시기인 1990년대 연도별 항소율 평균은 합의사건 49.77%, 단독사건 27.23%로 현재보다 현저히 낮고, 판결서가 장문화되던 2000년대 무렵부터 항소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판결서를 작성 · 교부하는 실무는 상소율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거나, 적어도 판결서의 장문화가 항소율을 특별히 낮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표 3] 제1심 형사공판사건 항소율(2020년 이후)

연도	합의, 단독	상소율(%)
2020	합의	67.5
	단독	39.7
2021	합의	65.1
	단독	42.3

연도	합의, 단독	상소율(%)
2022	합의	62.4
	단독	42.5
2023	합의	66.9
	단독	46.0
2024	합의	67.7
	단독	46.7

이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활용할 경우 판결선고 시점에 상세한 이유를 작성할 유인이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법정기재사항 중심의 간결한 판결서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판결 선고의 신속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상소가 제기되어 실질적 다툼이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이유의 보충을 허용하므로, 법원이 보유한 사법자원을 분쟁이 계속되는 사건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판결선고 시점에는 구체적인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변론종결 후 14일 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판결선고기일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는 기존의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관에게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는 아니한다. 선고 시 작성되는 판결서 및 법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이유의 고지 등에 의하여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 제공 기능이 전적으로 형해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V. 설문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독일의 경우 형사판결 선고 시점에는 구두로 선고를 하면서, 선고 후 일정기간 내(기본 5주, 재판기간에 따라 연장)에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통상의 형사판결보다 매우 간이화된 형태로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의 국가

중에도 항소나 판결 이유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형사판결서를 작성하거나, 판결 이유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그 재량에 따라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되, 항소의 제기 여부를 고려하여,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형사판결서의 이유(주로 소송관계인의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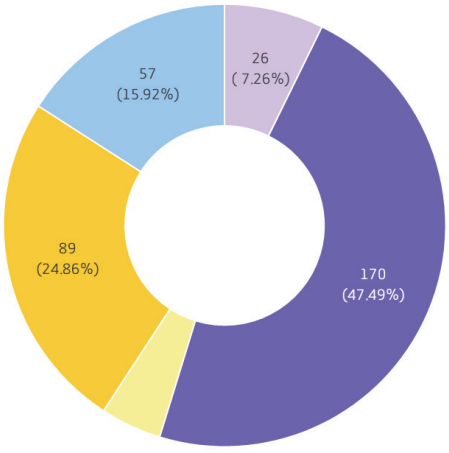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반대한다	26 (7.26%)
② 반대한다	170 (47.49%)
③ 의견 없음	16 (4.47%)
④ 찬성한다	89 (24.86%)
⑤ 적극 찬성한다	57 (15.92%)
NA	12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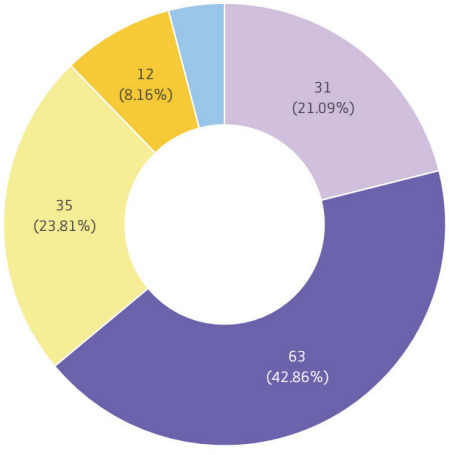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반대한다	31 (21.09%)
② 반대한다	63 (42.86%)
③ 의견 없음	35 (23.81%)
④ 찬성한다	12 (8.16%)
⑤ 적극 찬성한다	6 (4.08%)

나. [찬성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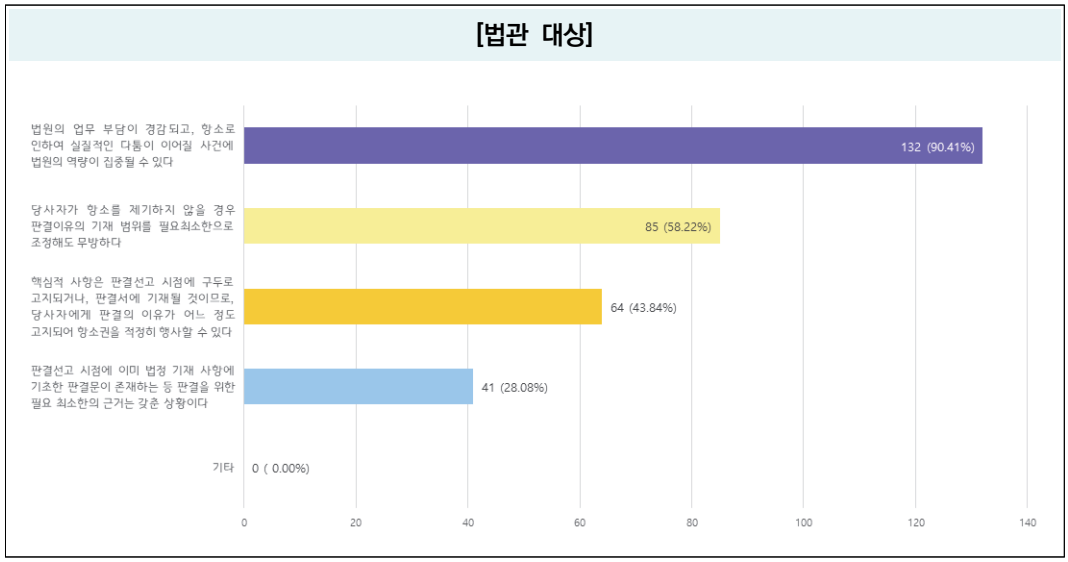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항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이어질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132	90.41
핵심적 사항은 판결선고 시점에 구두로 고지되거나, 판결서에 기재될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판결의 이유가 어느 정도 고지되어 항소권을 적정히 행사할 수 있다	64	43.84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 이유의 기재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해도 무방하다	85	58.22
판결선고 시점에 이미 법정 기재 사항에 기초한 판결문이 존재하는 등 판결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근거는 갖춘 상황이다	41	28.08
기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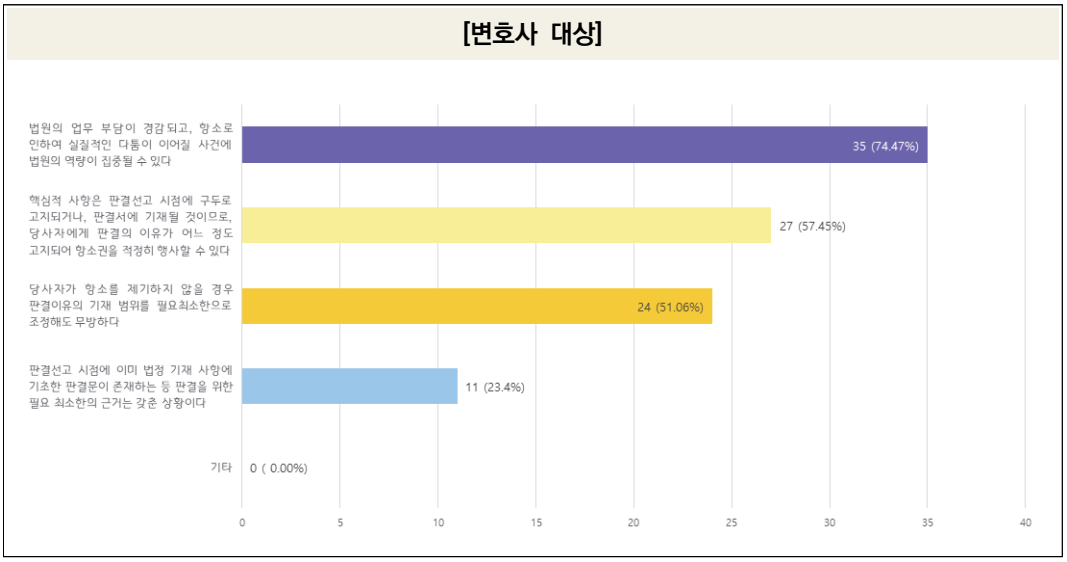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항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이어질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35	74.47
핵심적 사항은 판결선고 시점에 구두로 고지되거나, 판결서에 기재될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판결의 이유가 어느 정도 고지되어 항소권을 적정히 행사할 수 있다	27	57.45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 이유의 기재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해도 무방하다	24	51.06
판결선고 시점에 이미 법정 기재 사항에 기초한 판결문이 존재하는 등 판결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근거는 갖춘 상황이다	11	23.4
기타	0	0

다. [반대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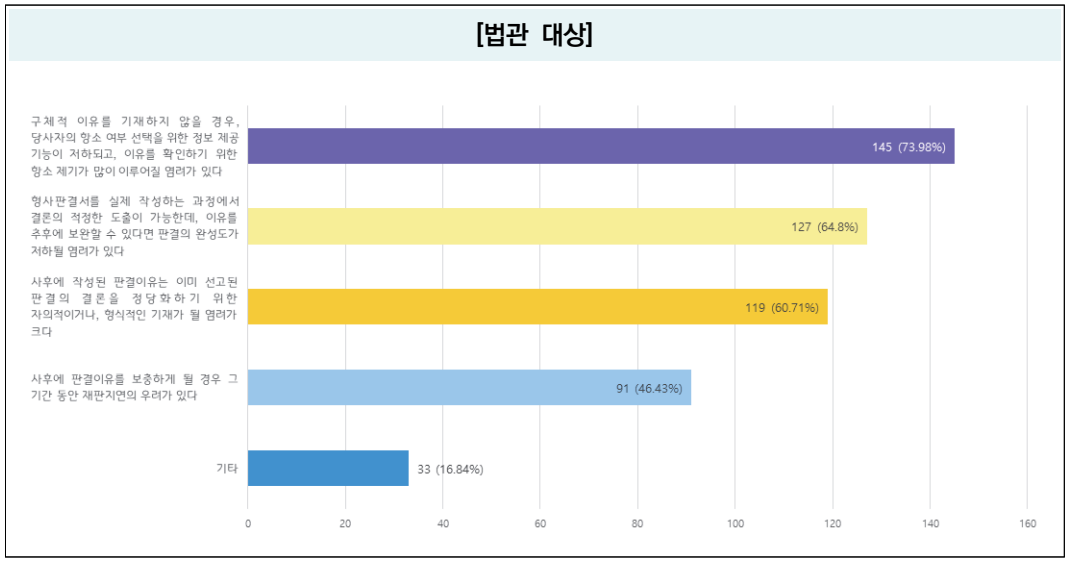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항소 여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이 저하되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항소 제기가 많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	145	73.98
형사판결서를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의 적정한 도출이 가능한데, 이유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면 판결의 완성도가 저하될 염려가 있다	127	64.8
사후에 작성된 판결 이유는 이미 선고된 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인 기재가 될 염려가 크다	119	60.71
사후에 판결 이유를 보충하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재판지연의 우려가 있다	91	46.43
기타	33	16.84

○ 기타 의견[317] **[법관]**

- 판결 선고 후 이유를 보충하려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항소율이 높은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정식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게 되어,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선고 이후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감소하거나 멸실될 수 있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판결 이유가 실제 법관의 심증 형성 경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미 선고된 결론에 이유를 끼워 맞추는 형식적 기재가 될 위험도 있다.
- 판결은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어야 하고, 추후 보완할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결문이 사전에 충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면 피고인과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및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높은 항소율과 상소 관행을 고려하면, 판결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항소가 늘어나거나, 상급심에서 추가 이유 기재를 기대하게 되어 판결서 작성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형사판결서 적정화 및 간이화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항소 제기 여부라는 선고 이후의 사정에 따라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의 구조와도 조화되기 어렵다.
- 제도가 잘못 운용될 경우 오히려 모든 판결문이 간결하게 작성될 수 없고,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 판단에 버금가는 검토와 이유 기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판결서 작성에 관한 평정 등에 반영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위험도 있다.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 규범력 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17) 이 부분은 기타 의견의 분량이 매우 많고 유사한 의견이 중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연구자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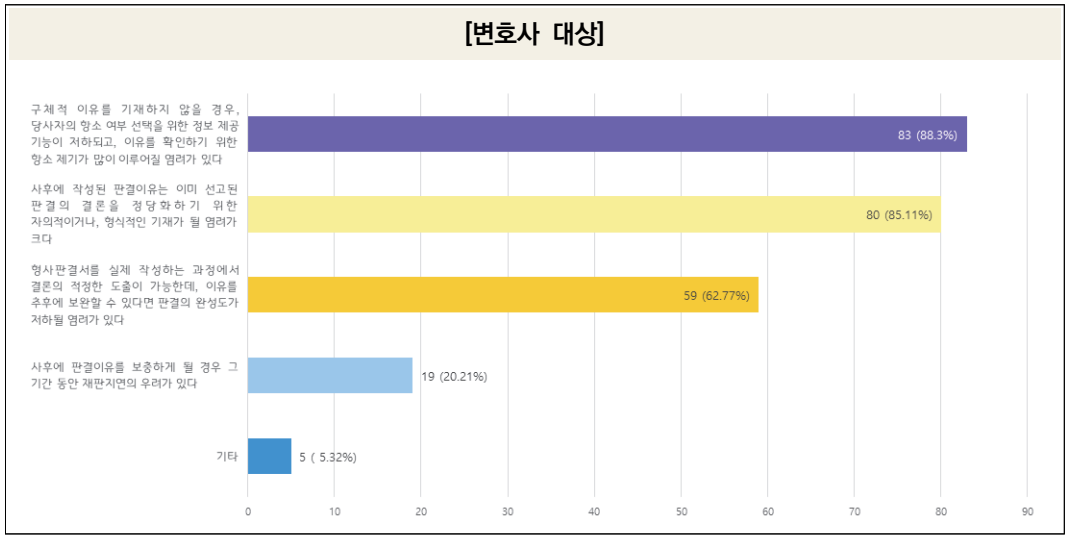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항소 여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이 저하되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항소 제기가 많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	83	88.3
형사판결서를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의 적정한 도출이 가능한데, 이유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다면 판결의 완성도가 저하될 염려가 있다	59	62.77
사후에 작성된 판결 이유는 이미 선고된 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인 기재가 될 염려가 크다	80	85.11
사후에 판결 이유를 보충하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재판지연의 우려가 있다	19	20.21
기타	5	5.32

○ **기타의견** ——— **[변호사]**

- 형사 사건은 국민의 신체 구속 등 기본권의 중대한 제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판결에 있어 심도 깊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사건 수는 법관 충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법관의 수고와 노력이 과연 감소될지도 의문이다.
-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결론의 방향이 맞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소송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서상 항소, 헌법소원 등

다른 절차에 따른 분쟁이 계속되어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분쟁을 일회적으로 종결할 수 없다.
- 결정만 한 후 사후에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증거의 자의적 취사선택이 만연해질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항소제기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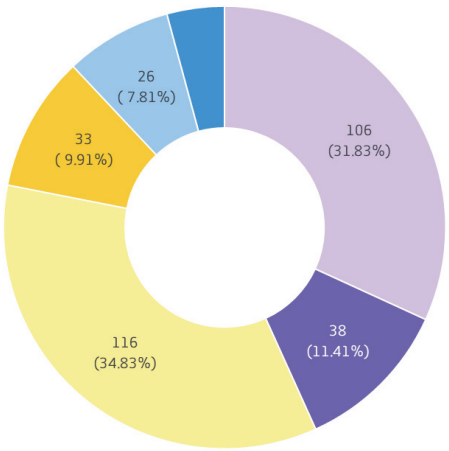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2주	106 (31.83%)
② 3주	38 (11.41%)
③ 4주	116 (34.83%)
④ 5주	33 (9.91%)
⑤ 5주 초과	26 (7.81%)
⑥ 기타	14 (4.20%)
NA	37

○ 기타 의견 **[법관]**

- 원칙은 4~5주로 하되, 사건의 난이도, 기록의 양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간을 많이 허여한다고 하여 판사가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항소제기기간을 고려하여 항소일로부터 2주 등으로 한다.
- 2주로 하되, 임의규정으로 한다.
- 사건 난이도와 기록의 양에 따른다.
- 기본 5주, 사정이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하다.
- 설문에 제시된 독일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 5주, 재판기간에 따라 연장한다.
- 항소기록 송부 전까지는 보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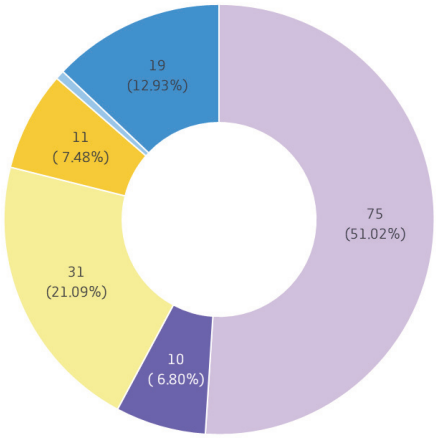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2주	75 (51.02%)
② 3주	10 (6.80%)
③ 4주	31 (21.09%)
④ 5주	11 (7.48%)
⑤ 5주 초과	1 (0.68%)
⑥ 기타	19 (12.93%)

○ **기타 의견** **[변호사]**

- 현행 1주면 된다.
- 1주 또는 10일 이내로 한다.
- 7일로 한다.
- 1주 이내로 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해야 함은 당연하고, 그 이유는 명확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추가적인 이유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재할 정도여야 한다.
- 1주로 한다. 그 이상이 될 경우 판결 이유 보충의 취지가 무산되고,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까지의 시간 동안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에 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도입해서는 안 된다. 도입할 경우는 1주일 이내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언제나 자신들이 대상이 되는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 기한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1주 내지 3일 등 최대한 빠른 기간.

마.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대상 사건은 어느 범위로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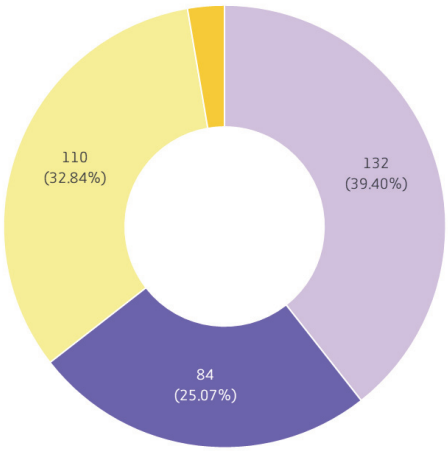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형사합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132 (39.40%)
② 형사단독 사건	84 (25.07%)
③ 형사단독 사건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에 한정	110 (32.84%)
④ 기타	9 (2.69%)
NA	35

○ 기타 의견 **[법관]**

- 자백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항소율이 지극히 낮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모든 사건으로 하더라도, 실무상 결국 위 3항 또는 경미한 사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정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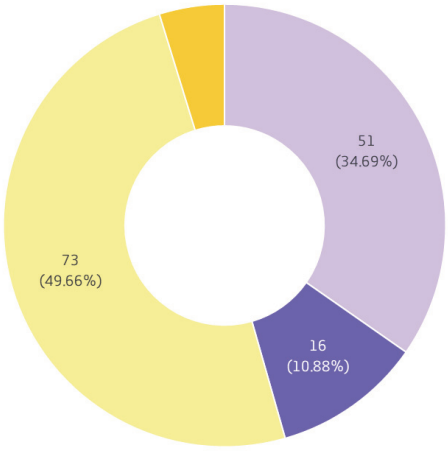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형사합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51 (34.69%)
② 형사단독 사건	16 (10.88%)
③ 형사단독 사건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에 한정	73 (49.66%)
④ 기타	7 (4.76%)

○ 기타 의견 [변호사]

- 변호인이 선정되어 법적 검토가 마쳐진 자백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도입해서는 안 되고, 도입하더라도 보기에 제시된 것보다 더 제한적이어야 한다.

바.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야 할 유형의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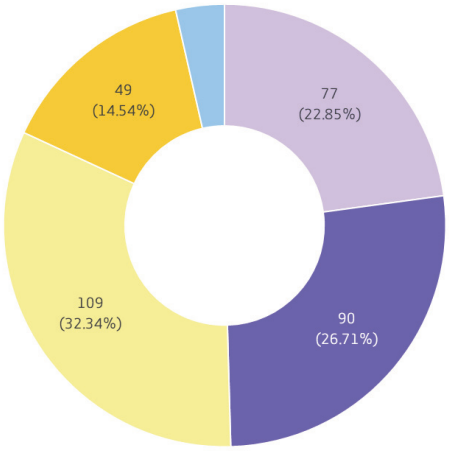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없음	77 (22.85%)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구속사건이나 법정구속 사건	90 (26.71%)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	109 (32.34%)
④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49 (14.54%)
⑤ 기타	12 (3.56%)
NA	33

○ 기타 의견 [법관]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사건에 한정한다.
- 일정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사건(예: 징역 10년 이상)을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중형선고 사건을 제외한다.
- 양형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기 위해 형량을 사안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유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하고 싶은 유혹을 매 순간 떨치기 어려울 것 같다.
- 우선 경죄와 중죄 사건을 구분하고, 경죄 사건에 관해 절차 간이화 및 판결문 간이화를 추진해야 한다.
- 모든 사건을 제외하여야 한다.

- 형사합의 사건을 제외하여야 한다.
- 위 3항을 포함하나, 단순하게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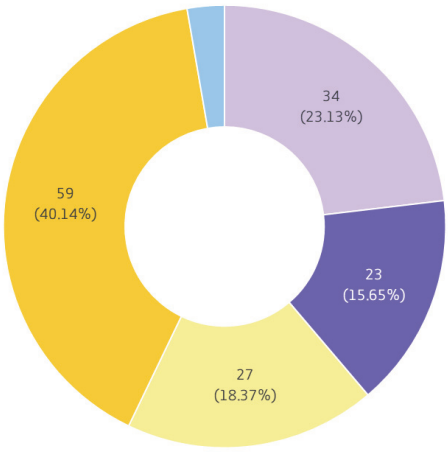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없음	34 (23.13%)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구속사건이나 법정구속 사건	23 (15.65%)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	27 (18.37%)
④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59 (40.14%)
⑤ 기타	4 (2.72%)

○ **기타 의견** ——— **[변호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사건 외의 사건을 제외한다.
- 모든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 분석

상소에 따른 형사판결서의 이유 보완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법관과 변호인 모두 반대의 의견이 많았다. 법관의 경우에는 약 54%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였고, 찬성하는 경우는 약 40% 정도였다. 변호사의 경우 약 63%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였고, 찬성의견을 나타낸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였다.

이 제도가 변호사 그룹은 물론 법관들에게도 선호되지 않은 이유는 제도 자체가 생소할 뿐 아니라 설문에서 제안한 여러 우려와 함께 개별 의견들을 볼 때 이 제도가 사실상 기록을 두 번 보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상소가 제기될 경우 사실상 판결의 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운용될 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판결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법관의 경우에는 4주(34.83%), 2주(31.83%)의 순으로 의견이 있었고, 수요자인 변호사의 경우 2주가 과반수에 달하였다.

한편 대상사건은 법관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바, 제도 도입에 대한 호불호가 대상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적용예외 유형의 사건은 법관의 경우 제외 대상을 두지 않거나 구속사건까지만 제외하자는 의견의 비율이 약 49% 정도로 나머지 의견과 비등하였다.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을 제외하는 선에서 과반을 넘었다.

VI. 도입제안 제도의 주요내용

1. 판결서에 의한 판결선고

가. 판결서의 기재사항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현행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2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2조에 의하여 판결 선고 시점에 판결서가 작성됨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같다.

그리고 그 판결서는 판결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판결서여야 하므로, 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고(제39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제323조)와 같이 법령이 요구하는 법정기재사항에 관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상소 제기에 따라 보충될 수 있으므로 보충이유 서면 작성을 염두에 둘 경우에 판결서는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이 될 것이다. 한편, 법정기재사항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판결선고 과정에서 구술로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제도의 활용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를 보충할 근거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판결 이유를 어느 정도 작성하고, 어느 범위에서 사후에 보충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하여 제도의 이용 대상인 법관들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담이나 거부감을 줄이고 제도 이용의 유인을 최대한 넓히고자 하였다.

2. 상소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가.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성격과 기재사항

상소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판결선고 시 작성된 판결서를 기초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서면이다. 따라서 보충 서면은 원칙적으로 작성된 판결서의 기재를 기초로 이유를 보충하여 상소심의 심리의 기반을 보완하게 하는 서면이어야 한다.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법정기재사항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항소이유 등으로 귀결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판결의 이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당사자가 항소이유 등을 작성하는 기반이 됨과 동시에 상소심의 심리 기초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범위와 한계

(1) 작성범위

(가) 판결서 이유의 보충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판결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이유를 보충할 수 있는바, 기존 판결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결의 선고 과정에서 구두로 세부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쟁점 등에 대해서도 보충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우선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본래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충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법률자체가 위와 같은 폭넓은 보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선고에 따른 구술 설명은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판결의 핵심적 요지만을 전달하는 요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판결 이유를 서면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격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선고 당시 구두로 현출되지

않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주문에 의하여 드러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후적으로 서면으로 보충하는 것은 이유의 변경이 아닌 구체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판결의 선고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았거나 설명되지 않은 쟁점 등에 대해서도 보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할 때 ① 판결서에 사실상 주장 등 기재 없음 + 법정에서 구두 설명 없음 ② 판결서에 사실상 주장 등 기재 없음 + 법정에서 구두 설명 있음 ③ 판결서에 사실상 주장 등 간략 기재 있음 + 법정에서 구두 설명 있음 등 어느 경우에나 이유의 보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판결서 이유의 수정

기존 판결서의 작성 과정에서 오기 및 착오 등에 따른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방치한 채 상세한 이유만을 덧붙이는 것은 상소심의 심리에 지장을 가져오고,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그것이 판결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을 통할 수도 있겠으나,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그 자체로 판결서의 일부가 되므로 보충과정에서 경정의 의미에서의 수정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판결서의 이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오기, 기재 오류,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재의 수정 등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정의 의미를 가지는 보충의 경우에는 기존 판결서의 특정 부분을 경정하는 취지를 보충 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취지가 없이 기존의 판결서와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이 서로 모순된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유 모순이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한계

(가) 주문의 수정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므로, 본질상 재판의 결론인 주문을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설령, 주문의 오기, 누락, 착오 등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을 통하여 정정할 수 없고, 재판서 경정 등 다른 절차를 거쳐 판결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결서에 기재된 이유와 모순되거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보충

보충이유 서면은 기존 판결서의 이유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고, 그 서면이 판결서의 일부를 이루는 이상, 양립이 불가능하거나 모순된 이유가 병존해서는 아니된다. 보충된 이유가 기존의 이유와 모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는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318]

또한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문에 영향이 없더라도, 이유 무죄 등을 추가하거나, 판결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보충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할 것이다.

(다) 구두로 설시한 이유와 모순되는 보충

판결서 그 자체에 기재되지 않은 판결선고 과정에서 구두로 설명한 이유의 요지와 추후 보충된 보충이유 서면이 모순되는 경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본선고가 원칙이고 원본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선고 무렵 완성에 가까운 판결서로 선고하는 것이 실무로, 구두로 설명한 판결의 요지와 서면 이유 기재와 충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에 따른 보충은 본질적으로 선고 당시 이미 형성되고 현출된 판단을 상소심 심사를 위해 구체화하는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선고 당시 서면이나 구두 설명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모순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사법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서는 구두로 설시한 이유와 서면이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319]

다만, 결과적으로 모순이 발생한 경우 판결의 내용이 되어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판결의 이유는 서면의 이유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우선 우리 형사소송법 제43조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낭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유의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판정에서 설명되는 이유는 요지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가 이유와 동일한 원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완전한

318) 이 경우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이지, 유효한 실체판결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 후 자판을 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19) 또한, 구두로 설시되는 이유는 당연히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판결서에 의한 것이다.

이유는 서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서면을 통해 분명히 하여 판결을 명확히 함에 있는데, 구두로 행한 요지의 설명과 서면의 일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 판결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반할 염려가 있다. 또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판결서가 사전에 완성되어 제시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 이유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으며,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판결서 및 판결 이유 보충 서면에 따른 서면의 판결서를 완성된 판결서로 보고, 그 내용에 구두로 설명한 부분과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판결의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결과적으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 방안에 불과하고, 판결선고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주문과 달리 구두로 설시한 이유에 관한 내용과 서면으로 작성한 판결 이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면을 우선하여 서면 판결서의 내용만을 상소심의 심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3. 작성기간의 제한

가. 작성기간의 설정

상소 제기에 따라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제도는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판결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함에 있으나, 그것이 법관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고, 절차의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규범적으로 그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이 제도의 착안점이 된 독일의 경우 서면 판결서 작성 기한을 원칙적으로 판결선고일부터 5주로 정하고 공판기일이 진행된 기간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있다.[320]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서는 법령상 독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 이유 작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충 기간을 독일과 동등한 기간으로 설정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제도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판결서를 판결선고 전에 완성하는 것이고, 판결 이유의 보충은 판결선고 시점의 판단을 상소심 심리

320) 독일의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서가 기록에 편철되는 기간이 21주 및 35주가 걸린 경우에 있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작업이므로, 지나치게 긴 시간을 부여할 이유도 적다.

다만, 상소(항소 및 상고) 제기기간이 7일이므로, 상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의 기간이 필요하고, 형사재판부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 이유 보충 제도가 복잡한 사건들에도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충 기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 단계는 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로 설문조사의 결과 이 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매우 많고, 이 제도의 대상인 변호사 측에서 과반이 넘는 비율로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점과 제도 시행 무렵의 혼란이나 판결 이유가 장기간 작성되지 않음에 따른 오해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우선 상소 제기일로부터 2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상소제기일을 기산점으로 둔 이유는 판결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면 2주의 기간이 당사자의 상소제기 시점에 따라 지나치게 단기간이 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효한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재판부에 판결서를 보충할 기회는 주는 것이 상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청구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력이 배제된 시점부터 보충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2주의 기간은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소기록 송부를 위한 기간(형사소송법 제361조)과 같은 정도로, 재판지연의 염려가 매우 크지는 않은 기간이다. 장래에 여러 유럽국가와 같이 불복 여부에 따른 탄력적인 형사판결서 작성 문화가 정착될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작성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처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제도는 판결서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유를 일정 기간 보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판결선고 무렵 작성한 판결서도 판결서로서 법정의 기재사항을 갖춘 판결서로, 이를 상소심의 심리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이유의 보충이 판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성기간을 도과할 경우의 효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경우 작성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과 이 제도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 작성기간은 엄격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321]

321) 이에 따라,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충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해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이 제도의 착안점이 된 독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서 작성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을 작성한 경우 이를 판결의 파기사유로 보고 있다.[322]

4. 위임에 의한 적용 제외 사유

사건의 성격이나 경중에 따라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의 적용이 부적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외를 법률로 제한하기보다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대상을 사건의 성격 및 경중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소의 제기를 전제로 하므로 그 적용 범위는 가급적 넓을 필요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성기간을 최소화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으므로, 그 제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성은 적다 할 것이다.

다만,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구속사건에 있어 판결 이유를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제도가 구속 상태를 장기화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구속사건의 경우에도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구속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를 구체화한다는 명목이 구속 상태의 장기화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구속 제도에서 구속의 장기화는 상소심의 심리 기간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당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를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① 구속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②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피고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우려가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설문조사 등을 고려하였으나, 개별 재판부에서 사건의 성격 등을

---

322) 다만, 현재 법원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은 판결 등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앞서 독일의 제도를 언급하면서 소개한 단축판결에 대한 사후 판결 이유의 보충을 허용하는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그 기간을 도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고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HR 27 maart 2012, ECLI:NL:HR:2012:BT6254, r.o. 5.3(그와 별개로 그 지연이 전체 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럽인권협약의 합리적 기간 초과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고려하여 재량으로 제도의 이용을 결정할 수 있고,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제도 이용의 활성화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판결서 작성기간을 2주로 크게 단축한 이상, 이 제도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나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건을 제외하고는 제외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5. 공판조서의 활용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려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구두로 설명한 판결 이유가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항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두로 제시한 이유를 자세히 확인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그 경우 구두 설명 내용의 녹취를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거나, 선고를 위해 만든 대본 등을 별지로 첨부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유의 요지를 구술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할 것인지, 기재하면 어느 정도 기재할 것인지는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6. 판결 이유 작성 과정에서 국어자문 등의 활용

판결선고 이후에 그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를 부가하는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이미 재판의 결론과 주요 이유가 대외적으로 공표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판결서가 작성되는 절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작성 과정에서 선고 이전에 법관의 핵심적인 판단 내용이나 최종 결론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전문적인 국어 자문 등을 통하여 판결서를 언어적으로 교정하거나 정리를 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국어자문관이 배치되어 판결서 등의 어법 등에 대한 자문이나 교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323] 판결 이유 보충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와 같이 판결 결론의 유출 부담이 없이 언어적 자문 등을 통한, 국어의 정확한 사용을 통하여, 판결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324]

323) 대법원 국어자문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VII.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1. 형사소송법의 개정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5(판결 이유의 보충)

① 제1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상소 제기일(상소권회복 등에 의해 확정력이 배제되는 경우 그 확정력이 배제된 날부터)로부터 2주일 이내에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결 이유의 보충이 부적당한 경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상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판결 이유를 보충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1조의 기간[325]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 작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작성된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은 판결서의 일부로 본다. 이 서면의 고지는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제2항[326]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제1항

제1항은 판결 이유 보충 제도의 내용, 적용 범위,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제1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소제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327] 판결 이유를 보충하여도 그 서면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이라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통상항소 외에 비약적 상고 등 다른 수

---

324) 비교법적으로 캐나다의 경우에는 법률언어 전문가(Jurilinguist)를 법원에 두어, 판결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https://www.cas-satj.gc.ca/en/pages/careers/jurilinguist (2026. 4. 15. 확인).

325)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26)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27) 그 경우에는 판결이유 보충과 무관하게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단도 있으므로, 상소로 표시하였다.

나. 제2항

제2항에서는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여부를 상소 제기 후 조기에 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작성 기간과 상소 기록 송부 기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상소 기록 송부 기간을 서면이 작성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였다.

다. 제3항

제3항은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의 법률적 성격을 정한다. 이를 단순한 판결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이 아닌 '판결서의 일부'로 보도록 하여, 보충된 이유까지 포함한 판결 이유가 상소심의 심리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작성된 서면은 판결 선고 또는 고지 시에 존재하지 아니한 서면이므로 이를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라. 제4항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판결서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작성에 관하여 판결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의2(판결 이유의 보충이 부적당한 경우)

법 제31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판결 이유의 보충이 부적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인(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법 제331조의 규정[328]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구속 피고인은 제외한다.

3. 예시

아래는 판결 이유 보충서의 작성 예시이다. 아래와 같이 기존 판결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서울 ○○ 지방법원

판결 이유 보충

사 건	2025고합0001, 2025고합0002(병합), 2025고합0003(병합) 중상해, 사기, 특수절도
피 고 인	○○○ (000000-0000000)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26. 5. 1. 선고 2025고합0001, 2025고합0002(병합), 2025고합0003(병합) 판결

보충할 이유

범죄사실

『2025고합0002』 2. ○○○에 대한 사기 부분의 '1120,000원 상당'을 '120,000원 상당'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0001』 부분에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추가)

1. 주장의 요지

(생략)

2. 판단

(생략)

2026. 5. 12.

재판장 판사 ○○○ _____

판사 ○○○ _____

판사 ○○○ _____

328)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VIII.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1. 상소 여부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저하 및 이유 확인을 위한 항소 증가 우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고 시점에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판결서를 작성한 후 판결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판결서에 의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어떠한 근거로 유죄의 심증형성을 하였는지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고 시점에서 구술 등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적어도 법령이 예정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전제에서 볼 때, 당사자가 이유를 알기 위해 항소할 유인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건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항소가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제도는 개별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고, [별지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기재의 상세화가 형사재판에 있어 항소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항소의 증가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유의 추후 보완에 따른 선고 시점에서 판결 완성도 저하 우려

판결 이유 보충 제도는 실제 판단은 나중에 하여도 된다는 편의적 목적에 따른 제도가 아니라, 판단 자체는 공판과 선고 단계에서 완성하되, 서면에 의한 상세 이유의 정리를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만 수행하려는 취지이다. 즉, 판결 선고는 판결서의 사전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생생한 심증에 기초하여 행하고, 선고 후에 그러한 심증에 따른 결론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옮기는 것이다. 즉, 이러한 판결 결과는 공판중심주의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고, 판결서의 법정기재사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판결의 완성도가 저해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사후작성 이유는 결론의 정당화를 위한 자의적 · 형식적 기재가 될 우려

판결 이유의 보충 작성은 판결선고 시의 심증을 바탕으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재

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충이 기존 판결서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서와 모순되는 이유를 보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은 상소장만 제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항소이유 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배척하고 자의적으로 결론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만 작성됨에 따라, 그에 대한 상소심의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합리화는 상소심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될 것이다.

4. 판결 이유의 보충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또는 재판 지연 우려

판결 이유의 보충은 상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소가 없는 다른 사건에서 이유 작성의 부담을 감축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재판의 지연을 줄이고 심리 및 선고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개별 사건에서 보충 과정에 지연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보충 기간의 상한을 정함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완화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충 기간을 상소제기 후 2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구속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판결 이유 보충의 지연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소가 없는 사건에 대한 이유 작성의 부담이 감축되므로, 과중할 정도의 업무부담 증가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부에서 판결 이유를 미리 기재할 것인지, 사후에 기재할 것인지는 그 재량으로 적절히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 등이 예상되어 판결 이유 보충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한 후 제기된 적법한 추완항소에 따라 보충 서면의 작성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재판한 법관이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제도는 법정기재사항에 따른 완성된 판결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경과나, 인사 등에 따라 추완항소 시점에서의 보충이 부적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 재량에 따라 보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재판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

제3절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의 제안

I. 제도의 개관

이 연구가 제안하는 '조서의 기재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제도'(이하 제3절에서는 '조서판결 제도'라 한다)는,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어 증거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는 자백 사건에 한정하여, 상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결선고기일의 공판조서에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판결서에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서판결 제도는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쟁점이 단순하고 결론이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정에서의 선고 및 조서의 작성으로 재판을 종결하여,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간이한 처리가 가능한 성질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최초의 절차 진행부터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간이한 방법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간이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있어 서면 작성 부담을 전면적으로 덜어내고, 활용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간이공판절차를 활성화하여,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도모하고, 판결서 작성에 관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에 있다.

II. 제도 도입의 착안점[329] 및 일본의 조서판결과의 차이점

조서판결 제도는 일본의 조서판결(調書判決)이라 불리는 판결 방식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형사판결에 관하여 상소신청 또는 일정 기간 내의 판결서 등본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소 서기가 선고기일의 공판조서에 "판결주문, 죄가 될 사실의 요지 및 적용한 벌조"를 기재하게 하여 이를 판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조서판결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툼이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상소의

329) 이러한 간이공판절차에서 조서판결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한 선행 연구로는 이원식,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1심 유죄판결서를 중심으로 –, 형사사법연구반(2024)이 있다.

신청이 없는 사건 일체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나, 실무상으로는 당사자가 자백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착안점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서판결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일본과 같이 제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제도에 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개별 법관들이 어떠한 사건에 조서판결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서판결의 경우에는 증거관계의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그 대상 사건은 자백 등에 따라 증거관계 등에 관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건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완전한 자백을 하는 등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증거조사 등의 간이한 절차 진행이 전제되는 공판절차인 간이공판절차를 거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면서 판결 확정 전에 판결서 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서판결을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판결 이유 보충제도와 균형에 비추어, 상소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이 제도는 일본과 달리 오로지 자백을 전제로 증거조사까지 간이하게 이루어지는 간이공판절차 적용 사건이라는 한정된 범위의 사건에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소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판결 이유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330]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III.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자백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에서 판결서를 공판조서로 갈음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이 판결서라는 문서의 작성 자체를 생략할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을 분쟁이 실제로 지속되는 사건과 확정되는 사건 사이에서 재배치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판결서 작성에 들어갈 부담 및 시간을 제도적으로 절감하고, 법원이 확보한 시간과 역량을 공판정에서의 심리

330)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인사건을 포함한 사건도 포함되므로, 증거관계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조서판결은 그 한계가 있다.

의 강화나 실질적 다툼이 있는 사건의 처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제한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전체 재판의 질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서판결 제도는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서가 작성되도록 설계하여 상소심 심리의 기초를 보장함으로써 다툼이 계속될 사건에 사법역량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권리보장과 효율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간이공판절차의 취지에 기능적으로 부합한다. 자백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증거조사 등 증거 관계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관계의 기재를 생략한 간이한 형식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가지고, 아래의 통계[331]와 같이 이용이 매우 저조해지는 간이공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332][333] 또한, 판결서 작성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즉일선고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서 작성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표 4] 간이공판절차 관련 통계

연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처리인원수(명)			구성비(%)[334]		
	합의	단독	계	합의	단독	계
2020	9	9,331	9,340	0.1	3.8	3.5
2021	7	6,840	6,847	0.1	4.1	3.8
2022	10	5,621	5,631	0.0	3.2	2.9
2023	6	3,108	3,114	0.1	2.8	2.5
2024	3	2,743	2,746	0.0	1.5	1.3

331)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859면.

33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에 의하면,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취지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조사의 간이화는 현재 증거조사 실무가 사건 부담으로 인하여 통상의 증거조사의 경우에도 매우 간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간이공판절차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은 점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이공판절차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33) 즉, 이 제도는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기에 앞서 다툼의 여지에 대하여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대신, 간이공판절차를 이용할 경우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서면의 작성 부담 일체를 감소하게 하여, 간이공판절차의 실익을 증대시키는 등으로 그 활성화에 이바지할 여지도 크다.

334) 전체 처리 사건 대비 간이공판절차 처리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Ⅳ. 설문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일본은 지방재판소나 간이재판소 사건에 관하여 상소 제기 또는 판결서 등본 신청이 없는 경우 조서를 판결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를 고려하여, 간이공판절차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 상소 제기가 없는 경우 '주문,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가 기재된 공판조서로 형사판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그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가.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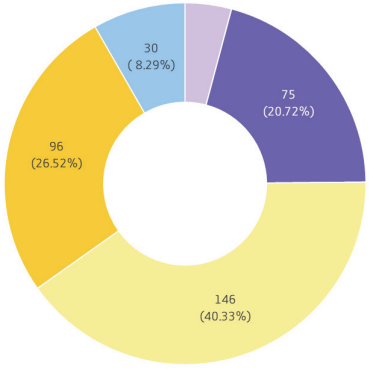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반대한다	15 (4.14%)
② 반대한다	75 (20.72%)
③ 찬성한다	146 (40.33%)
④ 적극 찬성한다	96 (26.52%)
⑤ 의견 없음	30 (8.29%)
NA	8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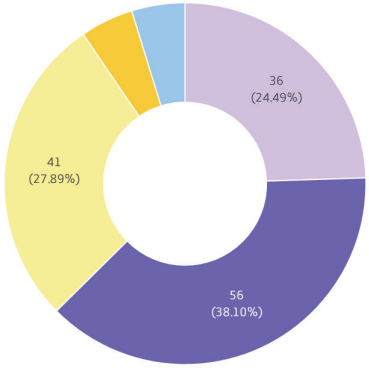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반대한다	36 (24.49%)
② 반대한다	56 (38.10%)
③ 찬성한다	41 (27.89%)
④ 적극 찬성한다	7 (4.76%)
⑤ 의견 없음	7 (4.76%)

나. [찬성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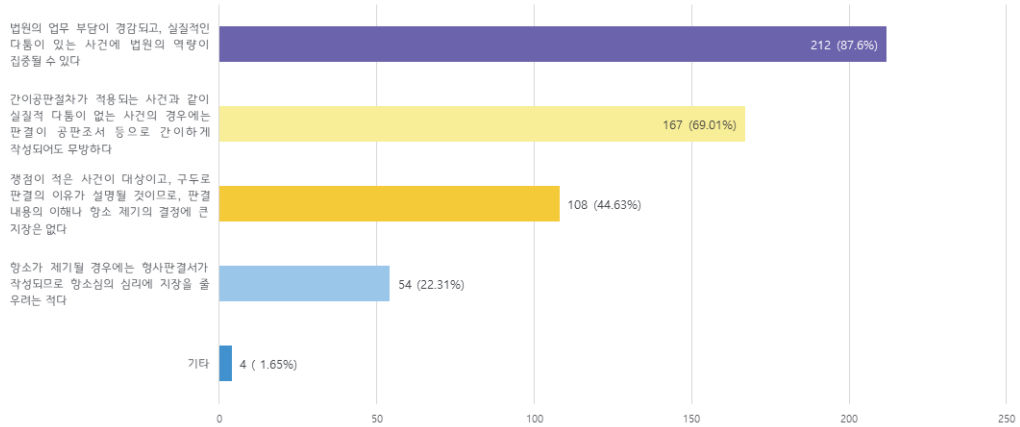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212	87.6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과 같이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공판조서 등으로 간이하게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167	69.01
쟁점이 작은 사건이 대상이고, 구두로 판결의 이유가 설명될 것이므로, 판결 내용의 이해나 항소 제기의 결정에 큰 지장은 없다	108	44.63
항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형사판결서가 작성되므로 항소심의 심리에 지장을 줄 우려는 적다	54	22.31
기타	4	1.65

○ 기타 의견 ——— **[법관]**

- 민사와 달리 형사판결 선고 시에는 쟁점에 관한 판단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선고조서 및 그의 일부인 녹취파일을 판결서의 일부로 하면 판결서 작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에도 유무죄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양형의 이유 기재를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하기 때문에 판결서 작성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 편임. 후단 경합범 판단 등 후속 사건의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갈음하는 그 조서를 열람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전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 간이공판절차를 거쳤다는 것 자체가 자백사건이므로 유죄의 이유를 길게 적을 필요가 없다.
- 도입의 전제로 "적용법조"를 구성요건해당성을 나타내는 조문을 적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적용법조 전체를 조서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입의 의미 없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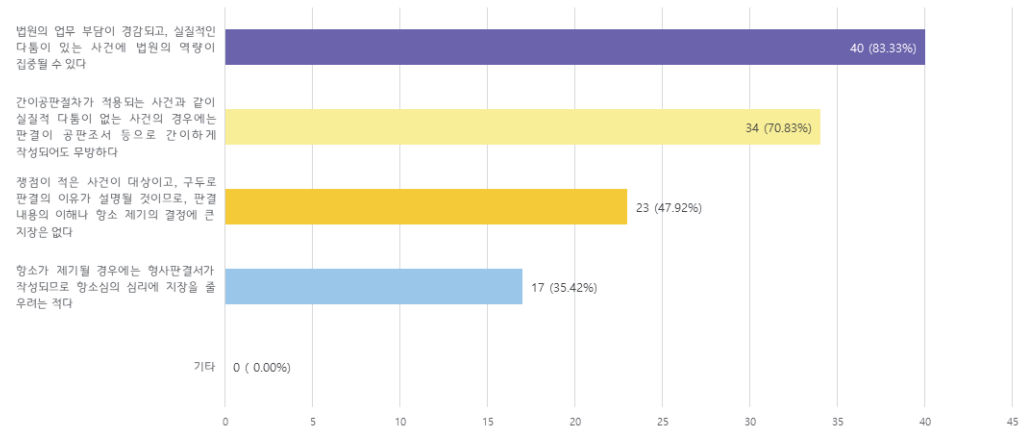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법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에 법원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	40	83.33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과 같이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공판조서 등으로 간이하게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34	70.83
쟁점이 작은 사건이 대상이고, 구두로 판결의 이유가 설명될 것이므로, 판결 내용의 이해나 항소 제기의 결정에 큰 지장은 없다	23	47.92
항소가 제기될 경우에는 형사판결서가 작성되므로 항소심의 심리에 지장을 줄 우려는 적다	17	35.42
기타	0	0

다. [반대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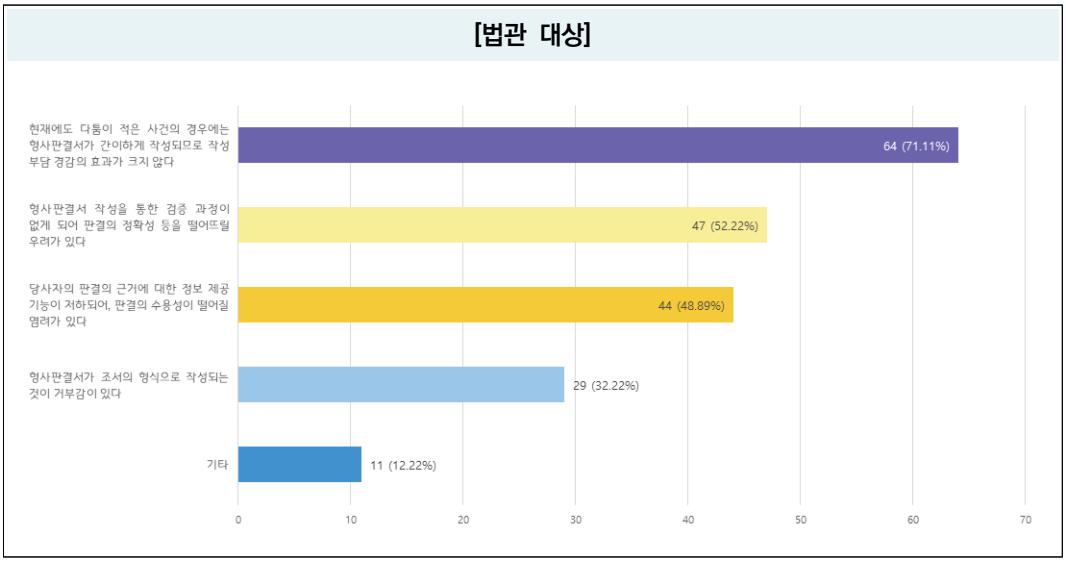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현재에도 다툼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서가 간이하게 작성되므로 작성 부담 경감의 효과가 크지 않다	64	71.11
형사판결서가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29	32.22
형사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 과정이 없게 되어 판결의 정확성 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47	52.22
당사자의 판결의 근거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이 저하되어,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44	48.89
기타	11	12.22

○ 기타 의견 ——— **[법관]**

- 기록검토를 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상소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다.
-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 없거나, 매우 적다.
- 간이공판절차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백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 형사판결서는 다른 사건에서도 활용가치가 높다.

-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작성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리고 공판조서는 참여관이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판결문 작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참여관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현재의 공판중심주의하에서도 사건이 너무 많아 간이공판절차로 회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간이한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간이공판절차와 차이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은 항소를 매우 많이 하므로 업무경감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간이공판절차 자체의 이용 범위가 좁다(대법원 판례 참조- 거의 유죄 인정 단계에까지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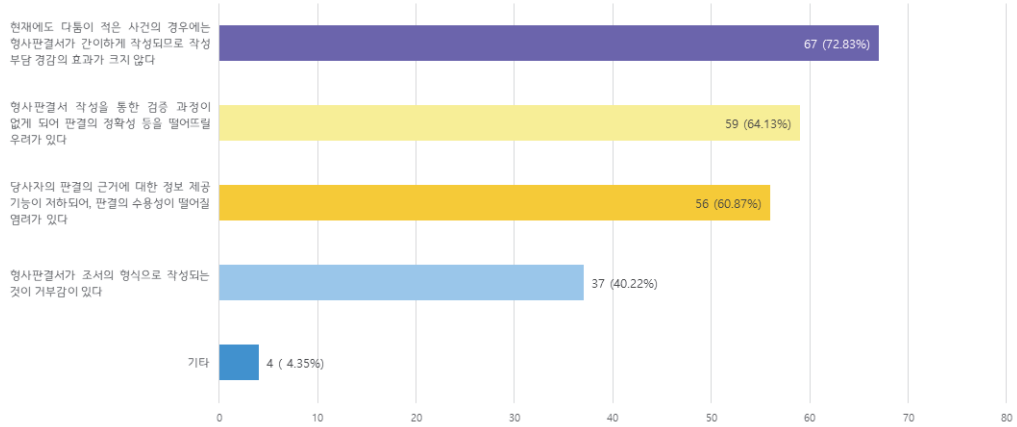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현재에도 다툼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서가 간이하게 작성되므로 작성 부담 경감의 효과가 크지 않다	67	72.83
형사판결서가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37	40.22
형사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 과정이 없게 되어 판결의 정확성 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59	64.13
당사자의 판결의 근거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이 저하되어,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58	60.87
기타	4	4.35

○ 기타 의견 [변호사]

- 판결을 받는 일반인들이 이미 법관의 성실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지경인데 이와 같이 오로지 법관의 편의만을 위해 제도가 바뀐다면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특히 국선)이 판결서 등본을 신청하면, 재판장이 다시금 판결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 업무가 늘어났다고 느껴 변호인(국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높다.
-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한다. 무죄의 경우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라.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대상 사건은 어느 범위로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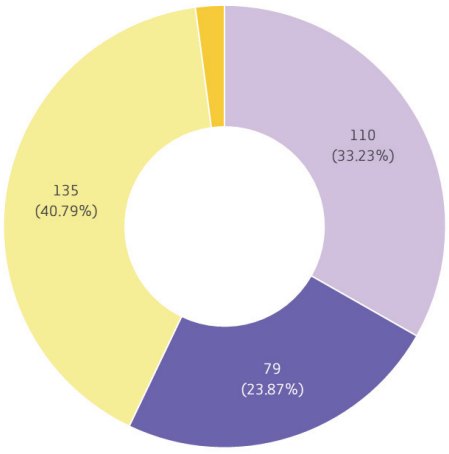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형사합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110 (33.23%)
② 형사단독 사건	79 (23.87%)
③ 형사단독 사건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에 한정	135 (40.79%)
④ 기타	7 (2.11%)
NA	39

○ 기타 의견 [법관]

-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항소율이 지극히 낮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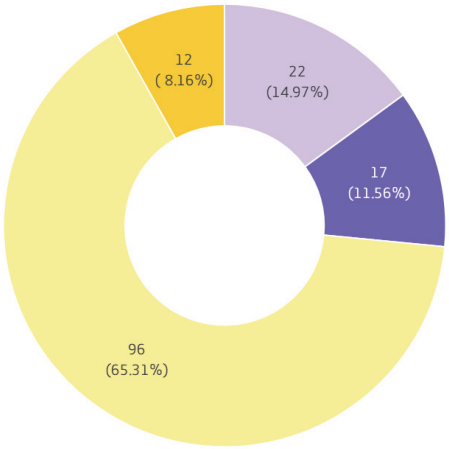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형사합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22 (14.97%)
② 형사단독 사건	17 (11.56%)
③ 형사단독 사건 중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건에 한정	96 (65.31%)
④ 기타	12 (8.16%)

○ 기타 의견 **[변호사]**

- 단독사건 중 자백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보기에 기재된 것보다 더 좁은 범위로 한다.
- 정식재판사건으로 한정한다.

마.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야 할 유형의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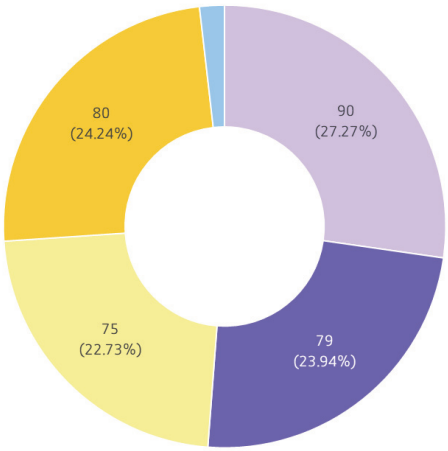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없음	90 (27.27%)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구속사건이나 법정구속 사건	79 (23.94%)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	75 (22.73%)
④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80 (24.24%)
⑤ 기타	6 (1.82%)
NA	40

○ **기타 의견** **[법관]**

- 경죄 사건으로서 양형부당만 다투는 사건만 대상으로 한다.
- 다투는 사건을 제외한다.
- 선고형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중형선고 사건을 제외한다.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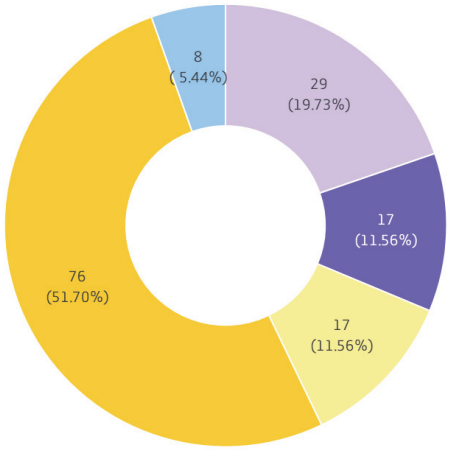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없음	29 (19.73%)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구속사건이나 법정구속 사건	17 (11.56%)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	17 (11.56%)
④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76 (51.70%)
⑤ 기타	8 (5.44%)

○ 기타 의견 [변호사]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 전부를 제외한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나 그에 준하는 사건만 대상으로 한다(범위 최소화).

2. 분석

설문조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법관의 경우에는 약 66% 정도의 비율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적극적인 찬성자의 비율도 약 26% 정도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반하여 변호사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는 62% 정도의 비율로 해당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자백에 의한 간이공판절차 사건에 있어 판결의 이유 기재를 대폭 간이화하는 것으로 판결의 수요자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 이유와 관련하여, 제도에 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법관과 변호사 모두 법관의 업무경감을 통하여 다툼이 있는 사건에의 역량 집중을 들었다. 한편, 제도에 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주요한 논거로는 법관과 변호사 모두 현재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가 간결하게 작성되고 있어 실질적 업무

경감이 없다는 취지를 들었고, 그와 함께 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의 기능이 저하될 염려를 들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용대상 및 적용예외에 관하여, 법관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33.23%로 적지 않았으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40.79%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단독사건으로 한정(23.87%)하자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약 64%에 달하고 있다. 다만 적용 제외 대상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거나 구속 관련 사건의 경우만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나 이에 준하는 사건과 같이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의견이 65.31%로 과반수를 크게 넘고 있고,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전반을 적용 예외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V. 제도의 주요내용

1. 제도 적용의 전제 – 제1심 간이공판절차 결정 사건

이 제도가 적용되는 전제가 되는 사건은 제1심의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관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정이 있는 사건은 자백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다툼이 없고, 증거조사도 간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이유에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관한 이유의 기재 등이 항상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조서판결의 작성

조서판결 제도는 간이공판절차로 심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구술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후 상소가 제기되지 않는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판조서를 작성하여 판결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공판 사건 중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조서판결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이 확정된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판결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공판조서에 최소한의 기재사항(주문, 범죄사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만을 기재하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기명 · 날인에 따라 조서판결을 완성한다.

3. 판결서 작성 시기 및 상소의 제기에 따른 판결서의 작성

조서판결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한 재판서에 의한 선고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즉, 간이공판절차 결정 사건에 대하여 구술로 판결을 선고한 후, 상소 제기 여부를 고려하여 공판조서 또는 판결서를 완성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선고 후 상소 제기 등으로 조서판결 제도에 의하여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경우 판결서를 작성할 기간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와 같이 대법원규칙에서 적당한 상한을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사건은 상소심의 심리의 대상이 되고, 간이공판절차 대상 사건이라고 하여 항소이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상소심의 심리기초 형성을 위한 판결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 후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판결서를 통하여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는 간이공판절차 대상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작성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4. 조서판결에 기재할 사항

가. 주문

조서에는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기재한다. 주문은 판결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구두로 고지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

조서에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별지로

활용하여 공소사실 부분을 인용하거나, 공소장에 근거하여 전산적으로 입력된 범죄사실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조서를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소장의 기재 내용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수정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일본의 경우 조서판결을 할 경우 적용법령에는 적용할 벌조만을 기재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서판결이 다툼이 없는 확정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만을 기재하여도 그 부작용이 적고,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조서작성 주체인 법원사무관등에게 조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적용법령을 검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되어, 제도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 그 밖의 기재

이는 공판조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구두로 설명한 부분을 공판조서에 포함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 및 자백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서면 작성에 관한 업무부담을 전면적으로 경감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법률상 기재가 요구되지 아니한 부분을 과도하게 공판조서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335]

5. 적용 제외 사유의 위임

사건의 성격이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제도의 활성화와 적용대상에 대한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외를 법률로 제한하기보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대상을 사건의 성격 및 경중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335) 주요한 양형사유(합의 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구술한 부분을 간략하게 조서에 남길 수 있을 것이고, 구술로 설명한 내용의 녹취 등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방식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판결서에 준하는 내용을 조서로 기재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앞선 설문결과 법관의 경우에도 합의사건에는 이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간이공판절차가 합의사건 및 단독사건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인 점과 이 제도가 개별 재판부가 그 판단에 따라 자백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불복가능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물관할 등으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이 제도의 성격과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가. 구속사건의 경우

이 제도는 판결서의 작성을 상소의 제기라는 불확실한 사정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구속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불구속 피고인과 비교할 때,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불리하고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지체없이 판결서가 제공되어 방어를 준비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쟁점이 적은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결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신 구속이 결부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① 구속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②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은 예외로 하였다.

나.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조서판결을 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재사항 중 양형의 이유를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려는 형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이 제도 적용의 예외로 두었다.

다만, 양형기준을 그릇 적용하여, 재판부에서 양형기준 이내의 양형이라고 보고 조서판결을 실시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양형기준 이내의 양형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으나 판결의 효력 자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이 제도 적용의 예외로 두었다.

VI. 개정안의 제안 및 보충 설명

1. 형사소송법의 개정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 보충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4(간이공판절차에서의 판결선고에 관한 특례)

①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제286조의2의 결정[336]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상소가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판결을 선고한 기일의 공판조서에 주문, 범죄사실 및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기재하게 하여 판결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공판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과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상소제기에 따라 공판조서를 판결서에 갈음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제1항

제1항은 이 제도의 내용, 적용 범위,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적법

336)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말한다.

한 상소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상소기간 도과 등에 따라 상소가 부적법한 경우 판결이 상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조서판결로 판결서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검사의 상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즉시항고는 본안사건이 아닌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그 즉시항고를 통하여 본안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항고심에 송부한 소송기록을 반환 받아, 상소기록 조제 및 판결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 상소심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면 될 것이다. 한편,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는 경우 상소권회복 결정이 확정되어야, 서면 판결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생기므로, 그때에 이르러 판결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다.

나. 제2항

제2항은 공판조서의 기재 요건을 정한다. 본래 재판서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41조), 공판조서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인바(제53조 제1항), 조서판결 제도는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특칙을 규정하였다.

이는 공판조서로 기본적인 작성의 주체인 법원사무관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판결서에 갈음하는 서면이므로 재판장만이 아닌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도 작성에 관여하도록 하되, 이 제도가 상소가 없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서의 형식으로 판결서를 갈음하게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여 조서의 작성방식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제3항

제3항은 이 제도가 구두로 판결을 선고한 후 공판조서 또는 판결서를 작성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상소 제기 등에 따라, 판결서에 갈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작성기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46조의 후문[337]

337)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에 형사소송법 제286조의4 제3항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라. 그 밖의 사항

조서판결은 재판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조에 의하여 피고인 등이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한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한편, 송달과 관련하여 조서판결은 판결서에 갈음하는 공판조서로 판결서에 준하여 송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절차를 거침에 따라 작성되는 조서 또는 판결서의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338]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되지 않아 판결서 등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3항에 그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개 정 안
〈제131조의2 신설〉	**형사소송규칙 제131조의2(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기 부적당한 경우)** 법 제286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른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기 부적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사건으로 인한 구속 피고인(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제331조의 규정[339]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구

338)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339)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개 정 안
	속 피고인은 제외한다.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항 신설〉	③ 법 제286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작성되는 판결서를 갈음하는 조서 또는 판결서에 관하여 제1항의 기간은 그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3. 조서판결의 예시

조서판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작성될 조서판결의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판결서에 갈음하는 조서는 판결선고기일의 공판조서의 일부로 하여 작성 후 기록에 편철을 하면 될 것이다.

○○ 지방법원

조서판결(제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5고합○○, 2025고합○○(병합) 강도, 사기, 공갈
피 고 인	○ ○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서울 ○ ○ ○ 등록기준지 서울 ○ ○ ○
검 사	○ ○ ○
변 호 인	○ ○ ○
판결선고	2025. 0. 0.

판 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법 제333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350조 제1항

법원주사 ○ ○ ○ ㊞

재판장 판 사 ○ ○ ○ ㊞

판 사 ○ ○ ○ ㊞

판 사 ○ ○ ○ ㊞

VII. 예상되는 우려와 보완책

1. 자백사건에서는 이미 간이한 판결서를 쓰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이 제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우려 중 하나는 현재도 다툼이 적은 사건에서는 판결서가 대부분 간이하게 작성되고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자백 사건 등에 있어서 간이한 판결서를 작성하는 실무는 판결서라는 그 작성에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건에서 구술에 의해 판결 절차가 마쳐지게 되고 법관의 판결서 작성 업무 자체가 생략되게 되는바, 전체 사건 중 간이공판절차 적용이 가능한 자백 사건의 규모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만 문제되는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적어 상소 제기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효용은 작지 않을 것이다.

2. 조서 형식 판결에 대한 거부감에 관한 우려

조서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 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형사공판사건에서 정식의 형사판결서를 작성하는 실무가 오랜 기간 자리 잡았음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거부감은 익숙하지 않은 형식 그 자체에 대한 것과 조서판결 제도가 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주된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부분에 관한 우려는 결국 이 제도를 소송당사자인 피고인 등이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불복이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용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서판결 제도는 그 적용 범위를 간이공판절차 사건과 같이 쟁점이 양형으로 압축된 사건으로 제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등 이례적인 양형이 있는 사건이나 구속사건 등을 제외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우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거부감은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성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다.

3. 판결서 작성을 통한 검증이 배제됨에 따른 우려

이 제도를 통하는 경우 판결서의 기능 중에는 자기 검증 및 통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판결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재판부에게는 사실관계 · 법리 · 양형 판단을 재검토하는 일종의 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생략하면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이 제도는 검증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건을 선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투는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제도와 달리 간이공판절차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340] 그 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부인 취지 등이 검토될 것이고, 그러한 신중한 고려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이 결정된 사건은 자백 및 증거조사의 간이화로 인하여 쟁점이 단순화되고, 비교적 쉽게 심증형성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서는 판결서 작성이 수행하는 검증 기능이 필요한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소 등으로 분쟁이 이어질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검증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서판결 제도를 실무상 활용함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이 있으므로 그 선택에 따라 접수되는 사건 중 수가 많으면서 전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제도의 활용에 있어 위와 같은 우려를 더욱 줄일 수 있다.

4.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약화에 따른 우려

이 제도는 판결서의 작성 없이 공판조서로 판결서를 갈음하고, 증거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어 일반적인 형사판결서와 비교해 적은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는 이 제도가 판결 내용 및 불복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으로 판결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유 제공의 부정이 아니라 이유 제공 방식의 효율적인 분담을 전제로 한다. 즉, 선고 시점에는 구술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공판조서에는 법정의 필요한 기재사항만을 남기며,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서를 작성하여 상소심 심사에 필요

340)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구조이다.

또한 수용성이 문제될 만한 사건들, 이례적인 형이 선고되거나,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또는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그 적용을 탄력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적용범위도 실질적 쟁점이 없는 간이공판절차 대상 사건으로 한정되는 이상 앞서 본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절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 기재의 특례에 관한 제안

I. 제도 개선의 개관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이유 기재의 특례에 관한 제안은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이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관한 기재를 인용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또는 적정화 예규 등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상황에서도, 적정화 예규 등이 규정한 원칙적 기재 사항이 아닌 사실상 주장 및 증거의 증명력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실무를 개선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용에 관한 유인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

II. 개선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제4장 제1절에서 공판준비기일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 집중적인 심리를 전제로 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판결의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8조 제1항), 재판 실무도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는 즉일 선고 또는 연일 개정을 전제로 하는 집중적인 심리에 의하여,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대부분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대다수인데, 즉일선고의 경우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기는 하나, 절차의 부담이 큰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판결서까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경우 법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제도 이용의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판결선고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제49조 제2항),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유 기재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재판 실무상 작성되는 판결서와 유사한 형태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는 판결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341] 국민참여재판이 본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납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이 일치하는 사건에서는 그 정당성이 강화된다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는 통상의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장에 대한 판단의 설시를 반복할 필요성이 적다.

III. 설문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를 하는 경우에 형사판결서의 기재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증거의 증명력이나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는 취지나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원용하여 그 주장을 간결하게 배척하는 기재 방식</u>에 대하여 의견을 묻습니다.

34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위 판결에서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 위와 같은 기재 방식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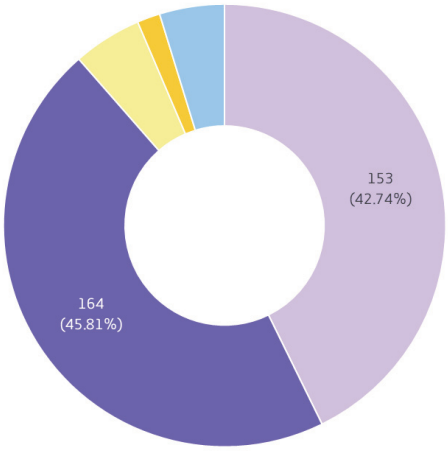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찬성한다	153 (42.74%)
② 찬성한다	164 (45.81%)
③ 반대한다	18 (5.03%)
④ 적극 반대한다	6 (1.68%)
⑤ 의견 없음	17 (4.75%)
NA	12

[변호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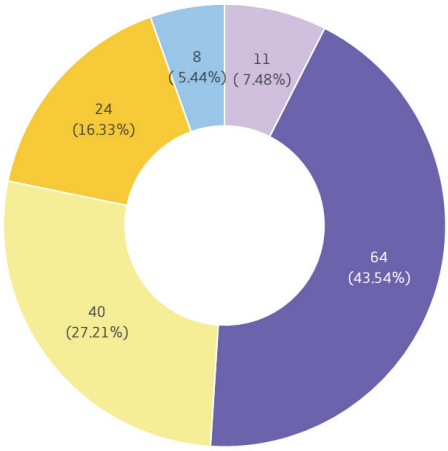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적극 찬성한다	11 (7.48%)
② 찬성한다	64 (43.54%)
③ 반대한다	40 (27.21%)
④ 적극 반대한다	24 (16.33%)
⑤ 의견 없음	8 (5.44%)

나. [찬성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 위와 같은 기재 방식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법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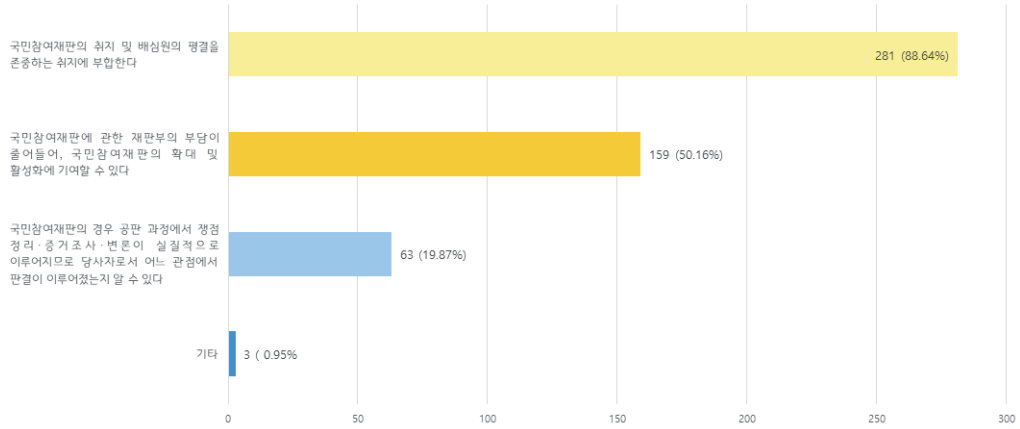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281	88.64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쟁점 정리·증거조사·변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로서 어느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63	19.8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재판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159	50.16
기타	3	0.95

○ 기타 의견 ——— **[법관]**

- 공판종결일에 판결을 선고하므로 판결문 작성 시간이 부족하다.
- 즉일선고가 원칙이므로 촉박한 판결서 작성은 매우 큰 부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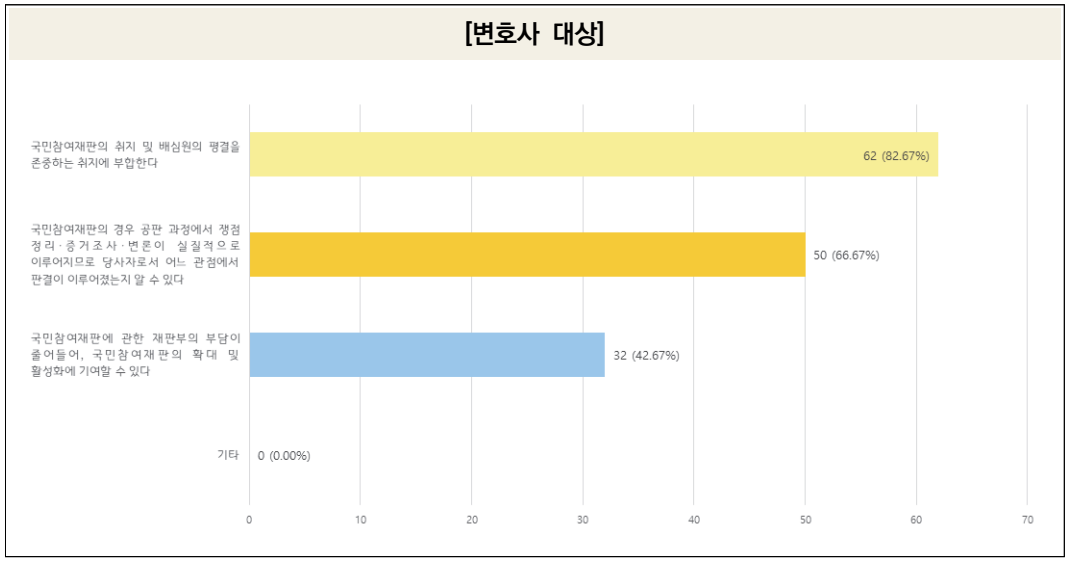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62	82.67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 과정에서 쟁점 정리·증거조사·변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로서 어느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50	66.6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재판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32	42.67
기타	0	0

다. [반대하는 경우에 답하십시오] 위와 같은 기재 방식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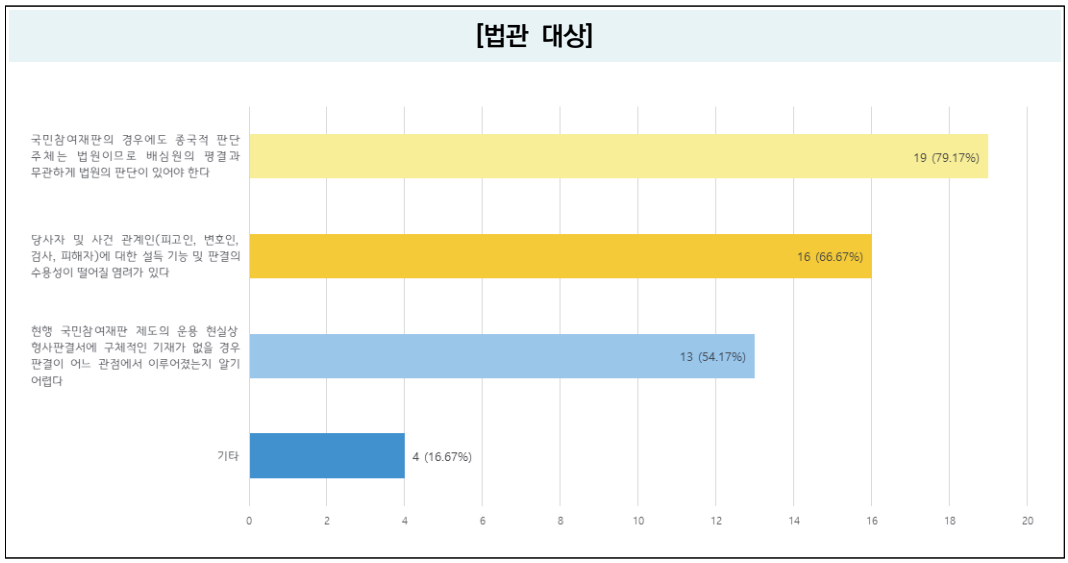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운용 현실상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경우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13	54.17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종국적 판단 주체는 법원이므로 배심원의 평결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19	79.17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해자)에 대한 설득 기능 및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16	66.67
기타	4	16.67

○ 기타 의견 ——— **[법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드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피고인이나 검사에게 사실상 '항소하여 다시 판단받으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342) 문항 6-1에서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에 응답한 24명 중 문항 6-2-2 미응답(Na) = 1.

- 무죄가 선고된 경우 어떤 이유로 무죄인지를 알 수 없다. 그냥 “배심원이 심사숙고하여 한 판단을 존중하여”라고만 기재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것인지,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등 근거 없는 판결은 곤란하다.
- 법원의 업무부담이 많을 경우, 무의식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 전원일치 무죄판결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의견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평결결과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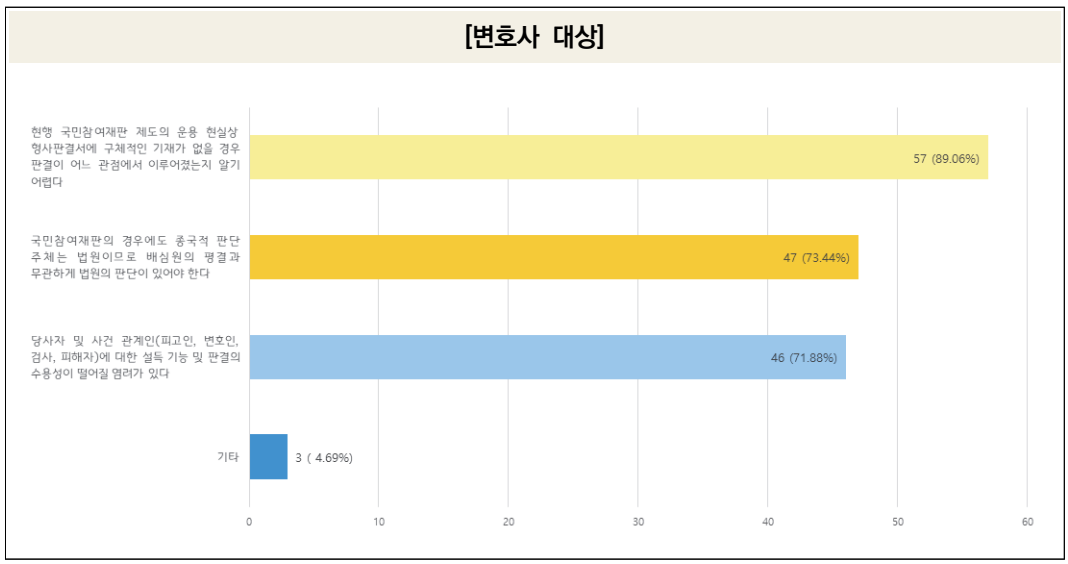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항목선택 비율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운용 현실상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경우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57	89.06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종국적 판단 주체는 법원이므로 배심원의 평결과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47	73.44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피고인, 변호인, 검사, 피해자)에 대한 설득 기능 및 판결의 수용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46	71.88
기타	3	4.69

○ 기타 의견 **[변호사]**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 배척하는 경우에는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법리에 배치되는 감정적 판결이 선례가 될 위험성이 크다.

2. 분석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하여 사실상 주장 및 증명력의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의 경우에는 찬성 취지의 응답이 88%로 압도적이었고, 변호사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취지의 응답이 51%로 과반수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이 방안에 대하여는 변호사 측의 입장도 찬성의 응답이 많으므로, 상당한 수용성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법관과 변호사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80% 이상의 비율로 주된 찬성 논거로 들었다. 그리고 법관 측에서는 차순위의 찬성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들었으나, 변호사 측에서는 차순위 찬성 근거로 쟁점정리, 증거조사,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음을 들었는바,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충실한 변론과정이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하는 측은 법관의 경우 종국적인 판단자가 법관이라는 측면에서 법관의 판단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현실상 판결서에 기재가 없을 경우 어느 관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를 가장 주된 근거로 들었다. 선택의 비율은 법관(79.17%) 및 변호사(71.88%) 양측 모두 높았으나,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의 설득기능 및 판결의 수용성 부분을 우려사항에 관한 선택지 중 하순위에 두었는바,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판결의 설득 및 수용성이라는 측면의 우려는 다른 우려보다는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Ⅳ.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판결서의 기재 내용 중 사실상의 주장 및 증명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 제12조 제1항의 배심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사실적인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또한 우리의 형사소송절차는 전통적인 배심제를 운용하는 영국, 미국 등과 달리 절차적으로도 사실적 영역과 법률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변론 과정에서 사실문제는 물론 법률문제와 양형의 문제 전반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법상 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의 주체일 뿐 아니라, 증거의 취사선택을 포함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의 해석 등 규범적 판단 영역에 대해서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343] 따라서 이유 기재에 있어서도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판단 영역과 법률판단 영역을 구분하고자 한다.

2. 배심원 평결의 인용

배심원의 판단이 특히 존중되어야 할 부분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상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정하여 배심원의 평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사실적 주장을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43)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의 해석 등의 문제는 배심원 지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미리 판사에 의하여 정리된다.

V. 개정안의 제안

1. 개정 형식

적정화 예규에 따르면 사실상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평가 부분은 생략함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실무상 그러한 기재 방식이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정화 예규 등을 통한 판결서의 작성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들의 수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고, 이 방안의 경우에는 변호사 측의 수용성도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안을 제안하도록 하되, 만약 적정화 예규에 개정 방안을 포함하는 경우도 아울러 제안하도록 한다.

2. 대법원규칙의 개정방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42조의2(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특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 증거의 증명력 및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3. 적정화 예규의 개정방안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10조(국민참여재판에서의 이유 기재에 관한 특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판결의 결론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 증거의 증명력 및 소송관계인의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배심원의 평결결과만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4. 예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 배심원의 평결[344]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 또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I. 예상되는 우려와 그에 대한 보완책

1.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실상 형사판결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이 어느 관점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는 우려

우리 국민참여재판법은 앞서 살펴본 전통적인 배심제를 운영하는 영국, 미국 등과 달리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분리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12조 제1항에서 배심원들이 사실의 인정 외에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대하여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론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사실문제 외에 법률적 문제나 양형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직접 변론을 하고 있다. 또한, 제46조에서 정한 재판장의 설명도 배심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배심원의 평결만으로는 실제 배심원이 어떠한 관점에서 평결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개정안은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판결서의 작성을 전제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의 결론이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때, 오로지 증명력의 평가와 사실상 주장 부분으로 한정하여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우려는 적다고 할 것이다.

344) 또는 배심원의 평결이나 의견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도 종국적 판단 주체는 법원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5항에 의하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배심원의 평결은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개정안의 취지는 배심원에게 전적으로 판단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과 배심원의 평결이 일치하는 경우 증명력의 평가와 사실상 주장에 한정하여 배심원의 평결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종국적 판단자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한 설득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이는 앞서 본 여러 판결서 간이화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우려이기는 하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공판중심주의 및 집중심리주의에 근거하여 사전에 공판준비를 통한 쟁점 정리를 통하여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고, 법정에서의 상세한 변론을 통하여 형성된 생생한 심증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며, 그 과정에 일반 국민인 배심원의 판단까지 녹여내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정 자체로 큰 설득력 및 정당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부각되고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는 등 당사자로서 어느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어떠한 관점에서 판결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VII. 보론 –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및 질문지의 활용 필요성

1. 우리 국민참여재판에 있어 배심원 평결의 특성

영국과 미국의 배심제에서 배심원은 사실문제만을 담당하고 법률적 판단은 법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이에 따라 배심재판에 있어 배심원에 대한 법률적 변론은 판사의 배심원 지시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의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 모두에 관하여 배심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도 공소사실의 존부라는 사실적인 이유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만으로 배심원의 판단이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

2. 배심원 설명의 합리화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적 쟁점에 관한 학설대립이나 추상적인 법률상 논쟁이 정제되지 않은 채 배심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이 배심원을 향한 공방의 대상이 될 경우, 재판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심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의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확립된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법률적 주장에 대하여는 변론을 적정하게 제한하고 쟁점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죄명 등에 관한 배심원 설명서가 판례 등을 기초로 구체화·표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배심원 설명서를 사건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또는 변호인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필요한 법률적 설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심원 설명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배심원에 대한 법률적 변론은 사전에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작성된 배심원 설명서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시킬 필요성이 있다.

3. 배심원의 판단 근거 확인을 위한 의견확인 또는 질문지 도입

또한, 우리의 경우 영국과 미국과 같이 배심원 지시에 의해 정제된 특정한 사실문제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른, 배심원 평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배심원이 어떠한 방향에서 평결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거나, 이를 위한 적절한 질문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45] 즉,

345)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참여재판법에서 배심원이 사실적 또는 법률적 문제와 양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법이 정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도 적당한 방법으로 배심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제3장 제1절 III. 4.에서 본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에 앞서서,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 되는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 요소를 적절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배심원에게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평결서와 함께 소송기록에 편철하며, 형사판결서에서 평결을 설시하면서 함께 기재하는 등으로 활용한다면 배심원의 판단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재판부로서도 배심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역을 기초로 효과적인 판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바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실무례 중 평결 과정에서 평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배심원으로부터 확인하고 판결서에 기재한 사례도 있다.

제5절 형사판결서 작성형식의 개선 등

I. 작성형식 개선의 필요성

형사판결서의 작성에 관한 형식적 측면의 개선은 판결의 실체적 내용이나 법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은 관습적으로 기재되는 작성방식을 효율화하여 법관에게는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 판결의 가독성 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판결의 실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형식적 변화는 사법부 내외의 수용성이 높고 제도적 도입에 따른 저항이 적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작성형식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본 여러 연구들을 거쳐 아래와 같이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작성형식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다만, 앞서, 연구한 사항 중 미국의 체크리스트 형식의 판결서는 우리 형사판결서에 직접 대응하는 판결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연구를 통하여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 지시를 통해 법률적 쟁점을 따로 정리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사실 문제가 판단되고, 비배심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인정 및 법적 결론에 관한 설명을 판결서 작성과 별개로 하는 등 형사판결서와 사실인정 또는 법적판단 부분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체크리스트 형사판결서를 곧바로 형사판결서 일반의 작성방식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와 별개로 현재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자기록의 증거를 증거의 요지로 자동생성하는 등의 전산지원 기능이 생기는 등 전산 지원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정형화된 전산 서식 등을 통한 판결서 작성 양식 지원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46]

346) 다만,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판결서 작성에 있어서 전산지원의 확대라는 측면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추가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정형화된 체크리스트에 의한 판결서 작성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한성진, 형사판결 간이화 방안(제1심 단독판결 기준), 재판실무연구[2010(I)], 서울남부지방법원 참조.

II.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의 개선

1. 개선방안의 개관

현재 재판 실무상 증거의 요지 기재는 전통적인 기재 방식[347]에 따라 인증, 서증, 증거물인 서면, 증거물의 순서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증거 중에는 검찰의 증거를 경찰의 증거보다 앞서 제시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종류의 증거는 묶는 등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기재 방식은 증거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나열함에 따라, 판결서 자체만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려는 독자의 입장에서 판결 과정에 어떠한 종류의 증거들이 있었는지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쉬운 방법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나 중요 증거를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인증 등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우선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재 방식은 판결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증거들을 다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편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증거들이 증거기록의 편철순서 또는 시간적 순서와 전혀 무관하게 배치되어 판결서에 기재된 증거의 요지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읽으려는 입장에서는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가 기록의 어느 부분에 편철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하여, 증거목록의 순서대로 증거를 배치하는 경우 항소심의 입장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관계를 곧바로 기록과 대조하면서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통상 증거목록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철됨을 고려하면 판결서의 독자에게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주요한 증거가 어떠한 시간적 순서로 수집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른 전자사건의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된 증거에 증거의 요지에 기재할 증거를 따로 표시해 둘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 경우 판결서를 생성하면서 해당 증거목록의 순서에 따라 증거의 요지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348]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의 변화에 발맞추어 판결서 작성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증거를 목록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판결서 생성

347) 그 기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부터 유사한 순서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48) 제3장 제1절 III. 1. 나. (2)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살펴 보았다.

과정에서 전자적으로 자동 생성된 증거의 요지를 곧바로 활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개별 재판부의 판결서 작성방식의 문제이기는 하나, 기존의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정 무렵부터 약 70년 동안 이어진 관계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작성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증거목록의 순서대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적정화 예규에 규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작성방식의 하나로 제안하는 것이므로, 재판부는 종래의 기재 방식 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하는 방식 중 가독성이나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결서를 작성하면 충분하다.

2. 예규 개정안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 예규의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설하도록 한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5조(증거의 요지)

⑤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는 경우, 증거목록의 순서 및 증거서류의 편철순서를 고려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예시

아래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상해를 가한 가상의 특수상해 사건을 전제로 한 증거의 요지 기재 방식에 관한 예시이다. 경찰이 수사 초기에 상해를 입은 A로부터 간단하게 진술서를 받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이 목격자로 사건을 신고한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CCTV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목격자 C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가정한다.

(새로운 기재 방식 - 증거목록의 증거를 목록의 순서에 따라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A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 및 목격자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대한 수사 및 목격자 C에 대한 전화통화)

(기존의 기재방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분석 및 목격자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에 대한 수사 및 목격자 C에 대한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III. 법령의 적용 기재 방식의 개선

1. 개선 방안의 개관

현재 단독재판부에서는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적용이유와 결과의 기재를 생략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작성방식은 1998년 예규에 명시적인 근거도 있다. 그러나 합의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재판부에서 적용이유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판결서가 작성되고 있고, 이를 생략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단독재판부와 같이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한 판결서를 작성하기에 부담이 있다.

그런데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한 형사판결서는 단독재판부에서 장기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죄질과 범정 등을 고려해 경합범가중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고르는 실무상 의미가 크지 않은 기재나 범죄사실, 양형의 이유와 법령의 적용 기재를 대조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판결서의 적정하고 신속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 기재에 있어 적용이유와 결과의 기재를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생략하여 기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예규 개정안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제6조(법령의 적용)
④ 법령의 적용을 기재하는 경우 적용의 이유와 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예시[349)]

[적용이유와 결과를 생략하는 경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49) 앞서 제3장 제1절 III. 1. 나. (3)에서 예시로 든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적용이유와 결과를 기재하는 경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Ⅳ. 양형이유 기재 방식의 개선

1. 개선방안의 개관

현재 선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판결이 양형기준 범위 내의 판결임에도,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권고형량 범위의 계산 및 기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고, 이는 양형기준의 이용에 불편함이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적정화 예규에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외에는 권고형량 범위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근거를 마련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기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형인자의 기재를 중심으로 한 작성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양형기준을 활용한 판결서의 비율을 늘려, 법관들의 판결서 작성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2. 도입의 필요성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나 단독사건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에 기초한 양형인자를 기재하기보다는, 이를 대체하여 문장식 양형이유를 따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대부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에도,[350] 판결서 작성 과정에서 권고형량 범위의 계산 및 기재를 위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판결의 결론과 무관한 계산이나 기재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계산을 문장식 양형이유로 대체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는 양형기준 이용의 활성화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현재의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작성방식은 양형기준 범위 내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단형 및 권고형을 계산한 비교적 복잡한 장문의 기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종 적용대상 예외, 적용 순서,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제37조 후단 경합 등으로 인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한 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작성 과정에서 오류 또는 오기의 발생이나, 정확한 기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와 같은 계산 등은 현재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앞서 본 다양한 고려사항의 존재에 비추어 산출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들고 자동적으로 산출된 결과물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부담 등으로 – 특히 대량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형사단독 재판부의 경우에는 – 그 기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마련된 이상 양형인자를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양형 과정에 있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양형에 있어 주된 고려사항으로 삼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의 핵심은 그 판결이 권고형량 범위 내의 판결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권고형량을 도출해 내는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에 있다기 보다는, 양형기준이 마련한 각종 양형인자를 판결 과정에서 적정히 고려하였는지에 있다. 또한, 판결서에 양형인자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이나 다른 기재를 종합하여 판결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다.

이에,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건에 있어서 판결서 작성과 관련한 불편을 줄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기재방식에 불편함을 느낀 법관들의 양형기

350) 양형위원회 2024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양형기준 준수율은 90% 이상이다(해당 양형기준 준수율은 양형기준의 적용을 판결서에 기재하지 않은 형사판결서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준 수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양형인자 기재방식을 구성하여, 양형인자의 기재와 관련한 재판부별 편차 및 그와 관련한 국민적 불신을 줄이고, 합리적인 양형이유의 기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부분의 개선안은 권고형량의 범위 산출 기재가 부적당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양형기준에 기초한 양형의 이유 기재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형기준의 정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이다.[351]

3. 예규 개정안

아래와 같이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의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규정한 부분에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외에는 권고형량 범위의 기재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개 정 안
제8조(양형의 이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한다.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2.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차별화하는 경우 3. 그 밖에 양형의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양형의 이유는 공판과정에서 현출되고 확인된 양형인자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기재한다.	제8조(양형의 이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51)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판결서 기재 방식이 정착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양형에 관한 공방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양형조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미국과 같이 양형조사 과정에서 양형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게 하고, 법관은 그 채용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도 적정할 것이다.

현행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	개 정 안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③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형량 범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양형이유 기재방식

양형의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인자의 존부를 중심으로 한 기재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양형의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 고려할 여러 기재방식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출력방식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기재 방식의 핵심은 권고형량의 범위를 계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등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판결 과정에서 고려하였다는 취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양형인자를 기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형 분류나, 권고형 등은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인자를 곧바로 기재한다.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예외사유가 있거나, 죄수 관계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의 계산을 위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고려 없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양형기준이 존재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양형인자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기재방식은 권고형량의 범위를 계산하여 도출하는 기존의 기재방식에서 벗어나,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기재하는 것을 양형의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기재방식이므로 문장식 양형이유는 가급적 생략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구체적 양형사유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를 기재하는 것이 상당하다.

[새로운 기재방식][35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353]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제3범죄(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기존의 기재방식(기본형)][35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352) 동종의 범죄가 다수있고 양형인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 2, 3 범죄 등으로 묶어서 기재하면 될 것이다.
353) 일반양형인자는 그 필요에 따라 생략하거나 임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354) 앞서 제3장에서 예시로 제시한 기재이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기존의 기재방식(상세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제6장

결 론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형사판결서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상급심 심리에 있어 기초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사법자원은 무한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상세한 기재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판결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내용과 설득력을 갖추되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1954년 제정된 이래 오랜 기간 실무상 법정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형사판결서가 작성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중반부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실무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형사재판에 있어 법관의 시간과 노력이 형사판결서의 작성에 더욱 투입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은 적정화 예규의 제정 등으로 개별법관들의 판결서 작성방식의 적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응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예규만으로 법관들이 당사자 및 상급심을 고려한 상세한 기재를 선호하는 실무적 유인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지속 가능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과라기보다는 법관 개개인들의 무거운 업무부담 등을 전제로 한 결과라고 볼 소지도 크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풍부한 사법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판결서 등 각종 서면의 작성이라는 법관의 역량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유죄협상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전체 형사사건 중 대부분의 사건들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된다. 또한, 판결서 및 양형 이유서도 정형화된 체크리스트 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결서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영국은 약 95% 정도의 사건이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시민 중 선발된 치안판사로 구성된 치안법원에서 처리되는데, 치안법원의 경우 구술 중심의 심리 및 구두에 의한 간결한 판결을 하고, 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체적인 판결의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정리한다. 독일의 경우 판결은 구두로 선고하고 판결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폭 간소화된 단축 판결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간결한 판결서가 작성되고 있고, 기소 및 공판과정에서 다양한 협상 제도 등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은 공판조서를 통해 판결서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간이한 판결서의 작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사건의 성격이나 경중, 합의의 존재, 상소 제기 등 재판과 관련한 요소를 일응의 기준으로 고려하여 사법제도의 차원에서 이를 유연하게 운용함으로써 사법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판결서 작성을 둘러싼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에게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법역량을 집중할 것인지가 제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사법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 중 상소제기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소 제기에 따른 판결 이유 보충 제도'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조서판결' 제도를 우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특수한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판단의 근거로 원용할 수 있도록 뚜렷한 근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법관들의 수용성이 높으면서도 작성의 편의 도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작성 형식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형사전자소송의 증거의 요지 삽입 기능에 발맞추어 증거의 요지를 기록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이용되던 실무인 적용이유와 결과 기재의 생략을 모든 사건에 대하여 허용하고, 양형기준에 있어 권고형량 범위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사법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형사재판부 법관들의 무거운 서면 작성 부담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접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심리와 소통이라는 재판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에 따라,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고양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한국어 자료

【단행본】

남승민,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5)

이영창,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

탁상진,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윤동현,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6)

정승연,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3)

박우경,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서현웅,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3)

홍진표,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

한국사법행정학회(2022), 주석 형사소송법(III)(제6판)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론(2024)

법원행정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2007)

_____, 사법연감(1980, 1985, 1990, 2000, 2010, 2025)

_____, 무죄판결 간이화 사례집(2007)

법원도서관, 간결한 판결 사례집 –형사–(2010)

서울지방법원, 판결서 간이화 사례집(1998)

서울중앙지방법원, 새로 쓰는 형사판결서(2014)

독일사법제도연구반, 독일의 하급심 판결,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프랑스사법제도연구반, 프랑스의 판결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9), 법원행정처(2011)

_____, 프랑스의 하급심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일본사법제도연구반, 일본의 하급심 판결서, 외국사법제도연구(28), 사법정책연구원(2021)

_____, 일본의 판결절차, 외국사법제도연구(9), 법원행정처(2011)

양형위원회, 2024 연간보고서(2025)

【논문】

김대홍,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설문문항의 분석”, 법학논총 제4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이기리, “미국에서 징역 600년형은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가”, 사법논집 제72집(2021)

이재홍,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결서 작성 방식과 그 개선과정”, 법조 통권 492호(1997)

한성진, “형사판결 간이화 방안(제1심 단독판결 기준)”, 재판실무연구[2010(I)],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영,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이유 제시: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의 Taxquet v. Belgium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8권 제1호(2021)

【웹 자료】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A%F1%B1%B3&searchOption=&seqnum=2073&gubun=6〉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35&gubun=6&searchOption=&searchWord=〉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다만, 판결문 원문은 일본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보고서, 발표문 등】

이원식,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 – 1심 유죄판결서를 중심으로 –, 형사사법연구반(2024)
김종구, 국민참여재판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2025)(법원행정처 연구용역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참여기획단 제25차 회의 논의자료(2025)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2023)

2. 영어 자료

【문헌】

2 Charles Alan Wright et al.,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Criminal (4th ed.) (Thomson Reuters Westlaw에서 열람)
2A Charles Alan Wright et al.,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Criminal (4th ed.) (Thomson Reuters Westlaw에서 열람)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Courts, Handbook for Trial Jurors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Rev. 8/12)

【온라인 문헌】

A Guide to Criminal Court Statistic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604488a91a320001182b11b/A_Guide_to_Criminal_Court_Statistics.pdf〉

The Selection Process for Magistrates,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3/02/Lord-Chancellors-Directions-to-Advisory-Committees-Part-3-The-selection-process-for-magistrates.pdf〉

Adult Court Bench Book 2025년 4월판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5/ACBB-April-2025.pdf〉

Crown-Court-Compendium-Part-I,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2/06/Crown-Court-Compendium-Part-I-July-2024-April-2025-update.pdf〉

Crown-Court-Compendium-Part-II-Sentencing,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2/06/Crown-Court-Compendium-Part-II-Sentencing-July-2024-April-2025-update.pdf〉

Review Body on Senior Salaries, Forty-Fourth Annual Report on Senior Salaries 20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d6ca248fa8f50bfff50f34/SSRB_44th_AR2022_accessible.pdf〉

미국 연방법원(연방판사 정원),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2025-01/allauth.pdf〉

미국 연방사법센터(연방법원에서 일하는 사람 안내), 〈https://www.fjc.gov/sites/default/files/2016/Who%20Works%20in%20a%20U.S.%20Court.pdf〉

Prosecutorial Performance Indicators, Reject or Dismiss? A Prosecutor's Dilemma (2022), 〈https://prosecutorialperformanceindicators.org/wp-content/uploads/2022/07/PPI-Reject-Dismiss-Final.pdf〉

【기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News, 2025. 2. 28. 온라인 기사 〈https://www.ucl.ac.uk/news/2025/feb/judicial-system-facing-looming-crisis-recruiting-and-retaining-judges〉

【웹 자료】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https://worldjusticeproject.org/about-us〉

_____, 〈https://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country/2025/Korea%2C%20Rep./Criminal%20Justice〉

영국 국가통계(인구),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opulationandmigration/populationestimates/bulletins/populationestimatesforenglandandwales/mid2024〉

영국 법무부 통계(범죄 통계), 〈https://data.justice.gov.uk/cjs-statistics/cjs-entrants〉

영국 정부 통계(사법부 구성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diversity-of-the-judiciary-2024-statistics/diversity-of-the-judiciary-legal-professions-new-appointments-and-current-post-holders-2024-statistics〉
영국 정부(재판녹취록 신청 안내), 〈https://www.gov.uk/apply-transcript-court-tribunal-hearing〉
_____(유죄 협상에서 검사의 역할 안내), 〈https://www.gov.uk/guidance/the-acceptance-of-pleas-and-the-prosecutors-role-in-the-sentencing-exercise〉
_____(복잡 사기 사건에서 Plea discussions 안내), 〈https://www.gov.uk/guidance/plea-discussions-in-cases-of-serious-or-complex-fraud--8〉
영국 사법부(치안법원 안내),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magistrates-courts〉
_____(형사법원 안내), 〈https://www.judiciary.uk/courts-and-tribunals/crown-court〉
_____(형사실무지침),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11/CriminalPractice-Directions-2023-as-amended-Nov-2025.pdf〉
영국 정부 법률정보, 〈https://www.legislation.gov.uk〉
영국 양형위원회, 〈https://sentencingcouncil.org.uk/pronouncement-builder〉
_____, Reduction in sentence for a guilty plea, 〈https://sentencingcouncil.org.uk/guidelines/reduction-in-sentence-for-a-guilty-plea-first-hearing-on-or-after-1-june-2017〉
Crime+Investigation(형사사법 관련 언론), 〈https://www.crimeandinvestigation.co.uk/articles/televised-sentencing-uk〉
British and Irish Legal Information Institute(법률정보), 〈https://www.bailii.org/ew/cases/EWHC/Admin/2017/1162.html〉
미국 연방법원(통계), 〈https://www.uscourts.gov/data-news/reports/annual-reports/directors-annual-report/annual-report-2024/federal-bench-annual-report-2024〉
_____, 〈https://www.uscourts.gov/statistics-reports/caseload-statistics-data-tables〉
미국 연방법원(양식), 〈https://www.uscourts.gov/forms-rules/forms/criminal-forms〉
미국 제11 연방항소법원(배심원 지시 양식), 〈https://www.ca11.uscourts.gov/pattern-jury-instructions〉
미국 양형위원회(USSC, 양형기준 매뉴얼), 〈https://www.ussc.gov/guidelines/2025-guidelines-manual〉
미국 인구조사, 〈https://www.census.gov/popclock〉
미국 주법원센터(사건 통계), 〈https://www.ncsctableauserver.org/t/Research/views/Feder

alvsStateCaseloads/Dashboard1_1?%3Aembed=y&%3AisGuestRedirectFromVizportal=y〉
미국 변호사협회(ABA, 연방부판사 안내), 〈https://www.americanbar.org/careercenter/blog/demystifiying-the-magistrate-judge-clerkship〉
코넬대학교 로스쿨 Legal Information Institute(법령 정보), 〈https://www.law.cornell.edu〉
코트리스너(재판기록 공개 홈페이지),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631291/united-states-v-bankman-fried/?page=3〉
_____,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0390583/united-states-v-sussmann〉
_____,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664302/united-states-v-allen〉
_____,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0109434/united-states-v-yoder〉
유럽인권법원(판례), 〈https://www.echr.coe.int/hudoc-database〉
Rex-v-Hamit-Coskun(판결 자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6/Rex-v-Hamit-Coskun.pdf〉
R-v-Graham-and-Carruthers(판결 자료),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25/07/Sentencing-Remarks-R-v-Graham-and-Carruthers-Final.pdf〉
캐나다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Jurilinguist 자료, 〈https://www.cas-satj.gc.ca/en/pages/careers/jurilinguist〉

3. 독일어 자료

【온라인 문헌】

Andrea Kemper, 『Die Unterbringung in der Entziehungsanstalt zwischen Fehleinweisung und Fehlkonstruktion』, Univ. Bremen, Diss., 2009, 〈https://d-nb.info/1000797767/34〉

【웹 자료】

Gesetze im Internet(독일 연방법령 검색), 〈https://www.gesetze-im-internet.de〉
독일 연방통계청(검찰청 통계),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Publikationen/Downloads-Gerichte/statistischer-bericht-staatsanwaltschaften-2100260247005.xlsx?__blob=publicationFile&v=3〉
독일 연방통계청(법원 통계),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Publikationen/Downloads-Gerichte/statistischer-bericht-strafgerichte-2100230247005.html〉
BAYERN.RECHT(바이에른주 법령, 판례 검색),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

ocument/Y-300-Z-BECKRS-B-2021-N-39382?hl=tru〉

아담 데네스 변호사(형벌명령 자료), 〈https://anwaltskanzlei-adam.de/wp-content/uploads/2020/11/2011-04-13-Strafverfahren-Strafbefehl-Amtsgericht-KS.pdf〉

Bex 법률사무소(판결 자료), 〈https://www.rechtsanwalt-bex.de/uploads/uploads/Freispruch-K%C3%B6rperverletzung-2018.pdf〉

_____, 〈https://www.rechtsanwalt-bex.de/uploads/Freispruch-strafbare-Kennzeichverletzung-2022.pdf〉

독일 형사소송법 제275조 개정 관련 입법자료, 〈https://dserver.bundestag.de/btd/07/005/0700551.pdf〉

4. 프랑스어 자료

【온라인 문헌】

프랑스 법무부(실형 구금형의 집행 최종보고서), 〈https://www.justice.gouv.fr/sites/default/files/2025-12/rapport_execution_peines_enfermement_ferme.pdf〉

【웹 자료】

Legifrance(프랑스 법령, 판례 검색), 〈https://www.legifrance.gouv.fr/〉

프랑스 공화국 공공서비스(범죄 기록 안내),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F14710〉

PICOTIN AVOCATS(판결 자료), 〈https://www.danielpicotin-avocat.com/categories/affaire-boumedine-12055/articles/feuille-de-motivation-du-proces-boumedine-71.htm〉

발렌틴 시모네 변호사(판결 자료), 〈https://www.simonnetavocat.fr/jugement-marine-le-pen-en-entier-pdf-affaire-des-assistant-parlementaires〉

_____, 〈https://www.simonnetavocat.fr/wp-content/uploads/2025/09/Jugement-Nicolas-Sarkozy.pdf〉

5. 일본어 자료

【온라인 문헌】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dl.ndl.go.jp/pid/2955042/1/1〉

_____, 〈https://dl.ndl.go.jp/pid/2961038/1/2〉

大久保哲, “求刑 · 量刑と当事者の武器対等の理念”, 2000, 〈https://kurume.repo.nii.ac.jp/record/797/files/hogaku38_1-21.pdf〉

【웹 자료】

웰니스 법률사무소(조서판결 안내 자료), 〈https://wellness-keijibengo.com/keijisaiban-flow/kisogo-flow/choushohanketsu〉

6. 그 외의 외국 자료

Jusline(오스트리아 법률 정보 사이트), 〈https://www.jusline.at/gesetz/stpo/paragraf/270〉

ISAP(폴란드 의회 온라인 법률 정보 시스템), 〈https://isap.sejm.gov.pl/isap.nsf/download.xsp/WDU19970890555/U/D19970555Lj.pdf〉

Fedlex: Die Publikationsplattform des Bundesrechts(스위스 연방법령 공시 사이트), 〈https://www.fedlex.admin.ch/eli/cc/2010/267/de/〉

Inview(네덜란드 법률 정보 사이트), 〈https://www.inview.nl/openCitation/id1b8ab48d9273cea5dc12887f423269a4/wetboek-van-strafvordering-artikel-365a?ctx=ea12f41c3b09dbc0e3ab12dbfe7817e4&undefined〉

제1심 형사공판사건 연도별 상소율(1970-2024)[1]

연도	합의 / 단독	상소율(%)
1970	합의	50.2
	단독	41.7
1971	합의	43.9
	단독	23.0
1972	합의	37.1
	단독	23.2
1973	합의	37.9
	단독	23.1
1974	합의	49.2
	단독	26.7
1975	합의	50.3
	단독	30.1
1976	합의	49.4
	단독	31.4
1977	합의	50.7
	단독	33.2
1978	합의	55.2
	단독	35.6
1979	합의	53.0
	단독	35.6
1980	합의	55.9
	단독	33.3
1981	합의	54.2
	단독	29.5
1982	합의	54.7
	단독	25.8
1983	합의	53.9
	단독	26.8

1) 이는 1980년 사법연감, 1990년 사법연감, 2000년 사법연감, 2010년 사법연감, 2020년 사법연감, 2025년 사법연감의 각 제1심형사공판사건 상소율 누년 비교표를 기초로 하였다.

연도	합의 / 단독	상소율(%)
1984	합의	52.0
	단독	26.9
1985	합의	49.2
	단독	25.8
1986	합의	52.9
	단독	29.7
1987	합의	50.5
	단독	27.3
1988	합의	52.0
	단독	27.7
1989	합의	52.4
	단독	27.6
1990	합의	51.1
	단독	27.2
1991	합의	49.9
	단독	26.0
1992	합의	49.6
	단독	26.8
1993	합의	45.8
	단독	26.5
1994	합의	42.3
	단독	24.2
1995	합의	47.2
	단독	26.8
1996	합의	49.9
	단독	25.4
1997	합의	52.7
	단독	28.7
1998	합의	54.7
	단독	29.8
1999	합의	54.5
	단독	30.9
2000	합의	51.5
	단독	30.2

연도	합의 / 단독	상소율(%)
2001	합의	55.0
	단독	31.7
2002	합의	62.7
	단독	35.0
2003	합의	63.3
	단독	34.2
2004	합의	59.0
	단독	30.4
2005	합의	56.2
	단독	27.9
2006	합의	51.9
	단독	29.2
2007	합의	62.2
	단독	31.2
2008	합의	55.4
	단독	30.4
2009	합의	60.2
	단독	29.9
2010	합의	62.8
	단독	31.1
2011	합의	66.1
	단독	29.6
2012	합의	51.1
	단독	27.0
2013	합의	62.3
	단독	31.6
2014	합의	66.8
	단독	36.0
2015	합의	68.1
	단독	38.7
2016	합의	67.0
	단독	40.9
2017	합의	65.1
	단독	39.2

연도	합의 / 단독	상소율(%)
2018	합의	65.5
	단독	39.8
2019	합의	65.7
	단독	40.8
2020	합의	67.5
	단독	39.7
2021	합의	65.1
	단독	42.3
2022	합의	62.4
	단독	42.5
2023	합의	66.9
	단독	46.0
2024	합의	67.7
	단독	46.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연도별 상소율 평균(1970-2024)[2]

시기별	합의 / 단독	연도별 상소율 평균(%)
1970~1979	합의	47.69
	단독	30.36
1980~1989	합의	52.77
	단독	28.04
1990~1999	합의	49.77
	단독	27.23
2000~2009	합의	57.74
	단독	31.01
2010~2019	합의	64.05
	단독	35.47
2020~2024	합의	65.92
	단독	43.44

2) 연도별 상소율 평균은 사법연감에서 나타난 연도별 상소율 수치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도별 상소율을 1970년부터 10년 단위(2020년 이후는 2024년까지)로 합산한 후 그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즉, 이는 연도별 상소율의 단순한 평균치이지, 해당 기간의 상소율은 아니다).

[별지 2] 판결서 적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3)]

Ⅰ.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6. 1. 9. ~ 2026. 1. 15.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내부망을 통해 법원 내부망의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되었다. 응답자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총 370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1. 귀하가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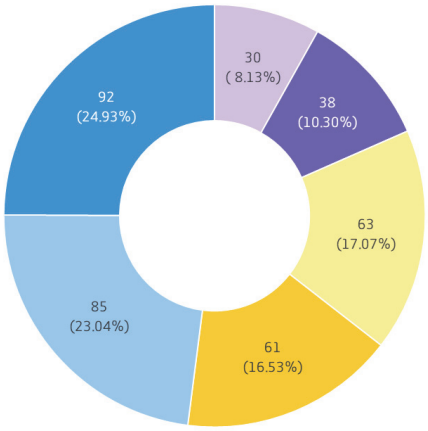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3년 이하	30 (8.13%)
② 3년 초과 5년 이하	38 (10.30%)
③ 5년 초과 10년 이하	63 (17.07%)
④ 10년 초과 15년 이하	61 (16.53%)
⑤ 15년 초과 20년 이하	85 (23.04%)
⑥ 20년 초과	92 (24.93%)
NA	1

2. 귀하의 형사재판 경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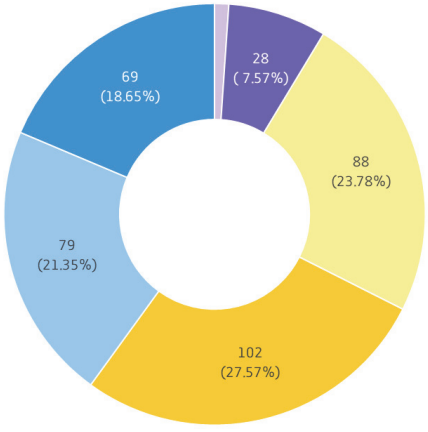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경력 없음	4 (1.08%)
② 1년 이하	28 (7.57%)
③ 1년 초과 3년 이하	88 (23.78%)
④ 3년 초과 5년 이하	102 (27.57%)
⑤ 5년 초과 7년 이하	79 (21.35%)
⑥ 7년 초과	69 (18.65%)
NA	0

3)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였다.

3. (형사재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귀하의 마지막(현재 포함) 형사 관련 사무분담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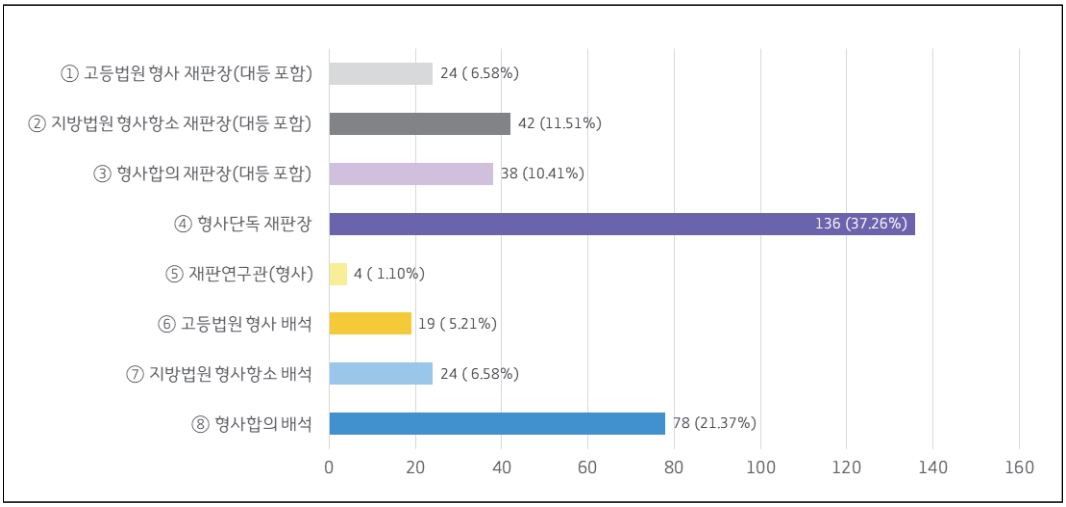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고등법원 형사 재판장(대등 포함)	24 (6.58%)
② 지방법원 형사항소 재판장(대등 포함)	42 (11.51%)
③ 형사합의 재판장(대등 포함)	38 (10.41%)
④ 형사단독 재판장	136 (37.26%)
⑤ 재판연구관(형사)	4 (1.10%)
⑥ 고등법원 형사 배석	19 (5.21%)
⑦ 지방법원 형사항소 배석	24 (6.58%)
⑧ 형사합의 배석	78 (21.37%)
NA	1

4. (검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검사로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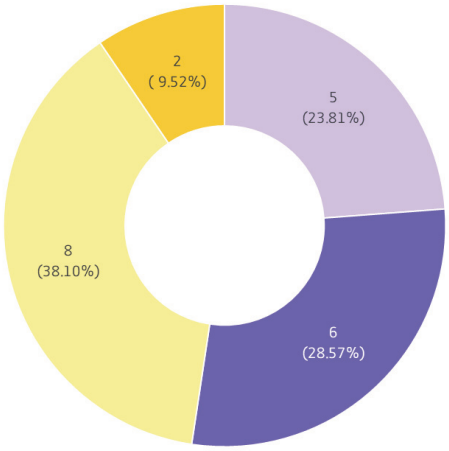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3년 이하	5 (23.81%)
② 3년 초과 5년 이하	6 (28.57%)
③ 5년 초과 10년 이하	8 (38.10%)
④ 10년 초과	2 (9.52%)
NA	349

5. (변호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변호사로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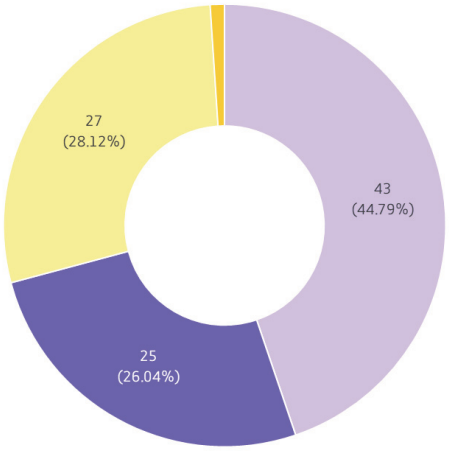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3년 이하	43 (44.79%)
② 3년 초과 5년 이하	25 (26.04%)
③ 5년 초과 10년 이하	27 (28.12%)
④ 10년 초과	1 (1.04%)
NA	274

6. 적정화 예규의 기재방식에 대한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4)]

- 대대적인 홍보와 권고가 필요하다.
- 해당 예규만으로는 형사판결 작성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 상급심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개조식 판결 이유 작성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 유죄판결의 경우 1심은 증거의 거시만으로 판결하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중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고등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결국 법원 내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세세한 판결 이유가 반드시 좋은 재판을 의미하거나 방증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서 작성 부담이 커질 경우,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판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숙고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인식이 법원 내부에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 하급심에서 예규에 따라 충실하게 판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불복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결로 인정하는 실무례가 정착되어야 한다. 상급심에서 불성실한 판단이라는 기조로 판결문을 새로 작성하거나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는 실무례가 계속된다면, 예규는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의 판결문 작성방식이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규에 따른 기재방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다.
- 생략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법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이를 판결문 작성에 적용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상급 법원이 먼저 이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 사건 유형별 또는 죄명별로 적정화한 다양한 예시를 정리하여 법관들에게 제시하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 무죄판결이 아닌 경우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4)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전반적으로 연구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다만,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응답이나, 과도하게 중복된 응답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수정하였고, 가독성을 위하여 연구자가 전반적으로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정리하였다. 이하의 설문의 경우에도 같다.

믿을 수 있다"는 정도로 기재할 수 있다. 단순 부인 사건에서는 증인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양형이유도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간단히 정리한 뒤, 이를 고려하여 해당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 민사판결서 적정화와 마찬가지로 형사판결서에 대해서도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적정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결서 작성 업무의 과중함은 그 적정 여부와 별개로,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은 판결이라는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규도 더 구체화하고,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판결서 초안을 작성할 때 예규 내용을 팝업으로 띄우거나, 판결서 초고에 예규 내용을 미리 기재해 두었다가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상급심에서 성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기재방식은 사용되기 어렵다. 상급심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여야 한다.
- 핵심 사실관계를 기재할 때에는 구체적인 숫자, 해당 서면의 쪽 번호, 증거목록의 증거 순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판결서 기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간결한 기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사실관계를 기재할 때 구체적 정보를 간단히 포함하고, 육하원칙, 특히 날짜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판결서는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구체적 정보 없이 두루뭉술한 내용만 짧게 기재한 판결은 이유기재로서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항소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식의 판결서 작성 변화는 실무상 유해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상 판결서 기재사항과 예규의 현행 원칙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 공판 단계에서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종의 플리바게닝과 같은 절차도 검토할 수 있다.
- 판결서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식이 아니라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삼아 작성하여야 한다. 민사판결서처럼 입증책임 등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맞게 요점만 간단히 기재하여야 한다.
- 상급심부터 예규를 따르면 하급심도 예규를 따를 수 있다. 하급심에서 예규를 따랐음에도 상급심이 예규와 다른 방식으로 판결하거나 파기한다면, 결국 하급심은 예규를 따르기 어렵게 된다.

-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규에 따른 판결문 간결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판단을 생략하고, 항소심에서 사실인정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개별 증거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 법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증거가 방대한 사건에서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을 통해 증거의 내용과 채택 여부가 확인되므로, 증거의 요지를 증거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면 판결서 작성 업무를 일부 줄일 수 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은 서로 연계된다. 형사사건전자화에 맞추어 검찰과 협의하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판결서의 법령의 적용 기재 방식을 판결서 작성시스템에 연동하면 해당 부분의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부실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평가할 때 예규의 기재방식에 맞추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급심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1심 판결문 초안, 특히 예규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초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항소심에서 바라보는 1심 형사재판, 상고심에서 바라보는 항소심 형사재판에 관한 간담회 자료에서 예규에 맞는 간결한 판결서 작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는 아직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모범 기재 판결문 사례를 많이 배포할 필요가 있다.
- 인사이동 직후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실무 연수에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자세한 강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규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는 형사재판장이 상당히 많다.
- 예규 기재방식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2014년에 제정된 예규의 적정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결서 작성의 간소화는 직업 법관에게 판결서 작성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판단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판결서 작성만 무리하게 간소화하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결론을 납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1심에서 어떠한 증거에 가치를 두어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충분히 알기 어려워져,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예규 방식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형사판결서의 기재 방향을 경청하고 조사한 뒤 적정한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 형사판결의 상당수는 간단히 작성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판결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다투는 당사자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다수 사건의 간략화와 다투어지는 사건의 판결서 적정화를 구분하여 투 트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예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항소심 판결의 적정하고 간이한 작성방식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등법원 판결이 매우 상세하기 때문에 1심에서 간이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어렵다.
- 유죄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이를 상급심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예규의 기재방식이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 당사자 등 국민 일반을 상대로 판결서 간결화의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종전 예규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상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판결서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는 강한 의문이 있다.
- 합의부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부터 간략한 판결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 합의부의 경우 판결서 초안을 작성하는 배석판사의 부담과, 되도록 충실하게 보이는 판결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재판장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 업무도 분담하지 않는 재판장은 배석판사가 최대한 상세한 판결서를 작성하여 상급심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판단 누락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합의부에서는 다른 사무분담보다 대등재판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에도 결론에 대한 근거만 간단하게 설시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판결서 작성실무」와 「형사판결서 작성론」 교재를 많이 참조하고 있으나, 예규와 같은 기재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규 기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부담스럽다. 당사자는 물론 상급심에서 이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기 어렵다. 실제 판결문에 적용 가능한 더 많은 예시를 책자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예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판결사례집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에서 간결화된 판결사례집을 배포한 사례가 있으나, 그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 이미 대부분 법관들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사실상 변화가 어렵다.
- 단독 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나누어 각각에 맞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권장책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형사재판연수에서 예규의 구체적 적용과 활용방식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과감히 생략해도 된다. 예규의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1심 기록만으로 유무죄 판단이 쉽게 되는 사건이 상당수다. 1심 판결에 심증 형성 경위나 증거 신빙성 판단이 상세히 설시된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낭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 예규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매년 법관연수 때 예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증거의 거시와 법령의 적용 등의 기재를 간소화하고, 쟁점 위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를 간략화할 필요가 있다.
- 상급심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 판결 이유 작성은 헌법이 명하는 사법작용에서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법성보다 현실적 필요성에 비중을 둔 예규의 내용은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대체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한 것이다. 비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증거 내용의 구체적 적시, 증거 취사선택 이유, 심증 형성 과정의 설명을 생략하면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상급심에서도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기재를 모두 생략하기는 어렵고, 다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
- 예규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단 마련된 예규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강력한 지침과 권고가 필요하다. 예규가 마련되더라도 실무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실무 적용을 위한 강한 권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 예규의 존재 여부보다 다수 판결의 실무례가 중요하다.
- 예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 상소심의 판시 방법 변화, 특히 형사합의부와 항소부 재판부의 예규 적극 수용에 관한 합의도 필요하다.
- 예규 기재방식과 관련한 기재례 책자를 발간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사안별 작성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유기재의 필요 여부와 기재 범위에 관하여 지금보다 강한 수준의 문구로 규범화하거나, 예규 이상의 규범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결론만 적고 관련 진술의 수사기록이나 녹취서 쪽수만 기재하는 방법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 예규를 적용한 판결문의 안내가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형사판결서 작성 부담 자체는 난이도나 업무량 면에서 민사판결서 작성 부담보다 크지 않다. 그럼에도 형사재판부의 업무가 더 힘들고 기피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과도한 공판기일 운영으로 인한 휴식 없는 진행, 피로 누적, 개인 일정 관리의 어려움, 판결서 작성 시간 부족에 있다. 판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의 적정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판결서와 민사판결서 모두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공판만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많다.
- 예규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상급심 법관과 합의부 재판장들이 적정화 예규를 실천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형사판결을 공람하여 평정에 반영하고 상급심의 의견도 평정에 반영하는 상황에서는, 예규에 맞게 작성된 판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관장의 평정이나 상급심 평정 의견 제출 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 적정한 기재례를 연구·발굴·공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신임 법관과 경력 법관의 법관연수에 지속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법관이 일정 기간 예규의 기재방식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형사 법관연수를 통해 예규 내용과 작성례를 안내하여야 한다.

- 항소심이 앞장서야 한다.
- 예규 기재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관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배치되는 합리적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등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어렵다.
- 결론을 정해 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방식의 판결서 작성이 쉬워질 수 있다.

7. 형사판결서의 작성방식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연구회 세미나 등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 판결서 간이화는 개선되기 어렵다. 오로지 재판 지연을 위한 주장이나 법률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까지 판결서 이유에 기재해야 하는 점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면 다투는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을 간이화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항소 여부에 따라 쟁점을 추후 보완해야 한다면 판결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판결을 선고하면 그 사건은 종결되는데, 항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 증거의 요지를 증거목록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도 일일이 법조문을 찾아서 기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개발을 통해 법률을 검색하고 클릭하면 판결문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형사판결서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길어서 전문가인 법관들도 읽기 어려울 정도다. 길게 쓴 판결이 잘 쓴 판결이라는 상급심과 대법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는 개선되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를 “증거목록 기재와 같음” 등으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유무죄의 이유를 설시할 때 개조식 설시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완성된 문장 형태로 기재하는 것은 개조식 설시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드는 경향이

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유 기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양형의 이유 기재 방식은 공소사실을 요약한 뒤 범행 중대, 죄질 불량 등 추상적인 문구만을 기재하고 있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다수의견과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양형의견 등 국민참여재판법에 정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의 의사도 배심재판을 거침으로써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지, 판사가 상세히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받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무죄판결 작성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유죄판결 작성 시 1심은 증거의 거시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 판결서는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공방의 총합이므로, 일률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결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는 형사재판 자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판 과정에서 모든 주장을 수용하는 것보다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위주로 주장을 정리하여, 판결문이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사건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판과 분리하여 판결 작성만 개선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비효율적이다. 우선 판결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면 재판부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공판절차가 구성요건에 맞게 체계적이고 핵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형사합의 판결문이다. 약식, 고정, 단독 사건은 이미 충분히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다. 한 사건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판결문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 특히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검사가 기소하는 범위나 증거가 방대하고, 그에 상응하여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도 많아지며, 그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도 길어진다. 법원이 주장 하나하나를 정리하여 판단해 주고 있으니, 검사와 변호사가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되든 안 되든 주장을 던져보자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쟁점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법원부터 솔선수범하여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고, 진짜 다투어볼 만한 주장만 제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급심도 협조해야 한다. 현재 상급심이 하급심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하급심이 상급심에 대하여 하급심이 예규대로 작성한 것을 상급심이 최대한 존중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평가는 언제나 상호 이루어져야 하며, 상급심만이 하급심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명제는 없다.

- 형사항소심 판결에도 민사항소심 판결과 같은 1심판결의 인용제도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략화될 필요가 있다.
- 전면 간결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 민사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를 실시하고, 적정화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결서 작성 업무의 과중함은 그 적정 여부와 별개로, 법관들이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 변호사들은 양형이유가 짧다고 비판한다.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요소 정도로 양형이유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예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아무리 개선한다고 하여도 항소심에서 특정 1심 재판부가 이유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한 개선은 어렵다. 반대로 항소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어렵다. 판결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장점도 있으므로, 판결서를 짧게 쓰도록 하여 형사재판의 효율화를 꾀하기보다는 재판부 증설 등 다른 방식으로 형사재판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무죄판결에 대한 간이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죄판결만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다면 더 편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재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이를 간단히 배척할 수 있는 기재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 중 이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이외의 사항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는 방식의 기재례를 검토할 수 있다.
- 형사재판의 심리와 재판서 작성의 어려움을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나 생략 방식으로 해결하면, 자칫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판결문을 접하는 국민들의 판결에 대한 신뢰는 더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사 증거능력, 증명력,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사건을 복잡하게 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사건에서 사실인정이 유무죄 및 양형을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상급심을 법률심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법관의 증거가치 판단 여부가 상급심의 주요 심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개선책도 판결서 작성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 1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등 다른 부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인용 관련 조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역량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자는 전제는 더 이상 성립되기 어렵다. 상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다툼이 없는 사건이나 상소되지 않는 사건은 간략하게 처리하고, 상소되는 사건들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형사합의 사건 중 주요 사건이나 복잡 사건은 심리 및 판결문 작성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는 갈등의 고도화와 첨예화에 따른 사회현상으로도 보이며, 법원의 동력만으로 판결문 간이화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절차 단계부터 실체 단계까지 각종 주장이 망라되어 100쪽을 넘는 판결문이 허다하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판결문의 이유를 쓰지 않는 것에 비추어, 고정 사건, 즉 약식명령에 불복한 사건의 경우에는 주문만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도 제외하자는 취지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의 경우처럼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법률을 두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단서를 추가하는 정도의 법률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형사재판이 홀대되는 현실이 있고, 그로 인해 담당 판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 형사소송법과 예규의 원칙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 법령의 적용에서 특히 신구법 적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AI를 적극 활용하여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이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증거요지 자동생성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방식도 다시 검토하여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업무를 가중할 때가 있다. 상고심에서 1심과 2심의 판단누락이나 석명누락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면 판결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판결 열람이나 교부 단계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현재의 판결서 작성방식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적어도 이 정도의 판결서는 작성되어야 당사자는 물론 변호인, 검사 등 관계인에게 설득력이 있고, 재판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도 줄 수 있어 적정하다. 이보다 더 간결해지면 재판 불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거요지 작성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중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부정되는 증거만 거시하면 충분하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모두 인정되는 증거를 모두 나열할 이유는 없다. 현재 기재 방식은 증거분리 제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모든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던 당시를 전제로 한 방식이다.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부정되는 증거를 거시하는 방식도 증거목록 순번만 기재하면 충분하다.
- 법원의 입장과 달리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주장에 대해 판결서에서 판단받기를 원한다. 판결을 간결화하는 경우 불친절한 재판이라는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이다.
- 유죄이유를 설시하는 작성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는 중형 선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양형 고려 사유에 체크박스 형태로 체크한 뒤 특이사항 위주로 설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판사의 주관적인 신념, 피고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 훈계조의 양형사유 설시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양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형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천편일률적인 현재의 양형사유 설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 무조건 간결한 작성 방향으로만 논의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 상급심 담당 법관이 참고할 사항이 모두 들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판결의 자족성,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바라보는 형사재판, 긴 판결문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일부 판사의 인터뷰, 변호사들의 평가 등이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문구로 대체하고, 유죄판결도 유죄의 이유를 적지 않는 원칙적 모델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적정한 판결서 작성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기재하는 것만이 당사자를 위한 길은 아니다.
- 1심 형사단독 사건 판결서의 경우 판결서 적정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1심 형사합의 사건의 형사판결문은 불필요하게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예규와는 반대로 더 상세하게 판결문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 쟁점을 간이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문이 언론이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경우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은 판결문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 범죄사실은 요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간략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경우 “2000. 1. 1. 피해자 000를 칼로 찔러 상해”, 사기죄의 경우 “2000. 1. 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정도면 충분하다. 범행의 동기나 피해 정도는 양형 부분에 기재하거나 고려하면 된다.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함”이라고 기재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하는 증거들만 독립적으로 거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사건의 경우 증거의 요지 부분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히려 양형의 이유는 자세히 쓰는 것이 맞다.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여부와 양형이다.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간이공판절차를 거친 사건은 조서 기재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사건은 판결서 작성 없이 선고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쟁점에 대한 판단을 충실한 논증을 담아 판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현재의 예규 내용대로만 실천되어도 업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법관들 사이에 판결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 업무 경감을 위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되 간이하게 작성한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장기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며 다투는 사건에서 간이하게 답하는 판결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간이하게 작성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검사 측에서 항소하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와 소송관계인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제출서면의 양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판결서 작성이 간단하다고 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결서를 작성하면서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판결서를 간이하게 작성하면서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기록은 대강 보고 답변은 불충분한 판결서가 늘어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 판결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간략화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판결서의 답변적 기능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형식적인 기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양형기준시스템을 보완하여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양형이유, 특히 양형기준의 기재 방식을 통일하고, 법관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되면 판결서 초고 중 형식적인 부분을 전면 자동화하고, 오

류를 검출할 수 있는 도구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형사판결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하급심 판결서 공개가 확대될 경우 형사판결서도 공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한 상황에서 종전 예규 내용에 따른 판결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경우 법원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있다. 현재는 종전 예규의 적용 활성화나 법관의 판결서 작성 노력 경감에 관하여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사판결서의 내용에 관하여 고민할 시기다.
- 양형이유에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되는 불리한 사정만 기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는 유리한 사정만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언론보도 등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다.
-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전제로, 미국 형사재판이나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처럼 1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선고할 때 검사의 항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적용 위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예처럼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 한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법, 즉 항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문 작성이 불필요한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재정합의 사건을 제외한 형사합의부 사건 대부분을 단독판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건 사물관할의 원칙적 단독화도 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작성을 서술형에서 체크형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은 각자의 변론요지서로 대체하며, 결론은 체크형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 특히 자백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직접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빅테크 업체 등에 용역을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형사재판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판결문 작성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한 심리 진행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 판결서 간이화는 재판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설득 기능을 최대치로 하고, 상소심 역시 이러한 간이화를 수용하는 전제에서만 의미 있게 시행될 수 있다.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에 따른 판결작성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한 내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적정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미 우리 법은 간이공판절차라는 유용한 도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백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례의 태도와 간이공판절차를 거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

의 증거조사방법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간이공판절차가 사문화되어 있다. 간이공판절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판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업무 경감 효과가 있어야 한다.

- 증거의 요지 작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이 발생한다. 자백사건과 부인사건 모두에서 마찬가지다. 증거목록에는 어차피 채택하고 조사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증거의 요지 거시 방식을 지금처럼 판사가 일일이 키보드를 누르며 줄간격까지 편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증거목록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업무가 훨씬 경감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지 증거목록 중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라는 방식의 기재를 검토할 수 있다.
- 형사재판부의 심리 충실화를 위해 근래부터 시행한 형사재판부 확충이 오히려 형사판결의 장문화, 즉 이유 설시의 상세화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형사판사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고, 판사 스스로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다 보니, 적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보되는 시간을 형사판결 상세화에 투입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견해로 보인다. 형사판결서 적정화의 확산에 적극 찬성한다.
- 근본적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개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공소사실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많으면 판결서 작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형에 지장이 거의 없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소하지 않는 관행이 필요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 경죄와 중죄의 재판절차 및 심리방식에 차등을 두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판결서 작성이 지나치게 간이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야 한다.
- 간단하게 작성하려는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판결 이유는 재판작용에서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는 제도다. 그 실현을 악화시키는 방향의 제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사판결은 아직도 상세성이 미흡하여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운 점이 있다.
- 형사판결문이 길어진 것은 공소장이 길어지고,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에 배경이 되는 사실들이 자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공소장의 분량을 제한하거나 공소장에 핵심적인 내용만 기재하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형사사건은 매우 복잡한 합의부 사건 몇 건을 제외하고는 민사사건에 비해 판결서 작성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법관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큰 이유는 재판을 하는 날이 민사에 비해 많기 때문이지, 판결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소에 따른 판결서 이유 보충제도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업무 부담을 매우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간단한 사건에서 조서로 판결서를 대체하는 제도도, 간단한 형사사건의 경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 미확정판결문도 공개된다면 형사판결서가 보다 간이화될 필요가 있다.
- 간이공판절차를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조서로 형사판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형사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간이한 판결서 작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소율이 40% 이상이므로 항소하는 사건만 판결문을 추후에 작성하는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정식재판사건이나 다툼 없는 형사판결의 경우 판결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많지 않다. 복잡한 형사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작성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간이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 자백사건은 더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다투는 사건에 법관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 자백사건의 핵심은 양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판조서의 활용 등의 방안은 바람직하다. 실형 선고는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사건은 보다 간이하게 처리하되 실형 선고 사건에서는 왜 그와 같이 엄벌하는지에 대한 양형이유 작성에 법관의 노력이 더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유죄판결과 무죄판결 중 유죄판결이 더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근거 위주로 기재되어야 한다. 각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나열하고 그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는 등의 기재는 생략해도 된다. 다투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한 핵심적 이유와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한 문건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핵심 쟁점이 정리되어야 그 쟁점에 대해서만 법원의 간결하고 핵심적인 판단이 나갈 수 있다.
- 중요 사건의 판결문이 길다 보니 일반 사건들도 중요 사건처럼 판결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 기본적으로 형사판결서 작성 부담 자체는 난이도와 업무량 등의 면에서 민사판결서

작성 부담보다 크지 않다. 그럼에도 형사재판부의 업무가 더 힘들고 기피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과도한 공판기일 운영 때문이다. 휴식 없는 계속된 강행군, 피로 누적, 개인 일정 관리의 어려움, 판결서 작성 시간 자체의 부족이 문제다. 아무리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공판만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많다. 또한 판결서를 실제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의 적정한 도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판결서와 민사판결서 모두 마찬가지다. 실제로 항소심을 경험해 보면, 판결문을 간이하게 작성하는 1심 판사들이 작성한 판결문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고 기록 검토가 세밀하게 되지 않아 증거에 기재된 내용 일부를 간과하거나, 주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단유탈이 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 공소사실 인부를 다투는 경우 하급심의 판결문은 자세한 것이 맞다. 이는 사법신뢰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를 늘려 재판과 판결문 작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로서는 형사단독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보인다. 다건으로 송달도 힘들고, 증인신문도 합의부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며,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단체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많고 사건 자체도 간단하지 않다. 형사단독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하급심 심리와 판결이 충실한 경우, 상급심 판단은 항소기각이나 상고기각의 경우 이를 원용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항소재판부를 줄여 형사단독을 늘릴 수 있다.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훌륭하고 바람직하므로, 굳이 개선할 이유를 모르겠다.
-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에 의하면 원래의 형사판결서는 간결하였다. 법원의 친절함, 변호사들의 불만, 항소심의 불만 등으로 인해 하지 말라는 부분에 오히려 집중해서 써야 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친절을 강조하는 법원 기조가 의외로 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 친절을 강조하지 않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 법관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개선된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Ⅱ.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6. 1. 12. ~ 2026. 1. 19.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응답자가 네이버 폼(http://form.naver.com)의 양식에 따라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응답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총 147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1. 귀하는 변호사가 되기 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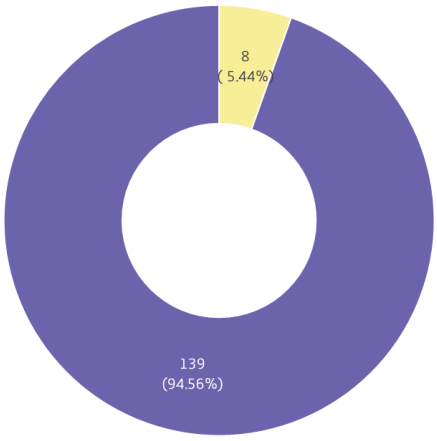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있다	8 (5.44%)
② 없다	139 (94.56%)

2. (법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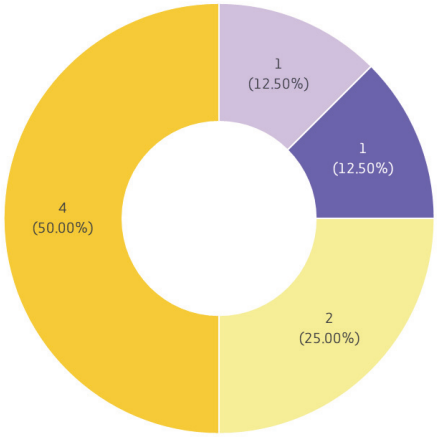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3년 이하	1 (12.50%)
② 3년 초과 5년 이하	1 (12.50%)
③ 5년 초과 10년 이하	2 (25.00%)
④ 10년 초과	4 (50.00%)

3. 귀하는 변호사가 되기 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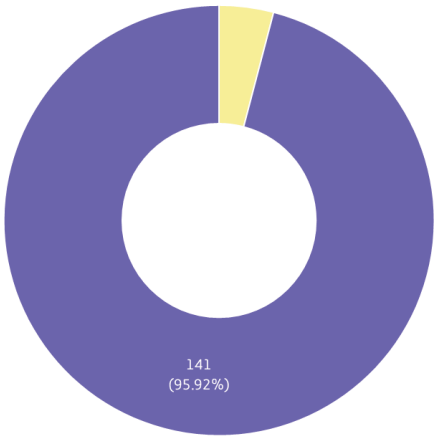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있다	6 (4.08%)
② 없다	141 (95.92%)

4. (검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검사로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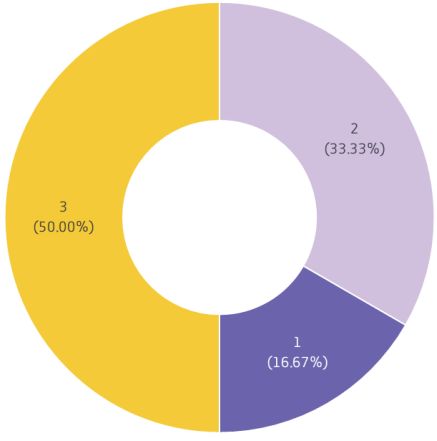

선택지	빈도 (비율)
① 3년 이하	2 (33.33%)
② 3년 초과 5년 이하	1 (16.67%)
③ 5년 초과 10년 이하	0 (0.00%)
④ 10년 초과	3 (50.00%)

5. 형사판결서의 작성방식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판결의 요지를 기재하되, 충분히 취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상세히 설시할 필요가 있다.
- 판결문은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판결문은 재판의 총체이다. 다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화가 가능하다.
- 판사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무죄가 분명한 사건임에도 판결문을 쓰기 싫어 유죄를 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심증 형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최대한 기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 현재의 판결서 작성방식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방식대로 판결문을 쓰는 데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환경이 문제이다. 1인당 사건 부담 수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간이공판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이유의 적절한 기재를 전제로, 이유가 최대한 간이하더라도 무방하다.
- 가급적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이다. 설령 아주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형사재판의 판결서는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나 피고인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편의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점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업무 부담으로 인해 판결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판결 선고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사숙고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된 판결서를 보여주는 것은 당사자, 변호인, 나아가 사회 전체에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탄탄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주장에 대한 누락 없는 판단이 필요하다. 법원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주장이나 무의미한 주장이라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동의하에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적 판단 및 법률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 제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분석할 때, 판결문 내 증거로서 채택한 목록을 보면 채택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아예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병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출증거의 작성 정도는 AI의 도움을 받거나 스캔, 캡처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증거에 대해서는 엑셀처럼 모두 보여주되, 유죄의 증거를 비고란에 O나 V로 표시한다면 변호인과 피고인도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법원에 잘 도달했고, 판사도 모두 열람한 끝에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 형사사건과 재판은 다툼이 아니라 모두의 납득 과정이다.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할수록 항소와 상고의 예방도 가능하다.
- 법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부담이라면, 판결문은 상세히 작성될수록 좋다.
- 하루빨리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이루어져 신속한 재판이 달성되어야 한다.
- 판결문을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결문 분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면 당사자들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기존 형식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나, 검사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 형사판결문의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이 생략되면 피고인은 물론 검사를 설득하기 어렵고,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나친 간이화는 법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법조계 내 변호사들도 설득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은 권고효에 불과하다. 참여재판의 확대와 이를 통한 판결문 간이화를 추구하려면, 차라리 영미계와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부여하고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제도하에서도 형사판결서는 그다지 상세히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에 대한 설득이나 상소 시 쟁점 정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고, 판결문 작성 과정의 성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더 간소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다.
- 갈수록 판결문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항소 여부에 따라 형사판결서 기재 정도를 달리하는 제도의 도입에는 기본적으로 적극 반대한다.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불출석한 피고인이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변호

인은 구두로 설시한 양형이유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기일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선고 시 설시한 양형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피고인 등이 양형이유를 사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항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이어질 사건에 법원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위 제도 도입에 찬성할 수 있다.

- 현재 형사판결문, 특히 단독사건은 판결서 간이화 작업을 많이 거쳐 거의 검사의 공소장을 복사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간이화한다면, 법원은 판결서 주문만 별도로 기재하고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고 한 뒤 별지로 공소장을 첨부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 판결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선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 형사판결은 당사자에게 그 경중을 떠나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간결화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형사판결서 작성방식의 간이화를 하지 않더라도, 판결서 작성 시간과 판사의 노력을 줄이는 동시에 사건관계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형사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가능한 한 판결 이유가 자세히 기재되면 좋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다툰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할 수 있다.
- 판결서 적정화가 판사의 판결문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로만 보인다. 현재 판결문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판결문 작성 내실화 방안이 더 필요하다.
- 작성방식의 변화 방향은 어떤 경우라도 판결 이유의 성실한 기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법관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 법관 대신 AI로 대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
-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단하게 작성되어 그러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자백사건은 이미 형사판결서가 간소화되어 있다. 부인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하나이다. 최근 형사와 민사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시키는 판결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관이 판결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면 법관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업무량을 줄이거나, AI 등을

이용하여 판결문의 형식적 기재사항,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정리 등 다소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현행 방식에 의하더라도 일부 판사의 경우 판결 이유 불기재, 불충분한 내용의 판결서 작성 등 문제가 많다. 판결서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의 현실적 구현이다. 그럼에도 이를 간소화하는 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날이 갈수록 폐쇄적으로 정보를 운용하는 현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양형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록 검토 없이 양형이 정해질 수 있고, 사법 불신의 가중 및 기소권자의 눈치 보기 등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형사판결서 간이화 시도에 반대한다. 판사의 업무 부담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형사판결서 작성의 수고는 AI 등의 도움으로 덜 수 있다. 판사는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최종 판단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
- 판사 증원이 답이다.
- 사후적으로 형사판결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판사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만 장점이 있을 뿐, 그 외 모든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법원 판단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더 커지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현행 작성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 판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판결서 작성이다. 변론에 대한 유일한 결과물이 판결서이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판결서만큼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체적으로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요즘은 판결서를 읽어보아도 판결 이유를 모를 때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간략하게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법률에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유죄판결에는 법령의 적용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이 더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실무상 무죄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을 매우 상세하게 적어 분량이 많아지는 반면, 유죄판결은 법령의 적용과 증거의 요지만 적고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간소하게 처리하여 분량도 짧아지는 관행이 있다. 이는 유죄판결에 더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무죄판결보다 유죄판결을 더 쓰기 쉽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이다. 자백사건은 간단하

게 처리하더라도,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 형사판결문은 당사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문서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숙고와 결론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고, 그 결론을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옳다. 또한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줄어들고, 판단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 형사판결서는 한 당사자의 유무죄 여부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형량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이는 판사 업무의 경감이나 간략성 등을 이유로 함부로 가볍게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판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결론을 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판결서의 간략화를 시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 판결서 작성 부담은 일차적으로 법관 충원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이다. 전부 인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사건이면 모를까, 법률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판결이 선고될 때가 있다. 더 간이한 방식의 판결문 작성을 허용한다면 당사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을 것이다.
- 현재 판결문의 내용이나 수준은 매우 낮다. 더 낮아질 것이다. 이에 동조할 수 없다.
- 고정사건이나 법정자백사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형사판결서를 간이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관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문서이므로, 간이화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분명히 반영되는 형식이 필요하다. 유죄판결은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고, 무죄판결은 간이하게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 판사가 증명력이 없다고 본 증거에 대하여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다툰 쟁점 및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도 상급심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툰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판단유탈에 의한 파기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형사판결서에 해당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형사든 민사든 판결서는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필요최소한도에 그쳐도 좋다. 판사도 판결서 작성보다 재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참

여재판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면 좋다. 그러면 법원도 형사판결서 작성 부담이 줄어들고, 결론에 대한 비난에서도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 무죄판결문은 간략하게 작성하고, 유죄판결문은 왜 유죄인지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법불신이 더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관은 심리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판결로만 모든 것을 표현하여야 한다. 생략과 간략화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판결문 쓰기가 지난하고 싫다면 법관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러한 개악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현재에도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지극히 형식적인 기재만 이루어져 당사자들의 판결 수용성이 낮다. 설문에 제시된 것처럼 판결서 작성에서 많은 부분의 생략이 가능해진다면, 형사판결의 목적, 특히 유죄판결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므로, 본인 사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기를 원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간이 들더라도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판결문에 담아야 한다. 심증 형성에 관한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 간이화하더라도 쓸 것은 써야 한다. 유죄를 쓰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 법관 증원이 타당하다.
- 사실판단과 그 근거가 된 증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인하는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판결 시 결론에 부합하는 일방의 입장만 나열하는 판결은 지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결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반대쪽 입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판단하여 판결이 납득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 201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4. 12. 30.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4. 12. 30.
3	파산법원 설치에 따른 회생 · 파산절차 관여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연구	강민호	2014. 12. 30.
4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양은상	2014. 12. 30.

▣ 201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2. 27.
2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별책: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박원규	2015. 2. 27.
3	오스트리아 司法制度 硏究 – 최고재판소, 행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에 대한 헌법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2015. 2. 27.
4	법관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강의안에 관한 연구 [별책: 강의안(PPT 및 해설 자료)]	황승태	2015. 5. 22.
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양은상	2015. 5. 29.
6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양시훈	2015. 5. 30.
7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수록 –	최은정	2015. 6. 10.
8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별책: 프로그램 안내]	황승태	2015. 6. 26.
9	효율적인 증거개시 · 수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5. 6. 30.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0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5. 6. 30.
11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변지영	2015. 7. 13.
12	영국과 미국의 법관에 의한 중재 및 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5. 7. 17.
13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 · 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김형진	2015. 7. 24.
14	커뮤니케이션학에 기초한 바람직한 법정 소통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채연	2015. 7. 31.
15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변지영	2015. 9. 14.
16	가사사건의 상담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정	2015. 11. 9.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	2015. 11. 13.
18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장수영 이덕환	2015. 11. 25.
19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하민경	2015. 11. 27.
20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양시훈 최유경	2015. 12. 23.

▣ 201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전문가 감정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수	2016. 1. 13.
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계인국	2016. 1. 14.
3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이재석	2016. 1. 15.
4	바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한 연구 –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선	2016. 2. 16.
5	동산공시제도 및 동산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6. 2. 25.
6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황승태	2016. 2. 26.
7	압수 · 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김주석	2016. 3. 28.
8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하민경	2016. 3. 28.
9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최은정 안문희	2016. 4. 4.
10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6. 8. 26.
1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이제우	2016. 9. 8.
12	증인신문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	김주석	2016. 9. 30.
13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하민경	2016. 10. 17.
14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정 양시훈	2016. 10. 21.
15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6. 10. 25.
16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16. 11. 18.

▣ 2017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민사소액재판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현덕	2017. 1. 24.
2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2. 23.
3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강성수	2017. 2. 28.
4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2017. 3. 13.
5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태호 김정환	2017. 3. 30.
6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7. 4. 28.
7	프랑스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7. 5. 17.
8	북한의 신분 · 공민 ·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제우	2017. 6. 20.
9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조호성 김주완	2017. 8. 11.
10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증보판)	변지영	2017. 8. 30.
11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윤정	2017. 9. 11.
12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7. 9. 15.
13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김주경	2017. 9. 19.
14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오세용 박원규 이덕환 장수영	2017. 9. 27.
15	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7. 11. 21.
16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이혜영 표현덕	2017. 12. 1.
17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송현정	2017. 12. 27.
18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7. 12. 28.

▣ 2018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홍진표	2018. 2. 22.
2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하민경	2018. 3. 30.
3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김정환 박준선	2018. 4. 30.
4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8. 4. 30.
5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연구	계인국	2018. 6. 15.
6	프랑스, 독일, 일본 상고심의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	하상익	2018. 6. 15
7	교사용 법교육 강의안 개발에 관한 연구	이종훈 표현덕	2018. 8. 31.
8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2018. 9. 20.
9	미국 연방파산관리인(U.S. Bankruptcy Administrator) 제도 연구	김현범 오세용 최유나	2018. 10. 10.
10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이종엽 김주경	2018. 10. 11.
11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모성준	2018. 11. 2.
12	[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	김봉철 김대홍 양은상 최유나	2018. 11. 20.
13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	이제우 장지용	2018. 12. 26.
14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오규성	2018. 12. 27.
15	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이혜영	2018. 12. 28.
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한성수	2018. 12. 28.
17	미국 법관윤리규범에 관한 연구: 외관을 중심으로	송현정	2018. 12. 31.

▣ 2019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입법과 사법의 법률정보협력에 관한 연구	이정은	2019. 1. 28.
2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19. 1. 30.
3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변지영	2019. 2. 27.
4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하민경	2019. 2. 28.
5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이선미	2019. 3. 29.
6	임기제공무원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법부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	서현웅	2019. 6. 13.
7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종훈	2019. 6. 19.
8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김윤정	2019. 7. 24.
9	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정	2019. 7. 29.
10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19. 8. 9.
11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오	2019. 8. 23.
1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2019. 11. 6.
13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19. 11. 25.
14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2019. 12. 18.
15	중국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별책: 중국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 전문]	김현범	2019. 12. 27.
16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차성안	2019. 12. 31.
17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송현정	2019. 12. 31.

▣ 2020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0. 2. 19.
2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	최용훈	2020. 2. 28.
3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이선미 박용철	2020. 3. 11.
4	미국 통합가정법원(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안문희	2020. 3. 17.
5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김효정 장지용	2020. 3. 20.
6	법적판단에 있어 인지적 오류와 극복방안	이종엽	2020. 3. 31.
7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0. 3. 31.
8	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정성민	2020. 4. 10.
9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성대규	2020. 4. 27.
10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0. 4. 29.
11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0. 5. 14.
12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김신유	2020. 6. 18.
13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오	2020. 7. 21.
14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2020. 7. 24.
15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0. 9. 23.
16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김봉철	2020. 11. 3.
17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백광균	2020. 12. 8.
18	영국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	이지민	2020. 12. 22.
19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송현정	2020. 12. 23.
20	법률서비스 보험제도 연구	이은빈	2020. 12. 31.
현안 1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정성민 백광균	2020. 11. 6.

▣ 2021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김신유	2021. 2. 26.
2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박병민	2021. 3. 12.
3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 · 직렬 구조 개편 방안	이학구	2021. 3. 18.
4	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강영재	2021. 3. 18.
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정호경	2021. 3. 23.
6	전자소송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력운영 방안	박미정	2021. 3. 31.
7	체제 전환기의 국내 · 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과 통일 한국에의 함의	이혜영	2021. 3. 31.
8	형사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별책: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실무편람 (2019)]	이민형	2021. 4. 23.
9	도산사건의 실증적 연구와 법원의 역할 – 개인도산사건을 중심으로 –	김동현	2021. 4. 30.
10	법조일원화 시대의 법관전문화 방안	윤찬영	2021. 5. 11.
11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2021. 5. 14.
12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 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1. 5. 24.
13	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1. 5. 31.
14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채연	2021. 8. 26.
15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나수경	2021. 9. 17.
16	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박우경	2021. 9. 30.
17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이상훈 정성민 백광균	2021. 10. 1.
18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1. 10. 18.
19	법관의 직무상 이해관계 충돌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법관의 주식보유 및 거래와 관련 재판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중심으로 –	김정환	2021. 10. 29.
20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2021. 10. 29.
21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2021. 12. 10.
현안 1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이재찬	2021. 10. 14.

▣ 2022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베트남 · 라오스 · 몽골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정호경	2022. 1. 10.
2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 in camera 심리절차를 중심으로 –	박병민 이주연	2022. 1. 14.
3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강영재	2022. 2. 18.
4	공탁제도 및 공탁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박미정	2022. 3. 4.
5	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김주석	2022. 3. 14.
6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2022. 3. 17.
7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2022. 3. 22.
8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 이혜영	2022. 4. 14.
9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찬영	2022. 5. 6.
10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	전휴재	2022. 5. 20.
11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형사절차에서 증거수집 및 사용을 중심으로 –	이상훈	2022. 7. 15.
12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연구	이혜정	2022. 8. 5.
13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관한 연구	송현정	2022. 8. 16.
14	기일 전 증거개시(pre–trial discovery)로 인한 국제적 사법마찰의 해결에 관한 연구	김효정	2022. 8. 18.
15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박기쁨	2022. 8. 22.
16	사회보장사건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현황과 개선방안	박우경	2022. 10. 31.
17	공정거래 행정사건의 심급 구조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2. 10. 31.
18	싱가포르의 사법개혁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2. 11. 3.
19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정 이학구	2022. 11. 11.
20	재산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2. 12. 29.
현안 1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승연	2022. 7. 8.
현안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정현희	2022. 12. 12.

▣ 2023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보장방안 – 협의이혼과 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임종미	2023. 2. 10.
2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3. 2. 13.
3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김주석	2023. 2. 28.
4	등기민원안내제도 개선방안 – 등기신청절차안내를 중심으로 –	신명훈	2023. 2. 28.
5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2023. 3. 10.
6	민사건설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3. 3. 31.
7	법원의 압수물 보관 · 관리 개선방안	권경선	2023. 4. 21.
8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두얼	2023. 5. 19.
9	미국과 영국에서의 법관 임용 실태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현섭	2023. 5. 30.
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권미연	2023. 6. 12.
11	형사법관운용에 관한 개선방안	탁상진	2023. 6. 26.
12	경매절차의 개선방안 – 주택임대차관계의 현황조사 절차를 중심으로 –	이혜정	2023. 8. 14.
13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김봉철	2023. 11. 30.
14	일본 간이재판소에 관한 연구	서현웅	2023. 12. 26.
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및 시위 금지 · 제한에 관한 연구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건을 중심으로 –	송현정	2023. 12. 27.
16	벨기에 사법개혁과 법관임용제도	서용성 이상훈	2023. 12. 28.
17	인터넷에 의한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	김효정	2023. 12. 28.
18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3. 12. 29.
19	국제적 사법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혜영	2023. 12. 30.
20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3. 12. 30.
21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1심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방안	정승연	2023. 12. 30.

▣ 2024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법원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	김혜진	2024. 2. 22.
2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김윤선	2024. 2. 26.
3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정현희	2024. 2. 28.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4. 2. 29.
5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한나라	2024. 2. 29.
6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이종구	2024. 3. 11.
7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경선	2024. 4. 24.
8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실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	임성민	2024. 5. 20.
9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민 · 형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	이영창	2024. 5. 21.
10	변호사강제주의에 관한 연구	진현섭	2024. 6. 3.
11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	탁상진	2024. 6. 28.
12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 · 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조미선	2024. 7. 8.
13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절차 개선방안	권미연	2024. 8. 27.
14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김정환	2024. 9. 9.
15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방안	안원주	2024. 9. 10.
16	인공지능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이론 연구	허성욱	2024. 12. 11.
17	민간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	유영국	2024. 12. 26.
18	재개발 · 재건축의 이해와 부동산 경매 – 도시정비법을 중심으로 –	이종구	2024. 12. 27.
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별책: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권형관	2024. 12. 31.
20	형사소송에서의 송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식	2024. 12. 31.

▣ 2025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대석	2025. 3. 5.
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김종근	2025. 3. 5.
3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이혜림	2025. 4. 23.
4	독일 사회법원에 관한 연구 –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봉철	2025. 5. 14.
5	강제입원제도와 사법적 통제	신권철	2025. 5. 20.
6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류미리	2025. 5. 27.
7	소년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조미선	2025. 7. 10.
8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박진영	2025. 7. 11.
9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민	2025. 7. 17.
10	유아인도집행에 관한 연구 –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사건과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사건을 중심으로 –	심병준	2025. 7. 23.
11	장애인차별금지소송에 관한 연구	박우경	2025. 9. 25.
12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영창 홍보람	2025. 9. 26.
13	선거소송의 심급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욱	2025. 12. 29.
현안 1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방안 – 복잡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남승민	2025. 4. 7.
현안 2	주식매수가액 공탁제도의 개선방안	김효정	2025. 4. 8.
현안 3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5. 4. 11.
현안 4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유인규	2025. 8. 20.
현안 5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주	2025. 9. 10.
현안 6	양형기준 도입 전후의 양형판단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홍보람	2025. 12. 12.
현안 7	형사공탁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형사특례공탁을 중심으로 –	서용성	2025. 12. 30.

▣ 2026년

연번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발간일
1	사법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근무지원 개선방안	김미란	2026. 1. 29.
2	유언증서 등록 · 보관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준	2026. 1. 30.
3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및 귀속주체 – 가상자산의 물건성과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	이현호	2026. 2. 5.
4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하	2026. 2. 12.
5	도산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설동윤	2026. 4. 30.
6	각국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연구 –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혜림	2026. 5. 18.
7	비송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남승민	2026. 5. 27.
8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용	2026. 6. 30.
현안 1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윤동현	2026. 3. 10.
현안 2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방법과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정현	2026. 3. 19.

형사판결서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6년 6월 19일 인쇄
2026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처 사법정책연구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TEL 031-920-3583

인 쇄 처 (주)홍디자인
TEL 02-464-5167

〈비매품〉

1. 본 연구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윤리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2.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s://jpri.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BN 979-11-6168-413-0 95360

JPRI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사법정책연구원

10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본관동 4, 9, 10층
대표전화 : 031)920-3583 E-mail : jpriga100@scourt.go.kr

비매품
95360
9 791161 684130
ISBN 979-11-6168-413-0